

법령용어 □□

**2006**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법령용어정비사업팀

2006. 10.

법령용어 □□

**2006**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법령용어정비사업팀

2006. 10.

## 집필진(가나다 순)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석 현 (단국대학교 법대 교수)

김 택 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남 궁 술 (경상대학교 법대 교수)

박 수 곤 (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장 병 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학 선 (광운대학교 법대 교수)

전 훈 (경상대학교 법대 교수)

## 일 러 두 기

1. 이 해설집은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법령용어 중 500여 개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프랑스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집필한 것이며, 본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국내외 용어사전 및 전문서적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또한, 현재 프랑스 법령이나 판례 및 전문서적에서 그 용어의 사용례와 번역을 첨부함으로써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음.
2. 이 해설집의 프랑스 법령용어의 번역의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설하였으나, 집필진의 의견에 따라 번역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어나 잘못 사용되는 용어는 프랑스 법령용어 본래의 의미와 사용례에 맞게 의견을 달아 집필하였음.
3. 이 해설집은 대상용어를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집필의 순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설하였으며, 의미와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사어와 동의어 등 관련어는 별도의 지시표시(□□)를 하여 해설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용어의 의미를 해설하고 이에 적합한 사례를 첨부하였음.
4. 이 해설집은 용어의 일반적 정의를 중심으로 하고 강학상의 법리적인 내용의 언급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화하였음. 또한, 법령명·조항표시, 판례 및 정부기구 등 자주 사용하고 약어가 가능한 원문의 인용표시는 별도의 약어표에 따라 본문에서는 줄여 표시하였으며, 별도의 인용근거는 이를 최소화하였음.
5. 이 해설집은 프랑스 법령용어의 보다 쉬운 이해와 우리 법령용어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정비사업단 및 학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해석지침이 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 목 차

▣ 약어표 .....	1
PART. A .....	3
PART. B .....	47
PART. C .....	57
PART. D .....	129
PART. E .....	167
PART. F .....	197
PART. G .....	207
PART. H .....	215
PART. I .....	225
PART. J .....	245
PART. L .....	253
PART. M .....	271
PART. N .....	293
PART. O .....	307
PART. P .....	327
PART. Q .....	361
PART. R .....	365
PART. S .....	381
PART. T .....	395
PART. U .....	403
PART. V .....	407
PART. Z .....	411
▣ 색 인 .....	415

## Abréviation (약어표)

(C. E.) Ass.	: Assemblée générale, 국사원의 전원재판부
al.	: alinéa, 항(項)
Art.	: Article, 조(條)
Bull. civ.	: Bulletin civil de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판례공보
C.C.	: 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C.civ.	: Code civil, 프랑스민법전
C.E.	: Conseil d'Etat, 국사원
Cass. civ.	: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파기원 민사부
Cass. com.	: Cour de Cassation, chambre commerciale, 파기원 상사부
CC	: Conseil constitutionnel
CE	: Conseil d'Etat
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지방자치단체통합법전
CP	: Code pénal, 형법전
CPP	: Code de procédure pénale, 형사소송법전
GDCC	: Les gran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JO	: Journal officiel, 관보
L.	: Partie Législative Code, (법전) 중 법률편
LO	: Loi organique, 조직법률
R.	: Partie réglementaire Code, (법전) 명령편
Rec.	: Recueil des arrêts de Coseil d'Etat (Lebon. Dalloz) 현재 Dalloz출판사에서 간행되는 국사원판결의 판례집(헌법재판소 및 관할법원 판결도 동일)
T.C.	: Tribunal des conflits, 관할법원
TGI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지방법원
TI	: Tribunal d'Instance, 지원

[ A ]

## ◇ Abrogation 【 철회/폐지 】

철회란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이전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retrait)와는 달리 장래효만 가진다.(CE. Ass. 3 février 1989, Cie Alitalia, Rec.44). 철회의 대상행위가 명령적 행위(acte réglementaire)인 경우 권리창설적 효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상대방은 행정상 규정의 유지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하므로 행정청으로서의 언제든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이 처음부터 혹은 사후의 사실상(경제적) 혹은 법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위법한 규정을 철회할 의무를 진다(CE 10 janvier 1930, Despujol. Rec. 30). 반면 명령적 행위가 아닌 경우(acte non réglementaire)는 권리창설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청은 철회할 수 있으나 권리창설적인 경우 법률과 명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 Retrait

## ◇ Absence de cause 【 원인의 흠결 】

일정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nullité absolue)를 초래하는 사유로서 원인이 흠결된 경우를 지칭한다. 예컨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일정한 의무부담을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일방은 의무부담을 하지만 타방은 반대급부(contrepartie)에 대한 의무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무상행위(actes à titre gratuit)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 내지 의도(intention libérale)가 없는 경우 또는 편무계약(contrats unilatéraux)에 있어서 원래의 급부(prestation originair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원인의 흠결로 되어 각각의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발생의 원인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데 있으며, 계약체결시부터 상대방의 채무가 물리적 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외견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반대급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없는 경우여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예컨대, A가 B에게 종신정기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B의 부동산을 매수하

였으나, A가 지급하는 종신정기금이 현저히 낮은 액수여서 B가 자신의 부동산의 매매로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 종신정기금계약의 성립은 부인된다. 같은 맥락에서, 요물계약에서는 물건이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며, 증여 등의 무상계약에 있어서는 은혜의 의도가 흠결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C.civ. Art.1131** : L'obligation sans cause, ou sur une fausse cause, ou sur une cause illicite, ne peut avoir aucun effet.(민법전 제1131조 : 원인의 흠결이나, 허위의 원인, 또는 불법원인에 기한 채무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

### ◇ Abus 【 남용 】

권리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적법한 범위를 넘는 경우 또는 사실상의 상태를 악용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권리의 남용(□□ abus de droit), 권한의 남용(abus de l'autorité), 회사재산의 남용(abus de biens sociaux), 백지위임장의 남용(abus de blanc-seing), 경제적 종속성의 남용(abus de dépendance économique), 다수결의 남용(abus de majorité), 지배적 지위의 남용(abus de position dominante), 집행상의 남용(abus de saisie), 미성년자 또는 약자의 위약상태의 남용(abus des faiblesses d'un mineur ou d'un faible) 등이 있다.

**C.civ. Art.618, al.1** : L'usufruit peut aussi cesser par l'abus que l'usufruitier fait de sa jouissance, soit en commettant des dégradations sur le fonds, soit en le laissant déperir faute d'entretien.(민법전 제618조 제1항 : 용익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훼손행위를 하거나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멸실시킴으로써 사용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용익권은 소멸될 수 있다.)

### ◇ Abus de droit 【 권리의 남용 】

우리 민법과는 달리 민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오늘날에는 개별법령들, 특히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부당약관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 남용을 금지하기도 하나, 동 법리는 그 기원 면에 있어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우리 법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개념상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다. 즉, 자신의 권리를 행

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Neminem laedit qui suo jure utitur)이 원칙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의 사회성 내지 공공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권리의 행사로 평가될 경우에는 과책(faute)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남용을 인정할 최초의 판례는 소유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웃으로 하여금 채광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짜 굴뚝을 가설한 사안이었다(Colmar, 2 mai 1855, D.P., 1856, II, p. 9). 이후 악의나 중대한 착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권리남용을 인정할 경우가 있다(Cass. civ., 6 nov. 1946, D. 1947, p. 49). 그러나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겠다는 악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에는 위 굴뚝 사건과 같은 생활방해의 유형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더 이상 권리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근린폐해(troubles du voisinage) 이론이라는 독자적인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 ◇ Abusus 【 처분권 】

소진될 때까지의 이용 또는 완전한 소비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Jus abutendi’로 표현되기도 한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및 처분권능을 포함하는데, Abusus는 이러한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도 소유권자가 물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멸실시키거나 포기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능인 처분권(disposition)을 의미한다. 즉, 소유권자에게 부여된 가장 완벽한 특권인 Abusus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행위(acte de disposition) 또는 물건 자체를 소유하는 사실행위(acte matériel) 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률행위와 물건의 이용을 위한 사실행위는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는 소유권의 특질과는 무관하나, 후자는 소유권의 특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 ◇ Acceptation 【 승낙, 승인 】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승낙, 상속에 있어서의 승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계약에 있어서는 청약(offre)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가리키며,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표의자가 약정내용(**clause**)을 모두 숙지하였어야 한다. 법원은 계약서에 약정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표의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함이 원칙이나(Cass. civ. 1re, 17 nov. 1998, Bull. civ. I, n° 317),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정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Cass. civ. 1re, 4 juil. 1967, Bull. civ. I, n° 248). 아울러, 승낙은 단순(**pure et simple**)하여야 하며, 청약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계약강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은 자유로운(**libre**) 의사결정에 기초하여야 하나, 매매의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한편 보험법상의 강제보험분야에서는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승낙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상속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승인(**acceptation de succession pure et simple**), 한정승인(**acceptation de succession sous bénéficié d'inventaire**)이 있으며, 상속재산을 횡령하거나 은닉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강제승인(**acceptation de succession forcée**)이 인정되기도 한다.

**C.civ. Art.1690** : Le cessionnaire n'est saisi à l'égard des tiers que par la signification du transport faite au débiteur. Néanmoins le cessionnaire peut être également saisi par l'acceptation du transport faite par le débiteur dans un acte authentique.(**민법전 제1690조** :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양수인은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행한 이전의 승낙에 의해서도 또한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Accession 【 (조약에의) 가입 】

□□ Adhésion

### ◇ Accord 【 합의 】

일반적인 용례로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conformité**) 또는 합치(**consentement**)를 가리키며, 제안이나 청약에 대한 승낙(**acceptation**) 또는 당사자간의 분쟁이나 이의제기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상호이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로는 국가나

단체 상호간의 조약과는 그 의미가 다른 일종의 협정이나 협약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 5 공화국 헌법 제52조에 따라 비준절차(ratification)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법일반적으로는 ‘원칙적 합의 내지 승낙’(accord de principe)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선의로 또는 신의칙에 좇아(□□ bonne foi)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의 기초적 합의를 말하며, 비록 구체적인 약정내용이나 세부조건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에 구체화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약정의 체결자체는 합의된 것으로 함으로써 향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행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accord collectif), 국제적인 조직의 회원국간의 통상협정(accord commercial), 기업 상호간의 조직·조사·생산·판매촉진 등에 관한 협력협정(accord de coopération), 개별기업의 독자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상호간에 체결되는 전문화협정(accord de spécialisation),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간의 협력협정(accord d'importance mineure), 동일한 수준에 있는 기업간의 수평적 기업협정(accord horizontal), 생산업체와 원료공급업체 사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이 다른 기업 간에 체결되는 수직적 기업협정(accord vertical) 등의 용례로 사용되기도 한다.

### ◇ **Accréditation** 【(외교사절의) 파견】

한 국가가 외교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주어 타국에 파견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교공관장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공관장의 계급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파견국은 특정의 인물을 공관장으로 파견함에 있어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를 아그레망(agrément)이라고 한다. 파견국은 아그레망을 얻은 후 해당 인물에게 신임장(lettre de créance)을 부여하여 접수국에 파견한다. ‘accréditation’이라는 용어에는 파견이라는 의미보다도 ‘신임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 ◇ **Acquittement** 【(중죄법원의) 무죄선고】

‘무죄임을 선언하다’라는 뜻의 acquitter 동사의 명사형임. 중죄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임을 선언하거나 공소사실이 형사법률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형사절차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판결을 말한다. 경찰법원과 경죄법원의 무죄선고는 ‘relax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고 있다. 무죄선고의 경우에 피고인은 동일사실로 죄명을 달리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민사상의 의미는 지불의 이행을 뜻한다.

**CPP Art.368** : Aucune personne acquittée légalement ne peut plus être reprise ou accusée à raison des mêmes faits, même sous une qualification différente.(형사소송법전 제368조 : 합법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사실로 다시 체포, 소추되지 않으며 다른 죄명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Relaxe 【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의 무죄선고 】

### ◇ Acte administratif 【 행정행위 】

행정작용의 법적 수단으로서 일방적 행정행위와 계약을 포함한다. 일방적 행정행위는 행정이 그 발령자와는 상이한 자에 대해 권리와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며, 계약은 법률관계 당사자의 상호간의 의사자치에 기초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국내 행정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대비하여 일방적 행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일방적 행정행위는 공권력의 우선적 지위로 나타나는 예선적 우월성(prérogative préalable)으로부터 나온 일방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자격(faculté)이라고 한다. 일정한 일방적 행정행위는 법질서(ordonnancement juridique)에 대한 미미한 영향력 때문에 결정(décision)으로 평가받지 못하는데, 행정내부조치(les mesures d'ordre intérieur), 해석적 시쿨라르(cirulaires), 디렉티브(directives)와 복합적 행정절차에서의 구성부분인 의견(avis)이나 사전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이 아닌 일방적 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C.E. 31 juillet 1942, Monpeurt, Rec.).

### ◇ Acte de gouvernement 【 통치행위, 정부행위 】

프랑스 행정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통치행위이론은 프랑스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라 함은 국가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국가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국가행위 내지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행위라고 하여 법원의 합법성 심사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프랑스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실정법에서 찾는 견해도 있었으나 지금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행정최고재판소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통치행위에 대한 행정최고재판소의 최초의 판례는 1822년 5월 1일 라피트판결이다.(CE 1 mai 1922. Laffitte, Rec. 1821-1825) 동판결은 나폴레옹이 그 일족인 보르게즈(Borghèse) 공작부인에게 허여한 연금에 대하여 연채이자의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최고재판소는 라피트의 주장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정부에 속하는 정치적 문제라고 하여 각하하였다. 현재 판례상으로 통치행위가 인정된 행위들을 보면, 정부의 대의회관계에 관한 행위로서 입법작용에 집행부가 참여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의하여 결정된 행위라든가 의회의 결정의 예비적 성격만을 가지는 정부의 결정 혹은 헌법상 권한과 입법기능의 행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결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프랑스와 외국과의 국제관계에 관한 영역이 전반적으로 통치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CE 2 mars 1962, Rubin de Servens, R. 143** : Considérant que, par décision en date du 23 avril 1961, prise après consultation officielle du Premier Ministre et des présidents des Assemblées et après avis du Conseil constitutionnel,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mis en application l'article 16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que cette décision présente le caractère d'un acte de gouvernement dont il n'appartient au Conseil d'Etat ni d'apprécier la légalité, ni de contrôler la durée d'application.(국사원 1962년 3월 2일 결정 : 수상과 양원 의장의 공식적인 자문을 거치고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61년 결정으로 대통령은 헌법 제16조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통치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는 행정최고재판소가 결정의 적법성과 적용 기간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Acte réglementaire 【 명령 】

행정행위의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행정계약과 구별되는 일방적 행정행위도 명령적(réglementaire)인 경우와 개별적(individuel)으로 대별된다. 명령은 일반적으로 규범이 불특정이고 모든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축허가취득을 위한 절차나 요건을 정하는 규정은인 공공서비스의 조직에 관한 다양한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특정된 1인 이나 여러 사람에게 대해 취해진 행위, 예를 들어 A나 B에 대해 발급된 건축허가(서)나 이에 대한 거부는 개별적인 행정행위가 된다.

□□ Acte administratif

### ◇ Acte unilatéral 【 일방적 행위 】

국제법상 국가의 일방적 행위라 함은, 한 국가의 단독적 의사표시로서 수신국과의 관계에서 그 의사와 관계없이 그리고 조약상의 근거 없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일방적 행위는 주로 선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방적 선언에 의하여 선언국은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상대국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자신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상대국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일방적 선언이 법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상의 법률행위의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문제의 선언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장관 등 대외적 대표성을 가진 자로 제한되며,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 의하여 일방적 선언이 국가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국가로부터 그 같은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을 함에 있어서 국내법 위반이 없었어야 하며, 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 사기, 부패 등의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 아울러, 문제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취해졌거나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취급된다.

**Rapport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2003, p. 127** : Recommendation 1 du Group de travail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sur les actes unilatéraux des Etats : 1. Aux fins de la présente étude, un acte unilatéral d'un Etat est un déclaration exprimant une volonté ou un consentement et par laquelle cet Etat vise à créer des obligations ou d'autres effets juridiques en vertu du droit international.(유엔국제법위원회 보고서, 2003, p. 127 :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관한 작업그룹의 권고 : 제 1 항 본 연구의 목적상, 국가의 일방적 행위라 함은 그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 또는 기타의 법적 효과를 창설할 목적의 의사 또는 동의를 표시하는 선언을 말한다.)

### ◇ Acte 【 행위, 증서 】

일반적으로는 사건(événement)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람의 행위를 지칭한다. 그러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 즉 권리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manifestation de volonté)로서의 법률행위(negotium, acte juridique)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법률사실(fait juridiqu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서면에 의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toutes choses)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증서의 작성이 있어야만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이는 민법전 제134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으로서, 입법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법률행위들에 대한 다른 불완전한 증거방법에 의한 입증을 위험한 수단에 의한 입증이라고 간주하여 이를 금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법전 제1341조는 계약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법리이기는 하나(Cass. civ. 3e, 17 avril 1991, Bull. civ. III, n° 124), 피고가 상인이거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분쟁에 있어서는 동조의 적용이 배제된다(Cass. com., 12 oct. 1982, Bull. civ. IV, n° 313)고 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른 한편,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권리가 발생, 변경 및 소멸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사실의 경우들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법률행위와의 가장 중요한 구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라는 의미로서의 acte가 사용되는 다른 용례로는, 무상행위(acte à titre gratuit), 유상행위(acte à titre onéreux), 단독행위(acte unilatéral), 특정재산에 대한 특정명의의 법률행위(acte à titre particulier), 총재산에 대한 포괄명의의 법률행위(acte à titre universel), 낙성행위(acte consensuel), 엄강행위(acte solennel), 보존행위(acte conservatoire), 설정행위(acte constitutif), 관리행위(acte d'administration, acte de gestion), 사법행정상의 행위(acte d'administration judiciaire), 권력행위(acte d'autorité), 상행위(acte de commerce), 처분행위(acte de disposition), 소송행위(acte de procédure, acte judiciaire), 순수수의행위(acte de pure faculté), 단순허용행위(acte de simple tolérance), 확인행위(acte déclaratif), 가장행위(acte déguisé, acte fictif, acte simulé), 재판외행위(acte extrajudiciaire), 권리이전행위(acte translatif) 등이 있다. 다른 한편, acte는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서면화된 문서나 증서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더욱이 민법전 제1341조에서는 acte를 서면화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면화된 문서나 문서라는 의미로 acte가 사용되는 용례로는, 신분증서 또는 호적(acte de l'état civil), 혼인증서(acte de mariage), 출생증서(acte de naissance), 공정증서(acte authentique, acte notarié), 사서증서

(acte de sous seing privé), 집행권원(acte exécutoire) 등이 있다.

**C.civ. Art.1325, al.1** : Les actes sous seing privé qui contiennent des conventions synallagmatiques, ne sont valables qu'autant qu'ils ont été faits en autant d'originaux qu'il y a de parties ayant un intérêt distinct.(민법전 제1325조 제1항 : 쌍무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사서증서는 별개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의 수에 상응하는 수의 원본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Action civile 【 사소(私訴) 】

사소(私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의해 제기되는 피해회복의 소(訴)이다. 사소가 형사법원에서 진행될 때는 공소(公訴)의 부대소송이 된다. 사소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인 사당사자(私當事者, partie civile)에 의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되며 경우에 따라 그 외의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전 제2조는 “중죄, 경죄, 위경죄에 의해 발생한 피해복구의 사소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개인적으로 입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손해가 현존하고, 그것이 개인적이며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상속인이 여기에 해당하며 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소송제기는 할 수 없으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에 개입(intervention)할 수는 있다. 사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personne morale)도 포함한다. 따라서 법인이 범죄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법인이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특정 부류의 피해자 또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각종의 사회단체(association)들도 형사소송법전에 명시된 경우에 사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사소는 형사법원에 공소와 병합하는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법원에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전 제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느 법원에 사소를 제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사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형사법원에 사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입증을 강화하고 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공소관에 대한 견제와 보충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다만 법원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며 예를 들

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법원에 사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형사법원만을 선택할 수 있다. 형사법원의 선택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소제기의 효과를 가져오며 공소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는 소송에의 개입을 통하여 사소가 제기된다. 형사법원에서의 소송은 민사법원보다 빨리 진행되며 경제적이고, 증거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과 피고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택의 또 다른 고려사항은 민사법원에 사소를 제기한 후 이를 철회하여 형사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반대로 형사법원을 선택한 후 이를 철회하여 민사법원을 다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인소추를 통하여 형사법원에 사소 및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사소를 철회하더라도 공소에 대한 철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는 검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유지된다.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민사법원에서 사소가 진행중일 때에는 민사법원은 형사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 또한 시효에 있어서도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각기 다른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Action publique,  Partie civile

### ◇ Action oblique 【채권자대위권】

한국민법에서의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하는 소권 내지 소송을 지칭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나 소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전 제116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나 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한 권리나 소권의 행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채무자의 ‘포괄적 재산’(patrimoine)에 대한 어떠한 권한의 행사도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이럴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일종의 관리행위인 채권자의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한편, 민법전 제1166조에서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droits exclusivement attachés à la personne)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비재산적인’(extrapatrimonial) 권리나 ‘압류가 금지되는 권리’(droits insaisissables)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비추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배제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위권행사의 범위는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대위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대위권행사의 효과로 인하여 현재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C.civ. Art.1166** : Les créanciers peuvent exercer tous les droits et actions de leur débiteur, à l'exception de ceux qui sont exclusivement attachés à la personne.(민법전 제 1166조 :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귀속한 모든 권리 또는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Action paulienne 【 채권자취소권 】

한국민법에서의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소권 내지 소송을 지칭한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당히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전 제116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독립성과 채권자의 보호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취행위(fraude)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취행위가 가장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취행위의 입증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피보전채권은 사취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나,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예견된 사취행위’(fraude anticipée)가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비록 사취행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어야 한다거나 총액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취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변제는 사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채무자의 무자력 또한 취소권행사의 요건이다. 한편, 사취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겠다는 악의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한다. 아울러 사취행위의 존재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채무자와 전득자 등의 통모와 함께 입증하여야 하나, 무상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통모에

대한 입증의 요구되지 않으며, 채무자 등이 변제자력의 감소를 인식하였는가의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다른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한국민법에서와는 달리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한국민법학에서의 상대적 무효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C.civ. Art.1167, al.1** : Ils(les créanciers) peuvent aussi, en leur nom personnel, attaquer les actes faits par leur débiteur en fraude de leurs droits.(민법전 제1167조 제1항 :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사해행위를 공격할 수 있다.)

### ◇ Action populaire 【 민중소송 】

‘민중소송’(actio popularis)이란 공동체의 모든 각 구성원들이 어떠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침해의 위험이 없어도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소(訴)를 제기할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이는 공동체의 모든 법주체가 위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할 자격을 갖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문제는 1966년의 『서남아프리카 사건』에서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이디오피아와 라이베리아는 자기들이 국제연맹의 회원국으로서 연맹과 남아공화국간에 체결된 위임통치조약의 이행에 대하여 법적 이익(legal interest)을 가진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남아공화국의 동 조약 위반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원고국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신청의 목적과 관련하여 여하한 법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종의 민중소송(actio popularis) 또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공익의 옹호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면서, 현행 국제법은 이 같은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C.I.J. Recueils 1966, p. 42, par. 73; p. 47, par. 88). 그러나 최소한 이론적 차원에서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와 관련하여 이 개념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국가들이 국제공동체 전 구성원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 위반국을 상대로 여하한 국가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법은 이러한 민중소송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 Action publique 【 공소(公訴) 】

사회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訴)로써 원칙적으로 공소관이라는 특별사법관에 의해 수행되며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법률의 적용과 사회에 가한 손해에 대한 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지방법원 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하나 예외적으로 사생활침해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세무범죄의 경우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지방법원 검사장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기소를 대체하는 다른 처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일단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공소관이 철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전 제 6 조 1문단(alinéa)에서 3문단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권이 소멸된다. 즉, 피의자의 사망, 사면, 법률의 폐지, 형사배상의 집행, 기판력, 공소시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관사 또는 재판법원에게 사당사자구성(constitution de partie civile)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소유지의 책임은 공소관에게 있다. 공소에 관한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항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위경죄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범죄는 항소가 불가능하며 중죄의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고등검사장만이 항소할 수 있다. 공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형사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피해복구의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소(action civile)와 구별된다.

**CPP Art.1** : L'ac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s peines est mise en mouvement et exercée par les magistrats ou par les fonctionnaires auxquels elle est confiée par la loi . Cette action peut aussi être mise en mouvement par la partie lésée,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e présent code.(형사소송법전 제 1 조 : 형벌의 적용을 위한 공소는 법관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원에 의해 제기된다. 이 공소는 또한 현 법전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피해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 Action civile

## ◇ Action 【 소권, 청구권, 주식 】

권리나 정당한 이익의 사법적 보호수단으로서의 소권 내지 소송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독일에서의 청구권에 비유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도 있다. 한편, 법인격 있는 단체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소송으로는 집단소송(action collective)이라는 용례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학설상으로는 다수의 공동이해관계인의 공통의 이익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단체소송(action de groupe), 집단소송(action de classe) 또는 민중소송(□□ action populaire)이라는 개념과 준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즉, 단체소송은 손해를 입은 개인들이 단체(association)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소송의 형태로서 이 경우 단체는 구성원 각자가 수행하였어야 할 소송을 일종의 위임관계를 통하여 수행하고 승소한 경우 배상액을 직접 구성원 상호간에 분배하게 된다. 반면, 집단소송은 단체의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단체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소송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단체는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Paris, 5 juil. 1994, J.C.P., 1996, II, 22562 참조). 다른 한편, 소송물이나 권리의 유형에 따라 지역권확인소송(action confessoire; action négatoire), 부당이득확인소송(action in rem verso, □□ enrichissement sans cause), 확인소송(action déclaratoire), 신분소송(action d'état), 직접소권 내지 직접청구권(action directe), 직무소송(action d'office), 담보책임소송(action en garantie),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감액청구소송(action estimatoire, 민법전 제1644조 참조), 물권에 관한 대물소송(action réelle), 채권 내지 대인권에 관한 소송인 대인소송(action personnel), 혼합소송(action mixte), 사무관리비반환소송(action des affaires gérées; action negotiorum gestorum), 채권자대위소송(□□ action oblique; action subrogatoire), 채권자취소소송(□□ action paulienne), 부동산물권확인소송(action pétitoire), 점유소권(action possessoire), 판례상 소권(action prétorienne), 점유회복소권이나 증거보전소송과 같은 예방적 소송(action préventive), 주된 청구에 관한 소송(action principale),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도발적 소송(action provocatoire), 구상권(action récursoire), 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권(action rédhitoire), 계약해제권 내지 해제소송(action résolutoire)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 action은 주식이나 주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용례로는 상장주(action cotée en Bourse), 기명주(action nominative), 무기명주(action au porteur), 복수의결권주(action à vote plural), 자본주(action de capital), 보증주(action de garantie), 발기인주(action d'apport), 향익주(action de jouissance), 우선주(action de priorité), 노동주(action de travail) 등이 있다.

**C.civ. Art.2283** : Les actions possessoires sont ouvert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procédure civile à ceux qui possèdent ou détiennent paisiblement.(민법전 제 2283조 : 점유소권은 민사소송법전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평온하게 점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 ◇ Adhésion 【(조약에의) 가입】

가입은 다자조약에서 특유한 조약체결 절차이다. 조약은 채택된 직후부터 일정 기간동안 서명을 취하여 개방되며, 서명국은 비준을 함으로써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 경우 조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명을 하지 못한 국가들은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입 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수를 늘림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한다. 개방적인 다자조약들은 사실상 모든 국가들에게 가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다자조약들은 그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있어서는 가입이 해당 기구의 회원국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조약에 대한 가입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가입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약이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가 가입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교섭국들이 그같이 합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그 후에 모든 당사국이 그같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가 가입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다(조약법협약 제15조).

**Traité sur la Non-Prolifération, art. 9, par. 1** : Tout Etat qui n'aura pas signé le présent Traité avant son entrée en vigueur (...) pourra y adhérer à tout moment.(비확산조약 제9조 : 본 조약의 발효 이전까지 이를 서명하지 못하는 국가는 (...) 언제라도 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 ◇ Adoption (du texte) 【(조약문의) 채택】

조약문의 채택이라 함은, 교섭의 결과 조약문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조약문이 채택되면, 더 이상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교섭국은 이 조약에 대하여 서명 또는 비준

등을 통하여 조약의 당사국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조약문의 채택은 이를 위한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국가들 간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국가들의 3분의 2의 다수결로서 이루어진다.

### ◇ Adoption plénière 【 완전입양 】

입양으로 인한 양친자관계가 혈연에 의한 친생친자관계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입양의 형태로서, 개정 한국친족법(2008년 시행)에서의 친양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완전입양을 한 경우, 양자의 친생친자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호적 또는 신분증서는 말소되며, 아울러 생가와와는 완전히 절연하게 되고, 양가의 적출자와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게 된다.

완전입양의 요건과 관련하여, 별거상태에 있지 않은 부부로서 혼인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부부 중 일방이 28세를 넘는 경우에는 부부는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으며(민법전 제343조 참조), 원칙적으로 양친은 양자보다 15세 이상의 연장자이어야 한다(민법전 제344조). 완전양자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친이 될 자의 주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자로서 15세 미만의 자이어야 하나, 반면 15세 이상의 자로서 그 이전에 완전입양을 위한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의 주거에서 생활하였거나 또는 단순입양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만약 양자로 될 자의 미성년기간 및 성년 후 2년 내에 완전입양을 위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여 완전입양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양자로 될 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입양에 대하여 양자로 될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전 제345조). 다른 한편, 이상에서 설명한 경우 이외에도, 부모나 친족회가 완전입양에 동의한 경우, 국가의 후견을 받는 피후견인(pupille de l'Etat) 그리고 민법전 제35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기아선고(déclaration d'abandon)를 받은 자도 완전양자로 될 수 있다(민법전 제347조).

**C.civ. Art.353, al.1** : L'adoption est prononcée à la requête de l'adoptant par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vérifie dans un délai de six moi à compter de la saisine du tribunal si les conditions de la loi sont remplies et si l'adoption es conforme à l'intérêt de l'enfant. (민법전 제353조 제 1 항 : 입양은 관할지방법원이 입양과 관련한 법정요건의 구비여부 및 당해 입양이 입양될 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한다.)

## ◇ Adoption simple 【 단순입양 】

입양으로 인한 양친자관계가 창설되더라도 생가와 절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 양자제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양자는 생가친족에 대한 상속권을 보유하면서, 양가친족도 상속할 수 있다(민법전 제364조). 아울러, 양자나 양친 상호간에 부양의무가 있음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으나, 단순입양에 있어서는 양자와 생부모간에도 부양의무가 존속하지만 양자의 생부모는 양자가 양친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민법전 제367조). 단순입양의 요건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피입양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단순입양이 허용된다는 점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입양자가 13세를 초과한 때에는 입양에 있어서 피입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전 제360조 참조). 단순입양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신분증서에 그 기재가 있게 된다(민법전 제362조 참조). 단순입양의 효과와 관련하여, 피입양자의 생가에서 얻은 姓에는 입양자의 성이 부가되나, 입양자는 법원에 입양자의 성씨만을 사용하도록 결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전 제363조 참조).

**C.civ. Art.363, al.1** : L'adoption simple confère le nom de l'adoptant à l'adopté en l'ajoutant au nom de ce dernier.(민법전 제363조 제 1 항 : 단순입양이 있게 되면, 피입양자의 성씨에 입양자의 성씨를 부가한다.)

## ◇ Adoption 【 입양, 채용 】

입양, 양자 또는 양자제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통상적으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는 친자관계를 말하며, 민법전 제343조 이하에서는 완전입양(□□ adoption plénière)에 대하여, 동법 제360 이하에서는 단순입양(□□ adoption simple)에 대하여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각각에 대하여는 후술). 관련 용례로서, 양친은 adoptant(e)으로 표기되며 특히 양부는 père adoptif, 양모는 mère adoptive로 표기되기도 한다. 한편, 중성적 의미에서의 양자는 adopté 또는 enfant adopté로 표기되나, 양자는 fils adoptif, 양녀는 fille adoptive로 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양친자관계는 filiation adoptive로 표기된다. 다른 한편, adoption은 채용 또는 채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컨대, adoption d'une thèse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특정한 논제나 논리의 채

용을 의미하고, adoption d'une solution par un juge라는 표현은 법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채택한 경우라는 의미로서, 이 경우에는 approbation, adhésion, consécration, censure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판단에 있어 그 이유를 실시하는 경우를 adoption de motifs라고 표시하며,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이유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substitution de motifs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 ◇ Affaires intérieures 【국내문제】

국내문제란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율되지 않음으로써 개별 국가가 자유롭게 처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가리킨다. 국내문제의 범위는 국제법의 상황에 의존하며, 본질적인 국내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문제의 범위는 상대적이며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 또는 지역적 관습법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타국과 여하한 조약도 체결하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는 그 국가의 국내문제라 할 수 있다. 국제법은 이러한 국내문제에 대하여 개별 국가의 전속(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며, 따라서 한 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한 타국도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이라고 한다.

### ◇ Agent diplomatique 【외교관】

한 국가에 주재하는 타국 공관의 구성원 들 중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agent diplomatique)이라 함은 사절단장이나 사절단의 외교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관장을 포함하여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 ◇ Agent public 【(넓은 의미의) 공무원】

행정청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공법상 법제하에 있고 행정청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법상의 임금노동자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개념상 구별의 실의

은 이들의 신분과 관련된 소송이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에 있다. Agent public은 ①좁은 의미의 공무원(les fonctionnaires), ②독립적 지위의 공무원(les agent public soumis à statut autonome), ③부속직원(les auxiliaires), ④시보(les stagiaires)와 같이 법률과 명령에서 정하는 경우와 계약을 통해 ①행정적 공공서비스 담당직원(les agents des services publics administratifs), ②상공업적 공공서비스직원(les agents des services publics industriels et commerciaux)이 되는 경우로 대별된다. 행정과 계약을 통해 agent이 되는 경우 그 지위(사법상 임금노동자인가 공법상 규율을 받는 agent인가)는 계약의 성질에 따라 구별되는데 법률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 Fonction publique

### ◇ Agression 【 침략 】

침략이라 함은 한 국가가 타국에 대하여 가하는 무력공격을 말한다.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타 회원국에 대하여 “그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기타 헌장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행사를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략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국가 간의 무력공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침략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1974년의 UN총회 결의 3314에서 규정된 침략의 정의가 그 지침으로 역할하고 있다. 이 결의에서는 침략을 가리켜, “UN헌장 제2조 제4항에 반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무력행사”라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의 침범, 공격, 점령, 병합 등과 아울러, 영토에 대한 폭격 또는 봉쇄, 타국 군대에 대한 공격, 영토국의 동의 없는 군대의 주둔,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제3국에 대한 영토의 제공 등을 들고 있다.

### ◇ Aide juridique 【 법률구조(法律救助) 】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원조중의 특별한 형태로서 재판구조(aide juridictionnelle)와 법률지원(aide à l'accès au droit)을 총칭한다. 재판구조는 재정적으로 청구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

체적으로 전년도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송비용 및 변호인 선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는다. 법률지원은 개인으로 하여금 재판 절차 이외의 분야에서 상담 또는 지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법률구조는 민사, 형사, 행정법원에서 이뤄진다. 형사법원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구조를 규정한 법률은 91년 7월 10일의 『법률구조에 관한 법률』이다.

### ◇ **Ambassadeur** 【대사(大使)】

외교공관장(□□ chef de mission diplomatique)의 계급 중 최상위의 등급을 말한다.

### ◇ **Amende** 【벌금】

형사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재산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국가에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손해배상 및 민사 또는 소송절차상의 형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민사벌금(amende civile)과 구별된다. 위경죄는 주형으로, 중죄는 형법 제131-2조에 따라 부가형(peine complémentaire)으로, 경죄는 형법 제131-3조에 따라 단독 또는 금고형과 함께 주형(peine principale)으로 과해진다. 위경죄의 벌금액은 형법전 제131-13조에 정해져 있으며 카테고리에 따라 38유로에서 500유로(누범인 경우 3,000유로)까지 다양하다. 경죄 분야에서 벌금의 최소액은 3,750유로이며, 중죄분야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최고액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지 않다. 벌금형은 법인(personne morale)에 대하여도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동일한 범죄로 인해 자연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벌금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

**CP Art.131-2** : Les peines de réclusion criminelle ou de détention criminelle ne sont pas exclusives d'une peine d'amende et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10.(**형법전 제131-2조**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벌금형이 병과되거나 제131-10조에 규정된 부가형 중에 한 개 또는 수개와 병과될 수 있다.)

□□ Crime, □□ Délit, □□ Contravention

## ◇ Amnistie 【 일반사면 】

특정시기에 범해진 일정한 사실에 소급하여 그것의 범죄적 성격을 없애주는 조치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아닌 입법기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2002년 8월 6일의 『사면에 관한 법률』은 사면될 수 있는 범죄들을 열거하고 있다. 일반사면이 판결이전에 이뤄진 경우에 공소를 소멸시키지만 사소(私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면시행일 이전에 이미 형사법원에 사소가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법원에 대하여만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면이 판결이후에 이뤄진 경우에 유죄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며 집행중인 형도 면제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전 제769조 제 2 항(alinéa)에 따라 범죄경력도 삭제된다. 특별사면(grâce)과는 구별된다.

**CPP Art.133-1** : Le décès du condamné ou la dissolution de la personne morale, sauf dans le cas où la dissolution est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pénale, la grâce et l'amnistie, empêchent ou arrêtent l'exécution de la peine.(**형법전 제133-1조** : 유죄선고인의 사망 또는 형사법원에 의해 선고된 해산명령의 경우를 제외한 법인의 해산, 특별사면, 일반사면은 형의 집행을 제지 또는 정지한다.)

Grâce

## ◇ Annulation 【 취소, 무효선고 】

민사법상으로는 우선, 관련 당사자 간에 법률행위 또는 소송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어떤 법률행위나 소송이 관할청이나 관할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 이전에 당사자에 의하여 명백히 무효인 것으로 확인됨과 아울러 향후 어떠한 효력도 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법원이 하자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하거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원이 어떤 행위에 대하여 무효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적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결정함으로써, 행위가 있기 이전의 상태대로의 원상회

복이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하급심판결을 폐기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항소심이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 용례로서, *annulable*은 무효원인 있음을 의미하며, *annulabilité*는 무효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성 내지 무효가능성을 의미한다.

### ◇ **Apatride** 【 무국적자 】

무국적자라 함은 여하한 국가의 국적도 갖지 않은 자를 말한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들은 자국 영토상의 무국적자들에게 종교의 자유, 재산권,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며, 식량 및 주택공급, 공교육, 공공지원,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장 등 생활권적 기본권에 있어서도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영토국은 무국적자들에게 신분증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국적자들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교적 보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에 관한 UN국제법위원회 초안 작업 참조할 것). 한편, 1961년 『무국적의 감소를 위한 협약』에서는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 ◇ **Apparence** 【 외관, 表見 】

사전적인 의미로는 외관, 表見性 또는 가장적인 외형을 의미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表見理論(*théorie d'apparence*)과 관련하여서인데, 이는 일련의 외부적 표상에 의하여 실제적 진실을 알 수 없었던 제3자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 이러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表見性(*apparence*)이 당해 제3자에 대하여는 법적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판례이론이다. 즉,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이 이론은 표현상속인(*héritier apparent*), 표현소유권(*propriété apparente*), 표현대리인(*mandat apparent*), 표현상인 등의 사례들을 통하여 일

반이론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아울러, 민법전 제1240조에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선의로 행하여진 변제도 유효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표현채권자(créancier apparent)에 대한 변제로서 表見理論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C.civ. Art.689** : Les servitudes sont apparentes ou non apparentes. Les servitudes apparentes sont celles qui s'annoncent par des ouvrages extérieurs, tels qu'une porte, une fenêtre, un aqueduc. Les servitudes non apparentes sont celles qui n'ont pas de signe extérieur de leur existence, comme, par exemple, la prohibition de bâtir qu'à une hauteur déterminée.(민법전 제689조 : 역권은 표현적인 것이거나 비표현적인 것일 수 있다. 표현역권은 문, 창문, 수도관 등과 같이 외형적 시설물에 의하여 표출되는 역권을 말하며, 비표현역권은 토지상의 건축금지 또는 고도의 제한이 있는 건축과 같이 그 존재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역권을 말한다.)

### ◇ Appauvrissement 【 손실 】

일반적으로는 빈궁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법학에서는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하여 이득자의 이득을 초래하게 된 손실자의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acte d'appauvrissement)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선, 부당이득법에서의 손실이라는 의미라고 사용되는 경우, 이득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며, 반환청구시에 손실의 존재가 확인되고 또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이나 권리의 상실과 같이 손실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자의 재산의 유지나 증대를 초래하는 다양한 경우 이외에도 이득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무나 용역이 무상으로 제공된 반면 손실자의 재산의 증대는 없는 경우 등이 부당이득법에서의 손실개념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처가 남편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처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는 한, 후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처는 남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실자의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부작위에 의한 경우에도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여하튼, 손실자가 입은 손실이 어떠한 이익과 위험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든가, 손실자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토지소유자가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

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인접지에도 이익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action paulienne)의 대상이 되는 사취행위 내지 사해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염가에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과 같은 부당한 재산감소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사취행위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fraude, consilium fraudis, conscius fraudis 등이 있다.

L'appauvrissement ne doit pas résulter de la faute de l'appauvri.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손실은 손실자의 과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Appel 【상소, 항소, 항고】

일반적으로 미확정 판결의 소송사건을 상급법원에 의해 새로 심사하도록 하는 불복수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항소와 항고의 개념을 포섭하지만 상고의 개념은 제외된다. 즉 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와 수사판사를 포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 모두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사를 구하는 불복절차는 상고(pourvoi en cass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상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사판사 및 석방구금판사의 명령(ordonnance), 경죄법원의 판결, 경찰법원의 판결 중 위경죄 제 5급에 대한 벌금선고와 선고된 벌금이 위경죄 2급의 최고 벌금액수를 초과한 때, 중죄법원의 유죄판결(무죄판결은 제외)이다. 중죄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는 2000년 6월 15일의 법률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경우 항소권자는 피고인과 공소관이다. 공소에 대한 항소가 없는 경우 사당사자는 민사상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2002년 3월 4일의 법률은 형사소송법전 제380-2조를 개정하여 고등검사장(procureur général)에게 중죄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판사 및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소법원 수사부(chambre d'instruction)가 처리하며 경죄분야와 위경죄분야의 항소는 경죄항소부(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가 처리한다. 중죄분야에서 항소심에 대한 관할권은 대법원이 지정하는 중죄법원에 있다. 형사소송법전 제380-1조에 따라 중죄법원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재심사해야 한다.

□□ Pourvoi en cassation, □□ Chambre de l'instruction

### ◇ Appel d'offre 【 입찰공고, 경쟁입찰계약 】

일정한 행정계약의 체결기술로서 공고절차 개시 후에 입찰에 응하는 업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청은 반드시 최저가를 제시한 후보자를 우선대상자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기준(급부의 질이나 유지비용, 공급자가 제공하는 보증, 실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입찰공고는 ①공개적(l'appel d'offres est dit ouvert), ②제한적(dit restraint), ③경쟁적(avec concours)으로 나누어진다.

공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응모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절차가 진행되고 낙찰이 있게 되면 1979년 7월 11일 법률규정에 따라 응찰자에 대한 기각판정의 이유가 통지되어야 한다. 제한적 입찰공고(제한경쟁입찰)는(appel d'offres est dit restraint) 경쟁입찰 공고 후에 계약의 (행정측)책임당사자가 입찰을 제출가능자의 명단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명단에는 입찰경쟁에서 배제되는 공급자나 기업명단이 포함될 수 있다. 경쟁입찰공고(지명경쟁입찰공고 · appel d'offres avec concours)는 지적재산권적인 급부에 한정된다. 지명입찰공고는 항상 제한적이고 계약의 책임자가 지정한 심사단의 급부에 관한 검사 · 판정을 포함한다. 입찰서류의 개봉으로 입찰공고절차는 개시되지만 경매(ajudication)와는 반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입찰공고절차에서 경쟁에서의 평등원칙이 준수되었는가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한다.

### ◇ Application à titre provisoire 【 (조약의) 잠정적용 】

조약의 잠정적용이란 조약이 해당 조약에서 정하여진 발효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하였으나 시급히 이를 적용할 필요에 따라 발효 전에 앞당겨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잠정적용은 해당 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교섭국들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한 잠정적용이 이루어졌던 조약의 예로서, 1994년 『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련된 협정』을 들 수 있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25, par.1** : Un traité ou une partie d'un traité s'applique à titre provisoire en attendant son entrée en vigueur.(조약법협약 제25조 제1항 :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발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 Apprentissage 【 견습 】

사전적 의미로는 견습 또는 직업훈련을 의미하는데, 이는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적 교습소나 기업 및 훈련소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말한다. 민법전에서는 특히 제1384조 제 6 항에서 견습생(apprenti)의 불법행위에 대한 장인(匠人, artisan)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구조상으로는 학생의 행위에 대한 교사의 책임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민법전 편찬자들은 교사와 장인은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학생이나 견습생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들의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 것이다. 한편, 교사의 책임에 있어서는 1937년 4월 5일 법에 의하여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반면(민법전 제1384조 제 8 항), 견습생의 행위에 대한 장인의 책임은 한국민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중간책임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동조 제 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구성되게 된다(민법전 제1384조 제 7 항 참조). 그러나 견습생과 미성년자를 유사한 지위로 파악한 것과 같은 이러한 태도는, 종래 견습생들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루어지던 시대에는 일응 수긍되는 면이 있으나 현대 산업화사회에서의 직업훈련제도에서는 그 타당성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1971년 7월 16일 법은 노동법전 제1편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습에 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견습계약(contrat d'apprentissage)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며, 기업 내의 훈련도 전문적 직업훈련기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설상으로는 견습생이 야기한 손해의 전보와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책임, 친권자의 책임 및 직업훈련기관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날의 직업훈련제도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필요성과 함께, 현행 민법상의 견습생의 행위에 대한 장인의 책임을 개정 내지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Cf., C.civ. Art.1384, al.6 :** Les artisans sont responsables du dommage causé par leurs apprentis pendant le temps qu'ils sont sous leur surveillance.(민법전 제1384조 제 6 항 참조 : 장인은 견습생이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 Approbation 【 승인 】

행정상 후견절차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지방분권), 영조물법인(기능상 분권)의 의결이나 결정에 대해 후견기관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한다. 승인은 후견기관이 내린 결정의 법적 효율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그 결정의 적정성(opportunité)과 다양한 고려(considérations)를 평가하면서 분권화된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는 제 수단을 의미 한다(R. Masétiol / P. Laroque). 승인권의 실행은 피후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의사결정의 집행성을 결정하게 된다. 후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entrer en vigueur)의 요건이 된다. 승인은 소급효를 가진다. 따라서 피후견기관의 행정행위는 발령 시부터 집행성(caractère exécutoire)을 가진다. 승인권은 후견적 감독기관의 적정성의 통제절차에 해당한다. 지방분권에 관한 1982년 3월 2일 법률 이후 일체의 행정적 후견통제는 행정법원의 적법성 통제 하에 있게 됨으로서 행정상 후견으로서의 승인절차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Délégué préfectoral

## ◇ Archipel 【 군도(群島) 】

국제법에 있어서 군도라 함은 전체로서 단일의 법주체로 취급되는 섬들의 군을 가리킨다. 1982년 해양법협약은 제46조에서 군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군도라 함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으로써 본래적으로 지리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하거나 역사적으로 그와 같이 인정되어 온 섬들의 부분들, 상호 연결된 수역들 및 기타 자연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섬들의 군”을 말한다. 군도로서 형성된 국가를 가리켜 ‘군도국가’(Etat archipel)라 칭하며, 해양법협약은 이들 국가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 ◇ Arrêté 【 아레테 】

집행기관(각부장관, 프레페, 코뮌의 시장)이 제정한 명령 혹은 규칙을 총칭하는 형식을 말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아레테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상

기하는 서명(visas)과 문장들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조문으로 구성된다. 아레테는 내용과 관련해서 명령(règlement), 개별적 행위(acte individuel)나 비법규적인 결정(décision non réglementaire)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적극적 관할분쟁(충돌)(conflit positif)의 경우, 관할법원(Tribunal conflits)은 프레페의 관할분쟁, 아레테(arrêté conflit)의 적법성으로 판단한다(□□ conflit des compétences).

### ◇ Arrhes 【 계약금 】

계약금, 예약금, 해약금, 전불금, 선금 등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나, 그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즉,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일정한 금원을 수수하면서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며, 대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계약금이 해약금(débit)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약체결에 대한 증거로서의 증약금이나 선금(acompte)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수수된 계약금이 계약의 최종적 이행의 전단계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일부이행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내용의 이행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민법전 제1590조에서는 해약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C.civ. Art.1590** : Si la promesse de vendre a été faite avec des arrhes chacun des contractants est maître de s'en départir: - Celui qui les a données, en les perdant, - Et celui qui les a reçues, en restituant le double.(민법전 제1590조 : 매매예약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지급자는 그가 지급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예약을 파기할 수 있다.)

### ◇ Arrondissement 【 구(區) 】

아롱디스망은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의 하부 행정단위로서 혁명력 7년 우(雨)월(pluviôse) 28일 법률이래로 존재하고 있다. 한 데파르트망에 보통 3-4개 정도 있다. 아롱디스망은 행정상의 행정구역일 뿐이며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하부구역으로 나

누어지지 않으며, 국가는 데파르트망 청사 소재지가 아닌 아롱디스망에는 일명 sous-préfet를 파견한다.

한편 1982년 이래로 추진된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아롱디스망은 코뮌인 파리(Paris), 마르세이(Marseille), 리용(Lyon)의 재분할 구역단위로 나타나고 있다. 파리는 20개, 마르세이시는 16개, 리용은 9개의 구로 나누어진다. 이들 아롱디스망은 법인격은 부여받지 못하였지만(우리의 자치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님) 각 구마다 대표자와 의회(Consil d'arrondissement)를 갖추고 있다. 구의회 의원의 1/3는 코뮌(파리, 마르세이, 리용 모두 하나의 코뮌임)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대표자(Commune과 마찬가지로 maire명칭사용)는 의회에서 선출한다. 교육, 탁아소, 문화와 스포츠 같은 생활근접 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la déconcentration administrative

### ◇ Asile diplomatique 【 외교적 비호 】

외교적 비호라 함은, 외교공관이 접수국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를 비호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정치범의 비호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오늘날 일반국제법상 외교공관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외교공관의 불가침이 보장되는 결과로서 접수국 내의 타국 공관에 은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관헌이 이를 강제로 체포할 수 없는 만큼, 외교적 비호가 사실상 가능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공관의 불가침은 공관이 파견국을 대표한다는 예의적 차원과 접수국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교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라는 제도적 취지로 보다면, 이러한 불가침권 속에 외교적 비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비엔나 협약도 외교공관에 대하여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제41조 제 3 항에서 접수국과 파견국간에 외교공관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외교적 비호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에 특별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공관은 접수국 내에서 비호권을 갖지 않는 것이다. 다만, 남미지역에서는 외교공관의 정치범 비호권이 지역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 지역 국가들 간에 체결된 1954년 카라카스 조약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 Asile territorial 【영토적 비호(庇護)】

영토적 비호라 함은 한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가 피신하여 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영토고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즉, 국가는 별도의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스스로의 관할 영역에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러한 해당 피신자가 침략범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 주요 국제범죄를 범하였거나, 그러한 자가 영토국과 그 본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자인 경우, 영토적 비호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문제의 피신자에게 입국을 허용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영토국의 영역고권의 행사로서 국제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 ◇ Assemblée nationale 【국민의회, 하원】

프랑스의 의회제도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상원과 국민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회는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민의회와 상원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회는 상원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측면도 있다.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상원의원보다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국민의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가 원할 경우 국민의회는 최종적으로 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양원에서 각기 2회독에 걸쳐서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수상은 양원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로 하여금 통일의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안이 양원에서 각기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는 양원이 각기 1회독 한 후에 국민의회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회만이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임시소집권도 정부와 국민의회 의원만이 가지고 있다.

**Constitution Art.24 al.1** : Le Parlement comprend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헌법 제24조 제1항 : 국회는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된다.)

## ◇ Assistance (bénévole) 【 부조, 구조, 조력, 협력행위 】

사전적 의미는 호의에 의한 부조나 구호 또는 보호행위를 가리킨다. 즉, 호의동승 (transfort bénévole)과 같이 어떠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타인에 대한 조력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조행위는 계약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계약적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부조행위가 당사자 간에 상호적이거나 관계의 지속성이 의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들이 특히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조력행위는 오랫동안 계약으로 파악되지 않아 왔는데, 이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용역이나 조력을 함으로써 맺어지는 관계는 단순히 타인에 대한 배려관계(rapport de complaisance) 내지 예절관계(rapport de courtoisie)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 관념과 법리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바로 해난구조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의 관계로써 이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법원은 타인에 대한 조력과정에서 조력자(sauveteur)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하여 조력을 받은 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든가 (Cass. civ. 2e, 26 jan. 1994, J.C.P., 1994, I, 3809), 사무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Cass. civ. 1re, 26 jan. 1988, Bull. civ. I, n° 25)가 있다. 그러나 무상의 용역제공계약관계의 성립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하고,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데(Cass. civ. 1re, 27 jan. 1993, Bull. civ. I, n° 42), 이러한 법리는 자발적인 조력관계에도 확대 적용되게 된다. 단,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조력을 받은 자의 책임이 경감된다거나(Cass. civ. 1re, 13 jan. 1998, Bull. civ. I, n° 15), 시의적절하지 않은 조력인 경우에는 조력 받은 자의 책임을 면책시키기도 한다(Cass. civ. 1re, 7 avril 1998, Bull. civ. I, n° 141). 그러나 타인에 대한 조력행위를 계약관계로 까지 승화하여 파악하기도 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는 조력행위에는 너무도 다양한 상황이 포섭될 수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조력행위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의 계약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이고도 허구적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타인에 대한 조력행위는 계약관계로 보면서, 호의동승은 계약관계로 보지 못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C.civ. Art.212** : Les époux se doivent mutuellement fidélité, secours, assistance.(민법전 제212조 : 부부는 상호간에 충실, 구조,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 ◇ Association 【단체계약, 비영리사단】

사전적 의미로는 협회나 연합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을 가진 자들 간의 결합, 통합, 결사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영속적인 단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association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라는 점에서 영리법인인 회사(société)와 구별되며, 용어상으로도 전자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sociétaire라고 표현하나 후자의 구성원은 associé이라고 표시된다. 한편, 비영리사단에 대하여는 1901년 7월 1일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데, 문화단체 또는 신도회(association culturelle)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1905년 12월 9일법이 이를 규율한다. 동법에 의하면, 성직자단체(congrégation religieuse)와 대별될 수 있는 문화단체 또는 신도회가 종래 성직자단체에서 소유하였던 교회재산의 이전주체로 되며 동시에 국가소유의 종교적 건조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구성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부담 내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동법의 시행 후 이러한 의미의 신도회를 구성하였으나, 카톨릭에서는 한동안 이를 거부하다가, 1924년부터 신도회와 유사한 단체인 association diocésaine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 관련용례로서 association en participation은 이전에는 익명조합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민법전 제1871조에서 이를 société en participa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사단은 association reconnue d'utilité publique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association syndicale de propriétaires fonciers는 토지개량조합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구성은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주도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익적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나 관할관청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기타 형법상의 용어로서 흉악범죄단(association de malfaiteurs)의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 ◇ Assurance 【보험】

본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에 의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피보험자(assuré)가 보험료(prime, cotisation)를 지불하고 위험(risque)의 실현시에 보험자(assureur)

또는 보험회사(société d'assurance)에 의하여 보험급부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계약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본인이 제 3자를 위하여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용례로는, 자동차보험(assurance automobile), 항공보험(assurance aérienne), 상해보험(assurance contre les accidents corporels), 산재보험(assurance contre les accidents du travail), 손해보험(assurance de dommages), 물건보험(assurance de choses), 인신보험(assurance de personnes), 중복보험(assurances cumulatives), 수해보험(assurance contre le dégât des eaux), 단체보험(assurance de groupe), 무한책임보험(assurance illimitée), 화재보험(assurance contre l'incendie), 질병보험(assurance contre la maladie), 육상보험(assurances terrestres), 해상보험(assurance maritime), 상호보험(assurances mutuelles), 책임보험(assurance de responsabilité), 화물운송보험(assurance transport), 도난보험(assurance contre le vol), 지참금보험(assurance dotale), 하천보험(assurance fluviale), 출생보험(assurance natalité), 혼인보험(assurance nuptialité), 기대이익보험(assurance du profit espéré), 임차인화재보험(assurance du risque locatif), 생명보험(assurance sur la vie) 등이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에는 사망보험(assurance en cas de décès), 생존보험(assurance en cas de vie) 및 혼합보험(assurance mixte)의 3유형이 있다.

다른 한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인 보증보험은 assurance caution 이라고 표현되며, assurance pour compte는 불특정의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채무자의 변제불능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보증은 assurance crédit라고 표현된다.

La seule constatation que l'agent général de la compagnie d'assurances a donné une réponse erroné à l'assuré qui lui demandait des précisions sur l'étendue de la garantie accordé pour le contrat, constitue un manquement à son obligation de renseignements et de conseil qui a engagé sa responsabilité.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의 구체적 담보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보험회사의 대리인 측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에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내지 조언의무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Cass. civ. 1re, 13 jan. 1987, Bull. civ. I, n° 9의 사례 참조).】

## ◇ Astreinte 【 이행강제금 】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1일, 1주 또는 1월의 지체단위에 대응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로서, 채권자가 현실적 이행을 원하며 그러한 채권자의 희망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러한 현실적 이행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로서, 1820년대에 들어 법원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아스트렌트 제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이후 학술상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아스트렌트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로써 이를 유지시켰고 따라서 1972년 7월 5일의 법 제626호에 의하여 민사상의 일반제도로서 정착하게 된다.

한편, 아스트렌트는 채권의 실현을 강제하는 수단의 하나이기는 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 그 자체의 강제집행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제도이며, 이러한 취지는 상기 1972년법(이후 1991년 7월 9일법에 의해 개정)의 관련규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동법 제 5 조에서는 “법원은 그 직권으로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스트렌트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6 조에서는 “아스트렌트는 손해배상과는 독립한 관계의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스트렌트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인적신뢰가 강하게 요구되는 계약관계에서도 아스트렌트의 적용이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계약관계가 아닌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스트렌트와 관련하여 ‘합의에 의한 아스트렌트’(astreinte conventionnell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이는 아스트렌트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단순한 위약벌(*clause pénale moratoire*)에 불과하며, 아스트렌트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Cass. civ. 1re, 9 mars 1977, Bull. civ. I, n° 126).

다른 한편, 아스트렌트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가 ‘잠정적 아스트렌트’(astreinte provisoire)이고, 다른 하나가 ‘종국적 아스트렌트’(astreinte définitive)이다. 전자가 아스트렌트의 제도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아스트렌트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그것이 종국적인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잠정적인 아스트렌트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는 법원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후에 아스트렌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채무자가 집요하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거나 성실히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아스트렌트의 감액 내지는 소멸을 법원이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중국적 아스트렌트는 연혁적으로는 잠정적 아스트렌트를 보충하기 위하여 생성된 제도인데, 중국적 아스트렌트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법원도 더 이상 그 범위를 증감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적 아스트렌트에는 위혁적 요소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중국적 아스트렌트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자신의 과책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나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아스트렌트의 감액이 허용된다.

les astreintes sont indépendantes des dommages et intérêts et constituent un moyen de coercition que les tribunaux peuvent ordonner d'office sans être tenus d'en motiver le prononcé. 【아스트렌트는 손해배상과는 독립적인 제도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채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며, 이를 명함에 있어 그 이유를 실시할 필요도 없다(Cass. civ. 3e, 23 oct. 1974, Bull. civ. III, n° 376 참조).】

#### ◇ Atténuation de la peine 【형의 감경】

범해진 범죄사실로부터 정상적으로 가해지는 형과 비교하여 개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을 감경하는 것. 형의 감경은 법률에 기인(감경의 법정 사유)또는 유죄의 판결에 기인(형의면제)하거나 형의 집행을 맡은 기관으로부터 기인하며 형량(금고기간 또는 벌금액의 축소) 또는 형의 종류(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대체)를 변경한다.

Réclusion criminelle,  Emprisonnement

#### ◇ Audition 【심문(審問), 진술청취】

예비수사, 현행범수사, 예심 또는 공판 중에 법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직접 진술, 의견 또는 설명을 청취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경찰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사람, 즉 고소인, 참고인 및 용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전 제6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에 의해 진술조서(procès-verbal d'audition)로 작성된다.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출

석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소송단계에 따라 다른 규율이 적용된다. 경찰조사와 예심단계에서는 직권주의의 형태에 가까우며 공판단계에서는 구술주의, 공개주의, 대심주의(contradictoire) 등 당사자주의에 가깝다.

**CPP Art.62** :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ne peuvent être retenues qu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eur audition.(**형사소송법전 제62조** :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 또는 압류된 물건과 서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법경찰관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제61조에 열거된 사람들을 강제출석하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또한 지방법원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출석하게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자는 심문에 엄격히 필요한 시간동안만 인치할 수 있다.)

Témoin,   Partie civile,   Contradictoire

### ◇ Auteur 【 행위자, 본인 】

우선,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권리의무자를 가리키는데,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유증에 있어서의 유증인이 이에 해당한다. 대리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을 의미한다. 아울러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 용례로서 ‘친자관계의 인지자’(auteur d'une reconnaissance de paternité), ‘채무자’(auteur d'une dette)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창작자나 저자 또는 저작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contrat à compte d'auteur’라는 표현은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출판이나 복제 및 판매 등을 위탁하는 저작권계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droit d'auteur라는 표현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지적, 정신적 창작인 문학, 음악, 조형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 이외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이러한 저작권은 다시 한편으로는 비재산적인 인격권의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이용에 수반하는 재산권의 측면에서 보호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에서의 보호와 관련하여, 창작자에게 “그의 성명이나 자격 및 저작

물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지적재산권법』 L.121-1),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공표권(droit de divulgation)(『지적재산권법』 L.121-2) 그리고 저작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갖는 저작권자의 “수정권 및 철회권”(droits de repentir et de retrait)에 대하여 규정(『지적재산권법』 L.121-4)하고 있다.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복제권(droit de reproduction), 상연권(droit de représentation) 및 사용료징수권(droit de participation au profit de vente)을 들 수 있다(각각, 『지적재산권법』 L.122-3, L.122-2, L.122-8). 끝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생존 및 사후의 권리승계인에 대하여 70년간이다(『지적재산권법』 L.123-1).

### ◇ Autonomie de la volonté 【사적자치, 의사자치】

채권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본질적 요소이며, 특히 계약상의 의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다는 원칙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민법전 제 6 조), 계약당사자는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적법하게 형성된 합의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법률을 대신한다고 하는 민법전 제1134조의 규정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즉, 자유로운 계약체결을 통하여 다양한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부간의 균형이 현저하게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법리의 엄격한 적용에 수정이 가하여져야 한다거나, 계약자유가 일반적 이익에 합치된다고 주장하는 고전적 이론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이익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사적자치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부가됨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들로는, 계약체결의 자유 그 자체에 대한 제약, 합의의 하자이론의 변용, 계약원인론의 변용 및 계약의 구속력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Liberté contractuelle et consensualisme sont l'un et l'autre en relations avec l'autonomie de la volonté, principe philosophique selon lequel la volonté humaine constituerait à elle-même sa propre loi.(계약자유와 낙성주의의 원칙은 인간의 의사 자체가 법을 형성한다는 철학적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상호 관련성이 있다.)

### ◇ Auto-protection 【자구(自救)】

국제법상 자구(自救)라 함은 국가가 극한 상황에 처하여 스스로의 생존 등 근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위권 행사 등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취해질 수도 있으나, 국제의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취해지기도 한다. 오늘날 국가가 스스로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타국에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필요성』(nécessité)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의무에 반하는 조치가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던 절박한 경우여야 한다.

### ◇ Autorité de la chose jugée 【기판력, 기결력】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의미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기판력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정소송의 취소판결의 효력은 ①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형성력 ②행정청에 대한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내지 재(再)처분의무를 포괄하는 기속력 ③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기판력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월권소송의 취소판결은 절대적 기판력(autorité absolu de la chose jugée)를 가진다고 설명되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대세효(l'effet erga omnes)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물론 법원, 개인에 의해 다투어질 수 없으며 준수가 강제된다. 그렇지만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효력만 가질 뿐이다.

### ◇ Aveu 【자백】

일반적 의미는 소송인에 의해 자신에 대해 주장된 사실의 정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증거방법이 된다. 형사법적인 의미는 범죄의 용의자 또는 피의자(피고인)가 자신에게 비난되는(reproché) 범죄사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정확성을 경찰 또

는 사법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심증형성의 한 요소로서 판사의 자유로운 평가에 맡겨지며 판사는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회된 자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지된 자백을 배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백이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자백의 일부분만을 취할 수 있다.

**CPP Art.428** : L'aveu, comme tout élément de preuve, est laissé à la libre appréciation des juges. (형사소송법전 제428조 : 자백은 증거의 모든 수단(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판사의 자유로운 평가에 맡겨진다.)

Preuve,  Audition,  Interrogatoire

### ◇ Avis consultatif 【 권고적 의견 】

권고적 의견이라 함은 국제사법재판소(CIJ)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의견을 말한다. UN의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자격이 부여된 UN의 기타 기관들과 전문기구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UN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여하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재판소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타의 기관들은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 ◇ Ayant cause à titre particulier 【 특정승계인 】

권리의 승계시 前主(auteu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종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ayant cause(승계인)라고 표현하며, 때로는 ayant droit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ayant cause à titre particulier)과 포괄승계인( ayant cause à titre universel)이 있다. 이들 중 특정승계인이라 함은,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한 권리를 생존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특정명의를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한편, 특정승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나 유증이 있게 되면, 그 이전에 종전의 권리자가 당해 목적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계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즉, 종전권리자가 특정승계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채권이 특정승계되는 권리의 직접적인 부종물을 구

성하게 되면, 특정승계인은 그 채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종전의 권리자가 부동산의 이익을 위하여 용익권을 설정한 경우 위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은 용익권을 향유하게 된다. 아울러,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위하여 설정된 담보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민법전 제1692조, 2112조 참조).

반면, 종전권리자가 특정승계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채무는 특정승계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법정의 예외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전 제1743조의 규정을 들 수 있는데, 동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공정증서에 의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정액토지임차인(fermier), 분익토지임차인(colon partiaire)에 대하여는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서 이의를 유보한 경우, 매수인은 농업용이 아닌 재산의 임차인에 대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f., C.civ. Art.1122 :** On est censé avoir stipulé pour soi et pour ses héritier et ayants cause (à titre particulier), à moins que le contraire ne sont exprimé ou ne résulte de la nature de la convention.(민법전 제1122조 변형 : 반대의 의사표시가 명시되거나 합의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약정은 자기 자신과 그의 상속인 및 (특정)승계인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Ayant cause à titre universel 【포괄승계인】

권리의무의 승계인 중에서 포괄승계인이라 함은, 종전권리자(auteur)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를 말한다. 즉, 상속인(héritiers), 포괄수유자 또는 포괄적 명의수유자(légataires universels ou à titre universel), 계약상의 상속인설정(institution contractuelle)에 있어서의 피설정자(institué)가 이에 해당한다. 포괄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종전권리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는 있는데, 우선 종전권리자가 체결한 약정 또는 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특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인적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위임 또는 고용)에 있어서 그러하며, 다음으로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는 계약의 효력을 배제시키기로 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예컨대 계약이 종전권리자의 생존중에 한하여, 그리고 종전권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B ]

### ◇ Baie 【 만(灣) 】

만이라 함은 육지 쪽으로 침투되어 육지 영토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해양법협약은 제10조에서 ‘만’을 정의하기를 “그 침투된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을 형성하는 오목한 지형을 말한다”고 한다. 만의 양 입구의 저조점 간의 거리가 24해리 미만인 경우, 그 두 지점 간에 폐쇄선을 그을 수 있으며, 그 육지측 수역은 내수로 인정된다. 만일, 만의 양 입구 간의 거리가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 최대의 수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만의 안쪽에 24해리의 직선기선을 그을 수 있다(협약 제10조).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10, par.2** : Aux fins de la Convention, on entend par ‘baie’ une échancrure bien marquée dont la pénétration dans les terres par rapport à sa largeur à l'ouverture est telle que les eaux qu'elle renferme sont cernées par la côte et qu'elle constitue plus qu'une simple inflexion de la côte.(해양법협약 제10조 제 2 항 : 본 협약의 목적상 ‘만’이라 함은 그 굴곡된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灣入)을 말한다.)

### ◇ Baie historique 【 역사적 만(歷史的 灣) 】

육지 측으로 침투되었으나 너무나도 광활하여 해양법협약상의 만을 구성할 수 없으나, 연안국이 장기간 동안 사용하여 옴으로써 그 국가의 내수와 같이 인정되어 온 수역을 말한다. 어떠한 특정 수역이 역사적 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분명한 법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국간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편, 해양법협약 제10조는 만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는 역사적 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10, par.6** : Les dispositions précédentes ne s'appliquent pas aux baies 'historiques'.(해양법협약 제10조 제 6 항 : 전항의 규정들은 역사적 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Bail 【 임대차 】

임대차계약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louage des choses(물건의 임약 또는 임대차)라는 표현과 혼용되기도 한다. 민법전 제170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는 대주(bailleur)가 차주(preneur)로부터 일정한 차임(loyer)을 받으면서, 그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전 제170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약(contrat de louage)의 일 유형인데, 특히, 건물 또는 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bail à loyer라고 부른다.

관련 용례로는 가축임대차(bail à cheptel), 건축용지임대차(bail à construction), 해제권유보농지임대차(bail à covenant), 부동산정기금계약(bail à rente), 상사임대차(bail comercial)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건축용지임대차는 건물과 부동산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물건축을 위하여 18년 내지 99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으로서, 이 경우의 임차권은 물권으로서 그 양도가 가능하고, 저당권의 설정이나 회사설립시의 출자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한편, 해제권유보농지임대차는 건물과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차인이 가지나, 토지소유자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정기금계약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액의 정기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현행민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는 환매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전 제530조).

**Cf., C.civ. Art.1711 :** On appelle bail à loyer, le louage des maisons et celui des meubles; Bail à ferme, celui des héritages ruraux; Bail à cheptel, celui des animaux dont le profit se partage entre le propriétaire et celui à qui il les confie.(민법전 제1711조 참조 : 일반임대차(bail à loyer)는 가옥 및 동산에 대한 임약 또는 임대차이며, 정액토지임대차(Bail à ferme)는 경작농지에 대한 임약 또는 임대차이며, 가축임대차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가축을 수탁받은 자가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는 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다.)

## ◇ Bénéfice 【 특권, 이익 】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유리한 상황이나 특별한 보호 또는 특권

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는 모든 혼인외의 자에게는 준정(의 이익)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는 민법전 제329조의 규정이나,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유예기간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관련 용례로는, 재산양도의 이익(bénéfice de cession de biens), 검색의 항변권(bénéfice de discussion), 분별의 이익(bénéfice de division), 한정승인(bénéfice d'inventaire), 부부공동재산제에 있어서의 배분 재산의 이익(bénéfice d'émoulement) 등이 있다. 다른 한편, 상법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익(bénéfice)이라는 개념은, 기업 활동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자산의 증가분으로서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적 효용과 같은 것도 포함되지만,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소를 억제한다는 의미에서의 절약(économie)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관련 용례로서, 총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bénéfices bruts, bénéfices nets로 표현된다.

**C.civ. Art.1832** : La société est instituée par deux ou plusieurs personnes qui conviennent par un contrat d'affecter à une entreprise commune des biens ou leur industrie en vue de partager le bénéfice ou de profiter de l'économie qui pourra en résulter.(민법전 제1832조 : 사단체는 2인 또는 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 또는 노무를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또는 비용절감을 함께 분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 ◇ Bicamérisme 【 양원제 】

의회가 두 개의 의원(議院)으로 구성되는 제도이다. 의회를 하나의 의원(議院)으로 구성하는 것을 단원제(monocamérisme)라 한다. 현재 프랑스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와 상원(Sénat)으로 구성하고 있다. 헌정사를 통하여 볼 때 1789년 혁명을 통하여 근대 입헌주의국가를 건설한 프랑스는 처음에는 단원제를 채택하였었다. 그러나 1795년 8월 헌법이 처음으로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며, 그 후 잠깐의 단원제를 채택한 것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회 의원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상원 의원은 국민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국민의회와 상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지위를 볼 때 상원에 비하여 국민의회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 Bien 【 재산 】

일반적으로 각종의 재산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인간에게 일정한 효용성을 제공하면서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 채권, 지역권, 용익권 등과 같이 ‘어떤 자의 총재산’(patrimoine)을 구성하는 물건이나 가치 또는 권리에 대한 총칭이다. 그러나 협의로는 소유나 점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유체재산(bien corporel)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재산의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는 그 가치나 안정성 또는 정치적 중요성 등이 제시될 수도 있다. 관련 용례로는, 법률행위가 있는 이후 장래에 취득하게 될 재산이라는 의미에서의 ‘장래취득재산’(biens à venir), 부부공동재산제에서의 ‘공동재산’(biens communs), 가족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의미에서의 ‘가족재산’(biens de famille), 법인재산(biens de main morte), 공공재산(biens domaniaux), 가자제(嫁資制, régime dotal)하에서의 가자(嫁資, biens dotaux), 불가분재산(biens indivis), 무체재산(biens incorporels), 압류금지재산(biens insaisissables), 고유재산(biens propres), 처의 유보재산(biens réservés), 점유이탈물(biens vacants) 등이 있다.

**C.civ. Art.1402, al.1** : Tout bien, meuble ou immeuble, est réputé acquêt de communauté si l'on ne prouve qu'il est propre à l'un des époux par application d'une disposition de la loi.(민법전 제1402조 제1항 : 모든 재산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 ◇ Blanco 【 블랑꼬판결 】

공공서비스의 실행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발생을 국가배상으로 인정한 오늘날 국가배상의 효시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프랑스 관할법원의 1873년 2월 8일 판결을 말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Agnès Blanco라는 소녀가 당시 정부가 운영하는 담배제조회사의 마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소녀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사법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의 1심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의 역할을 수행한 Conseil préfecture의 프레페는 소녀의 부모가 제소한 민사소송에 대해 관할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관할법원은 프레페의

관할분쟁 아레테를 받아들여 공역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이 행정법원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당시 논고담당관(David)은 사법법원은 그 소송물이 어떠한 것이라도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행정주체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량꼬 판결을 통해 공공서비스는 행정재판의 관할권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 Blanco 판결이 있는 후 곧바로 평석을 통해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동 판결이 있기 전에도 Conseil d'Etat의 일부의 행정판례에서도 이미 국가의 무책임에 대한 취소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공공서비스를 언급한 것은 불량꼬 판결에서 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동 판결을 국가배상의 효시라고 평가한다.

### ◇ Bloc de constitutionnalité 【 합헌성 블록 】

합헌성 블록이란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 헌법이 조문으로 된 성문법전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전문이 존중하고 있는 규범, 예를 들면 1789년 인권선언이라든가 혹은 1946년 헌법전문 또는 공화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근본규범 등도 헌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성문헌법뿐만이 아니라 성문헌법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도 위헌심사의 판단기준 규범이 된다는 것이다. 합헌성 블록이란 표현은 197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개념으로 법률용어는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이다. 합헌성 블록이란 용어는 맨 처음에 Emeri와 Seurin이 사용한 용어인데(EMERI Claude et SEURIN Jean-Louis, Chronique constitutionnelle et parlementaire française, R.D.P., Paris, 1970, p.678 et s.), 그 후 Favoreu가 발전시켜서 일반화시켰다(FAVOREU Louis, Le principe de constitutionnalité; essai de définition d'aprè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in Mélanges Charles EISENMANN - Recueil d'études en hommage à Charles EISENMANN, Edition Cujas, Paris, 1974, p.33 et s.).

### ◇ Bonne foi 【 선의, 신의칙 】

선의, 부지, 오신(誤信) 또는 신의칙 등의 상당히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우선, 민법전 제1134조 제1항에서는 적법하게 형성된 합의가 당사자 간에는 법률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합의는 bonne foi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선의로”라는 의미도 존재할 수 있으나, “신의칙에 좇아 성실히”로 이해함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반면, 민법전 제549조에서는 “단순점유자는 그가 *bonne foi*로써 점유한 경우에 한하여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의”로 이해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한편, *bonne foi*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우선 *mauvaise foi*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고의 또는 악의를 의미함이 일반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좇지 않았음을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다른 반대개념으로는 *dol*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고의 또는 사취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bonne foi*는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부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의나 사취의 의도가 없는 태도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요컨대, *bonne foi*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언어의 일정한 외관을 믿는 자의 내면세계에서 성립되는 정당한 믿음(*croyance légitime*)”인 선의라는 의미로써 주로 물권법에서의 선의의 점유 등에서 잘 표현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충실 내지는 성실”의 개념을 포섭하는 신의칙을 의미하는 경우로서 민법전 제1134조 제 3 항의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을 해할 의사로써 행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균적인 주의나 성실 및 신의를 가진 자의 선한 행위규범에 비추어 유책한 행위여도 무방하며, 때로는 형평의 영역에서 신의칙위반이 판단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C.civ. Art.1240** : Le paiement fait de bonne foi à celui qui est en possession de la créance est valable, encore que le possesseur en soit par la suite évincé.(민법전 제1240조 : 채권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의로 행한 변제는 준점유자가 그 후 채권을 추탈당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Cf., C.civ. Art.1134, al.3** : Les contrats doivent être exécutés de bonne foi(민법전 제1134조 제 3 항 참조 : 계약은 신의칙에 좇아 이행되어야 한다.)

### ◇ **Bonnes moeurs**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은 공중도덕에 적합한 생활태도나 품행, 또는 일정한 사회윤리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량한 풍속이 특정 사회에서 특정 시점에 실현되고 있는 풍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선량한 풍속은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반이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나 제도에 대한 침해

를 초래할 수 있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량한 풍속은 공공질서와 함께 행위의 기본적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경되며, 주로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다.

**C.civ. Art.6** : On ne peut déroger, par des conventions particulières, aux lois qui intéressent l'ordre public et les bonnes moeurs.(**민법전 제 6 조** : 누구도 개별약정에 의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관한 법률을 배제할 수 없다.)

### ◇ **Bons offices** 【 주선(周旋) 】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이는 제 3자가 나서서 분쟁 당사국들 간에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회의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교섭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관계국간에 분쟁이 극도로 악화되어 직접 교섭 자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이 경우, 주선에 나서는 제 3자는 교섭의 편의만을 제공할 뿐 분쟁의 해결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섭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분쟁해결의 실질적 조건까지도 제시하는 중개(Médiation)와 구별된다. 주선은 제 3국의 고위 공직자 또는 기타 영향력과 명망을 가진 인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 **Brevet d'invention** 【 특허권 】

“Brevet”라는 용어는 증명서, 증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용례로는 직업훈련수료증명서(brevet d'apprentissage), 초등교육수료자격증서(brevet de capacité de l'enseignement primaire), 선장면허증(brevet de capitaine), 조종사자격증(brevet de pilote) 등이 있다. 그러나 “brevet”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brevet d'invention”을 지칭함이 일반적이며, “brevet d'invention”은 발명자가 한국에서의 특허청에 비교될 수 있는 산업재산권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에 특허출원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인정되는 특허권 또는 특허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허권자 또는 특허증의 소유자는 breveté라고 표시된다. 아울러, 특허권은 대표적

인 지적재산권의 하나인데, 이를 저작권과 준별하여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의 일 유형으로 분류함이 일반적이다. 한편, 한국법에서와는 달리 실용신안과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비록 상업적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한 특허라 하더라도, 특허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Loi de brevets coréenne Art.29, al.1** : Les inventions susceptibles d'une application industrielle peuvent faire l'objet du brevet d'invention, exception faite de celles qui sont prévues dans les numéros suivants.(한국특허법 제29조 제 1 항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C ]

## ◇ Caducité 【 실효 】

최초의 행위당시에는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차후의 보충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가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유증으로 인한 수익자(수유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유증은 실효한다든가(민법전 제1039조 참조), 유언자의 생존 중에 유증의 목적물이 전부멸실된 경우 유증이 실효로 된다는(민법전 제1042조 제 1 항 참조),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었으며, 비록 그것이 수유자의 수중에 있었다라도 멸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상속인이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유증은 실효한 것으로 되는 것(민법전 제1042조 제 2 항 참조), 혼인을 위하여 증여를 하였으나 혼인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의 증여의 실효(민법전 제1088조 참조) 등이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실효하게(caduc)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caducité 또는 그 형용사형인 caduc(uque)은 어떤 사실 상태나 법적상황과 관련된 법률이 그 전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나 상태의 소멸로 인하여 암묵적이기는 하나 필연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caducité 와 annulation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위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도 있으나,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어떤 행위의 유효성을 해치는 원천적 하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유효성을 저지하는 추후의 결함(carence)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déchéance(失權)나 forclusion(失權)은 권리의 소멸과 관련된 것이나, caducité는 단지 어떤 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이다.

**C.civ. Art.1040** : Toute disposition testamentaire faite sous une condition dépendante d'un événement incertain, et telle que, dans l'intention du testateur, cette disposition ne doit être exécutée qu'autant que l'événement arrivera ou n'arrivera pas, sera caduque, si l'héritier institué ou le légataire décède avant l'accomplissement de la condition.(민법전 제 1040조 : 어떤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또는 불발생을 조건으로 한 유언에 의한 처분(행위)은 지정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그 조건의 성취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실효하게 된다.)

## ◇ Capacité 【 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모든 자연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모두 인정되며, 법인은 그 성질이나 목적 및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능력들이 인정된다. 관련 용례로는 권리능력(capacité de jouissance), 소송능력(capacité d'ester en justice), 행위능력(capacité d'exercice), 한정능력(capacité partielle) 등이 있다. 우선, 권리능력은 소유자, 채권자, 채무자 등과 같이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연인(personne physique)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특별히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법인격의 상실과 1854년 5월 31일 법에 의하여 폐지된 제도인 民事死(mort civile)가 있다. 소송능력은 소송을 통하여 다투거나, 소송상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 등을 말하며, 행위능력은 제 3 자에 의한 조력 없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정능력 또는 부분능력이라 함은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예컨대 미성년자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외의 자”(enfant naturel)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예로 들 수 있다.

La capacité est l'aptitude à faire des actes juridiques valables, tandis que le pouvoir est l'aptitude à engager des biens par ses actes. 【(행위)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지만, 권한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재산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 ◇ Capital 【 원본, 자본 】

민사법분야에서는 우선, 금전채권에 있어서의 이자(intérêts)를 발생시키는 원본 또는 원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capitalis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어떤 자에게 속하는 재산이나 자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과실이나 산출물을 발생시키는 재산 내지 자산의 총체를 의미함이 보다 보편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소득 등과 같은 수입이나 수익(revenus)을 제외한 재산의 총체로서, 보석이나 무이자부채권(créances non productives d'intérêts) 또는 경작되지 않는 유향지(terres incultes)와 같이 산출물이 없는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capital은 상법이나 세법상의 용례로는 자본 또는 자본금을 의미하기도 하며, “impôt en capital”과 “impôt sur le capital”은 각각 자본이나 재산 자체에 대한 감가를 고려한 재산세 그리고 이러한 감가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세를 의미한다. 아울러, 보험법상의 관련 용례로서 “capital assuré”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C.civ. Art.275-1, al.1** : Lorsque le débiteur n'est pas en mesure de verser le capita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275, le juge fixe les modalités de paiement du capital, dans la limite de huit années, sous forme de versements mensuels ou annuels indexés selon les règles applicables aux pensions alimentaires.(민법전 제275-1조 제1항 : 채무자가 제275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원분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분의 지급방법을 정하며, 이 경우 부양정기금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연동될 수 있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지급(방식)의 형식을 취하나, 그 기간은 8년을 한도로 한다.)

### ◇ Cas fortuit 【 우연한 사건, 사고 】

불가항력(□□ (cas de) force majeure)과 유사하게 개념 정의되는 “우연한 사건 또는 우연한 사고”(cas fortuit)는 민사책임의 면책사유인 외적 원인(cause étrangère)의 구체적 유형으로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불가항력은 예견불가능하고, 저항불가능한 외부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이해됨이 보편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은 사태의 기원에 대한 예견불가능성이 그 특징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편, 양자의 구별을 위하여 사건이나 사고의 극복불가능성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에 의하면, 양자는 구별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책사유로서의 우연한 사건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도 그러한 사건이 책임의 주체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non imputable), 회피불가능(inévitable)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견가능성도 없었어야 하며(imprévisible),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등이 극복불가능(insurmontable)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irrésistible) 것이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우연한 사건의 효과로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관계에서 해방되며,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민법전 제1148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가 우연한 사건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자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든가(민법전 제1772조 참조), 채무자가 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면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민법전 제1138조 제 2 항, 민법전 제1302조 제 2 항 참조).

**C.civ. Art.1302, al.2** : Lors même que le débiteur est en demeure, et s'il ne s'est pas chargé des cas fortuits, l'obligation est éteinte dans le cas où la chose fût également périée chez le créancier si elle lui eût été livrée.(민법전 제1302조 제 2 항 : 채무자가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목적물이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가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채무(의무)는 소멸한다.)

**C.civ. Art.1772** : Le preneur peut être chargé des cas fortuits par une stipulation expresse.(민법전 제1772조 : 임차인은 명시적 특약에 의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정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 ◇ Cas 【사건, 사태, 사례】

우선, 어떤 사건이나 사태 또는 사고를 의미하며, 어원적으로는 라틴어의 casus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관련 용례로서 cas de force majeure(불가항력), cas fortuit(우연한 사건) 등이 사건이나 사태의 의미로 사용될 때 자주 이용되는 표현이다. 특히, 이들 두 표현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주로 민사책임의 면책사유인 외(부)적 원인(요인)(cause étrangère)의 구체적 유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면책사유들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태와 유사한 상황을 지칭하는 관련 용례로서 casus belli가 있는데, 그 문언적 의미는 전쟁상태를 가리키나, 오늘날에는 특히 어떤 국가의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면서, 적정한 피해의 회복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 국가의 무력행사가 정당시 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cas는 단순히 어떠한 경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특히 le cas échéant이라고 표현될 때에는 “필요한 경우” 또는 “만일의 경우”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울러 어떠한 사례나 사유(특히,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관련 용례로서 상고사유(cas d'ouverture du pourvoi en cassation: 新民

事訴訟法典 제605조 이하 참조), 친자관계확인허용사유(cas de recherche de paternité naturelle: 민법전 제340조 이하 참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송절차상 법원에 위임된 사건(espèce)이나 소송(procès)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 사정이나 상황(cas personnel)을 지칭하기도 한다.

**C.civ. Art.1324 :** Dans le cas où la partie déavoue son écriture ou sa signature, et dans le cas où ses héritiers ou ayants cause déclarent ne les point connaître, la vérification en est ordonnée en justice.(민법전 제1324조 : 당사자가 증서의 내용 또는 서명을 부인하는 경우라든가, 증서작성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증서의 내용 또는 서명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실조사를 명한다.)

### ◇ Casier judiciaire 【범죄경력서, 범죄기록보관소】

낭트에 위치한 법무부산하의 범죄기록보관소에 취합된 범죄경력서로서 일반범죄경력서와 특수범죄경력서로 구분된다. 일반범죄경력서의 정보는 뷔텡(bulletin)이라는 증명서의 형태로 조회된다. 통상 범죄경력서(casier judiciaire ordinaire)에 포함되는 유죄선고의 종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전 제7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중죄, 경죄 및 위경죄 제 5 급에 해당하는 유죄선고를 포함하고 있다. 뷔텡 제 1 호는 전체의 유죄선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에게만 교부될 수 있다. 뷔텡 제 2 호는 대부분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정한 행정청에 교부된다. 뷔텡 제 3 호는 중죄 및 경죄 중에서 중한 선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교부된다. 특수범죄경력서는 도로교통관련 또는 음주관련 위경죄에 관한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립범죄기록전산보관소(Cas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에 있다.

### ◇ Causalité 【인과관계】

민사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민법상으로는 민법전 제1151조의 규정이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해됨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의 영역에서는 채무불이행과 확정된 손해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준용규정은 없으나

동조의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한편, 직접성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 평가나 과실의 중대성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판례상으로도 명확한 판단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학설상으로는 인과관계의 인정과 관련하여 조건설(théorie de l'équivalence des conditions)과 상당인과관계설(théorie de la causalité adéquate)이 주장되고 있는데, 전자는 모든 원인이 손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 조건이 되면 족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손해발생의 여러 선행사실 중에서 통상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과 특별하고 예외적인 원인을 준별하여 통상적인 것만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이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구체적 사례로는, 신축건물상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료수입이 감소하거나 불필요한 임차료가 지급된 경우, 영업이익의 손실이 생긴 경우, 하자로 인한 건물붕괴와 기타의 재산상의 손실 및 애정손해를 포함한 기타의 정신적 손해 등을 들 수 있다.

**Cf., Cass. civ.2, 27 oct. 1975, Gaz. Pal., 1976, I, 169** : La responsabilité prévue par l'article 1382 suppose un rapport de causalité certain entre la faute et le dommage.(**Cour de cassation 1975년 10월 27일 판결 참조** : 13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 발생)은 손해와 과책간에 확고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Cf., Cour d'appel de Versaille, 30 mars 1989, J.C.P., 1990, II, 21505** : La responsabilité civile s'encourt dès que le dommage allégué se trouve lié à la faute établie par un rapport de causalité adéquate.(**베르사이유 항소법원 1989년 3월 30일 판결 참조** : 민사 책임은 과책과 손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 ◇ Cause étrangère 【외(부)적 원인, 요인】

민사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 손해와 가해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원고인 피해자측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한편, 피고인 가해자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손해의 발생이 누구에게도 귀책시킬 수 없는 외래의(외부적) 원인에 기인하였음을 반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계약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전 제1147조에서 이러한 외부적 원인에 의한 면책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명문의 관련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판

례와 학설상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한편, 이러한 면책사유로서의 외부적 원인의 구체적 예로는, 우연한 사건(cas fortuit)이나 불가항력(force majeure), 피해자의 과책 그리고 제 3 자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외부적 원인에 의한 면책의 문제는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인 민법전 제1384조 제 1 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갖는다.

다른 한편, 외부적 원인이 손해발생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경우와, 외부적 원인이 가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법률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이든, 피해자의 과책이든, 제 3 자의 행위이든 간에 피고는 완전히 면책된다. 반면, 피고인 가해자의 과책과 외부적 원인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불가항력은 피고의 과책과 공존할 수 있는데, 예컨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이 태풍으로 멸실되어 인접지에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이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되나 그 책임은 일정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의 과책과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책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배분 즉,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가해자와 제 3 자의 행위가 우연적으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양자 모두 손해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때의 손해배상의무는 한국법에서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비유될 수 있는 전부의무(obligation in solidum)이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과책의 정도에 따라 다른 전부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C.civ. Art.1147 :** Le débiteur est condamné, s'il y a lieu, au paiement de dommages et intérêts, soit à raison de l'inexécution de l'obligation, soit à raison du retard dans l'exécution, toutes les fois qu'il ne justifie pas que l'inexécution provient d'une cause étrangère qui ne peut lui être imputée, encore qu'il n'y ait aucune mauvaise foi de sa part.(민법전 제1147조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비록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의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Cause 【 원인 】

원인(source, origine), 근거(fondement), 이유(raison), 동기(motif), 목적(mobile)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즉, 단순히 결과로서의 어떤 사실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민법전 제138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해자에게 귀책시킬 수 있는 과책이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la faute imputable à l'auteur cause d'un dommage)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경우가 그러하다. cause가 원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의 관련용례로는 원인의 흠결(absence de cause) 또는 민사책임의 면책사유를 의미하는 외(부)적 원인(요인)(□□ cause étrangère) 등이 있다. 한편, cause가 근거, 사유 또는 이유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과 관련하여 법이 그러한 효과를 인정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일정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정당화사유인 법적 근거(cause juridique)라는 용례로 사용될 경우가 그러하다. 구체적인 예로는 일정한 행위의 무효근거(cause de nullité d'un acte), 시효중단의 근거(cause d'interruption de la prescription), 면책사유 또는 근거(cause d'irresponsabilité), 이혼사유(cause de divorce)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cause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목적, 이익, 사정 또는 동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어떤 행위의 적법성이나 도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행위자의 행위목적(행위목적)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으며, 예컨대 특정인은 주거를 목적으로, 또 다른 특정인은 임대를 위하여 또는 전매차익을 위하여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는 경우들에 있어서의 각 개인의 목적(mobile individuel)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목적 내지 사정을 특정된 충동적 목적(cause impulsive et déterminé) 또는 순전히 주관적인 구체적 이익(cause concrète purement subjective)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일정한 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목적 또는 원인(cause)이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목적이나 행위로 인한 이익 등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되게 되는데, 예컨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의 취득이 목적이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수령이 목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목적은 추상적, 객관적 목적(cause abstraite, objective)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C.civ. Art.1113** : La violence est une cause de nullité du contrat, non seulement lorsqu'elle a été sur la partie contractante, mais encore lorsqu'elle l'a été sur son époux ou sur son épouse, sur ses descendants ou ses ascendants.(민법전 제1113조 : 강박은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존속 또는 비속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무효원인이 된다.)

**C.civ. Art.1133** : La cause est illicite, quand elle est prohibé par la loi, quand elle est contraire aux bonnes moeurs ou à l'ordre public.(민법전 제1133조 : 원인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것으로 한다.)

### ◇ Caution 【 보증인, 담보 】

보증인은 주채무자(débiteur principal)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와 동일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지칭한다(민법전 제2011조 참조). 한편, 보증채무의 보충성으로 인하여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검색의 항변권(bénéfice de discussion)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공동)채무자(codébiteur solidaire)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민법전 제60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용익권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이나 판결(신민사송법전 제517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담보제공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의하여 보증인이 되는 자를 법정보증인(caution légale ou judiciaire)이라고 칭한다. 관련 용례로서, 우선 공동보증인(caution conjointe)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상에 동산질권이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의 설정을 승낙한 보증인을 물상보증인(caution réelle)이라고 하며,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자와 같은 지위에 서게 되는 자를 연대보증인(caution solidaire)이라고 한다. 한편, caution은 보증인을 지칭함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이나 담보(민법전 제807조 참조) 또는 보증금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용익권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용익권자에게 유용한 동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를 선서보증(caution juratoire)이라고 한다(민법전 제603조 참조).

**C.civ. Art.2011** : Celui qui se rend caution d'une obligation, se soumet envers le créancier à satisfaire à cette obligation, si le débiteur n'y satisfait pas lui-même.(민법전 제2011조 : 어떤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자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C.civ. Art.604** : Le retard de donner caution ne prive pas l'usufruitier des fruits auxquels il peut avoir droit; ils lui sont dus du moment où l'usufruitier a été ouvert.(민법전 제604조 : 용익권자가 담보제공을 지체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

지 않으며, 과실은 용익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용익권자에게 속한다.)

### ◇ Cautionnement 【보증(계약), 보증채무, 보증금】

Cautionnement의 개념은 우선, 인적 담보(sûreté personnelle)의 전형인 보증채무의 발생원인으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 또는 보증을 의미한다(민법전 제 2011조 참조). 다른 한편, 물적 담보(sûreté réelle)로서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또는 기타의 유가물을 가리키기도 하며,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선거에 있어서의 공탁금(cautionnement électoral)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자공탁금(cautionnement des ouvriers et employés)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C.civ. Art.2013 :** Le cautionnement ne peut excéder ce qui est dû par le débiteur, ni être contracté sous des conditions plus onéreuses. Il peut être contracté pour une partie de la dette seulement, et sous des conditions moins onéreuses. Le cautionnement qui excède la dette, ou qui est contracté sous des conditions plus onéreuses, n'est point nul: il est seulement réductible à la mesure de l'obligation principale.(민법전 제2013조 : 보증(계약)은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을 초과하거나, 더 무거운 조건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지 못한다.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일부분(에 대한 이행담보)만을 목적으로 체결되거나 (주채무보다) 경감된 조건으로 체결될 수 있다. 주채무를 초과하거나 더 무거운 조건으로 체결된 보증계약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채무를 한도로 (그 책임범위가) 감축될 뿐이다.)

### ◇ Centralisation 【집권】

집권은 행정조직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분권(décentralisation)과 대비된다. 집권의 개념은 일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중앙(국가)이 국토전반에 걸쳐 자신의 수중 하에 두는 행정업무(tâches administratives)전체를 집중시키는 것과 관련된

다. 집권화된 국가에서는 국가만이 유일한 공법상 법인이고 통일적이며 위계적(hiérarchisée) 행정조직을 통해 행정구역(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집권이 반드시 분권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효율성(efficacité)의 관점에서 중앙의 의사결정권자는 행정구역내에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조직의 분산(déconcentration)은 행정상 집권의 방법으로 이해되지만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반면에 분권은 이러한 통일성을 깨뜨리는 것인데, 특히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 territoriale)와 같이 지역적 기반을 가진 공법인에게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권을 주는 것을 지방분권(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이라 한다.

Décentralisation ,  Déconcentration

### ◇ Cession 【 양도 】

민법에서는 생존자간의 유상 또는 무상의 권리의 양도(transmission, transfert)를 의미하며, 양수인은 cessionnaire, 양도인은 cédant으로 표현된다. 보험법분야에서는 특히, 채보험자로 되거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관련용례로는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권의 우선순위의 양도(cession d'antériorité), 채권 양도(cession de créance), 계쟁중인 권리의 양도(cession de droit litigieux), 상속분 또는 상속권의 양도(cession de droit successif), 기업양도(cession de l'entreprise), 영토의 할양(cession de territoire), 조차(cession à bail) 등이 있다. 한편, cessibilité는 (권리의) 양도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히 유체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무형의 재산권(bien incorporel)의 양도에 있어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예컨대, 임차권의 양도가능성(cessibilité d'un bail), 영업재산의 양도가능성(cessibilité d'un fonds de commerce) 등이 이러한 용례에 해당한다.

**C.civ. Art.1692** : La vente ou cession d'une créance comprend les accessoires de la créance, tels que caution, privilège et hypothèque.(민법전 제1692조 : 채권의 매매 또는 양도는 보증, 우선특권 그리고 저당권과 같은 종된 권리의 이전을 포함한다.)

**C.civ. Art.1699** : Celui contre lequel on a cédé un droit litigieux peut s'en faire tenir quitte par le cessionnaire, en lui remboursant le prix réel de la cession avec les frais et loyaux coûts, et avec les intérêts à compter du jour où le cessionnaire a payé le prix de

la cession à lui faite.(민법전 제1699조 : 계쟁중인 권리관계에서의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합리적 지출 및 양수인이 양도대가를 지불한 날로부터 기산된 이자와 함께 실제 지불된 양도대금을 반환함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 **Chambre de l'instruction** 【 항소법원 수사부 】

항소법원의 일개 부로서 예심판사 및 석방구금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항고)을 심사하며 그것의 적법성을 통제한다(예: 예심대상 지정, 사법통제 조치). 또한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사법상의 징계권과 수사판사간 또는 두 법원간의 분쟁에 대한 권한조정권 및 범죄인인도요구에 대한 심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1명의 장과 2명의 배석판사가 있으며 공소관의 역할은 항소법원에 소속된 검사에 의해 수행된다. 항소법원 수사부장은 항소법원 관할내의 수사판사의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0년 6월 15일의 『무죄추정의 강화에 관한 법률』시행이전에는 형사소추부(chambre d'accusation)가 수사판사의 예심종결 후 중죄법원에 이송되기 전에 사건을 심사하는 2심 예심법원의 역할도 수행하였으나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제도가 신설되면서 현재의 항소법원 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CPP Art.191** : Chaque cour d'appel comprend au moins une chambre de l'instruction.(형사소송법전 제191조 : 각 항소법원은 최소한 한 개의 수사부를 포함한다.)

Juge d'instruction,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 ◇ **Changement fondamental de circonstances** 【 사정의 근본적 변경 】

조약 이행의 전제가 되었던 조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급격히 변경됨으로써 조약의 계속적 적용이 불가능하여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조약의 종료 또는 정지의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조약법협약은 제62조에서 조약의 정지 또는 종료의 사유로서 사정변경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원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즉,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해당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기초를 구성하며, 그러한 사정의 변경으로 해당 조약상의 의무의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정 변경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Charge 【 부담, 직무, 증거방법 】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노력(effort)이나 비용(dépense) 또는 배려(soin) 등이 어떤 사람에게 의무부과 되는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의 부담을 의미한다. 우선, 광의로는 공적 직무나 공무원의 직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특히 법원의 부속적 직무담당자(officiers ministériels)라는 의미에서의 공증인의 직무(charge de notaire)나 집행관의 직무(charge de commissaire-priseur)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정한 권한이나 의무로써 행위할 공적 임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예컨대 후견(tutelle)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협의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된 채무나 묵시적인 부수적 채무와는 달리, 특약이나 특별조건의 형식으로 당사자간에 부과되는 부수적인 속박이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부과되는 비용이나, 일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예컨대, 가계부담(charge de famille)이나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비용부담(charge de copropriété) 등)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일정한 이익에 수반되는 반대급부(예컨대, 민법전 제3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사용수익권자의 부담)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품세(charges réelles)나 개인세(charges personnelles)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용례로는, 부동산을 유지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총체라는 의미에서의 부동산운용경비(charge d'habitation), 결혼으로 인한 혼인생활비용(charge du mariage) 또는 가사비용(charge du ménage), 친자관계 등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로서 출산비용이나 자의 양육 및 주거비용 등의 가계부담(charges familiales), 임차인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charges locatives) 등이 있다. 한편, 증언이나 조서 기타의 증거물 등과 같이 피의자에게 귀책시킬 수 있는 어떤 사실이 현실적으로 저질러졌다거나, 그러한 사실의 평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의 증거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 용례로는 새로운 증거방법(charges nouvelles)이나, 검사측의 증인(témoin à charge) 등이 있다.

다른 한편, charge는 법률에서 정하는 원고의 주장책임(charge de l'allégation) 또는 입증책임(charge de la preuve, fardeau de la preuve)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위법한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행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일정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채무나 의무와 구별될 수 있다. 되는 개념이다. 관련 법언으로는 “Actori incumbit probatio”(Au demandeur incombe la preuve: 거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Ei incumbit probatio qui dicit, non qui negat”(La preuve incombe à celui qui affirme, non à celui qui nie: 입증책임은 주장자에 있는 것이지, 부인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이 있다.

**C.civ. Art.427** : La tutelle, protection due à l'enfant, est une charge publique.(민법전 제 427조 : 후견은 아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적 성질의 임무이다.)

**C.civ. Art.214, al.1** : Si les conventions matrimoniales ne règlent pas la contribution des époux aux charges du mariage, ils y contribuent à proportion de leurs facultés respectives. (민법전 제214조 제 1 항 :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 각각은 자신의 자력에 비례하여 혼인생활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 Chef d'Etat 【국가원수】

국가원수란 용어는 프랑스에서 법률용어로는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전통적 의미로 공권력 조직의 최고기관을 의미하는 말이다. 프랑스 제 5 공화국 헌법은 국가원수란 용어 대신 대통령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형태의 특징은 집행부 권력의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과 수상이라는 두 행정부의 축이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Gouvernement)라는 개념이 집행권 전반을 일컫기도 하지만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행 제 5 공화국 헌법도 제 2 장(Titre II)을 대통령이라 제목붙이고 있고 제 3 장(Titre III)을 정부라 명명하면서 수상과 내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통 정부수반(Chef du gouvernement)이라고 하면 수상을 의미하지만 국가원수는 대통령을 의미한다.

De Gaulle voulait faire du chef de l'Etat le chef réel de l'Exécutif. 【드골은 집행부의 실질적인 수장을 국가원수로 하고자 하였다.(B. Chantebout, Droit constitutionnel et science politique, 14e éd., Armand Colin, 1997, p.405.)】

### ◇ Chef de mission (diplomatique) 【 외교공관장 】

외교공관의 장을 말한다. 외교공관장은 그 계급에 따라 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대사(ambassadeur) 및 공사(envoyé), 그리고 외무장관에게 파견되는 대리공사(chargés d'affaires)의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여타의 외교관들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 Chef de poste consulaire 【 영사공관장 】

영사공관의 장을 말한다. 영사공관장은 그 계급에 따라 총영사(consul-général), 영사(consul), 부영사(vice-consul), 영사대리(agent consulaire) 등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여타의 영사관들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 Chose 【 물건, 사항 】

우선, 법의 관점에서 고려되는 사실적인 대상 또는 권리의 객체라는 의미에서의 물건을 지칭하며, 특히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chose corporelle)로서의 재화의 유형들을 가리킴이 일반적이다. 관련 용례로는 종물(chose accessoire), 공유재산 또는 공공재산(chose commune), 소비재(chose consommable), 특정물(corps certai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종류물(choses de genre), 대체물(choses fungibles), 불용통물(choses hors du commerce), 무생물(choses inanimées), 야생동물 등과 같은 무주물(choses sans maître) 등이 있다. 공유재산은 공기나 해양과 같이 개인의 소유에 둘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사용권도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소비재는 식량이나 음료, 금전 등과 같이 소비하거나 양도함이 없이는 사용될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물은 석유 10리터와 같이 일정한 종류나 품질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의 목적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대체물이 이에 해당한다. 대체물은 금전이나 소비물자와 같이 동종, 동량, 동가치의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불용통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무생물은 불법행위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무생물책임의 법리(responsabilité du fait des choses inanimées)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는 동물책임, 공작물책임, 무생물책임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생물책임의 법리는 19세기 들어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게 된 법리이다. 무주물은 물건의 성질상으로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이나 현재에는 소유권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물건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chose는 어떤 일이나 사항 또는 문제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chose jugée라고 표현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계쟁물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일이나 사항을 의미하는데, 관련 용례로는 기관력(□□ autorité de la chose jugée), 기관사항의 항변(exception de chose jugée), 기관사항의 확정력(force de chose jugée) 등이 있다. 다른 한편, chose publique이라고 표현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또는 일반적 이익(□□ intérêts généraux)의 관리나 만족에 관련된 문제의 총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C.civ. Art.546 :** La propriété d'une chose, soit mobilière, soit immobilière, donne droit sur tout ce qu'elle produit, et sur ce qui s'y unit accessoirement, soit naturellement, soit artificiellement.(**민법전 제546조 :**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객체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당해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든 인공적으로든 그 물건에 부수적으로 합체된 것에도 미친다.)

**C.civ. Art.1351 :** 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n'a lieu qu'à l'égard de ce qui a fait l'objet du jugement. Il faut que la chose demandée soit la même; que la demande soit fondée sur la même cause; que la demande soit entre les mêmes parties, et formée par elles et contre elles en la même qualité.(**민법전 제1351조 :** 기관력은 판결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만 미친다.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며, 청구가 동일한 원인에 기초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제기된 것 이어야 한다.)

### ◇ Circonscription électorale 【선거구】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역적 단위를 선거구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것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는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선거구는 인구 수라든가 정치적 요소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회의원회 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577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서 선거를 행하고 있고, 상원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도(département)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거를 치른다.

### ◇ **Circonstances aggravantes** 【가중사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위의 주체, 피해자 또는 범죄의 실행방식과 관련된 특별한 조건들로서 법률에 의하여 판사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처단하게 될 형(sanction)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중사유에는 누범(récidive)과 같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일반가중사유와 일정한 범죄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특별가중사유가 있다. 여기에는 사전계획(prémédiation), 무기의 휴대 또는 사용, 폭력, 합동범, 피해자의 요부호 상태 등이 있다.

### ◇ **Circonstances atténuantes** 【감경사유】

구형법전에 의하면 감경사유는 형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감경사유는 입법가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판사는 구형법전 제463조가 정한 조건 및 범위내에서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지위 등의 개인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외부적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최소형량 이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었다. 반면에 최고형량만을 규정하고 최소형량을 폐지한 현행 형법전하에서 감경사유라는 개념이 사라졌으나 판사는 형벌의 개별화원칙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법전 제132-18조는 중죄에 대하여는 최소형량을 정하면서 모든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 **Circonstances excluant l'illicéité** 【위법성조각사유】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을 가리킨다. 국제법이 인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는 피해국의 동

의(consentement),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난(détresse), 필요성(nécessité), 대응조치(contre-mesures), 자위(légitime défense) 등이 있다.

### ◇ Circulaire 【시클래르, 훈령】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실무상 지시(instruction) 혹은 업무지침(notes de service)이라 불린다. 시클래르는 위계적 통제권(pouvoir hiérarchique)을 가진 행정조직 내의 발령권자(특히 각부의 장관, les ministres)가 하위기관의 행위를 지시하기 위해(pour guider) 발령한다. 소속 공무원에게는 구속적이나 행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월권소송을 통해 다룰 수 없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는 시클래르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월권소송을 통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사원(Conseil d'Etat)는 대표적인 Notre-Dame du Kreisker(C.E. Ass. 29 janvier 1954, Rec. 64)판결을 통해 행정규칙(교육부장관의 시클래르)이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상대방(원고)에게 새로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법질서를 추가하는(qui ajouter à l'ordonnement juridique) 새로운 경우(la circulaire innovatoire)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규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국사원은 2002년 12월 마담 뒤비네르(Duvignère)판결에서 주택보조금을 법률구조 수혜대상 판단을 위한(신청인의) 소득에 포함하고 있는 1991년 12월 19일의 법규명령인 국사원 데크레와 1997년 3월 26일 행정규칙(시클래르)의 폐지요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거부결정을 취소하였다. 왜냐하면 동 시클래르는(법규명령인) 데크레의 규율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일반적 성격의 구속적 규정(disposition impératif à caractère général)으로서(데크레의) 위법한 내용을(반복을 통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위법령규정을 해석하고 시행을 지시하는 시클래르 규정이 실제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다시 상위법령(법률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데크레)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로서는 그 규정에 주의를 요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속적 성격을 갖는 시클래르는 비록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복할 뿐이더라도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C.E., Sect. 18 décembre 2002, Mme. Duvignère)

### ◇ Citation directe 【 직접소환 】

경죄사건 및 위경죄에 대한 공소제기방식의 하나이다.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고 범죄사실이 단순하며 범죄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선택되는 방식으로 예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직접소환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관 또는 사당사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공소관은 형사소송법전 제388조 및 제531조에 따라 범죄자를 직접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에 소환할 수 있다. 직접소환은 공판기일 10일 이전에 공소관이 청구에 의한 집달관의 소환장(exploit)에 의해 피고인에게 통보된다. 소환장에는 범죄사실, 적용법조, 출석법원, 장소, 일자 및 시간 등이 기재된다. 직접소환은 지방법원 검사장의 지휘에 의하여 법원서기, 사법경찰관리,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통하여 법정출석요구서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범죄피해자인 사당사자도 공소관과 마찬가지로 수소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달관의 소환장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통보된다.

**CPP Art.392-1** : Lorsque l'action de la partie civile n'est pas jointe à celle du ministère public, le tribunal correctionnel fixe, en fonction des ressources de la partie civile, le montant de la consignation.(**형사소송법전 제392-1조** : 사당사자의 사소(私訴)가 공소관의 공소(公訴)에 부치지 않은 때에는 경죄법원은 사당사자가 만일 재판구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 사당사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법원서기에게 납부해야할 예치금의 액수와 예치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직접소환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예치금은 두 번째 문단(alinéa)을 적용하여 선고될 수 있는 민사벌금(amende civile)의 납부를 담보하는 것이다.)

Aide juridique

### ◇ Classement sans suite 【 불기소 】

범죄에 대하여 공소관은 공소의 제기, 즉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유가 적시되어야 하는 이 결정은 법률적인 동기 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증거의 부재 또는 불충분, 고소의 취하 등의 수사요소에 따라 취해질 수

있다. 불기소처분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공소제기가 공공질서를 심히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공소관은 공소시효의 만료이전까지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여 소추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며 범죄피해자는 사인소추를 통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다.

**CPP Art.40-3** : 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형사소송법전 제40-3조 : 지방법원 검사장에게 범죄사실을 고발한 모든 사람은 고발에 따라 이뤄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소법원의 검사장에게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검사장은 제36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 검사장에게 소추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일 불복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관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Action publique,  Action civi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 Clause exorbitant du droit commun 【 예외조항, 일탈조항 】

행정계약적 성격을 나타내는 계약조항으로서 사법상의 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되는 계약조항을 말한다. 공공서비스라는 기준과 함께 예외조항의 존재는 1912년 Société des Granits Porphyroïdes des Vosges 판결이래로 확고한 행정계약(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의 실질적 판별기준으로 등장하였다. (사법(私法)에 대한) 예외조항은 민법이나 상법상의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와는 다르게 당사자에게 권리를 위임하거나 계약의 성질과 동떨어진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상의 조항이라고 정의된다. 예외조항은 공권력의 우월적 집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법상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무용하고 단지 공익적인 관점에서 고려될 뿐이다. 대법원(Cour de Cassation) 민사부 판결에도 휴양지의 부흥, 발전 및 관광지의 도약을 위해서만 계약조항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Cass.civ. 18 février 1986, Ville de Biarritz). 예외조항은 당사자 간의 불평등한 지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행정청은 상대방 업자에 대한 일정한 행정청의 감독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조항을 통해 겨울 스포츠 시즌 중 지정된 기간 동안 소비재의 가격이나 시설물의 재정적 결과보고를 사영업자에게 부과하거나 (TC 16 janvier 1967, Sté du Vélodrom du Parc des Princes), 계약의 일방적 해지권을 규정할 수 있다.

## ◇ Clause pénale 【 위약금조항, 위약금약정 】

clause pénale은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이나 기타의 것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위하적 제재조항(*clause comminatoire*) 또는 예정된 급부 자체를 가리킨다. 즉, 민법전 제1152조 및 제1226조 이하의 규정들에서는, 채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채무불이행시의 구체적인 손해액의 평가곤란을 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일괄적으로 예정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약금약정 또는 위약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실제 입게 되는 손해보다 높게 예정되는 위약금은 그것이 명백히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민법전 제1152조 참조). 단, 채무의 일부이행시, 그러한 일부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약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된다(민법전 제1231조 참조).

위약금조항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연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서의 채무자의 이행지체 또는 부지체(*mis en demeure*)가 요구된다(민법전 제1230조 참조). 이러한 요건의 충족시에는 채권자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위약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민법전 제정당시에는 위약금약정의 증액이나 감액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었으나, 1975년 7월 9일법에 의한 민법개정으로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법원이 예정된 위약금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해함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위약금과의 구별개념으로서의 *dédit*는 한국법에서의 해약금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clause pénale*은 증여취소약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증여 또는 유증에 있어서 증여자의 사망 후에 수증자가 증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무효를 주장할 경우(예컨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그러한 수증자에 대하여는 상속 등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혁적 제재조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항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법원은 그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C.civ. Art.1229** : La clause pénale est la compensation des dommages et intérêts que le créancier souffre de l'inexécution de l'obligation principale. Il ne peut demander en même temps le principal et la peine, à moins qu'elle n'ait été stipulée pour le simple retard.(**민법전 제1229조** : 위약금약정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의 성질을 갖는다. 채권자는 위약금약정이 단순한 이행지체를 예정한 것이 아닌 한, 주된 채무의 이행청구와 위약금의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 ◇ **Clause 【 약관, 조항 】**

일반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내용이나 요소를 구체화하거나,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한 법리를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규정을 지칭한다. 관련 용례로는 최혜국조항(*clause de la nation la plus favorisée*), 보존조항 또는 도피조항(*clause de sauvegarde*), 식민지조항(*clause coloniale*), 면제특전조항(*clause d'exemption*), 연방제국가조항(*clause fédérale*), 총 가입조항(*clause si omnes*), 국제조약에서의 개방조항(*clause tous Etats*), 가맹조항(*clause d'accession*), 위하적 제재조항(*clause comminatoire*), 중재조항(*clause compromissoire*), 부동산의 동산화조항(*clause d'ameublement*), 독신조항(*clause de célibat*), 양심조항(*clause de conscience*), 가혹조항(*clause de dureté*), 예외적 가혹조항(*clause d'exceptionnelle dureté*), 형평조항(*clause d'équité*), 하드쉽조항(*clause de hardship*),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주소지정조항(*clause d'élection de domicile*), 경쟁피지조항(*clause de non-concurrence; clause de non-rétablissement*), 면책약관(*clause de non-responsabilité*), 평화조항(*clause de paix sociale*), 소유권유보조항(*clause de réserve de propriété*), 부부재산계약에서의 무상선취약관(*clause de préciput*), 부부공동재산제에서의 포괄적 귀속조항(*clause d'attribution de communauté au survivant*), 부부별산제조항(*clause de séparation de biens*), 부부재산제에서의 채무분리조항(*clause de séparation de dettes*), 계약서상의 관용적 계약조항(*clause de style*), 협정보험가격조항(*clause de valeur agréée*), 변동조항(*clause de variation*), 상속에 있어서의 부동산강제매매조항(*clause de voie parée*), 독점조항(*clause d'exclusivité*), 임금이나 연금의 연동조항(*clause d'échelle mobile; clause d'indexation*), 일반법의 적용 배제조항(*clause exorbitante du droit commun*), 단독해손면책조항(*clause franc d'avaries particulières*), 일방에만 유리한 조항(*clause léonine*), 책임한정조항(*clause limitative de*

responsabilité), 금약관(*clause or; clause valeur-or*), 위약벌조항(*clause pénale*), 사정불변조항 또는 사정존속약관(*clause rebus sic stantibus*), 상사임대차에서의 수익조항(*clause recette*), 해제조항(*clause résolutoire*), 무비용상환조항(*clause sans frais*), 유가증권의 지불보증조항(*clause sauf encaissement*), 표준약관(*clause type*), 외화환산조항(*clause valeur-devises*), 재판관할지정조항(*clause attributive de juridiction*), “부당조항 또는 부당약관”(clause abusive: 일방당사자가 그 경제적 지위를 남용하여 비전문가나 소비자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계약조항) 등이 있다.

**C.civ. Art.2061** :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particulières, la clause compromissoire est valable dans les contrats conclus à raison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민법전 제2061조 :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조항은 직업 활동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 ◇ Code 【 법전 】

법전이라 함은 특정한 분야에 관련된 규범의 총체를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법령들의 결합체를 말하는데, 그 편찬과정은 입법부의 활동(*travaux législatifs*)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의 제정과정(*élaboration réglementaire*)을 통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법령의 형식적인 편집과정(*codification formelle*)을 통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전(*Code civil*)이나 형법전(*Code pénal*)은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전에 해당하며, 신민사소송법전(*Nouveau Code de la procédure civile*)은 법령의 제정절차를 통한 경우이고, 법원조직법전(*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이나 건축 및 주거에 관한 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은 기존의 법령들을 그 기원에 따라 재편성하고(예컨대, 입법부에서 제정한 부분과(*partie législative*) 명령제정절차에 의한 부분(*partie réglementaire*)) 이를 데크레(*décret*)를 통한 형식적인 편집과정을 거쳐 제정한 법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전편찬작업을 *codification*(입법, 법전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드시 새로운 법전의 편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령들을 집대성 또는 편집(*compilation*)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다른 한편, *code*라는 표현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관습적 규범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예, *code de la politesse*: 예의범절), 특정의 편저자에 의하여 공간된 법규집이나 법령전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고대의 법전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데, 예컨대 Code théodosien은 테오도르법전(Codex Theodosianus)을, Code justinien은 유스티니아누스법전(Codex Justinianus)을 가리킨다.

**Loi du 30 ventôse an XII Art.7** : A compter du jour où ces lois sont exécutoires, les lois romaines, les ordonnances, les coutumes générales ou locales, les statuts, les règlements, cessent d'avoir force de la loi générale ou particulière dans les matières qui sont l'objet desdites lois composant le présent code.(혁명력 12년 풍월 30일 법 제 7 조 : 동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로마법과 칙령, 일반적 또는 지역적 관습, 각종의 명령이나 규칙들은 동법전에 포함된 상기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 ◇ Cohabitation 【 동거정부, 동거 · 공동생활 】

**【헌 : 동거정부】** 프랑스의 정부형태는 이원정부제로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상은 국민의회의 다수파를 차지한 정파에서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통령과 국민의회의 다수파가 서로 다른 정파로서 서로 다른 정치적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경우를 동거정부라 한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일정 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회의 다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 다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상의 부서를 필요로 하므로 수상과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충돌이 있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제와는 달리 동거정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수상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제 5 공화국에서 여러 번의 동거정부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1986년 프랑스 의회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이 이끌던 사회당이 참패하고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가 이끌었던 우파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1993년 총선에서 우파가 압도적으로 의회다수를 확보함에 따라 공화국연합당(RPR)의 에두아르 발라뒤르(Edouard Balladur)가 이끄는 정부가 탄생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미테랑이었다. 세 번째는 1995년 대선에서 우파의 시라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7년 총선에서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이 이끄는 좌파연합 정부가 구성되어 세 번째 동거정부가 되었다.

**【민 : 동거 · 공동생활】** 우선, 두 사람 이상의 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同居 또는 同棲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거에 대하여

법은 다양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혼인당사자 간에는 민법전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공동생활을 할 의무(devoir de communauté)를 부담하는데, 그 구체적 유형으로서 동거의무(devoir de cohabitation)가 인정되며, 이는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부가 상호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할 의무를 의미한다. 동거와 구별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내연관계(concubinage)는 혼인에 이르지 못한 남녀 간의 사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내연관계에 대하여도 그 생활관계의 안정성이나 유지기간 또는 상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법률효과가 인정된다.

다른 한편, cohabitation은 다른 정당이나 정치세력간의 집행권한의 분할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흔히 동거정부라고 칭하기도 한다.

Si le devoir de cohabitation demeure l'une des obligations essentielles du mariage, il ne comporte pas, sur le plan judiciaire, d'autres sanctions que celles résultant d'une demande en divorce ou en séparation du corps.(동거의무(공동생활의무)가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의무 중의 하나이나, 그러한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로서 이혼이나 별거청구 이외의 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Commetant 【사용자, 위임자】**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고용주 내지 사용자를 지칭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나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의뢰받은 자 또는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위탁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전 제1384조 제 5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으로서, 동조에서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les commettants sont responsables du dommage causé par leurs préposés dans les fonctions auxquelles ils les ont employés)고 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의 발생요건과 관련, 그 전제가 되는 사용종속관계(liens de préposition)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상으로는, 이를 사용자가 피용자(préposé)에게 명령(ordres)이나 지시(instructions)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계로 파악되나, 학설상으로는 이 보다 더 넓게 파악하여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여하튼,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됨이 일반적일 것이나,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반드시 임금의 지불이나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며, 그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더라도

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종속성(subordination)이며, 친자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관례상으로는, 예컨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경쟁후보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그 특정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지시명령의 권한이 있었다면 그들 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도 있다.

한편, 민법전 제1384조 내의 다른 유형의 책임과 비교하여 사용자책임이 갖는 특징은, 사용자가 자신에게 과책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인데, 환언하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식의 중간책임으로 이해되는 친권자나 장인의 책임과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근거로는 민법전 제1384제 제 7 항의 규정을 들 수 있다.

Afin d'engager la responsabilité du commettant, le fait dommageable du préposé doit se rapporter à ses fonctions.(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피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사실이 그 직무수행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 ◇ Commission mixte paritaire 【양원합동위원회】

국회의 위원회 가운데 하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입법절차에서 양원의 동의를 필요하다. 이럴 때 법안이 양원을 왕복하게 되도 가결되지 아니할 때 국민의회 의원과 상원 의원 동수로 구성되는 양원합동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한다. 법안이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단일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왕복을 하게 되면 수상이 양원의장에게 양원합동위원회에 요청하게 되고 양원합동위원회는 각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그러나 양원합동위원회에서도 의견일치를 못 보게 되면 정부가 법안을 국민의회에 단독으로 회부하게 된다. 양원합동위원회는 국민의회와 상원의 각각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Constitution Art.45 al.2** : Lorsque, par suite d'un désaccord entre les deux assemblées, un projet ou une proposition de loi n'a pu être adopté après deux lectures par chaque assemblée ou, si le Gouvernement a déclaré l'urgence, après une seule lecture par chacune d'entre elles, le Premier Ministre a la faculté de provoquer la réunion d'une commission mixte paritaire chargée de proposer un texte sur les dispositions restant en discussion.(헌법

**제45조 제 2 항** : 양원의 의견 불일치로 법률안이 양원에 의하여 각각 2회독 후에 채택되지 못한 경우 또는 각 의회의 1회독 이후에 정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상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 의안을 제출하는 책임을 지는 양원합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다.)

### ◇ **Commission rogatoire** 【 수사촉탁(위임) 】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사건심리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 다른 사법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일정한 증거수집 행위(심문, 수색, 압수 등)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분야에게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수사촉탁은 수사판사에 의한 것이다. 일반수사촉탁은 금지되며 위임은 범죄의 특정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모든 예심행위가 위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수사판사의 수사촉탁에 의하더라도 영장발부와 같은 재판상의 행위와 예심대상자를 직접 신문하거나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없다. 국제법상으로는 사법공조의 한 형태가 된다.

**CPP Art.151** : Le juge d'instruction peut requérir par commission rogatoire tout juge de son tribunal, tout juge d'instruction ou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en avise dans ce ca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rocéder aux actes d'information qu'il estime nécessaires dans les lieux où chacun d'eux est territorialement compétent.(**형사소송법전**

**제151조** : 수사판사는 수사촉탁(위임)에 의하여 자신이 속한 법원의 모든 판사, 모든 예심판사, 또는 모든 사법경찰관에게, 이 경우에 지방법원 검사장에게 통보를 하고, 각자의 토지관할상 권한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수사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Juge d'instruction,  Police judiciaire

### ◇ **Commune** 【 코뮌, 기초자치단체 】

프랑스 헌법상(헌법 제7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가장 오래되었고 많이 존재하는 자연발생적인 지역공동체로서 인구 200여명 내외의 작은 규모에서부터 파리(Paris)와 같은 대규모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코뮌과 행정구역의 코뮌

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코뮌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36, 784개가 있다. 코뮌의 단체장은 Maire라 한다.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동시에 일정사무(행정경찰업무)에 있어서는 국가의 대표적 기능을 수행한다(double casquette, 2중 모자창). 일반적으로 코뮌은 1789년에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단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헌정사상 제 3 공화국 헌법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최초 등장은 1946년 제 4 공화국 헌법) 법률(1884년 4월 5일)인 loi municipale과 1957년 코뮌행정에 관한 법전(Code de l'administration communale)을 통해 규정되었다. 동 규정들은 1996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일반통합법전(CGCT)에 수록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은 법인격을 가진 주민들이 직접투표한 Conseil municipale을 통해 지방사무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Maire(Conseil municipal에서 선출)가 집행한다. 기관통합형으로 구성되는 코뮌의 조직은 파리나 마르세이 그리고 리용시의 경우는 예외를 법률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 대규모 도시의 경우 arrondissement으로 분구된다. 특히 파리의 경우 하나의 코뮌이자 데파르트망이 된다. 인구규모에 따라 코뮌의 기관의 구성, 선거구, 의회의 업무와 의원의 숫자와 부시장 및 재정상의 차이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현재 전체 코뮌의 90%가 인구 2천명 미만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코뮌간의 병합이나 코뮌간 협력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영조물법인)가 법제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행정구역으로서의 코뮌(la 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 communale)이 의미하는 바는 행정조직의 분산(la déconcentration)의 우선적 고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의 데크레(1992년 7월 1일)에서조차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시장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코뮌은 행정구역으로서의 코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 Comparution immédiate 【즉시출석】

범죄발생 후 피고인을 경죄법원에 즉시 인계하여 당일 재판을 받도록 하는 신속절차의 하나이다. 즉시출석에 의한 소송절차는 중죄, 위경죄, 경죄의 언론범죄, 경죄의 정치범, 소년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절차는 예비수사 및 현행범수사의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고 출석당일 재판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법원의 검사장에 의해 선택된다. 다만 예비수사를 거친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현행범인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한된다. 즉시출석에 의한 재판절차를 보면 피고인은 범죄발생 당일 법원에 인계되어 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진행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 즉시 재판을 받는다. 만일 공판진행에 거부를 하면 공판은 다음으로 연기된다. 피고인이 검사에게 출석한 당일 공판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피고인을 석방하여 추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석방구금판사가 구속을 한다.

**CPP Art.388** :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saisi des infractions de sa compétence soit par la comparution volontaire des parties, soit par la citation, soit par la convocation par procès-verbal, soit par la comparution immédiate, soit enfin par le renvoi ordonné par la juridiction d'instruction.(형사소송법전 제388조 : 경죄법원은 당사자의 자진출석, 소환, 조서에 의한 출석요구, 즉시출석 또는 예심법원의 이송명령에 의해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소의 제기를 받는다.)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Flagrant délit

### ◇ Compensation 【상계, 보상, 배상】

우선, compensation은 민법전 제128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정액의 금전이나 일정량의 동종인 대체물(choses fungibles)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고 있는 경우, 상호간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상계에는 상계계약에 의한 약정상계(compensation conventionnelle),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상계(compensation judiciaire),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계(compensation légale)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약정상계는 법정상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상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계계약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재판상상계는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을 행하여 대등액에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법정상계는 민법전 제128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를 말하는데, 이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민법전 제1291조 참조), 상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는 한국법에서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상계의 시점은 채권채무가 모두 확정적이고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이루어

어지고(민법전 제1291조 제 1 항 참조), 비록 이행기의 유예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계는 이루어지며(민법전 제1292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보증인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연대채무자 또한 다른 공동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전 제1294조). 그리고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이를 이의 없이 단순승낙한 채무자는 승낙 전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양도통지는 그 통지 이후의 채권의 상계만을 방해하게 된다(민법전 제1295조). 한편, 상계는 제 3 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며, 제 3 자에 의한 압류가 있는 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민법전 제1298조).

다음으로, compensation은 손실의 보상이나 손해의 전보,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특히, 민법전 제1229조 제 1 항 참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전보배상(domages-intérêts compensatoires)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전불금과 피용자의 임금간의 상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며, 따라서 상계액도 임금의 1/10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른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compensation이 부담의 분배(répartition des charges)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즉, 원고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소송비용을 분담(compensation des dépens)하여야 하는 경우가 이러한 용례에 해당한다.

**C.civ. Art.1299 :** Celui qui a payé une dette qui était, de droit, éteinte par la compensation, ne peut plus, en exerçant la créance dont il n'a point opposé la compensation, se prévaloir, au préjudice des tiers, des privilèges ou hypothèques qui y étaient attachés, à moins qu'il n'ait eu une juste cause d'ignorer la créance qui devait compenser sa dette.(**민법전 제1299조 :** 상계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변제한 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아니한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채권에 붙어 있는 선취특권이나 저당권을 원용하여 제 3 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단, 채무자가 그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iv. Art.1769, al.2 :** S'il(le fermier) n'est pas indemnisé, l'estimation de la remise ne peut avoir lieu qu'à la fin du bail, auquel temps il se fait une compensation de toutes les

années de jouissance.(민법전 제1769조 제 2 항 : 정액토지임차인에 대한 손실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임의 감액에 대한 평가는 임대차의 만료 시에 행하여지며,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 수익한 전체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 ◇ Compétence liée 【기속권한】

기속적 권한은 법률이나 명령규정이 행정기관의 개입에 관한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재량권(pouvoir discrétionnaire)와 대비된다. 행정청의 권한이 기속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규정에서 행정청의 후속행위를 규정한다. 사단법인의 등록증발급의 예처럼 행정청으로서는 기속된다(l'administration était tenue)고 판례는 밝힌다(C.E. 25 janvier 1985, Association Les amis de Saint-Augustin, Rec. 18).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행위를 뒷받침하는 이유나 사실의 상황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행정청의 판단권한 자체가 기속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은 시기선택(le choix du moment)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M. Hariou). 정부도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명령제정 조치를 취해야만 하지만 이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는다(C.E. 14 janvier 1970, EDF et GDF).

행정청의 결정에 잘못된 이유부기를 한 경우에 행정청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유를 대체(substitution de motif)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행정청으로서는 똑같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권한이 기속된 경우에 행정법원은 무권한(incompétence), 형식의 하자(vice de forme / irrégularité de forme) 혹은 절차의 하자, 권한의 남용(détournement de pouvoir)과 같은 행위의 대상에 관한 위법사유의 주장(moyens)이 결정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Composition pénale 【형사배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1999년 6월 23일의 법률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1년 1월 29일의 데크레가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으며 2002년 9월 9일의 일명 ‘페르뱅’(Perben) 법률은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

지를 수정하였다. 형사소추의 제기단계에서 공소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중개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한 개 또는 수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는 3,750유로 및 법정형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배상금’(amende de composition)의 납부, 운전 또는 수렵면허증의 반납, 범죄로부터의 획득물 또는 범 죄에 사용된 물건의 국가귀속, 손해배상, 무보수의 노무제공 등이 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지방법원 검사장은 범인에게 6개월 이내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형사배상에 대하여 경죄법원장 또는 지원판사가 승인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안된 의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된 의무의 이행은 공소를 소멸시킨다.

Médiation pénale

### ◇ Compromis 【 타협협정 】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당사국들이 해당 분쟁을 국제법정에 부탁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중재재판이든 사법재판이든 원칙적으로 임의관할권만을 가지는 만큼,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분쟁을 법정에 부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합의가 바로 타협협정이다.

**Statut de la CIJ, art.40, par.1** : Les affaires sont portées devant la Cour; selon le cas, soit par notification du compromis, soit par une requête, adressées au Greffier; dans les deux cas, l'objet du différend et les parties doivent être indiqués.(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40조 제 1 항 :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부탁은 각 경우에 따라 재판소 서기에게 하는 특별협정의 통고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 및 당사자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 ◇ Concession 【 공익사업의 특허계약 】

행정계약의 유형으로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redevance)를 징수하여 보상받는 행정적 혹은 상공업적 공공서비스나 공공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계약을 공법인(concédant)

과 체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공공서비스 위임계약(□□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중 관리위탁(affermage)과 함께 행정계약의 전형이 되고 있다. 철도, 상수도, 전력, 가스 등과 같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공공 서비스의 제공, 공공 주차장이나 유료 교량 등의 공공시설의 건설·경영 등을 일체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계약이 주가 된다. 이 계약에 의해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을 스스로 건설·설치한 다음,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요금(□□ redevance)을 징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Concession의 형태는 19세기 초부터 등장했는데 철도, 가스나 전기공급시설 대부분의 시설구조물은 공공서비스의 특허계약자들에 의해 현실화 된다. 행정계약으로서 공익사업의 특허계약도 계약의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①민간사업자(concessionnaire)의 선정절차는 다른 행정계약에 비해 정형적이지 않다. 사업양도특허권자(concédant)는 기술도면에 의한 수준이나 상환능력을 이유로 사업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1993년 부패방지법(1993년 1월 29일)은 이러한 선발절차를 명료하게 하도록 하는 공고절차를 규정하였다. ②사업자는 관리하는 서비스나 실현하는 공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청에게 납부하지 않는 점에서 공공계약(marchés publics)과는 차이가 있다. 특허계약의 자매격인 관리위탁(affermage) 형식에서는 관리수탁자(fermier)는 특허계약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사용료를 통해 보상을 받지만 행정청에게 이러한 보상의 일부를 행정청에게 이월하는데 수탁자가 설치하지 않은 원시설의 감가상각비용을 부담한다.

□□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 Régie

### ◇ Condamnation 【 유죄판결 】

형사법 분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임을 선언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판결을 의미하며, 민사법 분야에서는 사람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불(예, 손해배상), 특정한 행위의 이행, 법의 준수를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유죄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불출석판결(Condamnation par défaut)** : 정상적으로 출석요구가 되었으나 심리일자를 몰라 법원의 공판기일에 불출석(대리인이 없는 경우 포함)한 자에 대한 유죄판결. **유예판결(Condamnation avec sursis)** :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집행을 면제(5년 동안 다른 범죄로 인한 유죄선고를 제외)하는

판결. **확정판결(Condamnation définitive)** :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가 소진됨으로써 유죄가 확정되는 판결. 소송을 재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은 재론되지 않는다.

### ◇ **Condition résolutoire** 【해제조건】

해제조건이라 함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을 말하는데, 예컨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정지조건이라 함은, 조건의 성취시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을 말하며, 예컨대 대학에 입학하면 시계를 사주겠다고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에 의하면, 해제조건은 채무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조건으로 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단지 채권자로 하여금 그가 수취한 것의 반환의무를 지게 할 뿐이다. 동법 제118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쌍무계약에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언제나 해제조건이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그렇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당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해제는 항상 이를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C.civ. Art.1183, al.1** : La condition résolutoire est celle qui, lorsqu'elle s'accomplit, opère la révocation de l'obligation, et qui remet les choses au même état que si l'obligation n'avait pas existé.(민법전 제1183조 제1항 :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의무(채무)는 해소되게 되며,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있게 된다.)

### ◇ **Condition suspensive** 【정지조건】

민법전 제1182조에 의하면, 정지조건부 계약에 의한 채무의 발생시, 합의의 내용이 된 목적물에 대한 위험은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책 없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당해 채무는 소멸하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책 없이 훼손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대금감액 없이 현상대로의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책에 의하여 훼손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C.civ. Art.1181** : L'obligation contractée sous une condition suspensive est celle qui dépend ou d'un événement futur et incertain, ou d'un événement actuellement arrivé, mais encore inconnu des parties.(민법전 제1181조 : 정지조건부계약에 의한 의무(채무)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건 또는 이미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에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에 의존한다.)

### ◇ Condition 【 요건, 조건 】

우선, 일정한 상태(état)나 상황, 지위(statut), 자질(qualité)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예로는 사람이나 물건의 법적 지위 또는 법적 상황(condition juridique), 외국인의 지위(condition des étrangers), 근로자계층의 사회적 지위(condition sociale de la classe ouvrière)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법률행위의 요건이나 요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일정한 법률행위나 그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의 증서 등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위능력(capacité)이 존재하여야 한다든가, 소송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이 존재할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법전 제1108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 condition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본질적 요소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요소나 요건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가 누락된 경우, 이로써 확정적 계약이나 조건부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예약이나 잠정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함이 보다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및 소멸과 관련하여, 이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장래에 그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기한(terme)과 구별된다.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조건성취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민법전 제1179조). 조건은 다시, 조건성취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해제조건(condition résolutoire)과 정지조건(condition suspensive)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성취에 있어서의 의사의 역할을 기준

으로 하여 우성조건(condition casuelle)과 혼성조건(condition mixte), 수의조건(condition potestative) 등으로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condition contraire aux bonnes moeurs), 불법조건(condition illicite), 불능조건(condition impossible)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C.civ. Art.1108 :** Quatre conditions sont essentielles pour la validité d'une convention: le consentement de la partie qui s'oblige; sa capacité de contracter; un objet certain qui forme la matière de l'engagement; une cause licite dans l'obligation.(민법전 제1108조 : 유효한 약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합의, 계약능력, 의무의 내용으로 되는 확정된 목적물, 그리고 의무관계에 있어서의 적법한 원인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요건이 요구된다.)

**C.civ. Art.1176 :** Lorsqu'une obligation est contractée sous la condition qu'un événement arrivera dans un temps fixe, cette condition est censée défaillie lorsque le temps est expiré sans que l'événement soit arrivé. S'il n'y a point de temps fixe, la condition peut toujours être accomplie; et elle n'est censée défaillie que lorsqu'il est devenu certain que l'événement n'arrivera pas.(민법전 제1176조 : 어떤 사건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당해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보며, 기간 도래 이전에 사건의 불발생이 확정된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확정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불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본다.)

◇ **Conditions casuelle, potestative, mixte, etc. 【우성조건, 수의조건, 혼성조건 등】**

우성조건(condition casuelle)이라 함은,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가 우연한 사실(제 3자의 의사도 포함)에만 의존하는 조건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이를 좌우할 수 없는 조건을 이르며(민법전 제1169조 참조), 예컨대 “누구도 목적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제공하겠다”라고 약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수의조건(condition potestative)은 조건의 성취나 불성취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타방의 힘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저지될 수 있는 사건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인데(민법

전 제1170조 참조), 이는 다시 단순수의조건(condition simplement potestative)과 순수수의조건(condition purement potestative)으로 나뉜다. 전자는 조건인 사실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 이외에도, 당사자에 의한 외형적 행위의 실행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당신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면”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조건인 사실의 성부가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경우로서, “내가 원한다면” 또는 “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측의 순수수의조건에 따라 체결된 채무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민법에서도 이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민법전 제1174조 참조), 순수수의조건이 채권자의 의사에 관련된 경우에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전 제1174조는 정지조건부채무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해제조건부채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즉, 순수수의조건도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약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혼성조건(condition mixte)은 사건의 발생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 및 제 3 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이며(민법전 제1171조 참조), 예컨대 “당신이 A와 결혼을 하면,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불능조건(condition impossible),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condition contraire aux bonnes moeurs) 및 불법조건(condition illicite)은 무효이며, 아울러 당사자 간의 행위자체도 무효로 된다(민법전 제1172조 참조).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불능조건과 무관하므로 계약상의 채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민법전 제1173조 참조). 아울러, 불능조건 등이 부가된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유상행위인 경우에는 행위전체가 무효로 되나, 무상행위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로 되고 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이해되기도 하였으나(민법전 제900조 참조), 오늘날의 법원의 태도는 행위의 유무상성에 구애되지 않고, 불능조건 등이 행위의 결정적 원인으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행위자체의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Cass. civ. 1re, 24 juin 1971, Bull. civ. I, n° 405).

**C.civ. Art.1174** : Toute obligation est nulle lorsqu'elle a été contractée sous une condition potestative de la part de celui qui s'oblige.(민법전 제1174조 :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수의조건에 따라 체결된 의무(채무)는 무효이다.)

**C.civ. Art.900** ; Dans toute disposition entre vifs ou testamentaire, les conditions impossibles, celles qui sont contraires aux lois ou aux moeurs, seront réputées non écrites.(민법전 제900조 :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모든 처분행위에 있어서, 불능조건, 불

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들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 **Conflit positif/négatif** 【 적극적/소극적 관할분쟁 】

관할분쟁은 행정재판 질서와 일반 사법재판 질서가 구별되어 운용되는 이른바 2원 재판국가의 산물이다. 양법원의 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예상되는 관할권의 적극적 분쟁(충돌)과 소극적 분쟁(충돌)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대칭적(symétrique)이라 할 수는 없다. 적어도 관할법원의 역할은 연혁상 사법법원의 있을 수 있는 개입으로부터 행정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M. Lombard).

적극적 관할분쟁(충돌)은 소송이 사법법원에 제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행정청은 행정의 행위가 전적으로 사법적 통제(contrôle juridictionnel)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행정법원(jurisdiction administrative)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법원(autorité judiciaire)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예로는 통치행위(acte de gouvernement)에 관한 관할법원의 1950년 2월 2일 프랑스 라디오방송 결정). 적극적 관할분쟁은 공소관(doté d'un ministère public)인 사법법원에 대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프레페는 제소된 법원의 검사에게 법규정과 사법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이유를 들어 관할위반(declinatoire de compétence)을 주장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사법법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는데,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관할위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법법원은 프레페가 관할법원에 관할쟁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15일 동안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프레페는 관할분쟁 절차를 포기하거나 관할분쟁 이유가 담긴 아레테(arrêté de conflit motivé)를 통해 법원에 대해 재판관할(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 법원은 관할법원(Tribunal des conflits)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선고를 유예하게 된다(R.C. 2 avril 1973, Epoux Chatoulaud, Rec. p.845). 관할법원은 관할위반 아레테의 요건의 적부(régularité)와 본안을 검토하고(bien fondé d'arrêté de conflit) 3개월 이내에 판결하게 된다. 관할분쟁 아레테가 인용되면 재판은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소극적 관할분쟁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소극적 관할분쟁의 경우 소송의 관할은 실제로 사

법법원 혹은 행정법원에도 속한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은 소극적 관할분쟁의 체계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명문규정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실제로 소극적 관할분쟁은 어느 법원도 자신들이 관할권이 없으며 서로 다른 법원에서 관할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1960년 7월 25일 테크레는 자신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재판권 없음에 관한 결정 후에 의무적으로 이송(renvoie obligatoire)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2중적인 무권한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원은 관할법원에 대해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 ◇ Confrontation 【대질】

수사 또는 예심상의의 처분으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참고인, 소송청구인, 당사자 또는 다른 피고인 앞에 출석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인들끼리의 대질 또는 참고인과 피해자간에도 대질이 가능하다. 대질의 내용은 진술조서(procès-verbal d'audition)에 기재된다. 당사자들은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하여 수사관사에게 자신에 대한 진술청취 또는 신문, 참고인에 대한 심문, 대질(confrontation) 또는 범행장소에 대한 입장, 당사자에 의하여 예심에 유용한 서류의 제출명령 또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타의 모든 행위들의 수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제 81조 제 2 항의 규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청구는 특정한 행위를 언급해야 하고 진술청취와 관련된 것은 심문을 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명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전 제82-1조).

Interrogatoire,   Audition

### ◇ Confusion 【혼동, 경합】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채권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혼동이라고 한다(민법전 제1300조 참조). 한편, 완전물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제한물권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혼동 또는 경합(consolidation)이라고 표현된다. 예컨대, 용익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용익권은 소멸하며(민법전 제617조 참조), 요역지와 승역지가 동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는 경우(민법전 제705조 참조)들에 있어서 권리의 경합이나 병합 또는 혼동이라고 표현된다. 다른 한편, 혼인당시 채무자인 일방배우자의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혼입되어 부부공동재산인지 일방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의 여부가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방배우자의 채권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민법전 제1411조 제2항 참조), 이와 같이 어떤 자산이나 재산이 서로 혼합되는 경우를 *confus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아울러, 민법전 제228조에서는 이혼한 여성에 대하여는 재혼을 위한 300일간의 대혼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경우 친자관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친자관계가 불확실한 경우를 *confusion de paternité* 또는 *confusion de part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밖의 관련 용례로서, 형의 병합(*confusion des peines*)이나 권력의 집중(*confusion des pouvoirs*), 득표의 병합(*confusion des voix*) 등의 표현들이 있다.

**C.civ. Art.1301 :** La confusion qui s'opère dans la personne du débiteur principal, profite à ses caution; Celle qui s'opère dans la personne de la caution, n'entraîne point l'extinction de l'obligation principale; Celle qui s'opère dans la personne du créancier, ne profite à ses codébiteurs solidaires que pour la portion dont il était débiteur.(민법전 제1301조 :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혼동은 보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며, 보증인에게 발생한 혼동은 주채무의 소멸을 초래하지 않으며, 채권자에게 발생한 혼동은 채권자가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헌법평의회, 헌법위원회, 헌법원】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헌법기관. 현행 프랑스 헌법이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심판외에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국민투표에 대한 적법성심사, 대통령과 상원의원·국민의회의 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에 대한 확인, 입법부의 법률과 행정

부의 명령에 대한 권한배분, 대통령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과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되는데, 전직 대통령은 당연직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에 의하여 3명, 상원의장에 의하여 3명, 국민의회 의장에 의하여 3명이 임명되고, 헌법재판소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연직인 전직대통령은 종신제이지만 1958년 이후 거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고, 9명의 재판관은 임기 9년으로 임명된다.

**Constitution Art.56 al.1** : Le Conseil Constitutionnel comprend neuf membres, dont le mandat dure neuf ans et n'est pas renouvelable(헌법 제56조 제 1 항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 Conseil d'Etat 【국사원, 국참사원, 최고행정법원】

국사원(C. E.)은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으로서의 자문기능과 행정소송에 관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재판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기관이다. 최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이지만 재판기능과 함께 행정입법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 명칭을 최고행정법원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행정법원의 법관들 또한 법관학교 출신이 아닌 국립행정학교(ENA)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2원적 재판질서가 갖는 특징을 보여준다. 정부제출 법률안, 헌법 제38조에서 제정되는 대통령령의 법률명령안, 헌법 제37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행정입법안 등에 관한 심사와 중요 정책적 사안이나 행정사안의 의무적 혹은 임의적 심사를 담당한다.

국사원은 ①부원장(vice-président), ②각부(section)의 장, ③국사원최고위원(conseiller), ④조사관(maitre des requêtes), ⑤연구관(auditeur des requêtes, 1급과 2급)으로 구성된다. 국사원의 조직은 소송부(la section du contentieux)를 비롯한 6개의 부(section)로 구성되어 소송부를 제외한 행정에 관한 5개의 부는 보고와 조사에 관한 부를 제외하고는 현존 각 부처에 대응한다. 보고·조사부(section du rapport et des études)는 총리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일반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conseil)임무를 수행한다.

프랑스 국사원은 공화력 8년 3월(frimaire) 18일(1799년 11월 9일) 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1872년 5월 24일 법률에 의해 국사원의 독립성이 강화된 위임재판(la

justice déléguée)이 되면서 국사원은 행정사건의 최고법원이 되었다. 구체제(Ancien Régime)하의 국왕자문위원회(Conseil du Roi)에 뿌리를 두었지만 전자에 비해 정부에 대해 중요한 자문적 권한과 함께 행정재판적 기능을 담당한다. 행정재판과 관련해서 국사원은 행정재판의 최고법원으로서 사법재판의 대법원(파기원, Cour de cassation)에 대비된다. 국사원은 일정한 재판에서는 항소심 혹은 단심인 최종심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1987년 설립된 행정항소법원의 판결(arrêts)에 대한 상고심과 특별행정기구의 사법적 결정에 대한 파기심이 된다. 항소심으로는 1심 행정법원의 판단(jugements)에 대한 항소사건과 코핀과 데파트망의 지방선거의 적법성확인소송의 항소심이 된다. 그리고 국사원은 중앙부서의 데크레, 명령, 레지용과 유럽연합의 선거소송, 전국적 관할을 가진 위원회기구의 결정에 대한 제소에 대한 1심이자 최종심이 된다. 한편 2000년 6월 30일 법률이 발효된 2001년 1월 1일부터 국사원의 소송부 부장(Président de section de la section du Contentieux)은 긴급심리 판사(juge des référés)를 임명한다.

#### ◇ Conseil de famille 【 친족회 】

친족회는 미성년자(mineurs) 및 성년무능력자(majeurs incapables)에 대한 후견인(tuteur), 후견감독인(subrogé tuteur)과 함께 후견사무를 행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친족회는 후견감독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후견인과 후견법관(판사)(juge des tutelles)은 친족회의 구성원은 아니나(민법전 제407조 참조), 후견법관이 친족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민법전 제410조, 제415조 참조). 친족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친족회원은 후견법관이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친지 중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명하며, 이 경우 법관은 친족회원으로 될 자와 피후견인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민법전 제408조 참조).

한편, 친족회의 소집에 있어서는 1주일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민법전 제411조), 친족회원은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나 친족회원 아닌 피후견인의 혈족이나 인척을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민법전 제412조). 친족회는 무능력자의 일반적인 생활조건을 규율하고, 후견인에 의한 후견사무를 감독한다. 특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명의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친족회의 동의가 없는 한, 후견인은 특히 피후견인을 위한 차용행위 및 부동산이나 영업재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및 고가의 동산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의 중요부분을 구

성하는 동산 등의 양도나 이들 재산에 대한 부담을 설정하지 못한다(민법전 제457조 참조). 친족회의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을 행할 수 있으며, 참석자가 반수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은 회의를 연기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민법전 제415조 참조). 한편,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 그리고 친족회원 또는 검사는 친족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족회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무효인 의결에 기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민법전 제416조 참조).

**C.civ. Art.458** : Le conseil de famille, en donnant son autorisation, pourra prescrire toutes les mesures qu'il jugera utiles, en particulier quant au remploi des fonds.(**민법전 제 458조** : 친족회는 (후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함에 있어서 특히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하여 지시할 수도 있다.)

### ◇ Conseil des ministres 【국무회의】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주재한다. 정부의 여러 심의기관 중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상과 각료가 참석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집단적 성격의 기구로서 헌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제 3 공화국의 헌법적 법률에서 채택된 이래 정착되어온 국무회의는 제 4 공화국과 제 5 공화국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제 5 공화국 정부형태를 반대통령제, 의원정부제 혹은 혼합정부제라 하는 바, 국무회의도 미국식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무회의처럼 비헌법 기관이 아니며 의원내각제에서처럼 수상에 의하여 주재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국무회의는 법률명령(ordonnance)과 데크레(décret)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정부제출법률안도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또한 수상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민의회 앞에 정부의 시정방침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정책의 선언에 관해 정부의 책임을 제기한다. 12일 이내의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데크레를 통해서 발동된다. 이외에 행정최고재판소 재판관이라든가 대사 등 헌법 제12조 제 3 항과 제 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공직자들은 국무회의에서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Constitution Art.9**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éside le Conseil des Ministres.(**헌법 제 9 조** :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 ◇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경제사회위원회】

헌법 제11장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으로 지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명령(ordonnance)안 또는 명령안과 더불어서 의원제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경제사회위원회는 양원에 법률안과 명령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이를 위하여 한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경제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이름으로 수상이 자문을 구하는데, 정부제출법률안과 계획 가운데 예산법률안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자문을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초기에 위원들이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위원회는 23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163명은 다양한 단체들에 의하여 임명되고 68명은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Constitution Art.69 al.1** : Le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saisi par le Gouvernement, donne son avis sur les projets de loi, d'ordonnance ou de décret ainsi que sur les propositions de lois qui lui sont soumis.(헌법 제69조 제 1 항 : 경제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명령 안, 명령 안과 더불어 의원제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 ◇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고등사법위원회, 고등사법평의회, 최고사법관회의】

판사와 검사들의 인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기구. 처음에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행정기구로서 1946년 헌법에 규정된 위원회였다. 그러나 1993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판사들뿐만 아니라 검사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판사들과 검사들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임명과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판사가 상급판사로 임명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명시적 의견이 요구된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단순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 징계와 관련하여 판사에 대한 징계는 재판기관의 성격을 가지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한 수준에 그친다. 위원회는 두 개의 회의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판사들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들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이다. 각

회의는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판사들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다섯 명의 판사, 한명의 검사, 한명의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 재판관, 그리고 국회와 사법조직 내에 속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 국민의회의장, 상원 의장이 각각 한사람씩 지명한다. 검사들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는 위와 동일하나 다섯 명의 판사와 한 명의 검사 대신 다섯 명의 검사와 한 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Constitution Art.65 al.1** :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st présidé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Ministre de la Justice en est le vice-président de droit. Il peut supplée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헌법 제65조 제 1 항 : 고등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법무부장관은 당연직 부의장이 된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Consentement à être lié par un traité 【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참가한 국가들이 서명, 비준 등에 의하여 해당 조약에 당사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동의 표시의 방법은 해당 조약에서 규정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동의를 표시한 국가들은 해당 조약에 규정된 조약 발효요건이 충족이 되면,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된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12, par.1** : Le consentement d'un Etat à être lié par un traité s'exprime par la signature du représentant de cet Etat: lorsque le traité prévoit que la signature aura cet effet.(조약법협약 제12조 제 1 항 : 조약에 구속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는 그 조약이 서명이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대표의 서명에 의하여 표시된다.)

#### ◇ Consignation 【 공탁, 인도 】

공탁이라 함은,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물을 임치하고, 그 공탁소(caisse des dépôts; caisse publique)를 통하여 일정한 자가 공탁된 물건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또는 보관 등)을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행하는 공탁(민법전

제1257조 이하 참조), 감정비용의 공탁(신민사소송법전 제269조), 압류의 말소를 위하여 행하는 공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변제공탁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면책되며, 유효한 변제공탁이 있는 후에는 공탁물에 대한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법전 제1257조 제2항 참조). 한편,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채권자에 의하여 공탁이 수락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그의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민법전 제1261조).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공탁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이익을 해하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민법전 제1262조 참조). 그리고 기판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공탁의 유효성이 인정된 후에, 채무자가 그의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권의 이행을 담보한 선취특권 또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한다(민법전 제1263조 참조). 다른 한편, consignment이라는 표현은 위탁매매에 있어서 수탁자인 위탁매매인(commissionnaire(consignataire) chargé de la vendre)의 수중에 상품이 인도(remise d'une marchandise)된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C.civ. Art.1260** : Les frais des offres réelles et de la consignment sont à la charge du créancier, si elles sont valables.(민법전 제1260조 : 현실제공 및 (변제)공탁이 유효하게 행하여진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 Continuité (principe de -) 【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원칙 】

일명 로랑의 원칙(Lois de Laurent)중 하나로서 공공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성원칙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정법률에도 반영되는 데 행정판례를 통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C.E. 7 août 1909, Winkell). 우선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은 국가와 그 작용의 계속성을 의미한다. 국방, 경찰, 사법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국사원(Conseil d'Etat)은 1918년의 Heyriès판결에서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은 국가 생활에 필수적이고 예외적 상황(circonstance exceptionnelles)하에서는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보장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C.E. 26juin, Heyriès, Rec.651). 이러한 입장은 국가의 주권과 방위라는 기능수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강화라는 경찰국가(Etat-gendarme) 시기에 강조가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복

지국가(Etat providence)의 발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만족에 중심이 놓이게 되었다.

공공서비스가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경우, 계속성의 부재는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공공서비스의 계속성(continuité)은 행정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보르도시의 야간 가스 가로등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C.E. 30 mars 1916, Cie générale d'éclairage de Bordeaux, Rec., 125). 다만 국사원은 동 판결에서 공급업자에게 발생한 예견할 수 없는(imprévision)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의 전보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 Constitution 【헌법, 헌법전】

구체적 의미의 헌법전을 의미한다. 즉 프랑스 ‘제 5 공화국 헌법’이라든가 할 때처럼 구체적인 헌법전을 의미한다. Constitution과 구별되는 개념이 droit constitutionnel(헌법)과 loi constitutionnelle(헌법률)이 있다. droit constitutionnel은 추상적인 의미의 헌법을 의미한다. 어떤 특정 헌법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헌법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loi constitutionnelle(헌법률)은 헌법을 개정할 때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는 헌법을 말한다.

### ◇ Constitution rigide 【경성헌법】

헌법개정에 있어서 일반 법률보다 개정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개정을 요이하지 않게 하고 있는 헌법.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대부분 경성헌법이듯이 프랑스의 헌법도 경성헌법이다.

### ◇ Constitution souple 【연성헌법】

헌법개정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헌법. 대개의 경우 법률과 동일한 개정절차로 개정된다.

## ◇ Constitutionnalisme 【입헌주의】

전통적인 의미로 입헌주의는 성문헌법이 나타나는 역사적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입헌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다. 입헌주의는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다.’ 이러한 입헌주의 사상은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오늘날도 중요한 원리가운데 하나이다. 입헌주의는 18세기에는 절대 군주제에 대한 의미로 입헌 군주제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절대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로 입헌(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Le constitutionnalisme désigne le mouvement, qui est apparu au siècle des Lumières, et qui s'est efforcé, d'ailleurs avec succès, de substituer aux coutumes existantes, souvent vagues et imprécises et qui laissaient de très grandes possibilités d'action discrétionnaire aux souverains, des constitutions écrites conçues comme devant limiter l'absolutisme et parfois le despotisme des pouvoirs monarchiques.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나 입헌주의는 불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관습을 대체하고자 하였고 주권자에게 큰 재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절대주의를 제한하고 군주권력의 독재를 제한하는 성문헌법의 운동을 의미한다.(Pierre Pactet, *Institutions po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nel*, 16e éd., Armand Colin, 1997, p.65.7)】

## ◇ Consuls de carrière 【직업영사】

과견국의 공무원으로서 영사업무를 본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본무영사(本務領事)라고도 하며, 명예영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fonctionnaires consulaires

## ◇ Consuls honoraires 【명예영사】

본직을 별도로 갖고 있으면서, 명예직으로서 특정 국가의 영사로서 역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예영사는 접수국 내의 유력 인사들 중에서 과견국에 의하여 선임된

다.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특권과 면제는 명예영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동 협약 제3장에 규정되어 있듯이 최소한의 예우만이 보장될 뿐이다.

□□ fonctionnaires consulaires

### ◇ Continuité de la nationalité 【국적의 계속】

한 국가의 영토상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외국인을 위하여 그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에 나서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시로부터 외교적 보호 시점까지 피해자가 그 보호국의 국적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이것을 국적 계속의 규칙이라고 한다. 지난 날 국적 계속이 요구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국적 계속의 종료 시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양 시점간의 국적의 계속성의 유지에 대해서도 관례들과 실행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하여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부정적 견해들이 적지 않다.

### ◇ Contradictoire (principe du -) 【대심(對審)주의, 대심판결】

사법절차(소송전과 진행중)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의 평등성 및 공정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당사자 각각에 대하여 소송 상대방의 요구 또는 죄책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와 서류들에 대한 비판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그것들에 대한 열람을 강제하도록 한다. 판사는 이 원칙의 준수를 감시한다. 이 용어는 또한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의 참석하여 내려진 판결을 지칭하기도 한다.

**CPP Art.320** : Après chaque audience, il est, par le greffier de la cour d'assises, donné lecture à l'accusé qui n'a pas comparu du procès-verbal des débats, et il lui est signifié copie d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ainsi que des arrêts rendus par la cour, qui sont tous réputés contradictoires.(형사소송법전 제320조 : 피고인이 경고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장은 강제력에 의해 법원에 구인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판장은 또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항거(거부)를 확인하는 조서의 낭독이후에 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변론(débat)에 부칠 수 있다. 각 공판 후에 중죄법원의 서기에 의해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론조서를 열람케 하며 그에게 공소관의 논고사본과 대심재판으로 간주되는 법원의 판결문의 사본이 송달된다.)

## ◇ **Contrainte** 【강요(강제)】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의 물리력하에서 행위한 자의 형사책임을 조각하는 비귀책성사유 중의 하나이다. 형법전 제122-2조는 “저항할 수 없었던 물리력(force) 또는 강제(contrainte)의 영향하에서 행위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는 의지(volonté)를 말살함으로써 행위자의 온전한 자유를 없앤다. 정신질환 또는 신경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고의요소(élément moral, 주관적 구성요건)와 형사책임을 동시에 소멸시킨다. 강제의 종류는 물리적 강제와 정신적 강제로 구분된다. 물리적 강제는 신체에 대해 행사되는 물리력을 전제로 하며 이것은 다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별된다. 외적 요인은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의 물리력으로부터 올 수 있으며 동물 또는 제 3 자로부터도 올 수 있다. 내적요인은 범죄의 행위자에게 내재된 원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례는 무임승차로 소추된 여행자에 대하여 극도의 신체적 피로로 인하여 하차할 지점을 놓치고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면책하고 있다. 정신적 강제는 행위자의 의지(volonté)에 가해진 압력으로 초래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행위자의 자유의사(libre arbitre)를 없앤다. 물리적 강제와 마찬가지로 외적 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별된다. 외적 요인은 제 3 자에 의한 위협 또는 도발(provocation)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내적 요인은 행위자의 열정, 흥분 또는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형태의 내적강제는 형사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Imputabilité,   Responsabilité pénale

## ◇ **Contrainte judiciaire** 【사법강제】

Contrainte par corps

## ◇ **Contrainte par corps** 【노역장유치】

구치소(maison d'arret)에서 집행되며 형사법원에 의해 일반법의 죄수에게 선고되는 자유박탈의 조치로서 국고에 벌금 또는 소송비용의 납입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유

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역장유치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최소 150유로 이상의 벌금 또는 다른 비용지불의 선고와 함께 형사법원이 정하는 유치기간은 벌금 또는 다른 재산형의 총계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소송법전 제750-1조에 의해 최고 4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압박수단은 형사분야에만 존재하며 소년범, 정치범,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부대사소에 의한 손해배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역장유치의 집행은 벌금 또는 비용의 지불의무를 면제시키지 않는다. 노역장유치는 2004년 5월 9일의 『사법부의 범죄 발전 적응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사법강제(*contrainte judiciaire*)로 대체되었다.

### ◇ *Contrat d'adhésion* 【부합계약】

*Adhésion*의 사전적 의미는 가입, 가맹, 부합 등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등의 내용에 동의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합계약은 사전에 당사자 일방이 준비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을 일괄 승인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을 지칭한다. 20세기 초에는 학설상 부합계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쉽지 않아서 이후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계약유형이다. 즉, 사회가 산업화되고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가 구축되게 되고, 따라서 특정한 유형의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정할 수 없거나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시장 내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연유하는 면도 있겠으나, 당사자들 간에 힘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보험, 운송, 전기나 가스의 공급, 고용 등의 계약에서 그 예를 살필 수 있다. 이러한 부합계약에서는 강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는 현상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특히 문제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부합계약에 특유한 법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법리(*droit commun*)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면책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들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다른 한편, 부합계약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당약관 또는 부당조항(*clauses abusives*)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보호법에서도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

## ◇ Contrat 【 계약(서) 】

채권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기초한 약정 또는 합의(convention) 중에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특히 계약이라고 한다. 즉, 민법전 제1101조에서는, “계약은 1인 또는 수인이 다른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다”(le contrat est une convention par laquelle une ou plusieurs personnes s'obligent, envers une ou plusieurs autre, à donner, à faire ou à ne pas faire quelque chose)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은 약정의 일 유형이나 약정이 반드시 계약으로 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한 경우, 이것은 약정(convention)이기는 하나 계약(contrat)은 아닌 것이다. 한편, contrat가 convention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법률(loi)이나 판결(jugement)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私人들의 의사사치의 표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아울러, 실무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확인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계약서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다른 한편, 계약은 그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주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형식상의 요건에 따라, 낙성계약(contrat consensuel), 요식계약(contrat formel), 엄강계약(contrat solennel), 요물계약(contrat réel) 등을 구별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실체상의 요건에 따라, 부합계약(□□ contrat d'adhésion), 담합계약(contrat de gré à gré), 집단계약(contrat collectif), 개별계약(contrat individuel)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무관계가 쌍무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쌍무계약(contrat synallamatique, contrat bilatéral)과 편무계약(contrat unilatéral)으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유상계약(contrat à titre onéreux), 무상계약(contrat à titre gratuit, contrat de bienfaisance, contrat désintéressé), 사행계약(□□ contrat aléatoire), 등가교환계약(□□ contrat commutatif)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행 기간에 따라 즉시이행계약(contrat instantané)과 계속적 계약(contrat successif, contrat à exécution successive)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해석에 의한 분류로서 유명계약 또는 전형계약(contrat nommé)과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contrat innommé)이 있다. 관련용례로서, 저작권계약(contrat à compte d'auteur), 행정계약(contrat administratif), 결합계약(contrat conjonctif), 직업훈련계약(contrat d'apprentissage), 출판계약(contrat d'édition), 노-하우 전달계약(contrat de

communication de savoir-faire), “도급계약”(contrat d'entreprise), “하도급계약”(contrat de sous-traitance), 운송계약(contrat de transport), 근로계약(contrat de travail), 라이선스계약(contrat de licence), 보수계약(contrat de maintenance), 부부재산계약(contrat de mariage), 공연계약(contrat de représentation), 실업고용계약(contrat de solidarité) 등이 있다.

**C.civ. Art.1126 :** Tout contrat a pour objet une chose qu'une partie s'oblige à donner, ou qu'une partie s'oblige à faire ou à ne pas faire.(민법전 제1126조 : 모든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이전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Contrats aléatoires 【사행계약】

계약의 유형 중 유상의 쌍무계약(contrat synallagmatique à titre onéreux)은 다시 등가교환계약 내지 실정계약(contrat commutatif)과 사행계약(contrat aléatoir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당사자 각각이 자신이 받은 것과 등가의 것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며, 후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급부의무가 계약성립 후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사행계약은 우연성 있는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등가교환계약과 구별된다. 따라서 등가교환계약과 사행계약은 무상계약일 수 없다. 민법전에서는 제1964조에서 사행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contrat d'assurance), 모험대차(prêt à grosse aventure: 모험대차는 해상법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해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주의 대주에 대한 대여금의 반환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는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이자부대차계약을 말함), 노름(jeu) 및 내기(pari), 종신정기금계약(contrat de rente viagère)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전 제1104조 제2항에 따르면, 사행계약은 급부의 범위가 불명료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행되는 계약에는 사행성이 있게 마련이나, 그러한 모든 계약들이 사행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등가성이 우연적 기회에 좌우될 경우에만 사행계약인 것이다. 환언하면, 당사자 일방의 우연한 손실이 타방에게는 이득으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사행계약은 그 본질 면에서 사행성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사행계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본질 면에서 사행계약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보험계약인데, 이는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대개는 피보험자) 모두 보상되는 위험의 범위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의 발생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좌우되어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름이나 내기, 종신정기금계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경우, 당연히 사행계약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행성은 기회나 위험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좌우될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견해와 같은 주관적 사정에 좌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행성의 이중적 측면은 사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의 사행성부재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시 구별실익이 있다. 즉,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원인의 부재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으나, 사행성의 부재를 이유로 하여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행성부재의 판단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한편, 사행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도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등가교환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행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도, 착오를 이유로 한 무효나,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사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급부불균형 또는 불공정성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하게 될지를 계약체결시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행성은 급부불균형(불공정성)의 우위에 있다”(l'aléa chasse la lésion)는 표현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ur de cassation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게 사행성에 대한 (반대급부적) 의무의 가치를 판단할 수단이 주어진다”고 함으로써,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부동산을 시가의 1/5이라는 지나치게 얇가로 매매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용익권을 인정한다든가(Cass. civ. 3e, 3 oct. 1991, Bull. civ. III, n° 219), 임종이 가까운 노인과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한 경우(Cass. civ., 28 fév. 1951, G.P., 1951, I, p. 247)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행계약에는 동법의 적용도 배제된다.

**C.civ. Art.1104, al.2 :** Lorsque l'équivalent consiste dans la chance de gain ou de perte pour chacune des parties, d'après un événement incertain, le contrat est aléatoire.(민법전 제1104조 제 2 항 : 등가성이 불확실한 사건으로 인하여 각 당사자에 대하여 이득 또

는 손실의 우연성 또는 기회(chance)가 있는 경우, 계약은 사행적이다.)

**C.civ. Art.1964, al.1** : Le contrat aléatoire est une convention réciproque dont les effets, quant aux avantages et aux pertes, soit pour toutes les parties, soit pour l'une ou plusieurs d'entre elles, dépendent d'un événement incertain.(민법전 제1964조 제1항 : 사행계약은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한 효력이 당사자의 전부 또는 당사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하는 상호적 합의이다.)

### ◇ Contrats commutatif 【 등가교환계약 】

사행계약과 비교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등가교환계약은, 계약당사자 각각이 자신이 받은 것과 등가의 것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교환되는 상호간의 이익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에 이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또한 평가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등가적인 급부의 교환이 있다는 것과 관련, 이를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반드시 정확한 등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예컨대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가치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금의 지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법전 제1104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계약성립시에 쌍방의 급부의무 및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행계약과 구별되는 것이다.

**C.civ. Art.1104, al.1** : Il est commutatif lorsque chacune des parties s'engage à donner ou à faire une chose qui est regardée comme l'équivalent de ce qu'on lui donne, ou de ce qu'on fait pour elle.(민법전 제1104조 제1항 : 계약에서 당사자 각자가 자신에게 주거나 행해지는 것과 등가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주거나 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등가교환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 ◇ Contravention 【 위경죄 】

범죄의 경중에 따른 분류 중 중죄, 경죄 다음의 범주에 포함되는 범죄이다. 위경죄는 자유형이 배제되어 있으며 벌금의 액수에 따라 5단계로 다시 세분된다. 위경죄 1

급에서 4급까지는 근린법원(la juridiction de proximité)에서 재판이 이뤄지며 공소의 수행은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검사장의 통제와 지시하에 경감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에 의해 이뤄진다. 위경죄 5급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사가 주재하는 경찰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공소의 수행은 지방법원 검사장 또는 그의 대리인(편검사)에 의해 이뤄진다.

**CP Art.111-2** : La loi détermine les crimes et délits et fixe les peines applicables à leurs auteurs. Le règlement détermine les contraventions et fixe, dans les limites et selon les distinctions établies par la loi, les peines applicables aux contrevenants.(**형법전 제111-2조** : 법률은 중죄와 경죄를 규정하고 그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정한다. 행정명령은 위경죄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해 수립된 한계 내에서 그리고 그 구별에 따라 위경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정한다.)

Crime,  Délit

### ◇ **Contre-mesures** 【 대응조치 】

한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국가가 그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피해국이 위법행위국에게 책임의 이행을 강요할 목적으로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 대응조치는 국제의 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대응조치는 국제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들 중의 하나이다. 지난날에는 복구(représailles)라고 지칭되었던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 ‘대응조치’(contre-mesures)라는 용어로서 통일되어 가고 있다.

### ◇ **Contreseing** 【 부서 】

국가원수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서명에 수상이라든가 장관이 부가하여 서명하는 것.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이 일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수상의 부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19조는 대통령의 수상임명권(프랑스 헌법 제8조), 국민투표부외권(프랑스 헌법 제11조), 국민의회해산권(프랑스 헌법 제12조), 비상대권(프랑스 헌법 제16조), 의회교서권(프랑스 헌법 제18조),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제청권(프랑

스 헌법 제54조), 헌법재판관임명권(프랑스 헌법 제56조), 위헌법률심사제청권(프랑스 헌법 제61조) 이외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상의 부서를,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장관들의 부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위에서 열거한 권한 이외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수상의 부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상의 동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해 나아갈 수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수상의 부서가 없어도 권한 행사가 가능한 위의 권한들도 많은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면 수상임명권도 의회 다수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고, 국민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와 비상대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수상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Constitution Art.19** : Les acte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tres que ceux prévus aux articles 8 (1er alinéa), 11, 12, 16, 18, 54, 56 et 61 sont contresignés par le Premier Ministre et, le cas échéant, par les ministres responsables.(헌법 제19조 : 헌법 제 8 조, 제 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54조, 제56조, 제61조에서 정한 이외의 대통령의 행위는 수상의 부서를, 격구에 따라서는 책임 있는 장관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 ◇ Contrôle d'identité 【신원통제, 불심검문】

범죄의 발견 또는 범인의 체포를 위한 사법경찰상의 목적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도로 또는 공공장소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자 또는 불특정인에 대하여 신분증제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이에 불응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4시간 동안의 구금(garde à vue)과 사진촬영이나 지문채취 등의 신원확인(vérification d'identité)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CPP Art.78-1** : Toute personne se trouvant sur le territoire national doit accepter de se prêter à un contrôle d'identité effectué dans les conditions et par les autorités de police visées aux articles suivants.(형사소송법전 제78-1조 : 영토상에 위치하는 모든 사람은 뒤에 이어지는 조항에 규정된 요건하에 경찰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신원통제(controlé d'identité)에 응해야 한다.)

Garde à vue

### ◇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 합헌성 통제, 위헌심사 】

위헌심사를 일컫는 말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 등 모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행해질 수 있다. 프랑스의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담당한다. 프랑스 위헌법률심사의 특징은 사전적 규범통제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한다는 점이다. 위헌법률심사청구권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상, 국민의회 의장, 상원 의장, 6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ordinaires se définit par deux caractéristiques simples: il est facultatif: il est a priori. 【보통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임의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전적이라는 것이다.(Dominique ROUSSEAU,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5e éd., Montchrestien, 1999, p.171)】

### ◇ **Contrôle judiciaire** 【 사법통제 】

수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가 선고하는 처분으로 경죄 또는 중죄의 피예심자(예심대상자)로 하여금 석방된 상태에서 법원의 처분에 응하며 일정한 의무(특정 장소에 출입 또는 특정인과 만나는 것을 금지, 정기적으로 경찰서 출두하는 것 등)를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통제는 1970년 7월 17일 법률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138조 이하에 의해 규율된다. 이것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방어를 조화시키는데 있다.

**CPP Art.113-5** : Le témoin assisté ne peut être placé sous contrôle judiciaire ou en détention provisoire, ni faire l'objet d'une ordonnance de renvoi ou de mise en accusation. (형사소송법전 113-5조 : 보조참고인에 대하여는 사법통제하에 두거나 구속할 수 없으며 이송명령 또는 재판법원의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Mise en examen

### ◇ **Contrôle(pouvoir) hiérarchique** 【 위계적 통제 】

계층적 조직체의 장이나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의 하나로서

전자는 후자에 대해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국사원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이를 인정한다(C.E. 30 juin 1950, Quéart, Rec. p. 413). 공무원의 경우 위계상 상급자는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징계권의 행사를 포함한다. 특히 상급기관은 하위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행사한다. 위계적 통제권의 내용은 행정조직법상의 분산의 내용(①지시권, ②취소권, ③변경권)과 중복된다.

①지시권(pouvoir d'instruction)은 행정부서 책임자에게 하급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의견서 (documents), 통첩(circulaire)이나 훈령(instruction)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어떻든 간에 우선적으로 부서내부에서 해석되고 적용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지시권은 규범의 제정을 포함하지 않고 미리 존재하는 법적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②취소권(pouvoir d'annulation)은 하위기관의 결정의 법적 구성을 제거한다. 그 특성상 취소권은 소급효를 가지며 그 결정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③위계적 감독기관은 자신이 행사하는 별도의 다른 결정인 변경권(le pouvoir de réformation)을 통해 처음의 하급기관의 결정과는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변경권은 취소와는 달리 소급효를 가지지는 않는다. 상급기관의 변경권은 장래효만 가지면서 하급기관의 결정에 갈음한다.

□□ Déconcentration

### ◇ Convention fermée 【 폐쇄조약 】

특정의 국가들에게만 참가가 개방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러한 조약들은 특정 국가들 간에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만큼, 통상적으로 모든 교섭국들이 비준하는 것을 발효 요건으로 한다.

### ◇ Convention ouverte 【 개방조약 】

모든 국가들에게 참여가 개방되는 조약들을 말한다. 국제공동체의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다자조약들은 가급적 많은 수의 당사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단 일정 수의 국가들의 비준 또는 가입으로서 발효하도록 하고, 그 외의 여타의 국가들도 계속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놓고 있다.

## ◇ Copropriété 【 공동소유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복수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공동소유라고 하며, 공동소유자(copropriétaire) 각각은 분수적 지분(예컨대, 1/2, 1/3, 1/4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지분(quote-part)은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다른 공동소유자와 경합적으로 일정한 권리(사용수익권 또는 관리권)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학설상으로는, 공동상속재산(indivision héréditaire)과 같은 통상공동소유(copropriété ordinaire)와 인접부동산의 경계벽과 같은 강제적 공동소유(copropriété forcée ou perpétuelle)를 분류하기도 한다. 공동소유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전 제815조 이하와 제1873-1조 이하 등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의 공동소유에 있어서, 공동소유자 상호간에는 공유의 유지를 강제당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방법에는 현물분할, 가액분할 등의 방법이 있다(민법전 제815조 참조). 아울러, 공유관계의 유지시에는 모든 공유자는 각자 공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민법전 제815-2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민법전 제815-3조).

한편, 실무상으로는 다수의 전유부분(parties privatives)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소유형태(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 경우, 공동소유는 통로나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parties communes)과 벽이나 기초공사와 같은 그 이외의 구조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집합건물 내지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는 특히 1965년 7월 10일 법 제65-557호와 1985년 12월 31일 법 제85-1470호에 의한 특별한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Loi n° 65-557 du 10 juillet 1965 Art.13** : Le règlement de copropriété et les modifications qui peuvent lui être apportées ne sont opposables aux ayants cause à titre particulier des copropriétaires qu'à dater de leur publication au fichier immobilier.(1965년 7월 10일 (공동소유에 관한)법 제65-557호 제13조 : 공동소유에 관한 규약과 그에 대한 변경은 부동산등기부상의 부동산별 색인에 그 내용이 공시된 이후에만 공동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Corruption 【 부패 】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 국가의 대표가 타국에 의하여 매수된 결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조약 무효의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전권대표가 타 교섭당사국의 매수에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경우, 그 대표의 소속국은 그러한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 50 :** Si l'expression du consentement d'un Etat à être lié par un traité a été obtenu au moyen de la corruption de son représentant par l'action (...) d'un autre Etat (...), l'Etat peut invoquer cette corruption comme viciant son consentement à être lié par le traité.(**조약법협약 제50조 :** 한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국가의 동의 표시가 타국의 행위에 의한 그 국가 대표의 부패에 의하여 얻어진 경우에는, 그 국가는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자신의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이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 ◇ Cour d'appel 【 항소법원 】

Cour d'appel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제 2 심 법원으로서, 제 1 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하며, 우리법에서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토를 기준으로 전국에 30개의 항소법원이 있으며(1996년 기준), 각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2개 내지 4개의 道(département)를 관할하나, 파리나 렌느 항소법원과 같이 5-6개의 도를 관할하는 경우도 있다. 항소법원은 관할의 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에 위치함이 일반적이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작은 도시나 ‘구시대의 고등법원’(parlement)이 위치하던 도시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한편, 항소법원의 조직과 관련하여, 각 항소법원에는 민사부(chambre civile), 형사부(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사회부(chambre sociale)가 있다. 항소법원장은 premier président으로, 각 부의 장은 président de la chambre 또는 président de la section으로, 그리고 항소법원의 재판관은 conseiller로 표현된다. 다른 한편, 항소법원에서의 보통법정(audience ordinaire)에서는

각 부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나, 파기원(□□ cour de cassation)에 의하여 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5인으로 구성된다.

La partie qui s'estime lésée, par le jugement rendu en premier ressort, peut porter le litige devant une juridiction supérieure, la Cour d'Appel, pour obtenir une décision plus favorable.(제 1 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Cour d'assises 【 중죄법원 】

일반 중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원을 말한다. 중죄뿐만 아니라 중죄와 병합된 경죄와 위경죄도 재판을 하며 사실은 중죄가 아니지만 죄명을 잘못 적용하여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도 재판권을 행사한다. 2000년 6월 15일의 『무죄추정의강화에 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중죄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다른 중죄법원이 맡는다. 중죄법원은 3명의 직업법관과 선거인 명부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프랑스 시민의 배심원들로 구성된다. 배심원은 1심의 경우는 9명이며 항소심의 경우는 12명이다. 원칙적으로 중죄법원은 도청소재지 또는 항소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의 소재지에 설치되며 비상설법원이다.

### ◇ Cour de cassation 【 파기원, 민사대법원 】

Cour de cassation은 민사 및 형사사건의 상고사건을 관할하는 ‘최고사법재판기관’(Cour suprême)으로서, 한국법에서는 파기원, 파월원, 민사대법원, 대법원 등의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동법원은 총 6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의 민사부(chambre civile)와 1개의 형사부(chambre criminelle)가 그것이다. 5개의 민사부 중에서 민사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는 협의의 민사사건을 담당하며, 민사 제 4 부는 상사부(chambre commerciale)이고, 민사 제 5 부는 사회부(chambre sociale)이다. 판결법정으로 는 각 ‘부’(chambre) 이외에도 ‘혼합부’(chambre mixte) 및 ‘연합부’(assemblée plénière)가 있다. 1967년에 있는 법원조직의 개편 이전에는 하급심과 파기원간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안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chambres réunies(합동

부)를 조직하여 해결하기도 하였으나, 1967년 이후에는 연합부에서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 파기원은 법원에서 통일된 법률해석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심이며, 따라서 법률위반이나 월권행위 또는 관할위반 등의 상고사유에 기초한 하급심의 중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적용문제와 관련한 파기신청을 관할한다. 다른 한편, 1991년 5월 15일법에 의하여, 사실심법원이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하여 파기원의 의견(avis)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파기원의 의견이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La Cour de Cassation casse les décisions d'un tribunal et renvoie l'affaire devant un tribunal identique.(파기원은 특정한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 ◇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 공화국재판소 】

프랑스의 공화국재판소는 정부구성원의 직무상 행위시 중죄와 경죄(crimes ou délits)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헌법상 기관이다.

현재 프랑스 헌법 제10장이 공화국재판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 제 68-1조 제 1 항은 “정부구성원은 그 직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로서, 그 행위시에 중죄 또는 경죄의 성격을 띠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 항에서 “공화국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 3 항에서는 “공화국재판소는 중죄(重罪) 및 경죄(輕罪)의 정의와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형벌의 결정에 구속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68-2조가 공화국재판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 1 항에서는 “공화국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국민의회와 상원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고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양원의 총선거 또는 개선 후 양원에서 선출된 12명의 국회의원과 3명의 대법원(Cour de cassation)판사들로 구성된다. 공화국재판소 소장은 대법원판사들 가운데 한사람이 맡는다”라고 규정하여 공화국재판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 2 항은 “정부구성원의 직무상 행한 행위가 중죄나 경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사위원회(Commission des requêtes)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제소권이 일반국민에게도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 3 항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절차라든가 대법원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에게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 항은 대법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가지고 공화국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 5 항은 공화국재판소의 재판절차라든가 조직에 관하여 조직법률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Constitution Art.68-1 al.1** : Les membres du gouvernement sont pénalement responsables des actes accompli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et qualifiés crimes ou délits au moment où ils ont été commis.(헌법 제68-1조 제 1 항 : 정부구성원은 그 직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로서, 그 행위시에 중죄 또는 경죄의 성격을 띠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 ◇ Courrier diplomatique 【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 】

외교행량을 수송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외교신서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 ◇ Coutume bilatérale 【 양자적 관습 】

두 국가 간에 형성되는 국제관습을 가리킨다. 국제관습법은 양자간의 관습에 기초하여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인도 영토 통행권』(Droit de passage en territoire indien) 사건에 관한 1960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다.

### ◇ Coutume 【 관습(법) 】

관습 또는 관습법이라 함은 민중의 전통에 기초한 법규범으로서, 그 발생기원이 국가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성문화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현실속에서 계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면서(diuurnus usus: pratique constante), 강제력을 갖는 것으로 확신(opinio necessitatis: conviction de son caractère obligatoire)을 주게 된 결과, 법적 강제력을 발생시키게 된 것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관습법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직업적인 실무에서 유래된 기술적인 원칙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법상의 법언에 기원하는 것도 있다. 다른 한편, 여성이

혼인을 함에 있어서 남편의 성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고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단순한 관행 또는 관습(usage)에 불과하며, 반면 관습법은 그 적용영역이나 강제력이라는 점에 비추어 관행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서 법원(source de droit)에 해당한다. 관련 용례로는 국제상관습(coutume commerciale internationale), 관습헌법(coutume constitutionnelle), 국제관습(coutume internationale) 등이 있다.

L'essence des constitutions démocratiques est de faire reposer la règle de droit sur la volonté populaire. Cette volonté populaire peut créer directement, sans aucune intermédiaire, la règle de droit: c'est la coutume.(민주적 헌정질서의 본체는 법규범을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의사는 어떠한 매개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법규범을 창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습법이다.)

#### ◇ Créance 【 채권, 신용, 신임 】

우선, créance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채권, 즉 채권자(créancier)가 채무자(débiteur)에게 일정한 급부(prestation)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물권과 함께 재산권(droits patrimoniaux)을 구성하는 권리이나,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배타적, 지배권임에 반하여,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 배타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과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채권은 상대적인 대인권(droit personnel)이라고 이해된다.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적(certain)이어야 하고, 채권이 “금전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liquide)이어야 하며, 또한 “기한이 도래하였을 것”(exigible)이 요구된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créance가 채권을 표창하는 채권증서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며, 외교관계에서의 신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외교관의 신임장(lettre de créance)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민법전 제1575조에 의하면, 이혼시 부부일방의 재산이 혼인당시의 재산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이혼시의 재산이 혼인당시의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 쌍방이 분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혼인 후 취득재산 분할채권(청구권)”을 “créance de participation”이라고 표현한다.

**C.civ. Art.1693** : Celui qui vend une créance ou autre droit incorporel, doit en garantir l'existence au temps du transport, quoiqu'il soit fait sans garantie.(민법전 제1693조 : 채권 또는 다른 무형의 권리를 매도한 자는 비록 담보의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권리)이 전 당시에 있어서의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Cf., C.civ. Art.1576** : La créance de participation donne lieu à paiement en argent. La créance de participation peut toutefois donner à un règlement en nature, soit du consentement des deux époux, soit en vertu d'une décision du juge, si l'époux débiteur justifie de difficultés graves qui l'empêchent de s'acquitter en argent.(민법전 제1576조 참조 : 재산분할채권(청구권)은 금전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채권은 채무자인 배우자가 금전으로 변제할 수 없는 중대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부쌍방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물로 이행할 수 있다.)

### ◇ Crime 【 중죄 】

범죄의 분류상 위경죄, 경죄보다 더 중한 부류에 해당하는 범죄들로서 중죄법원에 사물관할권이 있다. 중죄에 적용되는 형벌에 대하여는 형법전 제131-1조와 제131-10조가 정하고 있다. 자유형은 일반 중죄의 경우에는 징역(réclusion criminelle)이 정치적 중죄의 경우에는 형사구금(détention criminelle)에 처해지며 두 경우 모두 최소 10년 이상이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중죄에 대하여는 자유형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몰수, 치료명령 등과 같은 부가형이 병과될 수 있다. 사형제가 폐지되어 중죄에 대한 사형은 없다. 회사, 단체 등 법인이 범한 중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CP Art.113-5** :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à quiconque s'est rendu coupabl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comme complice, d'un crime ou d'un délit commis à l'étranger si le crime ou le délit est puni à la fois par la loi française et par la loi étrangère et s'il a été constaté par une décision définitive de la juridiction étrangère.(형법전 제113-5조 : 만일 중죄 또는 경죄가 프랑스 법률과 외국 법률에 의해 동시에 처벌되고 그것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프랑스의 형사법률은 외국에서 범해진 중죄, 경죄에 대하여 공화국의 영토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을 포함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 ◇ Crime internationale 【 국제범죄 】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국제법에 의하여 그 행위자에게 직접 개인적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으로 자행되는 경우, 그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나, 행위자 자신의 개인적 형사책임은 별개로서 추궁된다. 이러한 개인의 범죄에 대한 국제적 처벌의 효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뉴른베르그와 동경 군사재판소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1947년 UN총회는 이들 재판소 규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평화에 반하는 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을 향후 국제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법위원회로 하여금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 법전』의 편찬을 위임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그동안의 작업을 거쳐 드디어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 제5조 제1항은 재판소의 관할 대상 범죄로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집단살해죄(crime de génocide),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contre l'humanité), 전쟁범죄(crime de guerre), 침략범죄(crime d'agression)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마지막의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정의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정의가 채택될 때까지는 재판소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된다.

## ◇ Culpabilité 【 유죄성, 죄책성 】

재판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 유죄성에 관한 증거제출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추 당사자가 부담한다. 범죄체계론의 관점에서 구성요건해당성과 책임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며 책임은 다시 죄책성과 귀책성(imputabilité)의 요소로 구분된다. 귀책성은 행위자의 지적능력과 자유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형사미성년자, 정신질환자, 강요에 의한 행위는 주관적 책임조각사유가 되며 죄책성은 과책(faute)을 전제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한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법률의 착오는 객관적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CP Art.132-58 :** (···) En même temps qu'elle se prononce sur la culpabilité du prévenu, la juridiction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형법전 제132-58조 :** 경죄분야 또는 제132-63조 내지 제132-6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위경죄분야에서 법원은 피고인

이 유죄라는 것을 선언하거나 경우에 따라 위험한 또는 해악한 물건의 몰수에 대한 선고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모든 형벌을 면제시키거나 이것의 선고를 다음의 조문에 규정된 경우 및 조건하에 연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유죄성에 관한 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경우에 따라 사소에 대하여도 선고하여야 한다.)

□□ Imputabilité

### ◇ **Cummul de responsabilité** 【 배상책임의 경합 】

행정관례를 통해 발전된 이론으로서 피해자는 입은 손해의 원인이 서비스와 공무원의 인적과실에 있는 경우에 행정에 대해 양자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른바 역무상 과실(faute de service)은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 서비스의 존재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귀착되는 것을 말하고 행정법이 적용된다. 반면 인적과실(faute personnelle)의 경우 민법과 민사법원의 관할하에 있게 된다. 그런데 배상책임의 경합은 행정 혹은 공무원의 책임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매우 빈번함)에 발생한다.

배상책임의 경합은 관할법원의 1873년 7월 30일 Pelletier 결정에서 공무원의 인적책임과 공공서비스의 책임을 구별한 이래로 국사원의 관례를 통해 발전되었다. 행정법원은 법정 업무 종료시간 전에 우체국 직원이 서둘러 문을 닫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친 피해자(M. Anguet)에 대해 업무종료 시간 전에는 문을 닫아서는 안되는 우체국(행정)의 역무상 과실과 아울러 완력을 사용하여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우체국 밖으로 밀쳐낸 두 우체국직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C.E. 3 février 1911, Anguet, Rec. 146).

### ◇ **Cumul** 【 겸임, 겸직, 병합, 경합, 복수성 】

우선, 어떤 직책의 겸임이나 겸직을 의미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에게 복수의 공직이 집중되는(특히 선거에 의한 경우에는 cumul de mandats라고 표현함) 경우를 특히, cumul de fonction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겸직의 결과로 복수의 급여나 연금이 집중되는 경우를 각각 cumul de rémunération, cumul de retraites라고 표현하며, 이상의 경우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제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경우를 cumul des activités라고 표현하며, 특히 상공업자가 자신의 본업과 연관시키기 위

하여 농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를 겸업농업(cumul de professions)이라고 하는데, 겸업농업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경영을 위한 조직이나 구조를 변경함에 있어서, 농지를 법령의 제한을 넘어 확장하는 경우나 분할하는 경우를 복합경영(cumul d'exploitation)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도지사의 허가를 요한다. 관련용례로서 “réglementation des cumuls”은 농지의 무제한적인 확장이나 분할 및 상공업자의 농업에의 관여를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다음으로, cumul은 여러 다양한 표현들 속에서 부가 또는 병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형의 병합(cumul des peines)이나, 부동산점유소권과 부동산물권확인소권의 병합(cumul du possessoire et du pétitoire)이 이러한 용례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cumul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복수의 법적 평가가 경합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법적 성질의 경합(cumul de qualifications)이라든가, 소권 또는 청구권의 병존 또는 경합(cumul d'actions)이 이러한 용례에 해당하며, 특히 후자의 구체적인 예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해태하는 경우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청구하든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한국법에서와는 달리 책임의 경합(cumul des responsabilités), 특히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D ]

### ◇ **Damnum emergens** 【 현실적 손해, 적극적 손해 】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피해자가 입은 손실(*préjudice subi*) 또는 상실한 이익(*perte éprouvée*)이라는 의미에서의 적극적 손해 또는 현실화된 손해를 의미한다.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나 피해자가 입게 되는 재산적 또는 금전적 감소를 초래하는 물적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dommages et intérêts*)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적극적 손해 이외에도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또는 일실이익’(*lucrum cessans: gain manqué*)이 가산된다.

**C.civ. Art.1149** : Les dommages et intérêts dus au créancier sont, en général, de “la perte qu’il a fait”(damnum emergences) et du gain dont il a été privé, sauf les exceptions et modifications ci-après.(**민법전 제1149조** : 채권자에게 배상되어야 할 손해배상(금)은 이하의 규정에서 정하는 예외 또는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가 입은 적극적 손해 및 상실한 소극적 이익을 포함한다.)

### ◇ **Décentralisation** 【 분권 】

국가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지역적 기반을 포함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기관(*institutions*)에 대해 권한(*attribution*)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의 이전은 분권화된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의 감시(*surveillance*)하에서 일정한 자치적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국가의 행정조직의 모습은 통일성(*unité*)과 다양성(*diversité*)의 두 경향으로 대비되고, 양자 중에서 통일성에 대한 국가 의지의 구체화된 모습인 ‘집권’과 행정 차원에서 각 사회공동체의 특성에 부응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분권’으로 특징되어진다. 프랑스 공법상 분권은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는 자유로운 행정으로 대변되는 지방분권(*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과 전문화된 영조물법인(*établissement public*)을 설명하는 기술적·기능상 분권(*décentralisation fonctionnelle*)으로 구분된다. 분권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소로는 ①분권화된 기관의 법인격과 인적독립성과 ②분권화된 기관이 갖거나 부여받은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수단이

충분한가로 축약된다(R. Chapus).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면 분권(더 정확히는 지방분권)의 구성요소로 ①법인격, ②지방자치단체(*autorités locales*), ③중앙의 통제를 들고 있다(A. de Laubadère · Venezia). 분권은 행정조직상의 분산(*déconcentration*)과 의견상 유사할 수 있으나 양자가 대립되는 것은 아니고 혼용되어 나타난다.

Centralisation,   Déconcentration

### ◇ **Décision exécutoire** 【 집행결정 】

집행결정은 일방적인 행정행위 중에서 존재하는 법질서(*ordonnancement juridique*)를 변경하는 결정(*décision*)으로서 개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prérogative*)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집행결정은 권리창설적 (*créateur de droits*)행위로서 하명(*prescription*), 허가(*autorisation*), 금지(*interdiction*)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집행결정은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침해를 발생하는 경우(*acte susceptible de faire grief*)에는 행정법원의 법관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성과 비교할만한 개념이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집행결정의 반대개념인 *décision non exécutoire*과의 구별이 의미를 가지는데 이들 행위는 법질서를 변경하지 않으며,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①단순한 지시적 의미만을 가진 행위로는 조언이나 안내지침(*renseignement*), 안(案)의 공고(*annonces de projets*); ②집행결정의 준비행위인 의견이나 회신(*avis*), 자문기관의 견해서(*voeux d'un organe consultatif*), 보고서(*rapport*); ③확인(*acte recognif*); ④행정내부조치 (  *Mesure d'ordre intérieur*); ⑤법규성(구속력)없는 행정규칙인 시클래르(  *Circulaire*); ⑥재량준칙인 디렉티브(  *Directive*).

### ◇ **Décision implicite** 【 묵시적 결정 】

묵시적(*implicite ou tacite*) 결정은 정해진 기간동안 행정청이 침묵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행정행위의 발령을 표시한 경우와 반대된다. 묵시적 결정은 ①묵시적 거부결정과 ②묵시적 인용결정으로 구별된다. 묵시적 거부결정(*décision implicite de rejet*)은 “권한행정청이 4개월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을 보류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결정으로 본다”는 구(舊) 행정법원법전 R.101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2000년 4월 12일의 시민과 행정에 관한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다). 묵시적 거부결정은 1900년 7월 17일 법률에 처음 규정되어 1956년 7월 7일 법률에 의해 일반화 되었는데, 행정청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프랑스 행정소송상의 사전결정규칙(règle de la décision préalable)에 따른 미결재판의 누적을 피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의 2개월 규정외의 기간을 줄 수 있다. 예로서 1988년 7월 17일 제정된 행정정보공개법의 시행령인 1988년 4월 28일 데크레는 행정청이 1개월 동안 행정문서의 공개요청에 대한 침묵에 대해 묵시적인 거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법률의 시행령을 통해 묵시적 거부결정 절차를 두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 반면에 국사원은 행정청의 침묵이 있는 경우 묵시적인 건축허가서의 발급을 규정한 데크레는 유효하다고 하는(C.E. 20 février 1970, Commune de Bozas)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묵시적 인용결정(décision implicite d'acceptation)은 법률 및 명령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사인의 신청(demande)에 대한 행정청의 침묵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신청행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으로 본다(적극적인 묵시적 결정이 발령된 것으로 본다). 주로 건축허가(permis de construire), 철거(de démolir)와 같이 건축행정 분야에서 많이 나타난다. 묵시적 거부결정에서처럼 통상의 2월의 기간은 두고 있지 않고 다양하다. 기간이 지난(expiration du délai) 묵시적 인용결정은 권리창설결정(décision créatrice de droits)이 된다.

### ◇ Décision préalable 【 사전결정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①소장의 제출, ②원고에 관한 당사자능력 및 적격과 소의 이익, ③공서적 요건(ordre public)을 갖추어야 한다. 사전적 결정에 관한 규칙(règle de la décision préalable)은 첫 번째 요건인 소장의 제출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다. 모든 행정소송의 소장(requête)은 공공공사(travaux publics)에 관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다툼이 있는 결정(décision attaquée)이나 묵시적 거부결정의 경우(□□ Décision implicite), 신청의 보류를 증명하는 증명서류(la pièce justifiant du dépôt d'une demande)가 첨부되어야 한다. 행정행위에 관한 소송(litiges)은 결정(une décision)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1965년 1월 11일 제정된 행정소송의 기간에 관한 데크레 제 1 조를 통해 명문화되었다. 사전결정의 규칙은 월권소송의 당연히 이러한 요건이 요구되지만 반대로 완전/전면심리소송(plein contentieux)에서는 원고가 직접 법원에 행정청의 배상을 판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해관계인은 소송에 관련된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게 배상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 1789년 인권선언 】

1789년 인권선언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 1 조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 2 조에서 재산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 3 조는 국민주권, 제 4 조는 자유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를, 제 5 조는 법률에 의한 유해한 행위 금지를, 제 6 조는 평등의 원칙을, 제 7 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 8 조는 죄형법정주의를, 제 9 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 10 조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제 11 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 12 조는 공권력의 공익을 위한 행사를, 제 13 조는 납세의 의무를, 제 14 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제 15 조는 공무원에 대해서, 제 16 조는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리고 제 17 조는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각각 언급을 하고 있다. 인권선언은 헌법 前文에 표명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도 1973년 12월 27일 인정과세(Taxation d'office)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처음으로 1789년 인권선언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위 조항은 1789년 인권선언과 헌법 前文에서 엄숙하게 확인된 법 앞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1789년 인권선언이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임을 명확히 하였다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 Le peuple français proclame solennellement son attachement aux Droits de l'homme et aux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ils ont été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confirmée et complétée par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 ainsi qu'aux droits et devoirs définis dans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헌법 전문(前文) :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의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서 정의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애착을 엄숙히 선언한다.)

◇ **Déclassement** 【비법률화, 탈법률화】

□□ Délégalisation

◇ **Déconcentration** 【(행정조직의) 분산(分散)】

중앙의 의사결정권을 외곽(phérophérie)의 (파견된) 중앙의 기관을 위해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분산은 실제로는 집권의 방식에 해당하며, 분권(décentralisation)과는 본질적으로 대비된다. 그러나 분권-집권과 같이 반대개념은 아니다. 행정조직의 분산(déconcentration)은 영어식 표현으로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프랑스 행정의 특유한 중앙정부의 계층적 행정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 지방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중앙정부가 전 국토에 걸쳐 국가대표라고 불리는 Préfet와 산하의 sous-Préfet를 직접 파견하는데, 이들은 국가의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강력하게 기속되어 있으며 또한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Déconcentration(데콩상트라시옹)은 프랑스 행정을 오랫동안 이끌어 왔기 때문에 수직적 권력분립으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으로서의 지방분권의 개념과는 본질상 구별된다. 전통적으로 분권(décentralisation)과 분산(déconcentration)을 서로 대비된다. 데콩상트라시옹은 “위계화된 권한조직의 정점상의 집중완화라는 의미에서 의사결정권의 재배분(R. Chapus)”이고 “동일한 공법인 내부에서 기관구성원들을 배치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les services déconcentrés)간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조직기법”으로서, 집권(Centralisation)의 측면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A. de Laubadère). 데콩상트라시옹은 중앙에서부터 이들 중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외곽·변두리(périphérie)에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결정권의 이전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정권을 가진 기관은 동일하다. O. Ballot는 “두드리고 있는 것은 역시 같은 망치일 뿐이고 다만 그 손잡이만 줄었을 뿐이다”라고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 **Décret** 【데크레, 명령】

데크레는 대통령 또는 수상이 발동하는 명령이다. 데크레는 제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최고재판소의 심의를 거친 명령(décrets pris après avis du Conseil d'Eta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décrets délibérés en Conseil des Ministres), 단순한 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데크레는 개입영역에 따라서 헌법 제37조의 독자명령과 헌법 제21조의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헌법 제37조에 의한 독자명령이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이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행명령이다. 프랑스에서 법규명령권(pouvoir réglementaire)은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귀속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법규명령권과 수상의 법규명령권의 권한배분문제는 프랑스 정부형태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수상의 권한의 분배만큼이나 명확하지는 않다.

**Constitution Art.13 al.1**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igne les ordonnances et les décrets délibérés en Conseil des Ministres.(헌법 제13조 제 1 항 :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오르도낭스와 데크레에 서명한다.)

### ◇ **Dédoublment fonctionnel** 【 중복적 기능, 모자창(double casquette)이론, 코뮌의 단체장의 2중적 지위 】

행정기관(une autorité)이 동시에 두개의 공법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방분권화 전에는 2중적(중복)기능의 예는 프레페가 데파르트망에서의 국가의 대표자(représentant de l'Etat)이자 데파르트망(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자의 지위로 연상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인 Commune의 단체장(maire)을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의 단체장(maire)은 집행기관인 동시에 행정단위(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인 commune 차원의 국가의 대표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상의 2중성은 1)시장이 행정구역인 코뮌의 집행기관 내지 국가의 대표자로서 행위하는 경우라도 다른 국가의 행정기관의 경우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2)국가의 대표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뮌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중적 기능의 다른 예는 파리시의 경우, 경찰서장(préfet de police de Paris)은 국가 경찰인 동시에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인 파리시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고, 헌법 제16조에 규정된 결정이나 헌법 제92조의 오르도낭스를

통해 대통령이 입법기관으로 등장하는 상황을 지칭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경우 전기  
한 의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 **Déféré préfectoral** 【 프레페제소 】

헌법 제72조 제 6 항과 통합지방자치단체법전(CGCT) L.2131-6(코뮌), 3132-1(데파르트  
망), 4142-1(레지옹)조에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행위의 사법적 통제절차를  
말한다. 1982년 3월 2일과 7월 22일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위  
한 법적 행위는 이전의 행정상 후견감독에서 행정법원의 적법성 통제로 전환되었다.  
CGCT L.2131-2, 3131-2, 4141-2 및 5211-4조에 의하면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  
위는 지방의 국가대표기관인 프레페가 행정법원에 대해 적법성통제를 요청하는 이른  
바 프레페제소절차의 대상이 된다. 프레페제소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의결(délibération), 지방의회의 위임에 의해 내려진 결정,  
경찰권한에 관한 코뮌의 시장의 규칙제정이나 개별적 처분, 공공계약이나 공채에 관  
련된 협정, 지방공무원의 임명·승진·징계와 해임 등에 관한 개별적 처분 등.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은 자연인 혹은 법인도 그 행위가 프레페에게  
의무적으로 이송되는 행위여부를 불문하고 프레페에게 행정법원에 제소하도록 신청  
할 수 있는데(CGCT L.2131-8, 3123-3, 4142-3)이를 청구에 의한 데페레(Déféré sur la  
demande)라 한다. 프레페 제소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행정법원의 사법  
적 통제과정에서 국가대표의 (소제기에 있어서) 주도권이 주어진다든 점에서 그 명칭  
이 부여되었다고 보지만 통상의 월권소송과 동일하다. 소송의 진행절차, 수소요건, 소  
송의 개시 등에 일반적인 월권소송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나 청구에 의한 데페레의 경  
우에 국가대표가 사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다시 이에 대한 월권소송의 제기가  
되는 가에 관하여 C.E.는 Commune de Port 판결에서 이를 부정하였다(CE Section 28  
février 1997 Commune de Port, Rec. 23).

### ◇ **Délai** 【 기간, 기일, 기한 】

일반적으로는, 그 경과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가리키나, 특  
별한 경우로서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일

또는 기한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 용례로는, 시효기간(délai de prescription), 제소기간(délai d'action), 확정기한(délai certain)과 불확정기한(délai incertain), 유예기간(délai de grace), 실권기간(délai de déchéance), 제척기간(délai de forclusion; délai préfix), 대기기간(délai d'attente; délai de carence), 숙려기간(délai de réflexion), 대혼기간(délai de viduité) 등이 있다. 한편, 후회기간(délai de repentir)은 당사임대차에 있어서 소유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의 대혼기간은 300일이다(민법전 제228조). 다른 한편,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어떤 사실이나 사건 또는 행위의 개시일(*dies a quo*)을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간은 “délai franc”이라고 표현되며, 초일이 산입되는 기간은 “délai non franc”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후자를 통상기간(délai ordinaire)이라고도 부른다(신민사소송법전 제642조 참조). 그리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있어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숙려기간은 특히 “délai pour délibérer”라고 표현된다.

**C.civ. Art.797** : Pendant la durée des délais pour faire inventaire et pour délibérer, l'héritier ne peut être contraint à prendre qualité, et il ne peut être obtenu contre lui de condamnation: s'il renonce lorsque les délais sont expirés ou avant, les frais par lui faits légitimement jusqu'à cette époque sont à la charge de la succession.(민법전 제797조 :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 및 승인, 포기를 위한 의사결정기간 동안에 상속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 및 승인, 포기를 위한 의사결정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그 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이를 부담한다.)

### ◇ Délégation 【 비법률화, 탈법률화 】

프랑스는 헌법 제34조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제34조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사항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헌법 제37조가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사항이 아닌 사항을 입법부가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집행부는 데크레를 통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입법사항이 아닌 사항을 입법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입법사항이 아

니라고 선언한 이후에 데크레를 통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를 비법률화라고 한다. délégalisation 이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déclass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 Délégation de compétence 【 권한의 위임 】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하의 하위기관에게 맡기는 절차를 말한다. 법상 권한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기관은 이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명문규정을 통해서만 위임이 가능하다. 또한 권한전부의 백지위임은 불가능하며 일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권한의 대상과 범위 및 수임자의 신분(identité)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권한 부여(위임) 행위(acte conférant)는 공포된다(publié). 권한위임상의 위법성(illégalité)은 수임기관(le délégataire)이 취한 결정(décision)의 무권한(incompétence)의 흠이 된다. 권한의 위임은 ①엄격한 의미의 권한위임(우리 법제상의 권한의 위임과 유사)과 ②서명의 위임(내부위임이나 위임전결(委任專決)과 유사)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엄격한 의미(stricto sensu)의 권한위임(délégation de pouvoir)의 경우, 위임기관의(délégant) 권한이 수임기관에(délégataire) 실질적으로 이전된다. 권한위임이 존속하는 한 위임기관은 권한을 상실하고 행위의 귀속주체는 수임기관이 된다. 서명의 위임(délégation de signature)의 경우, 위임자는 권한을 잃지 않지만 업무의 2선에 있게 된다. 서명의 위임의 경우 위임의 변경 없이도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지위를 결정할 수 있고 행위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권한위임자이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권한위임을 받은 기관은 스스로 재위임(subdélégation)할 수 있다.

### ◇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 공공서비스의 위임(탁) 】

공공서비스의 위탁은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등 성질상 본래 수익 사업성을 가진 공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정비 및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계약 방법이었지만 점차, 도로, 교량, 상하수도, 공공 주차장 등의 비수익 사업적인 공역무의 건설·설치 및 관리·운영에까지 이 계약 방법이 넓게 이용되게 되었다. 공공서비스나 공공시설공사의 특허계약으로 대표되는 공공서비스의 위

임(탁)은 공익사업의 직영(□□ Régie)과 반대된다. 행정주체의 사무·사업의 민간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특허(□□ Concession)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약 방식이 있지만, 오늘날 전통적인 여러 민간화 방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행정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위임(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공공서비스의 특허는 상공업적 공공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19세기에 등장했는데 공공서비스 위임(탁)의 우선적 지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행정적 공공서비스의 경우도 위임(탁)이 가능하다(C.E. avis 7 octobre 1985). 지방경찰서비스는 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C.E. Ass. 17 juin 1932, Ville de Caselnudary)가 있으나 최근 지방안전계약(contrat de sécurité local)의 경우를 보면 변화가 있다고 본다.

위임(탁)계약은 Bertin 판결(C.E. Sec. 20 avril 1956, Rec. 167)이래로 그 대상에 의해 행정적이어야 한다. 물론 공공서비스 위임(탁) 계약(convention)이 행정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다른 상대방과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 인적고려(intuitu personae)원칙에 의해 - 공동체의 디렉티브의 영향에 따라 1993년 1월 29일 법률은 계약체결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경쟁에 의한 공고절차에 의한 계약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위탁계약의 일방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프레페나 침해를 주장하는 자(personnes lésées)는 행정법원에 계약전 긴급제소(référé précontractuel)를 청구할 수 있다.

□□ Concession

### ◇ Délégation 【 위임, 위양, 수권, 전이, 전부 】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직무나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의무의 이행을 지시, 위탁 또는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형태가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habilitation”이라고 표현하여야 하나, 현실에서는 이것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민사법상의 용례로는 민법전 제37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의 위임 또는 위양’(délégation de l'autorité parentale)과 민법전 제1271조 이하의 경개(novation)에 관한 규정들 중 제12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의 轉移 또는 轉付’(délégation par le débiteur)를 들 수 있다. 친권의 위양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3자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 또는 인가받은 아동보호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전 제377조 내지 제377-2조 참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은 위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전 제377-3조). 다음으로, 채무의 전이 또는 전부는 ‘전부자’(délégant: A)가 ‘피전부자’(délégué: B)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제 3자’(délégataire: C)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청 또는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가 C에게 채무를 부담하는데, 자신의 채무를 B로 하여금 C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을 실현케 하는 간이한 결제수단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부의 유형에는 “완전전부”(délégation parfaite)와 “불완전전부”(délégation imparfaite)가 있는데, 전자는 경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데 반하여 후자는 또 다른 채무자가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법에서의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또는 경계와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전부에 있어서는 제 2의 채무자가 발생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는 점, 전부의 성립을 위해서는 동시 또는 순차에 걸친 당사자 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한국법의 특정제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특별법상으로는 하도급법 제14조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채권의 확보수단으로서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전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권한분배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하며,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délégation은 법령에 의한 이러한 권한의 위임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권한위임(□□ délégation de compétence)과 서명위임(délégation de signature)이 있다. 헌법상의 관련용례로는 입법위임(délégation législative)이 있는데, 이는 입법권에 속하는 조치를 정부가 수행하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위임한 경우를 가리키며, 제 4 공화국 때까지는 이러한 경우의 입법조치를 데크레-르와(décret-loi)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남녀평등에 관한 1999년 7월 8일의 헌법개정법에 기초하여 동년 7월 12일법에 의하여 창설된 ‘여성의 권리 및 남녀양성의 기회평등을 위한 국회의원대표’를 délégations parlementaires라고 표현한다.

**C.civ. Art.377-1, al.1** : La délégation, totale ou partielle, de l'autorité parentale résultera du jugement rendu par le juge aux affaires familiales.(민법전 제377-1조 제 1 항 :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임(위양)은 가사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C.civ. Art.1275** : La délégation par laquelle un débiteur donne au créancier un autre débiteur qui s'oblige envers le créancier, n'opère point de novation, si le créancier n'a

expressement déclaré qu'il entendait décharger son débiteur qui a fait la délégation.(민법전 제1275조 :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채무의 전부는 채권자가 채무전부를 행한 채무자를 면책시키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경계의 효력이 없다.)

### ◇ Délit 【 경죄 】

광의의 의미로는 범죄(infraction)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협의의 의미로는 경죄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는 위경죄와 중죄 사이의 범죄들을 지칭한다. 적용되는 형벌에 대하여는 형법전 제131-3조가 정하고 있다. 최고 10년 이하의 금고, 최소 3,750유로이상의 벌금이 주형으로 처해지며 부가형도 병과될 수 있다. 금고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일수벌금(jour-amende), 시민교육(stage de citoyenneté), 공익노무(travail d'intérêt général), 제131-6조에 규정된 대체형벌 또는 제131-10조에 규정된 부가형으로 대체될 수 있다.

**CP Art.121-4** : Est auteur de l'infraction la personne qui; 1° Commet les faits incriminés; 2° Tente de commettre un crime ou,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un délit.(형법전 제121-4조 : 범죄의 행위자는 처벌되는 행위를 범한 자, 중죄 또는 법률의 규정하는 경우에 경죄를 범하려고 기도한 자이다.)

### ◇ Dénie de justice 【 재판의 거부 】

영토상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외국인들에게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의 거부는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를 의미하는 만큼, 이는 피해 외국인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 Dépositaires des traités 【 수탁자(受託者) 】

조약의 수탁자라 함은, 조약의 체결 및 발효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기탁 받는 기관을 가리킨다. 즉, 전권위임장의 원본을 보관하며 서명, 비준, 가입 문서 등을 기탁 받음과 아울러 이러한 사실들을 모든 계약국들에게 통보한다. 아울러, 해당 조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 ◇ Dépôt 【 임치(물), 임치장소 】

계약의 일종으로서의 임치를 통상임치(dépôt ordinaire)라고 하며, 이러한 임치계약은 ‘인적 신뢰에 기초한 계약’(contrat intuitu personae)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치인이 임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치하면서(이로 인하여 임치를 요물계약으로 이해함이 일반적임) 위탁받은 목적물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가리킨다(민법전 제1915조 참조). 한편, 민법전에서는 ‘협회의 임치 또는 고유한 의미의 임치’(dépôt proprement dit: 민법전 제1917조 이하)와 ‘계쟁물의 임치’(séquestre: 민법전 제1955조 이하)를 구별하고 있는데, 협회의 임치는 다시 임의임치(dépôt volontaire: 민법전 제1921조 이하)와 필요적 임치(dépôt nécessaire: 민법전 제1949조 이하)로 나뉜다(민법전 제1920조). 그러나 학설상으로는 계쟁물의 임치와 필요적 임치는 계약으로서의 성질이 희박하므로, 학설상으로는 이들 유형을 임치와 구별하여 검토함이 일반적이다. 민법상의 분류에 따를 경우, 협회의 임치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민법전 제1917조), 동산만을 목적으로 한다(민법전 제1918조). 그리고 임의임치는 임치를 하려는 자와 이를 수락하는 자 사이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민법전 제1921조), 따라서 계약체결능력 있는 자 사이에서만 가능성이 원칙이다(민법전 제1925조 제1항). 필요임치는 예견할 수 없는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강제되는 임치이며(민법전 제1949조), 여관이나 호텔과 같은 숙박업자와 숙박자간에도 필요임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민법전 제1952조 이하). 수치인은 수치물의 보관에 있어서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민법전 제1927조), 임치인의 허락 없이는 수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민법전 제1930조).

반면, 임치인은 수치인이 임치물의 보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며, 임치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전 제1947조), 수치인은 임치인이 이러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 까지 임치물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전 제1948조). 다른 한편, 계쟁물임치는 ‘약정에 의한 계쟁물임치’(séquestre conventionnel)와 ‘재판상의 계쟁물임치’(séquestre judiciaire)로 나뉜다. 약정에 의한 계쟁물임치는 1인 또는 수인이 분쟁의 대상인 물건을 제3자에게 맡기는 임치로서, 제3자는 분쟁이 종료한 때에 당해 물건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며(민법전 제1956조), 협회의 임치와는 달리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민법전 제1957조), 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 목적물로 될 수 있다(민법전 제 1959조). 반면, 재판상의 계쟁물임치는,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2인 또는 수인 사이에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관하여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나 동산, 채무자가 자신의 면책을 위하여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민법전 제1961조). 또 다른 한편, *dépôt*는 계약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 사실행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임치한 물건의 현실적인 교부행위 또는 인도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또는 중개인에 의한 문서나 자료의 인도행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임치물 그 자체 또는 임치장소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임치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련 용례로는 ‘구치소’(*maison de dépôt*)를 들 수 있다.

**C.civ. Art.1922** : Le dépôt volontaire ne peut régulièrement être fait que par le propriétaire de la chose déposée, ou de son consentement exprès ou tacite.(민법전 제1922조 : 임의임치는 임치물의 소유자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

#### ◇ Député 【국민의회의원】

국민의회 의원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임기만료일은 선거법(*code électoral*)에서 임기개시후 5년째 되는 해의 6월 세 번째 화요일로 하고 있다. 국민의회는 현재 577명의 국민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555명은 프랑스 국내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22명은 해외영토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회 의원이 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23세이다. 2회제 다수대표제의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고 유권자의 4분의 1이상 득표하면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일주일 후에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 나가는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유권자의 12.5% 이상 득표한 자들이다. 2차 투표에서는 상대다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자로 된다. 만약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사일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Constitution Art.24 al.2** : Les députés à l'Assemblée Nationale sont élus au suffrage direct.(헌법 제24조 제 2 항 : 국민의회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 Détenion provisoire 【구속】

수사판사의 청구를 받은 석방구금판사에 의해 중죄 또는 3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죄사건의 예심대상자를 재판이전에 교정시설에 구금하도록 명령하는 예외적인 처분이다. 구속은 위경죄에 적용될 수 없으며 사법통제(contrôle judiciaire)의 대상자가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 금고형의 기간에 상관없이 구속될 수 있다. 구속은 법률의 정하는 요건에 따라 예심의 필요성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혼란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구속은 증거를 보존하거나 예심대상자를 보호하거나 범죄의 심각성에 의해 초래된 사회적 혼란을 중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구속기간은 중죄와 경죄에 따라 다르다. 경죄의 경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4개월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구속기간은 범죄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중죄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구속기간은 범죄에 따라 2년 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사판사의 예심종결 후 판결법원에 대한 이송(renvoi)결정과 함께 이뤄지는 재판상의 ‘구속’(prise de corps)과 구별된다.

**CPP Art.137 :** La personne mise en examen, présumée innocente, reste libre. Toutefois, en raison des nécessités de l’instruction ou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elle peut être astreinte à une ou plusieur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Lorsque celles-ci se révèlent insuffisantes au regard de ces objectifs, elle peut, à titre exceptionnel, êtr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형사소송법전 제137조 : 피예심자는 무죄가 추정되며 자유 상태로 있다. 다만 예심의 필요성 또는 안전조치의 명목으로 사법통제의 하나 또는 몇 개의 의무가 강제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들이 위의 목적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속 상태에 둘 수 있다.)

Mise en examen,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 ◇ Détenion 【점유, 소지】

민법상의 점유(  possession)에는 소유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점유와 타인을 위한 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민법전 제2230조 참조), détention은 우선 자기를 위한

점유에 대비되는 의미로서 임대차, 임차, 용익권의 설정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근거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통틀어 *détention*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즉, *détention*이라는 표현은 점유(*possession*)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다. 한편, *détention*이 점유와는 명백히 다른 개념으로서 소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용례로는 일시적 소지(*détention précaire*)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시적 소지의 경우에는 사실적 지배라는 점유의 외관(*corpus*)은 존재하나 소유의 의사(*animus*)가 없는 경우이다. 다른 한편, 소지자는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물건을 시효취득 할 수 없으나(민법전 제2236조 참조), 제 3 자와의 관계에서는 점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전 제2283조 참조).

**C.civ. Art.2228** : La possession est la détention ou la jouissance d'une chose ou d'un droit que nous tenons ou que nous exerçons par nous-mêmes, ou par un autre qui la tient ou qui l'exerce en notre nom.(민법전 제2228조 : 점유는 물건이나 권리의 소지 또는 향유를 말하며, 이는 권리자가 스스로 행사할 수도 있으나, 타인에 의하여 또는 타인이 권리자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 ◇ **Devoir de conseil** 【보좌의무, 조언(조력, 설명)의무】

우선, 민사법에서는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조언의무 또는 설명의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는 “*devoir d'information*”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부수적 의무로서의 설명의무 또는 조언의무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체결 전단계는 물론이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타방에게 조력할 의무를 말한다. 한편, 이러한 조언의무의 탄생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즉, “매수인은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emptor debet esse curiosus)는 영국의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나 계약에 대하여 각자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계약당사자가 비록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이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법원은 종종 이러한 조언의무의 근거를 계약당사자 간의 묵시적 의사에서 찾지 않고, 법률의 규정(특히, 민법전 제1135조: 합의는 그것에 표시된 것 뿐만 아니라, 형평, 관습 또는 법률이 합의의 성질에 따라 부여하는 결과에 의하여도 의무를 발생시킨다)으

로 인한 효과에서 찾고자 한다. 관례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언의무를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시에도 요구되는 계약당사자 간의 신의칙(bonne foi)에 근거하기도 한다(Cass. civ. 1re, 14 déc. 1982, Bull. civ. I, n° 361; Cass. civ. 1re, 3 juil. 1985, Bull. civ. I, n° 211). 그리고 조언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의무자의 직업이나 계약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함이 관례의 태도이다. 즉, 어떤 기기의 조작과 관련한 주의 사항의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그 기기의 제조자와 매도인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Cass. civ. 1re, 19 jan. 1983, Bull. civ. I, n° 30). 아울러, 조언의무의 범위결정에 있어서는 약정한 급부나 물건의 복잡성도 고려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언의무를 위반한 전문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언의무의 범위감경은 가능하다고 한다(Cass. civ. 1re, 10 juil. 1996, Bull. civ. I, n° 318). 의무위반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가 이를 부담함이 원칙이나, 파기원은 조언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자신이 조언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Cass. civ. 1re, 25 fév. 1997, Bull. civ. I, n° 816; Cass. civ. 1re, 29 avril 1997, Bull. civ. I, n° 132). 그러나 조언의무와 관련하여 확실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한 것이다. 즉, 조언의무를 계약의 전단계에서 요구되는 부수적 의무로 파악하는 견해는, 조언의무를 계약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계약성립시에 이미 이행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정보제공의무(obligation de renseignement)와 조언의무(devoir de conseil)를 나누어, 전자는 계약체결 전단계에 요구되는 의무이나, 후자는 계약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은 계약의 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 “devoir de conseil”는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나 이익보호를 보조 또는 보좌할 의무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 하나는, 보좌인(curateur)의 의무와 같이 성년무능력자 보호제도에 근거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나 컨설턴트의 업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에 근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Cf., Cass. civ.3, 20 nov. 1991, Bull. civ. III, n° 284 : Le devoir de conseil ne s'applique pas aux faits qui sont de la connaissance de tous.(파기원 민사 제 3 부, 1991년 11월 20일 판결 참조 : 조언의무는 모두에게 알려진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Diplomates** 【 외교관 】

□□ Agents diplomatiques

◇ **Directive** 【 재량준칙 】

행정법상 디렉티브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문서형식이 *Circulaire*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에 따라 구별되고 행정청이 재량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개별적인 행정결정의 진행 방향이나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지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기본설정이 되기도 한다. 디렉티브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인 *Crédit foncier de France*판결에서 주택개량기금은 자신이 설정한 기금의 처분용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일반규정에 반하는 결정을 통해 원고의 대부금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도적 지침에 불과하고 원고가 디렉티브의 적용배제를 주장할 특별한 사항과 공익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CE, Section, 11 décembre 1970, Rec. 750).

디렉티브는 시쿨래르(□□ *Circulaire*)와 비교되는데, 후자가 비교적 전통적인 행정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정규칙(행정명령)에 해당한다면 전자는 주로 경제행정분야에서 광범한 자유를 가진 행정청이 반영해야 하는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유도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디렉티브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성격을 가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인에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월권소송을 통해 다룰수는 없으나 디렉티브를 실행하는 개별적인 행정결정에 대해 월권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 circulaire 와 directive의 비교(도표) ●

Circulaire	Directive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이용되고 있다.
모든 행정활동 분야	실질적으로 경제분야
행정에 대해서만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발령된 지시나 훈령은 공무원이 준수할 의무를 구체화하거나 관련성을 가진다.	광범한 자유를 가진 행정청이 반영해야 할 행정작용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유도적 규범에 불과하다.
일정한 규정은 법규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디렉티브는 법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해석적 성격의 <i>circulaire</i> 는 사인에 대해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디렉티브는 간접적으로 사인에게 효력을 가진다: 행정청이 개별 행정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디렉티브를 인용하는 경우, 사인도 마찬가지로 디렉티브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석적 규칙의 경우는 월권소송(越權訴訟)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법규적 성격의 <i>circulaire</i> 는 가능하다.	디렉티브 자체에 대해서는 월권소송이 불가능하지만 디렉티브를 실행하는 개별처분을 상대로 월권소송이 가능하다.
해석적 규칙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로서 위법성 판단은 불가능하다.	위의 경우와 같이 가능하다.
해석적 <i>circulaire</i> 는 사인에 의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적법한 디렉티브에 위반되는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인은 디렉티브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 Discrimination à rebours 【역차별】

역차별이란 평등의 실현을 위해 과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개인이나 집단, 계층에게 주는 혜택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과도한 차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차별은 적극적 차별에 대응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적극적 차별이 지나치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을 위하여 적극적 차별을 하였으나 이러한 차별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여성우대를 넘어서 남성에게 새로운 차별을 하게 되면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는 1997년 4월 30일 판례에서 남녀평등위원회(Observatoire de la par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설치를 위한 데크레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고 하였다.

Le juge constitutionnel français ne s'est pas encore prononcé sur une affaire de ce type, au contraire du Conseil d'Etat qui, dans un arrêt de section du 30 avril 1997, s'est fondé sur le principe constitutionnel d'égalité entre les sexes pour juger que le décret créant l'Observatoire de la parité n'instaurait pas une discrimination à rebours défavorable aux hommes.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아직 역차별에 대한 결정을 한 적이 없지만, 행정최고재판소는 1997년 4월 30일 판례에서 평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들면서 남녀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한 데크레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Louis Favoreu et s, Droit des librtés fondamentales, Dalloz, 2000, pp.348 et s.)】

## ◇ Discrimination positive 【적극적 차별】

프랑스적 평등·차별의 역학관계를 잘 나타내는 용어가 ‘적극적 차별’이다. 궁극적으로 평등을 지향해 긍정적인 의도로 차별이라는 방법을 실시한다는 정치사회적 용어다. 이 용어는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시절 차별받는 소외집단, 특히 흑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차별 극복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이 부정적인 단어 ‘차별’은 긍정적인 의도에서만 법적·정치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차별은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이 받은 기존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일시적으로 사법적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차별의 경우 분명히 평등에는 어긋나는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등이라 할 때 그 출발점은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미 기존에 차별을 많이 받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평등을 적용한다면 이는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차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 차별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보다는 어떤 영역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적극적 차별이 인정되는 영역은 크게 두 영역이다. 공직에의 취임에 있어서 인정되는 영역과 해외영토 국민들에게 인정되는 적극적 차별이 그것이다. 공직 위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83년 1월 14일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는데,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과 관련된 결정이었다. 1890년대 초반에 정권을 잡은 사회당은 공직에의 취임의 길을 다양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인종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유사한 정책을 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립행정학교에의 입학 확대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입학절차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정한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었고,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 이상 공공행정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에게 내부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1982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조라든가 협동조합 또는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단체에서 선거를 통해서 수장으로 적어도 8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하여 위헌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89년 인

권선언 제 6 조가 공무원임권에 있어서 평등이 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재능과 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이라면, 이것이 공무원 모집에 있어서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는 규정이 다양성과 더불어서 공역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차별 정책으로 교육우선지구(ZEP)가 대표적이다. 이제도는 1980년대 초부터 실시됐는데,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21세기를 전후해서 실시되는 또 다른 교육 정책은 극도의 엘리트 고등교육 기관들인 그랑제콜에 ZEP 지역학교 출신의 학생을 소수라도 입학시킨다는 것이다. 쿼터제를 통해 소수집단에 특권을 주는 식이다. 차별 문제가 뜨거워지는 요즘에는 이 제도를 차별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 더 넓게 적용해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 차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인정되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되는데 입법자가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적극적 차별은 공무원부문이라든가 경제·사회적 영역에서는 인정될 수 있고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선거권이라든가 개인적 자유와 관련되서는 적극적 차별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헌법이 명문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유인 인종이라든가 출신 혹은 종교 등의 사유로는 적극적 차별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연령이라든가 개인의 사회적 특징 혹은 차별집단의 지리적 위치 등을 위하여서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Les discriminations positives restent interdites en revanche, dans le domaine du contrôle strict, c'est-à-dire chaque fois que ces discriminations font appel à l'un des critères prohibés par la Constitution comme la race, l'origine, la religion, les croyances ou le sexe ou qu'elles conduiraient à remettre en cause un droit fondamental. 【반면에 적극적 차별도 엄격통제(심사), 즉 인종, 출신, 종교, 신념 또는 성별처럼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든가 혹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금지된다.(Louis Favoreu et Loïs Philip, GDCC, 10e éd., Dalloz, 1999, p.562)】

### ◇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의회해산, 국회해산, 국민의회해산】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임기만료 전에 소멸함으로써 국회를 일시동안 존립시키지 않는 제도. 프랑스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의회해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회해

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상이 아닌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수상이나 관계장관의 부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수상과 양원의장의 의견을 구하면 되는데 수상과 양원의장의 의견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회만으로 양원은 의회해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회가 해산 되면 20일 내지 늦어도 40일 이내에 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의회해산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세가지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첫째, 비상대권발동시에는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하면서 의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의회를 해산하여 독재권력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의회해산에 의하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뒤에는 1년동안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셋째, 상원의장에 의하여 행사되는 대통령권한대행 기간에는 의회해산권이 행사될 수 없다. 제 5 공화국에서 의회해산은 5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1962년 드골 대통령 당시 의회의대정부불신임 이후에 있었고 1968년 학생소요사태때 있었으며, 1981년과 1988년 미테랑 대통령때 행하여졌고, 1997년 시락 대통령에 의하여 행사되어졌다. 프랑스에서 의회해산제도는 정쟁종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의회의 다수과를 바꾸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행사되기도 하였으며, 국정쇄신을 위하여 행사되기도 하였다.

**Constitution Art.12 al.1**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après consultation du Premier Ministre et des Présidents des assemblées, prononcer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헌법 제12조 제 1 항** : 대통령은 수상과 양원의장의 자문을 거친 후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 **Divisibilité** 【(조약 규정들의) 가분성】

조약의 무효화, 정지 또는 종료에 있어서 가분성이라 함은, 해당 조약 규정들 중 일정 조항에 대해서만 이를 무효화하거나 정지 또는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특정 조항들에 대해서만 이를 무효화하거나 정지 또는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그 조항이 다른 규정들과 분리가 가능하며, 둘째 그 조항의 수락이 조약 전체에 의하여 구속을 받겠다는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어야 하며, 그리고 그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들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조약법협약 제44조 제 3 항).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44, par.3** :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51, 52 et 53, la division des dispositions d'un traité n'est pas admise.(**조약법협약 제44조 제3항** :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의 경우, 조약 규정들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Dol** 【(조약체결에 있어서의) 사기, 사취·사기·고의】

【**국제 : (조약체결에 있어서의) 사기**】 조약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사기라 함은 기만에 의하여 상대방을 조약 체결로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즉, 타 당사국에 의한 사기에 따라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자국의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협약 제49조).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49** : Si un Etat a été amené à conclure un traité par la conduite frauduleuse d'un autre Etat ayant participé à la négociation, il peut invoquer le dol comme viciant son consentement à être lié par le traité.(**조약법협약 제49조** : 한 국가가 교섭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그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국가는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자신의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서 그 사기를 원용할 수 있다.)

【**민 : 사취·사기·고의**】 일반적으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각종의 술책이나 거짓말 등과 같은정직하지 못한 태도나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계약 이외의 관계에서도 문제로 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의미와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우선, “dol”은 계약체결시의 사기(적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착오를 유발하게 하는 당사자 일방의 술책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계약체결의 ‘결정적 원인이 된 사기’(dol principal)와 그렇지 않은 ‘부수적 사기’(dol incident)를 구별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의 무효원인으로 되는 ‘전형적 사기’(dolus malus: mauvais dol)와 ‘그렇지 않은 사기’(dolus bonus: bon dol), 즉 거래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과장과 같은 사기를 구별하기도 한다. 계약체결의 결정적 원인이 된 사기는 전형적 사기로 되나, 부수적 사기는 그러한 사기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정도의 것(예컨대, 단지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이끈 원인)으로서 계약의 무효원인으로 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dol”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책임의 가중요소로 되는 고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민법전 제1150조 참조), 이는 채무불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고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사기적 과책’(faute dolosive)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선의(□□ bonne foi)나 ‘고의적이지 않은 과책’(faute non intentionnelle)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culpa lata dolo aequiparatur”(중대한 과책은 사기에 비유된다)라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과실 또는 중대한 과책’(faute lourde)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아울러, 불법행위 분야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서의 고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C.civ. Art.1150** : Le débiteur n'est tenu que des dommages et intérêts qui ont été prévus ou qu'on a pu prévaloir lors du contrat, lorsque ce n'est point par son dol que l'obligation n'est point exécutée.(민법전 제1150조 : 채무자는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한,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Domaine public** 【 공공재산 】

공법인이 자신의 업무·임무(missions) 전반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un patrimoine)으로서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재산(domaine)을 지칭한다. 공공재산의 범리는 공법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domaine(라틴어 domus는 집(maison)이라는 뜻)란 용어를 사용한다. 비교적 최근에 구별이 이루어진 공공재산은 사소유재산(domaine privé)과 공소유재산(domaine public)의 서로 상이한 법제하에 속하게 된다. 공공재산의 법제는 연혁상 왕가의 재산(domaine de la Couronne)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1566년(1667년 루이 14세에 의해 재확인) Moulins(물랭)의 칙령(ordonnance)과 같이 일찍부터 불가양성(in aliéna bilité)과 시효와 친하지 않음(imprescriptibilité)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재산의 독립성은 공법상의 특별한 취급과 재산의 손해에 관한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사소유재산의 관리나 규율에 비해 구별되지만 이들 양자간의 구분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고 행정관례에 구별되는 공공재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행정법 이론상의 공물개념(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을 위해 제공된 물건 - ①행정주체의 제공에 의한 물건 ②공공목적 ③직접제공을 기본요소로 하며 소유권(propriété)의 귀속은

본질적이지 않다)과는 달리 소유자가 공법인이어야 한다. 공공재산의 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들 수 있고, 오랫동안의 논쟁 후에 영조물법인(Etablissement public)에게 인정되었다(C.E. 21 mars 1984, Mansuy, Rec. p.616). 다음으로 공용지정(affectation à l'utilité publique)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공용지정은 공중의 직접사용(affectation à l'usage direct du public, C.E., Sect. 28 juin 1935, Marécar, Rec. p.734)과 공공서비스의 필요에 의한 지정(C.E. Sect. 19 octobre 1956, Société Le Béton, Rec.375)을 통해 나타난다.

### ◇ Dommage 【 손해 】

일반적으로 dommage는 préjudic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준불법행위, 법률이나 법원이 어떤 자에게 부담지운 사실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신체상,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의 침해 내지 손해를 지칭하며,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손해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신체손해(dommage corporel), 직접손해(dommage direct), 간접손해(dommage indirect), 예견(불)가능한 손해(dommage (im)prévisible), 물적 손해(dommage matériel), 정신적 손해(dommage moral), 반사적 손해(dommage par ricochet; dommage réfléchi)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신체손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도 건강이나 ‘육체적 완전성’(intégrité physique)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자나 손해배상의 구체적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물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고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판례에 의하면, 육체의 미적 가치의 침해(예컨대, 배우의 안면에 대한 침해)나 생활에서의 즐거움에 대한 침해(운동을 즐기는 자가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손해는 가해행위와 밀접한 인과관계(causalité)가 있는 손해를 말하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접손해는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간접손해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리가 먼 손해를 말하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손해이다. 물적 손해는 재산적(patrimonial)이거나 금전적(pécuniaire)인 것으로서, 상실한 이익(damnum emergens) 뿐만 아니라 일실이익(lucrum cessans)도 포함한다. 다른 한편, 관련 용례로는 전보배상(dommages et intérêts compendatoires), 지연배상(dommages et intérêts moratoires), 손해배상(dommages

et intérêts) 등이 있다.

**C.civ. Art.1382** : Tout fait quelconque de l'homme, qui cause à autrui un dommage, oblige celui par la faute duquel il est arrivé, à le réparer.(민법전 제1382조 : 자신의 과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Donation 【 증여 】

일반적으로는 생전증여(donation entre vifs)를 지칭하며, 이는 증여자(donateur)가 무상으로 일정한 물건을 현실적(actuellement), 불가철회적(irrévocablement)으로 수증자(donataire)를 위하여 출연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편무계약을 말한다(민법전 제894조 참조). 즉, 유언은 철회가능성이 있으나(민법전 제895조 참조), 생전증여는 철회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관련 용례로서, “donation à cause de mort”(donation mortis causa)는 사인증여를 말하며, 이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후에 사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취소가능한 증여이다. 한편, 증여자 또는 제 3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는 “donation avec charge”(donation sub modo)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장래 부부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증여를 “donation propter nuptias”라고도 하며, 수증자가 행한 일정한 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donation rémunératoire”라고 한다. 아울러, 직접적인 증여는 아니지만, 예컨대 채무의 감면이나 제 3 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등의 형식을 빌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간접증여(donation indirecte)라고 한다. 이외에도 장래재산의 증여(donation de biens à venir), 가장증여(donation déguisée), 부부간의 증여(donation entre époux),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증여(donation par contrat de mariage) 등의 관련 용례가 있다.

**C.civ. Art.893** : On ne pourra disposer de ses biens, à titre gratuit, que par donation entre vifs ou par testament, dans les formes ci-après établies.(민법전 제893조 :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이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생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야 한다.)

### ◇ Double nationalité 【 이중국적 】

이중국적이라 함은 둘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한 개인이 이중국적인 경우에는 외교적 보호 등 섭외적 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법은 단일국적주의를 표방하는 한편, 국가들은 이중국적의 제거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복수의 국적이 충돌하는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있는 한 개의 국적만을 인정한다. 1930년 『국적법의 충돌에 관한 조약』은, 두개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이 자신이 상주주소를 갖고 있는 국가의 국적만을 보유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그 다른 하나의 국적국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6 조) 이중국적자가 그 국적국들 중 하나의 국가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들 국가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중국적자가 제 3 국에서 권리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제 3 국은 이들 두개의 국적 중 그 개인이 진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만을 인정할 수 있다

### ◇ Droit à la sûreté 【 신체의 자유, 안전권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을 청하거나, 발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게 하는 자는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소환 또는 소추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지체 없이 복종하여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제 7 조) “법률은 정확하고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범죄행위 전에 제정되고,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제 8 조) “누구든지 유죄라고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엄중하게 억제되어야 한다.”(제 9 조) 또한 현행 헌법 제66조도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구금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결정을 한 바가 있다. 1989년 7월 4일 상원의원과 국민의회 의원들은 사면법(Loi portant amnistie)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면서 법원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시하기를 사면이라는 것은 형사절차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1789년 인권선언 제 9 조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한 관할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려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CC 89-258 DC 8 juillet 1989, R., 1989, p.42).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8 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법원에 의해 처벌 받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벌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였다.(CC 82-155 DC 30 décembre 1982, R., p.93; CC 89-260 DC 28 juillet 1989, R., p.72; CC 92-311 DC 29 juillet 1992, R., p.74; CC 93-325 DC 13 août 1993, R., p.243; CC 97-389 DC 22 avril 1997, R., p.59) 새로운 법률이 처벌조항을 공포 후 즉시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률의 적용은 법률의 공포 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실시하고 있다.(CC 86-216 DC 3 septembre 1986, R., p.135)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예외는 있어서 더 경한 처벌로 개정된 법률은 입법자가 더 이상 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CC 80-127 DC 19-20 janvier 1981, R., p.15; CC 92-305 DC 21 février 1992, R., p.27)

### ◇ Droit à la vie 【 생명권 】

프랑스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절(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에 관한 1975년 1월 14-15일 결정(CC 74-54 DC 15 janvier 1975, R., p.19)에서 생명권에 관하여 판시를 하고 있다.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기를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은 임신중절을 하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은 1789년 인권선언의 제 2 조에 규정된 자유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 규정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예외는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원칙과 1946년 10월 27일 헌법 前文에서 규정된 원칙들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

서 “이는 고통의 상황과 임상의 이유와 관계되는 것으로 자유의 원칙에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은 단지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법률이 정한 조건과 한계에 따라서만 제 1 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생명이 시작된 이후로 모든 인간의 존재의 존중의 원칙에 침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예외의 어떠한 경우도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절은 1975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지고 있었다. 1975년 1월 17일 법률과 1979년 12월 31일 법률에서 모든 시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임신중절의 경우는 2인 이상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하였었다. 또한 1982년 12월 31일 법률을 통하여,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하였다.

또한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한 바가 있다. 1985년 4월 24일 당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유럽의정서(Protocole n°6 additionnel à la Convention européenne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concernant l'abolition de la peine de mort)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85년 5월 22일 의정서가 전쟁과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는 사형을 진정하고 있으며 심판의 대상인 의정서가 프랑스 제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의 영속성과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CC 85-188 DC 22 mai 1985, R., p.15)

### ◇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프랑스 헌법이라든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18일 결정(CC 94-352 DC 18 janvier 1995, R., p.140)에서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개인적 자유(liberté individuelle)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사생활에 대하여 보호 받을 권리를 개인적 자유에서 도출해내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자유는 헌법 제66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CC 94-352 DC 18 janvier 1995(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La méconnaissance du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peut être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a liberté individuelle.(1995년 1월 18일 헌법재판소 ‘안전에 관한 법률’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에 대한 위헌심판결정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Droit constitutionnel 【헌법】**

Constitution

◇ **Droit de l'homme 【인권】**

Libertés publiques

◇ **Droit de la guerre 【전쟁법】**

전쟁법이란 교전의 방식 및 전투행위의 수단 등을 규율하는 일련의 규범을 가리킨다. 1907년 헤이그 제 4 협약에 대한 부속규칙이 육전과 관련된 기본법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전자격의 주체, 전투행위의 규제, 점령지 통치 등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전과 관련해서는 1907년 헤이그 회의에서 채택된 6개의 협약과 1909년 런던 선언이 중요한 문건으로 존재한다.

◇ **Droit de pétition 【청원권】**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하여 희망을 진술 할 수 있는 권리. 국가적 차원의 청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원이 있다. 국가적 차원의 청원은 국민의회의장에게 청원을 하여야 한다. 국민의회의장에게 청원을 할 때 국민의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방차원의 청원은 심의 의회의 의사일정에 등록함으로써 심의 의회의 권한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지방차원의 청원은 유권자가 해당 의회에 의사일정에 의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Droit de poursuite 【추적권】

추적권이라 함은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연안국이 이를 공해상에서도 계속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 있을 때에는 연안국의 여하한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며, 선박이 접속수역에 있을 때에는 이 수역의 설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연안국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추적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상에 있을 때에는 이들 수역에 적용되는 연안국 법령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만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은 해당 수역에서 개시되고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해상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적권의 계속적 행사는 공해상에서만 가능하며, 도주 선박이 일단 그 기국 또는 제 3 국의 영해로 진입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적권의 행사는 연안국의 군함, 군용항공기, 비상업용 정부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111, par.3** : Le droit de poursuite cesse dès que le navire poursuivi entre dans la mer territoriale de l'Etat dont il relève ou d'un autre Etat.  
(해양법협약 제11조 제3항 :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소속국 또는 다른 국가의 영해에 진입하는 순간 정지된다.)

## ◇ Droit de propriété 【재산권, 소유권】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 2 조에서 재산권에 대하여 자연적이고 박탈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을 하였고 또한 제17조에서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고 하고 있다. 1946년 헌법 前文은 제 9 항에서 “그 운영이 국가의 공역무 또는 사실상 전매권의 성격을 가진 모든 재산 및 기업은 공공단체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서 단체소유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제34조에서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에서 사기업에로의 기업소유권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조항 또한 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초기의 결정에서 재산권의 보장을 1789년 인권선언의 제 2 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CC 59-1 L 27 novembre 1959, R., p.71; CC 60-7 L 8 juillet 1960, R., p.35; CC 61-3 FAR 18 septembre 1961, R., p.48; CC 61-4 FAR 18 octobre 1961, R.,

p.50; CC 73-80 L 28 novembre 1973, R., p. 45) 헌법재판소는 소유권제도의 기본원칙을 소유권자에 의하여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산권 또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 1982년 국유화에 관한 결정(CC 81-132 DC 16 janvier 1982, R., p.18; CC 81-139 DC 11 février 1982, R., p.32)이다. 이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종전과 달리 소유권의 헌법적 근거를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2 조와 더불어서 제17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만약에 헌법 제34조가 사적 분야에서 공적분야로 기업의 국유화와 기업의 이전을 법률의 영역 안에 놓는 것이라면, 소유권제도의 기본원칙의 결정을 법률에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이 입법자로 하여금 그의 권한의 행사 안에서 국가의 모든 기관에게 부여되는 헌법적 가치의 원칙들과 규범들의 존중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유화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과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에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한 1789년 선언의 제17조의 의미에서 공공필요에서 나오는 사실 위에서 입법자가 위에서 언급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유화를 행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사에 회부된 법률의 기초작업에서 나타난다. 현재 행하여지는 재산과 기업의 이전은 앞에서 언급한 1789년 선언의 조문을 위반한다는 견지에서 사적 소유의 영역과 기업의 자유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사에 회부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국유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평가는 명백한 과실(*erreur manifeste*)이 없는 경우에 거부되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국유화에 대하여 합헌임을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 인권선언의 제 2 조에 근거하여 소유권은 신체의 자유와 저항권 등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재산의 이전이나 기업의 이전이 프랑스 인권선언 제 2 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국유화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의 제17조에 근거한 공공필요(*nécessité publique*)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Art.17 :** La propriété étant un droit inviolable et sacré, nul ne peut en être privé, si ce n'est lorsque la nécessité publique, légalement constatée, l'exige évidemment, et sous la condition d'une juste et préalable indemnité.(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재산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필요성에 따라 사전에 정당한 보상조건 하에 그것을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박탈당할 수 없다.)

## ◇ Droit des peuples à(de) disposer d'eux-mêmes 【 민족자결권 】

민족자결권이라 함은 한 국가 내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이고 차별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peuples)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압박 ‘소수자’(minorités)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1 차 대전 이후 제창된 민족자결의 권리는 오늘날 국제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권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민족자결권 존중의 의무는 오늘날 강행규범에 속하게 되었으며, 민족자결의 권리는 피압박 소수자들이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right erga omnes)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Charte des Nations Unies, art.1, par.1** : Les buts des Nations Unies sont les suivants: (….) 2. Développer entre les nations des relations amicales fondées sur le respect du principe de l'égalité de droit des peuples et de leur droit à disposer d'eux-mêmes.(국제연합헌장 제1조 제1항 :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2. 제 민족의 평등권 및 그들의 자결권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art. 1, par. 1** : Tous les peuples ont le droit de disposer deux-même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 조 제 1 항 :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 ◇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 국제인도법 】

국제인도법이라 함은, 무력충돌시에 있어서 희생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규범을 말한다. 즉, 이는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에게 상병자, 포로 및 점령지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규범으로서,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그에 대한 1977년의 추가의정서가 이 분야의 기본법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1907년의 헤이그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들로서 이들 희생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도 국제인도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 ◇ Droit parlementaire 【국회법, 의회법】

추상적 의미의 국회법 또는 의회법.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하는 법률(loi)은 없고 국회 규칙(règlement)이 국회법의 기능을 한다.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Règlement du Sénat

## ◇ Droit 【법, 권리, 법학, 세금, 수수료】

우선,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범의 총체로서의 법 또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Droit objectif”라고도 표현된다. 법 또는 법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로는, 국내법(droit interne(national)), 국제법(droit international), 성문법(droit écrit), 실정법(droit positif), 관습법(droit coutumier), 자연법(droit naturel), 일반법 또는 보통법(droit commun), 공법(droit public), 헌법(droit constitutionnel), 행정법(droit administratif), 형법(droit pénal), 국제공법(droit international public), 재정법(droit financier), 농업법(droit agricole), 산림법(droit forestier), 항공법(droit aérien), 우주법(droit spatial: droit de l'espace), 민사소송법(droit de la procédure civile), 형사소송법(droit de la procédure pénal), 사법(droit privé), 민법(droit civil), 상법(droit commercial), 해상법(droit maritime), 보험법(droit des assurances), 국제사법(droit international privé), 사회법(droit social), 노동법(droit du travail), 사회보장법(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교회법(droit canonique) 등이 있다.

다음으로, 권리자나 제 3 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권리자가 일정한 사항을 행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특권으로서의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나 권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는 “droit subjectif”라고도 표현된다. 권리나 권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로는, 절대권(droit absolu), 기득권(droit acquis), 공민권(droits civiques), 주주의 신주인수권(droit d'attribution), 저작권(droit d'auteur), 친자에 대한 교정권 또는 감치청구권(droit de correction), 채권(droit de créance), 문예작품의 공표권(droit de divulgation), 가족권(droit de famille), 친자에 대한 감호권(droit de garde), 법정수익권(droit de jouissance légale), 어업권(droit de pêche), 선매권(droit de préemption), 우선변

제권(droit de préférence), 소개권(droit présentation), 우선권(droit de priorité), 소유권 (droit de propriété), 철회권 또는 숙려권(droit de repentir), 반박권 또는 반론권(droit de réponse),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droit de reproduction), 유치권 (droit de rétention), 추급권(droit de suite), 지상권(droit de superficie), 방문권(droit de visite), 선거권(droit de vote), 비재산권(droit extrapatrimonial), 상속권(droit héréditaire; droit successoral), 지적재산권(droit intellectuel), 정신적 권리(droit moral), 재산권(droit patrimonial), 대인권(droit personnel), 참정권(droits politiques), 신주우선인수권(droit préférentiel de souscription), 물권(droit réel) 등이 있다. 반면,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인 이나 집단에 인정된 특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례로는, 방어권(droits de la défense), 자의 권리(droits de l'enfant), 인권(droits de l'homme), 민족자결권(droit des peuples à disposer d'eux-mêmes)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droit”는 법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관련 용례로는 비교법 학(droit comparé), 법학부학생(étudiant en droit), 법학부(faculté de droit), 법학사(licencié en droit), 법학교수(professeur de droi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droit”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의 관련용례로서, 종가세(droit ad valorem), 부과과세(droit constaté), 증서작성수수료(droit d'acte), 저작자의 인세(droits d'auteur), 소비세(droit de consommation), 관세(droits de douane), 제조세(droit de fabrication), 법원서 기에 대한 서류작성수수료(droit de greffe), 이전등록수수료(droit de mutation), 상속세 (droit de successi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C.civ. Art.29, al.1** : La juridiction civile de droit commun est seule compétence pour connaître des contestations sur la nationalité française ou étrangère des personnes physiques.(민법전 제29조 제 1 항 : 자연인의 프랑스 또는 외국국적에 관한 분쟁은 일 반민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C.civ. Art.625** : Les droits d'usage et d'habitation s'établissent et se perdent de la même manière que l'usufruit.(민법전 제625조 : 사용권 및 주거권은 용익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되고 소멸한다.)

## ◇ Droits fondamentaux 【기본권】

□□ Libertés publiques

[ E ]

### ◇ Eaux archipélagiques 【 군도수역 】

군도기선 내의 수역을 군도수역이라 한다. 이 수역에는 군도국의 주권이 미치며, 제 3 국들은 이 수역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군도국은 이 수역 및 그에 인접한 영해와 그 상공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 및 항공기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을 위하여 항로대와 항공로를 지정할 수 있다(협약 제53조).

### ◇ Eaux intérieures 【 내수(內水) 】

내수라 함은 영해 내측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수역을 말한다. 해양법협약은 제 8 조에서 내수를 규정하기를 “군도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은 연안국의 내수에 속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직선기선을 포함한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은 연안국의 내수로서 육지 영토와 같은 법적 지위에서 서는 것이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 8 :** Sous réserve de la partie IV, les eaux situées en deçà de la ligne de base de la mer territoriale font partie des eaux intérieures de l'Etat.  
(해양법협약 제 8 조 : 제 4 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 기선의 육지측 수역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 ◇ Egalité 【 평등 】

프랑스의 국시(國是, devise)가 자유(Liberté)·평등(Egalité)·박애(Fraternité)인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프랑스는 평등개념을 중시여기고 있다. 1789년 자유와 평등을 찾아서 혁명을 일으켰고 또한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프랑스 헌법 제 1 조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 및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인종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또한 제 2 조 제 4 항에서는 공화국의 국시가 자유·평등·박애임을 천명하고 있

다. 또한 제 3 조 제 3 항에서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프랑스 헌법상의 평등에 관한 조항들이다. 그러나 1789년 인권선언이나 1946년 헌법 前文은 여러 가지 평등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1789년 인권선언을 보면, 제 1 조에서부터 평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제 6 조는 “...법률은 보호하든가 처벌하든가 간에 만인에 대하여 평등하여야 한다. 법률 앞에 평등한 모든 시민은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 외에는 누구나 그의 능력에 따라 공적 고위직 · 지위 · 직무 등에 동등하게 임명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1946년 헌법 전문은 제 1 항에서 인종 · 종교 및 신앙의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의 보유를, 제 3 항에서 남녀 양성의 평등을, 제12항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인한 공적 부담에 있어서의 연대책임과 부담의 평등을, 제13항에서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모두 다 평등의 원칙을 구성하는 규정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에는 1973년에 처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심사가 청구되었다. 상원의장이 청구한 위헌심판청구에서 상원의장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주장하였다.(CC 73-51 DC 27 décembre 1973, R., p.25) 이 결정에서부터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가를 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많은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을 구분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식적 평등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CC 86-208 DC 25-26 juin 1986, R., p.61) 이 결정은 선거구 인구불평등에 대한 위헌심사였는데, 이 결정에서 평균 인구수에 20%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였다. 즉 국민의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의원선거의 경우, 필수적으로 인구에 바탕을 두고 선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 인구수에 20% 편차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차별, 즉 평등과 관련하여 많은 경우 가운데에 하나가 남녀 차별인 것이다. 또한 조세에서의 평등과 선거권에 있어서의 평등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였다. 조세에 있어서 프랑스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관계에서 다른 감세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CC 82-153 DC 14 janvier 1983, R., p.35) 평등의 원칙이 자연

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법인들 사이에서의 평등이 자연인들 사이에서의 평등보다 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실시하였다. 즉 법인의 자연인의 모임이고 법인들 사이의 평등의 원칙의 침해는 자연인들 사이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CC 81-132 DC 16 janvier 1982, R., p.24). 그러나 연령에 의한 차별(CC 77-80 et 81 DC 5 juillet 1977, R., p.24; CC 86-207 DC 25 et 26 juin 1986, R., p.61; CC 96-380 DC 23 juillet 1996, R., p.107)이라든가, 공무원 연령제한을 위한 자녀의 수에 의한 차별(CC 86-207 DC 25 et 26 juin 1986, R., p.61), 조세부분에서 프랑스에 있는가 혹은 외국에 있는가에 따른 차별(CC 83-164 DC 29 décembre 1983, R., p.25) 등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법자가 다른 조세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CC 84-184 DC 29 décembre 1984, R., p.94) 이러한 결정은 입법자에게 납세자의 상황과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입법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critères objectifs et rationnels)에 의하여 세율을 결정하는 가를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CC 83-164 DC 29 décembre 1983, R., p.67.).

헌법재판소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몇몇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비교집단이 서로 다른 상황인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 이익(intérêt général)을 위하여 평등의 원칙에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즉 법률이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동일하지 않은 규정들을 제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차별이 개별적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또한 법률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다면 이러한 차별은 인정이 된다고 하였다(CC 81-132 DC 16 janvier 1982, R., p.24).

**Constitution Art.1** :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헌법 제 1 조 : 프랑스는 불가분적이고 비종교적이며 민주적이고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하여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적이다.)

## ◇ Election présidentielle 【 대통령 선거 】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직선제 결선투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 1 차 투표에서 후보자 가운데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러나 과반수 획득을 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2주 후에 제 1 차 투표에서 1등과 2등을 한 후보를 대상으로 제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1962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한 이후에 대통령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1962년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제 1 차 투표에서 드골과 미테랑이 1등과 2등을 하여 제 2 차 투표에서는 드골이 당선되었다. 1969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 1 차 투표에서蓬피두와 포어(Poher)가 1등과 2등을 하여 제 2 차 투표에서蓬피두가 당선되었다. 197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 1 차 투표에서 미테랑이 1등을 하고 지스카르 데스탱이 2등을 하였으나 제 2 차 투표에서는 지스카르 데스탱이 당선되었다. 1981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미테랑과 지스카르 데스탱이 다시 붙었는데, 제 1 차에서는 지스카르 데스탱이 1등을 하였으나 미테랑이 당선되었다. 1988년 선거에서는 제 1 차 투표에서 미테랑과 시락이 1등과 2등을 하였고 제 2 차 투표에서 미테랑이 당선되었다. 1995년선거에서는 제 1 차 투표에서는 죠스팽이 1등을 하고 시락이 2등을 하였으나 제 2 차 투표에서 시락이 당선되었다. 1992년 선거에서는 시락과 르펜(Le Pen)이 제 1 차 투표에서 1등과 2등을 하여 제 2 차 투표에서 시락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제 1 차 투표에서 1등을 한 후보자가 제 2 차 투표에서 반드시 당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1974년과 1981년 그리고 1995년 선거에서 제 1 차 투표에서 2등을 한 후보자가 제 2 차 투표에서는 당선자가 된 것이다. 이는 1차 투표를 통하여 제 2 차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자 가운데 다수가 제 2 차 투표에서 제 1 차 투표에서 2등을 한 후보자를 지지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또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결과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제 1 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제 2 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Constitution Art.58 al.1** : Le Conseil Constitutionnel veille à la régularité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헌법 제58조 제 1 항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Emprisonnement 【 금고 】

일반적 의미로는 사람을 교정시설내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의미는 경죄에 대한 주형으로서 6개월에서 최고 10년까지의 자유형을 뜻한다. 금고는 일수벌금, 공익노무 또는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일정한 형벌로 대체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일수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CPP Art.132-19** : Lorsqu'une infraction est punie d'une peine d'emprisonnement,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une peine d'emprisonnement pour une durée inférieure à celle qui est encourue.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a juridiction ne peut prononcer une peine d'emprisonnement sans sursis qu'après avoir spécialement motivé le choix de cette peine. Toutefois, il n'y a pas lieu à motivation spéciale lorsque la personn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형사소송법전 제132-19조 : 범죄가 금고형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법원은 정해진 형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죄에 대하여 법원은 유예가 없는 금고형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는 그러한 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정 누범상태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

□□ Réclusion criminelle

## ◇ Enfant 【 자, 아동, 미성년자 】

넓은 의미로는 자녀 또는 아동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부모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1촌'(premier degré)의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fils)와 '녀'(fille)를 가리킨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여야 하며(민법전 제371조),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총체인 '친권'(autorité parentale)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전 제371-1조, 제1항). 자녀는 부모의 사망시 상속권을 갖게 되며(민법전 제734조), 상속에 있어 적출자와 비적출자간의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전 제733조).

한편, "enfant"이라는 표현이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juge des enfants"은 소년사건담당 재판관을 의미하며, "intérêt de l'enfant"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의미한다. 노동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연령인 16세를 넘지 않은 미성년자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노동법전 L.211-1),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1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견습노동’(apprentissage)은 허용되며, 16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송출연 등은 허용되며, 14세 이상의 자는 휴가기간 동안에는 가벼운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는 등의 예외는 인정된다.

다른 한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법원에서 ‘遺棄의 선언’(déclaration abandonné)을 받은 아이나, 아동보호소(aide sociale à l'enfance)에서 양육되는 아이로서 ‘국가의 후견을 받는 자’(pupile de l'Etat)를 ‘유기된 자’(enfant abandonné)라고 한다. 다른 관련 용례로는 ‘부양을 받아야 할 자 또는 피부양자’(enfant à charge), 양자(enfant adoptif, adopté; □□ adoption), 간생자(enfant adultérin), 장래의 자(enfant à naître; enfant future), 태아(enfant conçu), 초생자(enfant d'un premier lit), 감호아동(enfant en garde), 비적출자(enfant illégitime; enfant naturel), 근친혼 자녀(enfant incestueux), 적출자(enfant légitime), 準正子(enfant légitimé), 일시보호아동(enfant recueilli), 보호관찰아동(enfant surveillé) 등이 있다.

**C.civ. Art.371-3** : L'enfant ne peut, sans permission des père et mère, quitter la maison familiale et il ne peut en être retiré que dans les cas de nécessité que détermine la loi.(민법전 제371-3조 : 자녀는 부모의 허락 없이 가정을 떠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가정에서 축출되지 않는다.)

### ◇ Enquête de flagrance 【 현행범수사 】

형사소송법전은 제14조에서 사법경찰의 기능을 예심이 개시된 경우와 개시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범수사와 예비수사는 예심이 개시되지 않은 수사의 범주를 말하며 촉탁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판사의 예심을 위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수사가 임의수사의 방법을 주로 사용함에 반해 현행범수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광범위한 강제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전 제53조는 현행범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이거나 막 저질러진 중죄 또는 경죄는 현행의 중죄 또는 경죄로 분류된다.”고 규정하면서 뒤이어 “범행과 근접한 시간 내에서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공중의 외침에 의해 쫓기고 있거나 중죄 또는 경죄의 범행에 참여했다고 생각케 하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흔적 및 징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현행의 중죄 또는 경죄가 있다.”고 하여 준현행범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의 현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전 제54조에서 제74조에 이르는 강제수사와 불심검문 등이 가능하다. 좀 더 상술하면,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수사의 경우 현장입장(제54조), 현행범체포(제73조), 신원확인(제78-2조), 24시간 동안(연장가능)의 강제유치(제63조), 자동차검문(제78-2-3조), 현장변경 금지명령(제55조), 압수·수색(제56조), 의사 등 전문가 협력요구(제60조), 개인정보 등 자료징발(제60-1조), 범행현장 퇴거금지(제61조), 현행범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제62조), 체내신체 검사(제63-5조) 등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범수사와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범죄의 현행성이 일단 성립하면 사법경찰관은 최초 수사행위로부터 최고 8일 동안 현행범수사를 지속할 수 있으며 2004년 3월 9일의 법률은 중죄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죄에 대하여 실체진실의 발견에 필요한 수사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지방법원 검사장이 최고 8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제53조를 개정하였다. 지방법원 소속의 검사장 및 소속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보유한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현행의 중죄와 경죄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수색영장(mandat de recherche)을 발부할 수 있다.

Délit flagrant,   Enquête préliminaire,   Police judiciaire

### ◇ Enquête préliminaire 【예비수사】

현행범수사, 촉탁수사와 함께 사법경찰관이 행하는 수사의 한 종류로서 신원확인, 고소 또는 고발장의 접수, 범죄신고 등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지방법원 검사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개시, 진행한다. 예비수사는 일반적으로 임의수사의 방식에 의하며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24시간동안(연장가능)의 강제유치(garde à vue)가 허용된다.

**CPP Art.75 :**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t, sous le contrôle de ceux-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signés à l'article 20 procèdent à des enquêtes préliminaires soit sur les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d'office. Ces opérations relèvent de la surveillance du procureur général.(형사소송법전 제75조 : 사법경찰관과 그의 통제하에서 제20조에서 지명하는 사법경찰관은 지검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opération)는 고등검사장의 감시를 받는다.)

Enquête de flagrante,   Commission rogatoire

## ◇ Enregistrement 【(조약의) 등록】

조약의 등록이라 함은 조약이 발효한 후에 그 공표(publication)를 위하여 이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날 국제연맹 시대에는 조약을 연맹에 등록하는 것이 그 효력발생의 요건이었으나(국제연맹규약 제18조 참조), 오늘날 국제연합 체제하에서는 조약이 일단 발효한 후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조약의 발효와 등록을 별개로 취급한다.(조약법협약 제80조 참조) 국제연합헌장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모든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원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장 제102조).

**Charte des Nations Unies, art.102, par.1** : Tout traité ou accord international conclu par un Membre des Nations Unies après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harte sera, le plus tôt possible, enregistré au Secrétariat et publié par lui.(국제연합헌장 제102조 제1항 : 본 헌장의 발효 후에 국제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체결되는 모든 국제조약과 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 ◇ Enrichissement sans cause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라 함은 계약이나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권발생원인으로서 민법상 이를 인정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부당이득법리’(théorie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라고 하는 판례이론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동법리에 의하면, 아무런 원인 없이 타인의 희생시켜 이득을 취한 자는 그 타인에게 이득과 손실 중에서 적은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요건이 요구된다고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즉, 이득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였어야 하며, 손실자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득과 손실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득과 손실이 발생하게 됨에 있어서 정당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며, 손실자에게는 손실반환과 관련한 다른 수단이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5가지의 요건 중, 첫 번째 세 요건을 물적 요건이라 하고, 뒤의 두 가지 요건을 법률적 요건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

정되기 위해서는 손실자가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에게 어떠한 과책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이해됨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손실자의 개인적 이익이나 과책의 부존재를 별개의 요건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손실과 이득간의 상관관계를 *corrélacion, causalité, connexité*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러한 상관관계라는 의미가 민사책임발생의 요건인 인과관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손실과 이득간의 상관관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인과관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손실과 이득이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선후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실에서 유래하는 결과자체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사업의 완료나 사실의 실현으로 인하여 일방에게는 이득이 발생하나, 타방에게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럴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

부당이득의 발생으로 인한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손실자는 채권자로 이득자는 채무자로 되며 양자 사이에는 부당이득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리와 비교하여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다. 즉, 비채변제의 경우에는 약의 수익자가 자신이 받은 이익 이상의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는 이득자의 이득을 한도로 반환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실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입은 손실을 한도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득자의 선의나 약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이득자의 이득과 손실자의 손실 사이에서 적은 것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도 이를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부당이득발생 이후의 가치증대에 대하여는 손실자에게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이득자의 선악여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득의 평가시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소의 제기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무관리(관리의 유용성은 관리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나 불법행위(손해배상액은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에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부당이득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손실자가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그러한 이득이 이득자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외적 원인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이득자는

어떠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L'enrichissement sans cause est une source autonome d'obligation sans rapport avec le contrat ou le délit, distincte également des autres quasi-contrats: paiement de l'indu et gestion d'affaire.(부당이득은 계약이나 불법행위와 무관한 독자적 채권발생원인이며, 비채변제나 사무관리와 같은 다른 준계약과도 준별된다.)

### ◇ Enrichissement 【 이득 】

일반적으로는 풍부하거나 부유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나, 법학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action de in rem verso)의 요건으로서의 이득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이득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해석된다. 우선, 이득은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물건이나 권리의 새로운 취득 내지 기존의 물건이나 권리가 증가된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이득'(enrichissement positif)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극적 이득'(enrichissement négatif)으로도 족하다. 따라서 금전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신축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급부 없이 일정한 용역이나 조력을 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및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향평가되게 된 경우 등도 이득이 있는 경우로 이해된다. 한국법에서는 사무관리와 관련하여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나, 예컨대 변제자력이 없는 자에게 식료품을 판매한 상인은 위 변제자력 없는 자에게 '부양의무'(obligation alimentaire)를 부담하는 친족에게 지출이 감소되는 이득을 취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득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질적인 이득에 국한되지 않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 경우와 같이 정신적인 이득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례(Cass. civ. 1re, 25 jan. 1965, Gaz. Pal., 1965, I, 198)도 있다. 다른 한편, 부당이득(□□ enrichment sans cause)으로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득이 반환청구시점에 현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즉, 장래 취득할 수 있을 이득이라든가, 이미 소멸한 이득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득액의 구체적 평가도 반환청구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용례로서 부정한 이득(enrichissement injuste)은 부당이득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이는 형평(équité)의 원칙에 기초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득으로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L'enrichissement doit être la conséquence de l'appauvrissement, mais il importe peu que l'enrichissement se réalise directement par l'intermédiaire du patrimoine d'un tiers.(이득은 손실로부터 초래되어야 하나, 그러한 이득이 반드시 제 3 자의 재산을 매개로 하여 직접 실현된 것일 필요는 없다.)

### ◇ **Entrée en vigueur 【 조약의 발효 】**

조약의 발효란,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조약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조약은 해당 조약에서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발효한다. 양자조약은 두 교섭국이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문서를 교환하거나 이들 중 마지막의 문건이 상대국에 전달됨으로써, 그리고 다자조약은 일정 수의 국가들의 비준서 등이 기탁됨으로써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308, par.1** : La Convention entre en vigueur douze mois après la date de dépôt du soixantième instrument de ratification ou d'adhésion.(**해양법협약 제308조 제 1 항** : 이 협약은 6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 ◇ **Envoyé 【 공사(公使) 】**

외교사절의 한 계급으로서 대사(ambassadeur)보다 낮은 등급이다.

### ◇ **Epuisement des voies de recours internes 【 국내적 구제 완료 】**

국내적 구제의 완료는 외교적 보호에 있어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이다. 즉, 한 국가의 영토상에서 외국인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국적국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그러한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외국인이 영토국 내에서 가용한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art. 44 des Projets d'articles sur la responsabilité de l'Etat pour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adoptés par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en 2001** : La responsabilité de

l'Etat ne peut pas être invoquée si: (a) Toute les voies de recours internes disponibles et efficaces n'ont pas été épuisées au cas où la demande est soumise à la règle de l'épuisement des voies de recours internes.(2001년 채택된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4조 :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책임은 추궁될 수 없다. (a) 청구가 국내적 구제절차의 원료 규칙에 구속되는 경우, 가용하고 유효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 **Équivalent (réparation par -) 【등가배상; 금전배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 또는 자연배상”(□□ réparation en nature)과 “등가배상 또는 금전배상”(réparation par équivalent)이 있다. 등가배상은 피해상황이 종국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방법으로서, 손해를 다른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원상회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등가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금전배상”(réparation en argent)을 의미하다. 즉, 원상회복은 손해상태를 직접 또는 대체적 수단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등가배상은 손해상태를 평가한 후 금전의 지급을 통하여 손해와 “상쇄”(compensation)한다는 관념에서 온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손해배상의 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가배상만이 인정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일시금”(capital)으로도 “정기금”(rente)으로도 배상할 수 있으나,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가의 결정 또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한다.

La réparation par équivalent est faite sous forme de dommages-intérêts.(등가배상은 손해배상금의 형태로 행해진다.)

### ◇ **Erreur 【착오】**

【국제】 조약 체결에 있어서 착오라 함은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표시의 과정에서 조약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조약법협약은, 한 국가의 입장에서 “조약 체결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한 착오는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48조)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48, par.3** : Une erreur ne concernant que la rédaction du texte d'un traité ne porte pas atteinte à sa validité.(조약법협약 제48조 제3항 : 조약문의 작성에만 관련된 착오는 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 일반적으로 착오라 함은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오신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의무의 대상을 부정확하게 상상하는 사실을 가리키기도 하며, 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내심의 의사’(volonté interne)와 ‘표시된 의사’(volonté déclarée)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한다. 민사법에서는 ‘사실의 존재나 자질에 대한 착오’(erreur de fait)는 그것이 중대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를 초래하지만, “누구도 법을 모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Nul n'est censé ignorer la loi)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칙의 존재나 해석에 대한 착오’(erreur de droit)는 고려되는 착오가 아니다. 한편, 학설상으로는 이러한 착오를 그 중대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그 법적 효과를 달리 구성하기도 한다. 즉, ‘합의의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착오’(erreur-obstacle), ‘합의의 하자로 되는 착오’(erreur-vice du consentement), 그리고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착오’(□□ erreur indifférente)가 그것이다. 우선, 합의의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착오란, 매매를 증여로 오신한 것과 같이 착오가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련된 경우, 매도인은 A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은 B토지를 목적물로 오신한 것과 같이 착오가 계약목적물의 동일성에 관련된 경우, 유일한 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오신하여 자선단체에 증여를 행한 것과 같이 착오가 채무의 원인에 관련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의 ‘절대적 무효’(nullité absolue)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합의의 하자로 되는 착오는 ‘목적물의 본질에 대한 착오’(□□ erreur sur la substance)와 ‘사람에 대한 착오’(□□ erreur sur la personne)로 다시 나뉘는데, 전자는 계약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함에 반하여(민법전 제1110조 제 1 항), 후자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원인이 아닌 이상 ‘상대적 무효’(□□ nullité relative)로 됨에 그친다(민법전 제1110조 제 2 항 참조). 끝으로,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착오란,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물건이나 사람의 비본질적인 자질이나 계산

등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는다.

**C.civ. Art.1109** : Il n'y a point de consentement valable, si le consentement n'a été donné que par erreur, ou s'il a été extorqué par violence ou surpris par dol.(민법전 제 1109조 : 합의가 착오,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 ◇ Erreur de droit 【 법률의 착오 】

법령의 존재 또는 그 의미에 대한 착오를 내용으로 하며 책임을 조각하는 비귀책성 사유(causes de non-imputabilité)중의 하나이다. 구형법전 시기에 판례로 인정되던 것을 현행 형법전이 제122-3조에 명문화하였다. 본 조는 “법에 대한 회피할 수 없었던 착오로 인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정당화한 자는 형법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는 회피할 수 없었고 이것이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믿도록 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률의 착오는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법률전문가가 잘못 제공한 정보를 신뢰한 행위는 회피할 수 없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 Erreur de fait 【 사실의 착오 】

범죄의 구성요건중의 하나에 관한 사실의 착오 또는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를 말하며 행위자의 책임을 조각시킨다.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의 고의를 조각하거나 적용되는 죄명을 변경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칸에 있는 여러 개의 가방 중에서 착오로 타인의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취한 행위는 절도가 아니다. 착오에 의해 고의 범이 과실범으로 변경될 수 있다. 착오로 독극물을 타인에게 마시게 한 경우에 중죄인 독살(empoisonnement)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일성(identité)에 대한 착오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A를 맞추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착오로 B를 죽인 경우에 살인죄의 책임이 있다. 또한 과실범의 경우에 사실의 착오는 책임을 조각하지 않는다.

### ◇ Erreur indifférente 【 고려되지 않는(무관한) 착오 】

착오의 유형에 대한 학설상의 분류에 따를 경우, 착오의 유형 중에서, ‘합의의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착오’(erreur-obstacle)나 ‘합의의 하자로 되는 착오’(erreur-vice du consentement)에 해당하지 않는 착오를 가리킨다. 특히, 이러한 고려되지 않는 착오 또는 무관한 착오는 목적물의 본질(□□ erreur sur la substance)에 대한 것이 아닌 착오로서 ‘동기의 착오’(erreur sur le motif), ‘가치에 대한 착오’(erreur sur la valeur), ‘계산의 착오’(erreur de compte)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동기의 착오나 가치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착오들이 목적물의 본질적인 자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합의의 하자’(vices du consentement)를 구성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착오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Cass. com., 1er oct. 1991, Bull. civ. IV, n° 277 참조). 계산의 착오는 ‘사실적 착오’(erreur matérielle)라고도 하는데, 법률행위의 무효를 초래하지는 않으며, 단지 사실적 착오의 수정을 초래할 뿐이다(민법전 제2058조, 신민사소송법전 제1269조 참조). 한편, 착오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착오가 ‘용서 가능한’(excusable) 것이어야 함이 원칙인데, 이는 “법이 어리석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de non vigilantibus non curat praetor)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있는 것을 회피하지 못한데 대한 제재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본질에 대한 착오라 하더라도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것’(inexcusable)인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 착오로 될 수 있는데, 예컨대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가능성여부를 조사해 보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건축사는 착오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Cass. civ. 1re, 2 mars 1964, Bull. civ. I, n° 122)고 한 사례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C.civ. Art.2058** : L'erreur de calcul dans une transaction doit être réparé.(민법전 제2058조 : 화해에 있어서의 계산의 착오는 정정되어야 한다.)

### ◇ Erreur sur la personne 【 사람에 대한 착오 】

착오의 유형에 대한 학설상의 분류에 따를 경우, 합의의 하자로 되는 착오의 일 유형으로서 사람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사람에 관한 착오는 사람의 요소가 결정적인 것으로 고려되는 계약에 있어서만 계약의 무효원인으로 작용하며, 무상계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나, 조합이나 도급과 같은 유상계약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고 한다. 사람에게 관한 착오는, 사람의 신체적 동일성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민사적 신분의 동일성(예컨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을 부부로 알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본인의 특정한 자질(예컨대, 영업자산의 매수에 있어서 매도인의 신용도)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대한 자질 등이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중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으로 나선 자가 상대방의 자문이라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사람에게 대한 착오를 이유로 중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Cass. civ. 2e, 13 avril 1972, Bull. civ. II, n° 91).

**C.civ. Art.1110, al.2** : L'erreur n'est point une cause de nullité, lorsqu'elle ne tombe que sur la personne avec laquelle on a intention de contracter, à moins que la considération de cette personne ne soit la cause principale de la convention.(민법전 제1110조 제 2 항 : 착오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인 사람에게 대한 것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에게 대한 고려가 합의의 주된 원인이 아닌 한,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 ◇ Erreur sur la substance 【본질에 대한 착오】

학설상의 분류에 따르면, 착오의 유형 중, 합의의 하자로 되는 착오에는 목적물의 본질에 관한 착오와 사람에게 관한 착오가 있다. 이 중에서 목적물의 본질에 관한 착오는, 객관적인 착오(erreur objective)와 주관적인 착오(erreur subjective)로 다시 나뉜다.

객관적인 착오는 금도금을 한 물건을 순금제품인 것으로 오신하는 경우와 같이, 물건의 물리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착오를 말하며, 주관적인 착오는 모조품을 골동품으로 오신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예정한 물건의 성질에 대한 착오로서 목적물이 그러한 성질을 갖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성질과 관련한 착오를 말한다. 한편, 착오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면, 객관적 착오에서 주관적 착오로 본질(substance)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로마법에서는 2세기까지 계약의 성질에 관한 착오(erreur in negotio)와 계약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erreur in corpore)만을 인정하였으며, 3세기에 들어 물건의 본질에 관한 착오(erreur in substantia)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특히 물건의 재료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수학자들도 초기에

는 착오론을 매우 좁게 이해하였으며, 비록 점차 본질의 개념을 확대하여 이해하기는 하였으나, 19세기에 들어서까지 물건의 ‘본질’을 ‘특정물건을 다른 종류의 물건과 구별지우는 성질’로 이해함으로써 객관적 착오에 가까운 해석을 하였으나, 19세기 말 이후의 판례들에서는 물건의 본질을 물질적인 요소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합의를 결정짓게 한 성질’이라든가 ‘계약체결을 결정지운 성질로서 그것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주관적 착오론에 근거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착오는 당사자 일방만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며, 당사자 쌍방이 착오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착오에 빠진 물건의 성질이 그에게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본질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주장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면하지 못한다.

**C.civ. Art.1110, al.1** : L'erreur n'est une cause de nullité de la convention que lorsqu'elle tombe sur la substance même de la chose qui en est l'objet.(민법전 제1110조 제1항 : 착오는 합의의 목적인 목적물의 본질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의 원인이 된다.)

### ◇ Espace extra-atmosphérique 【 외기권 】

국제법은 외기권의 사용에 대하여 일련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협약이 1967년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면서(제1조), 외기권은 여하한 국가의 주권 선언, 이용 및 점유 기타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도 개별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모든 당사국들은 외기권에서의 자국 활동에 대하여 책임지며, 자국의 활동이 이 조약의 규정에 일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아울러,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이를 발사하도록 한 국가 또는 그러한 발사를 위하여 자국의 영토 또는 시설을 제공한 모든 당사국은 그 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육상에 또는 대기권 또는 외기권에 그리고 타 당사국이나 그 국민들에게 가하여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7조) 즉, 그러한 물체의 발사와 관련하여 국제법의 의무

위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Traité sur les principes régissant les activités des Etats en matière d'exploration et d'utilisation de l'espace extra-atmosphérique, y compris la Lune et les autres corps célestes, art. 6 :** Les Etats parties au Traité ont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des activités dans l'espace extra-atmosphérique, y compris la Lune et les autres corps célestes, qu'elles soient entreprises par des organismes gouvernementaux ou par des entités non gouvernementales, et de veillier à ce que les activités nationales soient poursuivi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énoncées dans le présent Traité.(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 6 조 : 이 조약의 당사국들은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활동이 본 조약상의 규정들에 따라 수행되도록 감독할 국제책임을 진다. 이는 그 활동이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비정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불문한다.)

#### ◇ Etablissement public 【 영조물법인 】

기능적 분권(la décentralisation fonctionnelle ou par services)의 내용으로써 공법상 법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되며, 하나 혹은 여러 가지의 공공서비스 업무를 특별하게 전담한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그 서비스를 창설한 일반 공법인과 구별되는 법인격이 부여된 공공서비스로 표현하기도 한다. 영조물법인은 ①법인격과 자치, ②통제, ③전문성의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법률규정에서 “법인격과 재정적으로 독립된”이라고 나타나는데, 영조물법인은 고유한 기관인 이사회(cosneil d'administration), 대표이사(président)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고유한 재산과 독립적인 예산을 가진다. 영조물법인의 이사회는 소속된 공공단체, 이용자의 대표자와 영조물법인의 운영에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유리하게 하는 인물들로 구성된다.

두 번째로 전술한 자치(autonomie)는 (영조물법인이 속한) 공공단체가 하는 영조물법인의 행위나 법인에 대해 후견(dit “de tutelle”)적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후견적 통제는 지방분권에서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적법성의 통제와는 다르다. “규정 없으면 후견 없다(pas de tutelle sans texte)”는 원칙에 따라 행정적 혹은 재정적 통제는 법률이나 하위법령규정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영조

물법인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 권한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항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다. 법관은 권한의 전문성에 반하는 모든 월권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뮌의 신용기금(caisse de crédit municipale)은 상인(commerçant)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원칙은 완화되고 있다. 영조물법인은 전통적으로 행정적(EPA: Etablissements publics administratifs)인 경우와 상공업적(EPIC: Etablissements publics industriels et commerciaux) 영조물법인으로 대별된다. 구별기준은 명문규정(공공회계에 관한 1962년 12월 29일 데크레)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EPA는 공법의 영향을 받지만 EPIC은 반대로 사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 ◇ E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 교정시설 】

1987년 6월 22일 『교정의 공적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전 제717조는 자유형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을 여러 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있다. 즉, 형벌을 위한 시설(établissements pour les peines), 구치소(maison d'arrêt) 및 특수시설(établissements spécialisés)이며 2003년 3월 20일의 데크레(décret)는 교정시설의 분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형사소송법전 데크레 제70조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형벌을 위한 시설로는 중앙교도소(maison centrale), 구금센터(centres de détention), 자율반석방센터(centres autonomes de semi-libertés), 변경된 형집행을 위한 시설(centre pour peines aménagées)이 있다.

중앙교도소는 최장기의 형을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에 총 5개가 있다. 자율반석방센터(centres autonomes de semi-libertés)는 형적용판사에 의해 반석방상태에 들어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수형자는 주간에 시설 밖에서 직업 활동을 하며 야간에서 시설 내에서 지내야 한다. 교정센터(centres pénitentiaires)는 구치소와 구금센터 등 여러 종류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개가 있다. 구치소는 미결수와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다른 시설(구금센터, 중앙교도소)로의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이다. 몇몇 구치소는 미성년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성년들과 격리된 특별구역을 두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에는 현재 총 117개의 구치소가 있다. 구금센터(centres de détention)는 통상의 자유형, 가정 젊은 구금자 및 사회복지가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가 있다.

### ◇ Etat accréditaire 【 접수국 】

외교사절단을 받아들이는 국가를 가리킨다. 그러나 영사관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Etat de résidence(주재국)이라 표현한다.(□□ Etat de résidence) 영어에서는 두 경우 모두 receiving Stat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Convention de Vienne sur les relations diplomatiques, art.4, par.2** : L'Etat accréditaire n'est pas tenu de donner à l'Etat accréditant les raisons d'un refus d'agrément.(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4 조 제 2 항 :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부하는 이유를 파견국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 ◇ Etat accréditant 【 파견국 】

외교사절단을 파견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그러나 영사관을 파견하는 국가는 Etat d'envoi라고 표현한다.(□□ Etat d'envoi) 영어에서는 두 경우 모두 sending Stat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Convention sur les relation diplomatiques, art.32, par.1** : L'Etat accréditant peut renoncer à l'immunité de juridiction des agents diplomatiques et des personnes qui bénéficient de l'immunité en vertu de l'article 37.(외교관계에 관한 협약 제32조 제 1 항 : 파견국은 외교관들 또는 제37조에 의하여 면제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 ◇ Etat archipel 【 군도국가(群島國家) 】

해양법협약은 군도국가의 정의를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구성된 국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 (a)). 협약은 군도기선, 군도수역 등을 인정함으로써 군도국가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 ◇ Etat de nécessité 【 긴급피난, 필요상황 】

직역을 하면 ‘필요상황’이 되나 일반적으로 형법총론상의 긴급피난을 지칭한다. 즉, 정당방위, 법령에 의한 행위 등과 함께 책임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faits justificatif)의

하나이다. 구 형사법전에서는 긴급피난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판례가 먼저 행위자가 행위상황을 자신의 과책에 의해 도발한 것이 아닌 경우에 정당화사유로서 인정하였으며 현재의 형법전이 제122-7조에 명문화하였다. 본 조는 “자신, 타인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현재 또는 급박한 위협에 직면하여 사람 또는 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행위를 한 자는 동원된 수단과 위협의 중대성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피난은 결국 행위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현재 또는 급박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하여 범죄를 고의로 저지른 상황을 말한다. 정당방위와 비교할 때 위협을 가하는 부정(不正, 악)이 제3자의 공격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상황의 결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긴급피난의 예로 소방관이 주택에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또는 자신의 어린애가 굶주려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빵을 훔친 어머니의 행위를 들 수 있다. 긴급피난의 법적 효과로는 정당화된 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행위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으나 민사상으로는 배상할 책임이 남아 있다.

Culpabilité,   Responsabilité pénale

#### ◇ Etat de résidence 【주재국】

통상적으로 체류국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영사제도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영사관을 받아들이는 국가 즉 영사관이 주재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그러나 외교사절단이 주재하는 국가는 Etat accréditaire(접수국)이라고 표현한다. (  Etat accréditaire)

**Convention de Vienne sur les relations consulaires, art.19, par.4** : L'Etat de résidence peut, si les lois et règlements le requièrent, accorder un exequatur à un fonctionnaire consulaire qui n'est pas chef de poste consulaire.(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9조 제4항 : 주재국은 법령상 필요한 경우 영사관장이 아닌 영사관원에게 영사인가장을 부여할 수 있다.)

#### ◇ Etat du pavillion 【기국(旗國)】

기국이라 함은,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 즉 국적국을 말한다.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들은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선

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해양법협약 제91조 제 1 항) 국가는 자국적을 부여한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모든 국가는 해양의 안전을 위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항해적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원의 근로조건 및 교육을 확보하여야 한다.(협약 제94조) 아울러, 자국 국적의 선박으로 하여금 해난구조에 협력하며 노예매매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리고 해수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제98조, 제99조, 제211조 제 2 항).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 94, par. 1 :** Tout Etat exerce effectivement sa juridiction et son contrôle dans les domaines administratif, technique et social sur les navires battant son pavillon.(해양법협약 제94조 제 1 항 :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들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분야에서 관할권과 통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한다.)

#### ◇ **Etats contractants** 【 체약국 】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국가들을 가리키며, 그 국가에 대하여 해당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가의 여하와 관계없다(조약법협약 제 2 조 제 1 항 (f)).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를 이미 표시하였으며 자국에 대하여 조약이 발효하고 있음으로써 그 조약에 구속을 받고 있는 국가는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체약국이 된다. 반면, 어떠한 국가가 이미 조약을 비준을 하였으나 아직 조약상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조약 자체가 발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미 조약에의 가입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조약에서 규정한 경과기간이 만료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국가는 당사국은 아니며 오로지 체약국일 뿐이다.

#### ◇ **Etat d'envoi** 파견국

영사관을 파견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Etat accrédita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tat accréditant

### ◇ **Etats Parties** 【 당사국 】

협약에서 당사국이라 함은 해당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가리킨다. 조약법협약은 제 2 조 제 1 항에서 당사국을 정의하기를,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를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Parties

### ◇ **Etats tiers** 【 제 3 국 】

어떠한 조약과 관련하여 제 3 국이라 함은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고 있는 국가들을 말한다. 조약법협약은 제 3 국을 정의하기를,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라고 규정한다(협약 제 2 조 제 1 항 (h)). 따라서 제 3 국의 범위에는 체결국 아닌 국가들은 물론이며, 체결국이면서도 아직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고 있는 국가들도 포함된다. 조약은 제 3 국의 동의 없이 그 국가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협약 제34조).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34** : Un traité ne crée ne obligation ni droits pour un Etat tiers sans son consentement.(**조약법협약 제34조** : 조약은 제 3 국의 동의 없이는 그 국가에게 의무도 권리도 창설하지 않는다.)

### ◇ **Exception d'illégalité** 【 위법성의 항변 】

행정행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중국적인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항변을 통해(par voie d'exception)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의 항변은 법규성을 가진 명령(règlements)의 경우 시간상의 제약은 없으나 법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인된다. 다만 복합적 조치(opération complexes)와 같이 중국적으로 확정되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국사원은 위법성 항변의 허용은 월권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날로부터 인정된다고 한다(C.E. section 20 juin 1997, Kessai). 위법성이 인정된 명령은 법규는 취소되지 않지만 위법하다고 선언된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되고 행정청에 대해 사후적으로 모든 적용을 배제시킨다. 이러한 위법성은 고유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대상이 된 조치의 취소를 가져온다.

## ◇ Exception d'inexécution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이라고 한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교회법학자 및 후기주석학파에 의하여 창시된 개념으로 이해되며, Domat와 Pothier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으나, 민법전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 등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즉, 민법전 제1612조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위한 기한을 허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51조에서는 “매매계약시에 대금지급의 날짜와 장소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장소와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53조에서는 “매수인이 저당권에 기한 소 또는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의하여 방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러한 방해를 배제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담보의 제공을 원하거나 또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환이나 임치에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칙이 적용된 규정들이 존재한다(예컨대, 민법전 제1704조, 민법전 제1948조 등).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우선, 계약의 성질상 동시이행이 있을 수 없는 경우(임대차나 근로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라든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동시이행의 원칙이 배제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그의 채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부이행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며, 항변권의 행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함이 관례의 태도이다. 다른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항변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유사한 점도 있으나, 후자는 쌍무계약 내지 계약영역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물건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내재적 특성으로서 채권관계와 일체성이 인정됨에 반하여 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Cf., Cass. civ.3, 5 mars 1970, Bull. civ. III, n° 173** : Pour que l'exception d'inexécution puisse être opposée, il faut une inexécution grave et la bonne foi de celui qui l'invoque.(파기원 민사 제 3 부, 1970년 3월 5일 판결 참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 Exequatur 【 영사인가장(領事認可狀) 】

접수국이 영사공관장에게 영사업무를 인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사관장은 이 인가장을 받기 전에는 직무를 개시할 수 없으며, 접수국은 인가장의 부여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2조 참조).

### ◇ Expertise 【 감정 】

판사 또는 법원에 의해 명령되는 처분으로서 사안을 명확히 하여 판결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 있는 기술자(전문가)에게 조사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인(expert)은 사법부의 보조자일 뿐이며 감정의 결과는 판사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 감정인의 지정은 각 항소법원별로 작성된 감정인 명부에 의한다. 그러나 명단에 없는 전문가도 판사가 사유를 적시한 결정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안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지는 처분인 자문(consultation) 또는 단순한 확인(constatation)과 구별된다.

**CPP Art.706-47-1** : Les personnes poursuivies pour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doivent être soumises, avant tout jugement au fond, à une expertise médicale. L'expert est interrogé sur l'opportunité d'une injonction de soins dans le cadre d'un suivi socio-judiciaire.(형사소송법전 제706-47-1조 : 제706-47조에 언급된 범죄들 중의 하나로 소추된 자는 실체판결에 앞서 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감정인은 사회사법

조치(suivi socio-judiciaire)의 범주내에서 치료명령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감정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지방법원 검사장에 의해 명령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유죄선고가 있는 경우에 본조에 규정된 구금상태에서 의학적·심리학적 조치들이 용이하도록 교정청에 통보가 된다.)

### ◇ Expropriation 【수용】

공공의 사용을 이유로 한 수용은 사인(혹은 공법인의 사적 재산)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익(□□ Utilité publique)의 목적을 위해 이전하고 정당하고 사전적인(une juste et préalable indemnité)보상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용은 소유권의 분할을 가져오는데 불과한 행정상 지역(□□ Servitudes administratives)이나 동산의 징발(réquisition) 혹은 선매권(droit de préemption)과 같은 소유자의 동의(consentement du propriétaire)를 존중하는 다른 메카니즘과는 구별된다. 수용은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공용수용의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헌법위원회도 판시하고 있다(C.C. 89-256DC 25 juillet 1989, Rec. 53). 민법 제545조도 사전보상이 있고 공용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의 양도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용수용은 1810년 3월 8일 법률 이래로 행정과 사법의 서로 대비되는 양측면에서 전개된다. 1958년에 10월 23일 오르도낭스(□□ ordonnance)를 통해 종전의 기본적인 틀을 전제로 간소화된 했지만 전자는 소유권의 이전과 보상절차가 포함하며 후자는 공용성(utilité publique)의 인정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서 사전조사(enquête préalable)와 의견(avis)이 있고 공익(용)성의 선언(DUP: 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과 수용목적물의 결정이 포함된다. 공용성의 선언은 국사원의 데크레나 프레페의 아레테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용수용의 내용과 절차는 공용수용법전(Cod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에서 규정한다.

### ◇ Extinction 【(조약의) 종료】

조약의 종료라 함은, 조약이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발생하던 중,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해당 조약의 규정에 따

라 또는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약의 종료는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타방 당사자로부터 조약의 종료는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 또는 후발적 이행불능 등도 조약의 종료 사유로 인용될 수 있다. 아울러, 조약이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종료된다. 양자조약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폐기에 의하여 조약은 종료된다.

### ◇ Extradition 【 범죄인인도 】

국가 간에 이뤄지는 형사공조의 한 방법으로서 일방국가가 상대국가(요청국)에 의해 이미 형사소추가 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자신의 영토상에 발견된 경우에 당해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재판을 받거나 형집행의 목적으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범죄인인도요구에 대한 심사는 항소법원 수사부가 맡는다. 수사부는 프랑스법의 규칙(프랑스법은 자국민과 정치범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에 따라 접수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주장된 유죄성의 실체에 대하여는 내용(au fond)심사를 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요청에 관한 수사부의 거부(refus)의견에 정부는 기속되지만 동의(accord)의견은 반대로 정부로 하여금 조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 Chambre de l'instruction

[ F ]

## ◇ **Fait du prince (théorie de -) 【 왕자/군주의 행위론 】**

공권력주체의 우월적 지위의 특징을 가지는 행정계약에 관한 내용중 계약의 재정적(財政的) 균형의 존중과 관련된다. 판례상의 이른바 왕자/군주의 행위(이론)는 공법인에 의해 행정계약의 이행조건이 변경된 경우를 지칭한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재정상의 균형의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행정계약(contrat administratif)을 체결한 공공단체는 계약을 변경하는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체결 시에 유효하게 정했던 규정을 바꾸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계약을 체결한 공법인이 부담률을 올리거나 작업의 안전사항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의 재정적 요건을 가중하게 된다. 행정계약의 상대방은 재정균형이 가능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C.E. 2 février 1983, Union des transports publics urbains et régionaux, Rec. p.33). 실제로 왕자/군주의 행위론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재정상 균형유지 명목의 보상은 한편으로는 문제가 된 조치가 행정계약의 상대방인 행정청으로부터 나오고(계약의 일방적 변경 및 손해가 직접적이고 특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의 동일한 대상에 미치거나 계약의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담율의 인상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CAA Paris, 25 mai 1993, Société Renoveco, Rec.p. 874).

## ◇ **Faute 【 과책 】**

‘faute’라는 표현은 한국법에서의 고의·과실 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에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과책을 가리킨다. 즉, 가해자가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역으로,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작위에 의한 과책을 특히 ‘faute de commission’이라고 표현하며, 부작위에 의한 과책을 ‘faute d’ommission’ 또는 ‘faute d’abstention’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과책은 이러한 작위나 부작위와 같은 ‘사실적 요소’(élément matériel) 이외에도 법률이나 관습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는 ‘위법성요소’(élément d’illicéité), 그리고 행위자의 판단과 같은 ‘도덕적 또는 정신적 요소’(élément moral)의 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요소는 ‘의사적 요

소'(élément volontaire) 또는 '유책성요소'(élément d'imputabilité)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책의 성립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요구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과책은 고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민법전 제1383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태만이나 경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그 모두가 책임발생, 특히 불법행위책임발생의 근거가 된다.

관련 용례로는, 보험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과책(faute assurable), 민사상 과책(faute civile), 계약상 과책(faute contractuelle),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는 과책(faute délictuelle), 사기적 과책(faute dolosive), 고의에 의한 과책(faute intentionnelle), 경과실 또는 경과책(faute légère), 중과실 또는 중과책(faute lourde),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책(faute non-intentionnelle), 과실에 의한 과책(faute quasi-délictuelle) 등이 있다. 한편, 계약상 과책(faute contractuelle)은 약정한 채무의 불이행(inexécution des obligations)이나, 불완전이행(exécution défectueuse) 그리고 이행지체(exécution tardive)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과책을 말한다.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는 과책(faute délictuelle)은 계약상 과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또는 과실에 의한 과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다. 사기적 과책(faute dolosive)은 고의에 의한 과책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특히 불성실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고의에 의한 과책(faute intentionnelle)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과책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과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C.civ. Art.1382 :** Tout fait quelconque de l'homme, qui cause à autrui un dommage, oblige celui par la faute duquel il est arrivé, à le réparer.(민법전 제1382조 :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과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회복하게(배상하게) 할 의무를 지운다.)

#### ◇ Filiation 【 친자관계, 비속 】

'filiation'은 자녀와 부모를 연결하는 '친자관계'(lien de parenté)를 지칭함이 일반적이며, 부자관계는 'filiation paternelle'라고 표현하고, 모자관계는 'filiation maternelle'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친자관계는 다시 '혼인중의 친자관계'(filiation légitime : 민법전 제312조 이하)와 '혼인외의 친자관계'(filiation naturelle : 민법전 제334조 이하)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친자관계는 혈연과 같은 자연의 섭리에 의하여 형성되고 입증될 수 있

음이 일반적이나,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양친자관계(filiation adoptive)와 같이 혈연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의 친자관계형성도 가능하다(민법전 제356조, 제363조 참조). 부모의 혼인에 기초하여 출생한 혼인 중의 자의 친자관계는 그 확실성이 의심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가능한 한 보호된다. 즉, 민법전에서는 부성 추정(또는 친생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민법전 제312조 참조), 이는 “혼인은 아버지를 추정케 한다”(pater est is quem nuptiæ demonstrant)는 법언에 근거한 것이다. 다른 한편,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자관계는 ‘인지’(reconnaissance), ‘신분점유’(possession d'état)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민법전 제334-8조 참조). 관련 용례로서 “filiation d'origine”은 양자로 된 자에 대하여 그가 입양되기 이전에 맺고 있던 기존의 친자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존의 친자관계는 양친자관계의 모습에 따라 양친자관계로 대체되거나 병존하게 된다.

**C.civ. Art.310-1** : Tous les enfants dont la filiation est légalement établie ont les mêmes droits et les mêmes devoirs dans leurs rapports avec leur père et mère.(민법전 제310-1조 : 적법하게 친자관계가 설정된 모든 자녀는 그의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Flagrant délit** 【 현행범죄 】

형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로서 현재 범해지고 있거나, 막 범해진 것이 현행범죄가 된다. 또한 행위와 매우 근접한 시간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공개적 외침에 의해 쫓기고 있거나 중죄 또는 경죄에 참여하였다고 의심케 하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준현행범으로 취급한다. 현행의 중죄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는 경죄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범인을 체포할 수 있고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CPP Art.53** : A la suite de la constatation d'un crime ou d'un délit flagrant, l'enquête menée sous le contrô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peut se poursuivre sans discontinuer pendant une durée de huit jours.(형사소송법전 제53조 : 현행의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확인 후에 이 장(le présent chapitre)에 규정된 요건하에 지방법원 검사장의 통제하에 진행되는 조사는 8일 동안 중단됨이 없이 지속될 수 있다. 만일 중죄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emprisonnement)에 해당

하는 경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에 필요한 수사행위들이 지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검사장은 동일한 요건하에서 최장 8일간의 조사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Enquête de flagrante

### ◇ **Fonction publique** 【 공무원 】

Fonction publique는 공무원을 지칭하는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이들에 속한 공공법인에 소속된 직원(agent)으로서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는 법관이나 군인들을 포함하여 약 5백만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에서의 공무원 시스템의 기본제도와 원칙은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이래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국가공무원제와 함께 지방공무원과 의료직공무원제를 설립하고 이들에게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유럽연합의 등장이래로 프랑스의 공무원제도는 점차적으로 공동체 회원국의 소속인에 대해서도 개방하고 있다 (1983년 7월 13일 법률과 1991년 7월 26일 법률 제 2 조). 기술한 Agent public 가운데 정년이 보장되고 계급에 따른 임용을 통해 행정상 계서에 포함되는 특징을 가지는 경우에 les fonctionnaires라고 한다.

Agent public

### ◇ **Fonctionnaires consulaires** 【 영사관(領事官) 】

영사관장을 포함하여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법당국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직무상으로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한다. 아울러 접수국의 법원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 **Fonctionnaire de fait** 【 사실상 공무원 】

프랑스의 행정행위 개념은 계약과 일방적 행정행위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우리의 행정행위 내지는 실정법상의 처분)로 인식되는 일방적 행정행위(décision

individuelle처럼 개별적인 경우와 acte réglementaire와 같이 명령적인 경우로 나뉜다)의 경우, 행정청은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정한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사실상 공무원이론은 행정관례를 통해 발전된 예외적 상황(경우) 표현이론(théorie juridique de l'apparence)의 적용과 관련된다. 전자의 경우 예외적 경우(상황)를 이유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실상 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그 발령자는 무권한(無權限) 이지만 법관은 이를 적법한 행위로 보게 된다. 후자는 일반인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적법하게 임명된 공무원과 같이 적법한 임용을 받은 사람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사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있어 적법하지 않게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처리한 결정 전부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C.E. 2 novembre 1923, Asso. des fonctionnaire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es postes et télégraphes, Rec. p.699).

#### ◇ Force majeure 【 불가항력 】

불가항력은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사유로 전통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민법상 개념과 차이가 없다.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로서 계약상 혹은 비계약적인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불가항력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손해와 결과발생의 인과관계를 배제시켜준다.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예견할 수 없는 결과로서(imprévisibilité), ②당사자 외부에서(un événement extérieur), ③그 결과를 극복할 수 없어야 한다(irrésistibilité). 실제로 위 3가지 요소를 구비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측하기 곤란한 강한 폭우로 야기된 홍수피해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C.E. 25 mai 1990. Abadie, Rec. p.546). 그렇지만 국사원은 태평양에 위치한 해외영토인 누벨칼레도니아에서 사이클론(태풍의 일종)에 수반된 폭우는 그 지역에서는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C.E. mars 1988, Territoire de la Nouvelle Callédonie, RDP 1989, p.546). 불가항력은 행정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로 인해 의무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

## ◇ Force majeure (cas de -) 【불가항력】

민법전 제11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불이행이 자신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법 제1148조에 의하면 전조에서 말하는 외부적 원인이 바로 불가항력이나 우연한 사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불가항력과 ‘우연한 사건’(cas fortuit)은 법정면책사유인 외부적 원인의 구체적 유형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견해에 따라서는 이 양자가 준별되는 개념이기도 하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양자는 구별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불가항력 또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요구된다고 이해됨이 일반적인데, 먼저 그러한 사건이 피고인 채무자나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는, 즉 그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non imputable), 사건이 회피불가능(inévitable)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견가능성도 없었어야 하며(imprévisible),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등이 극복불가능(insurmontable)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irrésistible) 것이었어야 한다. 한편, 불가항력이나 우연한 사건의 효과로서 채무자나 피고(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관계에서 해방되며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민법전 제1148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전 제1772조, 제1138조 제2항, 제1302조 참조).

**C.civ. Art.1148 :** Il n'y a lieu à aucuns dommages et intérêts lorsque, par suite d'une force majeure ou d'un cas fortuit, le débiteur a été empêché de donner ou de faire ce à quoi il était obligé, ou a fait ce qui lui était interdit.(민법전 제1148조 : 채무자가 자신에게 의무부담된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에게 금지된 것을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항력 또는 우연한 사건에 기인한 경우에는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 Force majeure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국제의무의 준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우발적 사고를 말한다. 즉, 저항할 수 없는 힘이란 태풍, 이상 기류, 외국 군대에 의한 영토 일부의 점거 등 자연현상이든 인간행위이든 간에 행위 주체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말한다. 한편, 우발적 사고는 폭도들의 외교공관의 급습 등에 있어서와 같이 영토국 당국이 어떠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던 관계로 그와 관련된 국제의무의 준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가지 모두가 불가항력의 요소를 구성하며, 이들에 공통된 것은 그로 인하여 문제의 의무의 준수가 불가능하여진다는 것이다.

### ◇ Fruits 【 과실(果實) 】

과실은 ‘산출물이 발생하는 재산이나 자산’(biens frugifères)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물을 말하며, 이러한 과실은 금전일 수도 있고 현물일 수도 있다. 민법전 상으로는 과실을 천연과실(fruits naturels), 인공과실(fruits industriels) 그리고 법정과실(fruits civils)로 분류하고 있다(민법전 제547조 이하, 제582조 이하 참조). 천연과실은 토지로부터 자연히 발생하는 산출물이나 가축의 증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인공과실은 경작이나 노력의 투여에 의하여 얻어지는 물건이다. 그리고 법정과실은 가옥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이나, 금전의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원물의 소유자에게 존재하나, 만약 그러한 과실이 제 3 자의 노동, 작업, 종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원물의 소유자는 그러한 제 3 자에게 상환의 무가 있으며, 상환액은 상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민법전 제548조). 그러나 과실에 대한 단순점유자가 선의점유인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악의점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원물과 함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 과실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며, 가액산정은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민법전 제549조). 한편, 용익권(usufruit)은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그 실체를 보존하면서 마치 자기 소유의 물건과 같이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므로(민법전 제578조),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민법전 제582조).

**C.civ. Art.586 :** Les fruits civils sont réputés s'acquérir jour par jour, et appartiennent à l'usufruitier, à proportion de la durée de son usufruit. Cette règle s'applique aux prix des baux à ferme, comme aux loyers des maison et autres fruits civils.(민법전 제586조 : 법정

과실은 용익권의 존속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용익권자에게 속한다. 이 규칙은 정액 토지임대차계약의 차임뿐만 아니라 가옥임대차의 차임 및 기타의 법정과실에도 적용된다.)

[ G ]

## ◇ Gage 【 동산질권, 질물, 담보 】

우선, 질권(nantissement)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어떤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질권자는 그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민법전 제2071조, 제2073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질권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를 동산질권(gage)이라고 하고,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질권(antichrèse)이라고 한다. 동산질권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설정할 수도 있으며(민법전 제2077조), 질권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은 무형의 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때에는, 적법하게 등록된 공정증서 또는 사서증서를 질물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그 채무자가 공정증서로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민법전 제2075조). 한편, 채권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질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채무자에 대하여 질물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전 제2080조). “gage”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동산질권을 가리킴이 일반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질권의 목적물인 질물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 채무자의 현재 및 미래의 재산의 총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라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담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특히 “gage commun”(공동담보 또는 보통담보) 또는 “droit de gage général”(일반담보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관련 용례로서, ‘非留置質’(gage sans dépossession)은 특히 상사분야에서 질물의 유치를 수반하지 않는 질권의 설정을 의미하며, 이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인도하는 대신에 질권설정을 공시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마치 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물에 대한 ‘처분제한’(indisponibilité)과 추급권(droit de suite)이 수반되기도 한다.

**C.civ. Art.2073** : Le gage confère au créancier le droit de se faire payer sur la chose qui en est l'objet, par privilège et préférence aux autres créanciers.(민법전 제2073조 : 동산질권은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한다.)

## ◇ Garantie 【 담보, 보증, 보상, 보장 】

민사법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보 내지 담보책임을 의미하는 용례이다. 담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나 권리의 수익을 확보하고, 금전적 손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모든 유형의 메카니즘을 가리킨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계약(매매, 임대차, 도급 등)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채무변제의 확보수단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는 sûreté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채무와 부종성이 인정되는 각종의 담보수단(예컨대, 보증계약(cuationnement), 질권(nantissement), 선취특권(privilège), 저당권(hypothèque) 등) 이외에도, 그와 같은 부종성이 없는 손해담보계약 또는 독립적 담보(garantie autonome)를 포함한다. 한편, 보험법상으로는 ‘보상되는 위험’(couverture du risque) 또는 보험금액(montant, plafond)을 가리키기도 한다. 관련 용례로는, 즉시담보(garantie à première demande), 추탈담보책임(garantie d'éviction), 개인적 행위에 대한 담보책임(garantie du fait personnel), 하자담보책임(garantie des vices cachés), 손해담보계약(contrat de garantie), 보상기금(fonds de garantie), 보상증권(lettre de garantie), 부대적 담보청구(garantie incidente), 주된 담보청구(garantie principale), 담보소권 또는 담보청구권(action en garantie), 담보를 위한 호출(appel en garantie), 담보의 항변(exception de garantie), 건축하자담보 또는 무하자보증(garantie de construction), 10년 담보책임(garantie décennale), 2년 담보책임(garantie biennale), 완성담보책임(garantie de parfait achèvement), 고용보장(garantie d'emploi), 소득보장(garantie de ressources), 자동보장(garantie automatique) 등이 있다.

**C.civ. Art.1640** : La garantie pour cause d'éviction cesse lorsque l'acquéreur s'est laissé condamner par un jugement en dernier ressort, ou dont l'appel n'est plus recevable, sans appeler son vendeur, si celui-ci prouve qu'il existait des moyens suffisants pour faire rejeter la demande.(**민법전 제1640조** : 매도인이 매수인을 소송에 참가시키지 않고 종심에서 패소하거나 상소가 수리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도인이 소송상의 청구를 기각시키기에 충분한 방법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추탈담보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

#### ◇ **Garde à vue** 【강제유치, 경찰유치】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경찰서 또는 군경찰의 시설에 최고 2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강제유치는 불심검문, 현행범체포, 임의출석 등 이미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취해지는 구금조치로서 적극적인 체포(arrestation)와는 구별된다. 예비수사, 현행범수사, 촉탁수사의 전 과정에서 강제유치가 가능하며 수사종류별로 적용법조가 다르다. 강제유치에 대한 통제권자는 예비수사, 현행범수사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검사장이 되며, 예심이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판사가 된다. 지방법원 검사장 또는 수사판사는 강제유치의 사실을 통보받으며 최장 24시간 동안의 구금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범죄혐의가 없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강제유치를 할 수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시간동안만 인치할 수 있다. 강제유치된 자는 묵비권, 가족에게 통보할 권리, 강제유치 개시 첫 시간에 변호사와 면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일정한 범죄들(테러리즘, 마약유통)에 대한 강제유치는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최고 4일 동안 가능하다. 지방법원 검사장은 연 1회 이상 강제유치시설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한다.

**CPP Art.77-2** : Toute personne placée en garde à vue au cours d'une enquête préliminaire ou de flagrance qui,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la fin de la garde à vue, n'a pas fait l'objet de poursuites, peut interroge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 ressort duquel la garde à vue s'est déroulée sur la suite donnée ou susceptible d'être donnée à la procédure.(형사소송법전 제77-2조 : 예비수사 또는 현행범수사의 과정에서 강제유치된 모든 사람은 강제유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강제유치가 이뤄진 관할의 지방법원 검사장에게 소송절차의 결과 또는 예상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 ◇ Garde des Sceaux 【 법무부장관 】

국새(國璽-sceau)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무부장관(ministre de la Justice)에게 맡겨졌다. 이에 유래하여 법무부장관을 Garde des Sceaux라고도 부른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과 수상 이외에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 ◇ Génocide 【 집단살해 】

집단살해라 함은 특정 종족을 말살할 의도로서 취하여지는 일련의 범죄이다. 1948년 『집단살해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는 집단살해를 정의하기를, “어떠한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의도로서 취하여지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①그 집단 구성원들의 살해, ②그 집단 구성원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보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③그 집단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부분적인 신체적 파괴를 초래하는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부과하는 것, ④그 집단 내의 출산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 ⑤그 집단의 아동들을 다른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것 등이다. 이 협약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각자의 헌법에 따라 이러한 집단살해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제 6 조에서 집단살해죄에 대하여 위 협약과 동일한 정의를 부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게 이러한 범죄를 범한 개인들을 처벌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Convention pour la prévention et de la répression du crime de génocide, art.2 :** le génocide s'entend de l'un quelconque des actes ci-après, commis dans l'intention de détruire, en tout ou en partie, un groupe national, ethnique, racial ou religieux, comme tel. (집단살해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협약 제2조 :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서 범하여지는 다음 여하한 행위도 그 자체 집단살해에 해당한다.)

## ◇ Gestion d'affaire 【 사무관리 】

어떤 자가 일정한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하며, 사무를 관리하는 자를 “*gérant d'affaire*”라고 표현하고, 사무의 본인인 위 타인을 “*maître d'affaire*”라고 표현한다. 사무관리가 있게 되면, 관리자는 본인에게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무관리는 관리자와 본인 모두에게 상호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학설상으로는 ‘쌍

무적 준계약'(quasi-contrat synallagmatiqu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로마법에서는 본인이 관리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직접소권'(actio negotiorum gestorum directa)이라고 하고, 관리자의 본인에 대한 청구권을 '반대소권'(actio negotiorum gestorum contraria)이라고 하여, 관리자의 본인에 대한 채무가 주된 채무인 것으로 관념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민법전에서도 이러한 로마법상의 태도를 계수하여 관리자의 행위를 채권발생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사무관리를 준계약으로 정의(민법전 제1371조 참조)하기에 이르렀다고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무의 내용은 예컨대 타인의 가옥의 수리와 같은 사실 행위일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한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행위는 1회적일 수도 있고, 계속적인 연쇄적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무관리의 효과로서 관리자에게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보존행위와 같은 협의의 관리행위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학설상 다수의 견해는 관리자의 신중한 태도를 전제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한편, 19세기 말에 이르러 부당이득의 법리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사무관리의 개념으로 부당이득의 법리를 포섭하기도 하였으나, 사무관리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 de gérer l'affaire d'autrui)라는 요소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 인식되어 오늘날에는 양자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한편, 사무관리는 관리자와 본인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임과도 구별된다.

**C.civ. Art.1374, al.1 :** Il(gérant d'affaire) est tenu d'apporter à la gestion de l'affaire tous les soins d'un bon père de famille.(**민법전 제1374조 제 1 항 :** 사무관리자는 사무의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 Grâce 【 특별사면 】

헌법 제17조에 의해 인정된 권리로서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좀 더 가벼운 형벌로 대체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하여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CP Art.133-8** : La grâce ne fait pas obstacle au droit, pour la victime, d'obtenir réparation du préjudice causé par l'infraction.(**형법전 제133-8조** : 특별사면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 권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Gratuité (principe de -) 【 공공서비스의 무상원칙 】**

공공서비스의 수행,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비용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공급, 공공재산이나 시설의 사용이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입법자는 일정한 서비스에 대해 무상성을 규정할 수 있다. 원활한 상공업적 공공서비스(SPIC)의 운영을 위해서는 무상성을 배척할 수 있다. 우리 법제가 공물의 일반사용에 관한 무상원칙과 예외적 사용료 징수의 입장이라면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 공공서비스(SPA)의 무상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다(국사원 판례 C.E. Ass. 10 juillet 1996. AJDA 1997, p.189). 반면에 공공단체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최소한 공공서비스 정상공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redevance)부과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재산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무상성 원칙이 지배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사용료(péage d'autoroute), 유료주차장 등은 인정되고 있다.

[ H ]

## ◇ Habitation 【주거, 거주】

우선, 어떤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장소인 주거지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공간도 포함되나, 직업활동과 관련된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관련 용례로서, “habitation à loyer modéré”은 저가 임대주택을 말하며, H.L.M.으로 표기함이 일반적이는데, 이전에는 이를 H.B.M. (habitation à bon marché)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H.L.M.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건축된 아파트들을 가리키는데, 그 건축과 관리에 있어서의 주체가 공기법인지 사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적용법규도 달라진다. 아울러, H.L.M.도 ‘단순 임대형’(H.L.M. locative)과 ‘소유권취득형’(H.L.M.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이 있는데, 후자는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분양’(location-accession)의 방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임대차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일정한 장소에서 직업상의 이유가 아닌 목적으로 ‘거주하는 행위’(action d’habiter)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 용례로서, “clause d’habitation bourgeoise”은 주택전용조항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이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조항 중에서 특히 주택을 주거용으로만 이용하기로 하는 조항으로서(단,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자유업의 개업은 허용됨) 상점이나 사무소로서의 이용은 배제된다. 그리고 “droit d’habitation”은 주거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건물을 자기나 가족의 주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서, 주거목적의 한도에서만 인정되며, 양도나 전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민법전 제634조).

**C.civ. Art.632** : Celui qui a un droit d’habitation dans une maison, peut y demeurer avec sa famille, quand même il n’aurait pas été marié à l’époque où ce droit lui a été donné.(**민법전 제632조** : 가옥에 대하여 주거권을 향유하는 자는, 비록 주거권 취득 당시에는 미혼이었다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당해 가옥에서 거주할 수 있다.)

## ◇ Haute cour de justice 【고등탄핵재판소, 고등사법재판소】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로 헌법상 기관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프랑스

고등탄핵재판소는 24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24명의 고등탄핵재판소 재판관(juge titulaire)들은 각각 상원(Sénat)과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12명의 상원의원들과 국민의회의원들이다. 양원은 각각 비밀투표로 각각의 위원들을 선출하는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들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회 의원들의 경우 총선거가 실시되면 바로 새로운 고등탄핵재판소 재판관들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의회를 통하여 선출된 고등탄핵재판소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민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재판관 자격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원의 경우 상원의원의 임기는 9년인데, 3분의 1씩 3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데 고등탄핵재판소 재판관들의 경우, 3년마다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한 후 12명의 고등탄핵재판소 재판관들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등탄핵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는 3년이라 할 수 있다. 고등탄핵재판소는 1명의 소장과 2명의 부소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고등탄핵재판소의 소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 고등탄핵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가장 연장자가 재판관들을 소집하여 비밀투표로 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2명의 부소장의 경우도 소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선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원과 국민의회는 보조재판관(juge suppléant)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 의회는 6명씩의 보조재판관을 선출하여서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조재판관이 대신하여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보조재판관의 경우도 재판관과 동일하게 의회에 의하여 선출이 되는데 상원과 국민의회는 총 12명의 보조재판관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상원의원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심판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면 상원의원에서 선출된 보조재판관 가운데에 한 보조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하게 되고, 국민의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국민의회에서 선출이 된 보조재판관 가운데에 한 보조재판관이 참여하게 되는 데, 보조재판관 가운데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개적인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

**Constitution Art.67 al.3** : Une loi organique fixe la composition de la Haute Cour, les règles de son fonctionnement ainsi que la procédure applicable devant elle.(헌법 제67조 제 3 항 : 고등탄핵재판소의 구성과 기능,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조직법률로 정한다.)

### ◇ Haute mer 【 공해(公海) 】

공해란 여하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수역을 가리킨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전 해양이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인정되어 오다가, 근세에 이르러 영해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해양은 영해와 공해로 양분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영해 이외의 부수적인 국가 관할수역이 인정되는 결과 공해의 범위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해양법협약 제86조는 공해를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군도수역에 속하지 않는 해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해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다. 즉, 공해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은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 인공섬 및 기타 구조물 설치의 자유, 어업의 자유,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향유한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87** : La haute mer est ouverte à tous les Etats, qu'ils soient côtiers ou sans littoral.(해양법협약 제87조 : 공해는 연안국이든 무연안국이든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 ◇ Haute trahison 【 대역죄(大逆罪) 】

대통령 탄핵의 사유는 프랑스 헌법 제68조에서 대역죄(haute trahison)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프랑스 대통령은 대역죄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상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역죄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형상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대역죄의 개념은 프랑스 헌법에서도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고등탄핵재판소에 관한 법률”(Loi organique 2 janvier 1959 sur la Haute Cour de Justice)에도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도 그 개념을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역죄를 사유로 탄핵제소가 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형법상의 반역죄(trahison)와는 구별이 된다. 형법상 반역죄는 적과의 내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대역죄와는 다른 것이다. 대역죄란 용어는 1795년 8월 22일 프랑스 헌법에서 이미 사용된 용어이기는 하다. 이 당시에 입법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

임명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의 소집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국민이라든가 도의 행정관리들에 대하여 대역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여러 헌법에서 이와 같은 대역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역죄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 대역죄를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일반 형법에 따른 개념을 적용하여 대역죄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으며, 뒤기(Duguit)의 경우에는 대역죄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한 법률이 없으므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대역죄에 대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헌법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역죄의 개념은 다양하게 인정이 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 것을 보면,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헌법을 침해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헌법 제1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긴급권의 남용이라든가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프랑스 헌법은 제16조에서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며, 헌법상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수상, 양원의장, 헌법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문을 거친 후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교서로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조치는 헌법상의 공권력에 대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수단을 최소한의 기간 내에 확보하려는 의사에 따라 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하게 되면 당연히 소집되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의회는 이러한 비상권한의 발동기간에는 해산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발동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긴급권을 발동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입법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이거나 수상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데 발의가 되면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소관위원회를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상원과 국민의회 모두 거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되면 조직법률의 경우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치고, 일반법률의 경우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없이(물론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수상, 양원의장이 위헌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보통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률이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되게 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표결된 법률에 대해서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던가 아니면 국회에 법률 또는 법률의 일부조문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재심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공포도 하니 않는 경우가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헌법 제 5 조를 보면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공동체의 협정 및 조약의 존중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Constitution Art.68**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st responsable des actes accomplis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qu'en cas de haute trahison.(헌법 제68조 : 대통령은 대역죄를 제외하고 그 직무수행상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Hauts-fonds découvrants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 간출지】

간출지라 함은 간조시에는 수면 위에 노출되나 만조시에는 수면 밑으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해양법협약 제13조 제 1 항). 간출지가 영해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조선은 영해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간출지가 영해 밖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않는다(동 조 제 2 항). 아울러, 간출지는 섬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서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협약 제121조 제 1 항 참조). 또한 간출지는 직선기선의 설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될 수 없다(협약 제 7 조 제 4 항).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13, par.1** : Par 'hauts-fonds découvrants', on entend les élévations naturelles de terrain qui sont entourées par la mer, découvertes à marée basse et recouvertes à marée haute.(해양법협약 제13조 제 1 항 : 간조노출지라 함은 저조시에는 수면 위로 노출되나 고조시에는 수면 밑에 잠기는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의 자연적 융기를 말한다.)

### ◇ Hiérarchie des normes 【 규범의 단계 】

규범은 그 형태라든가 내용이 다양함으로 일률적으로 그 우열을 결론짓기가 어렵다. 현재 프랑스에서 인정되는 국내 성문 법규범을 중심으로 그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문 헌법전이 그 정점에 있다. 현행 헌법은 195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전문(前文)과 본문 89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성문 헌법전 뿐만이 아니라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및 1946년 헌법 전문(前文) 등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법률(loi)이 있다. 법률은 조직법률(loi organique)과 일반법률(loi ordinaire)이 있는데, 조직법률이 입법절차도 좀 더 까롭고 약간의 상의의 가치를 가지는 규범이다. 또한 법률적 가치를 가지는 법률명령(ordonnance)이 있다. 그리고 행정입법 중 데크레(décret)가 있으며, 하위에 아레테(arrêté)가 있다.

### ◇ Hiérarchique (recours -) 【 위계적 심판, 소청 】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requérant)는 행정행위나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원인된 행위를 취소(retirer)하거나 손해전보(verser l'indemnisation)를 요구할 수 있거나 많은 경우에 이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사전적 행정상 구제(recours administratif préalable)가 recours gracieux(이의신청)이라면 계서상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recours hiérarchique(위계적 심판: 행정청의 결정의 변경이나 취소)이라 한다. 양자의 구별은 행위당사자인가 상급기관인가가 중요하며 이들 행정상 구제절차는 사법(司法)적인 구제절차(recours juridictionnel) 행정소송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나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2개월의 월권소송의 제소기간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원고는 기간연장의 이득을 누리게 된다.

### ◇ Homicide 【 살인 】

생존한 자연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위해행위로서 여기에는 자발적 살인(homicide volontaire)과 비자발적 살인(homicide involontaire)이 있다. 자발적 살인에는 형법전 제

221-1조에 해당하는 고살(故殺, meurtre)과 형법전 제221-3조에 해당하는 모살(謀殺, assassinat)로 구분된다. 고살은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모살은 중신형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 Huis-clos 【 비공개 】

‘모든 문이 닫혀 졌다’는 의미를 갖는 이 단어는 변론의 공개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방청이 허용되지 않는 심리(audience)를 지칭하거나 판사의 비공개재판의 결정을 지칭한다. 재판장은 국가의 혼란 또는 국가기밀의 누설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에 이 결정은 항상 공개심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CPP Art. 306** : Lorsque les poursuites sont exercées du chef de viol ou de tortures et actes de barbarie accompagnés d'agressions sexuelles, le huis clos est de droit si la victime partie civile ou l'une des victimes parties civiles le demande; dans les autres cas, le huis clos ne peut être ordonné que si la victime partie civile ou l'une des victimes parties civiles ne s'y oppose pas.(형사소송법전 제306조 : 소추가 강간 또는 성적가해가 동반된 고문 및 야만적 행위에 대하여 이뤄진 경우에 사당사자인 피해자들 또는 이들 중 일인에 의하여 요구되는 때에는 비공개재판은 당연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재판은 사당사자인 피해자들 또는 이 들 중 일인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될 수 있다.)

[ I ]

## ◇ île 【 섬 】

통상적인 의미에서 섬이라 함은 해양상의 육지 지역을 말하나, 그 법적 개념은 다소 엄격하다. 국제법은 해양상의 육지 지역이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섬으로 간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 1 항은 섬을 정의하기를 “해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조시에는 수면 밑으로 잠기는 간출지(Hauts-fonds découvrants)와 인공섬은 협약상의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섬은 다른 영토와 마찬가지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진다(동 조 제 2 항). 그러나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동 조 제 3 항).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거주의 가능성 및 독자적 경제생활의 지탱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유권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국가들은 이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121, par.1** : Une île est une étendue naturelle de terre entourée d'eau qui reste découverte à marée haute.(해양법협약 제121조 제 1 항 :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조시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 ◇ Immunités parlementaires 【 국회의원의 특권 】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헌법 제26조가 면책특권(irresponsabilité)과 불체포특권(inviolabilité)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권력으로부터 혹은 국민들로부터 자유로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 Immutabilité 【 불가변성 】

불가변성이란 일반적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한다. 친족법에 부부재산제도와 관련하여, ‘부부재산계약의 불가변성의 원칙’(le principe de l’immuabilité des conventions matrimoniales)이 있다. 이 원칙은 혼인식이 거행된 이후부터 부부는 자신들이 결정한 부부재산제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즉, 법률에 정해진 경우, 판결에 의해서 부부재산제의 변경은 가능하다. 우리 민법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 민법 제829조 제 2 항).

**C.civ. Art.1396, al.3** : Le mariage célébré, il ne peut être apporté de changement au régime matrimonial que par l’effet d’un jugement, soit à la demande de l’un des époux, dans le cas de la séparation de biens ou des autres mesures judiciaires de protection, soit à la requête conjointe des deux époux, dans le cas de l’article suivant.(민법전 제1396조 제 3 항 : 혼인식이 거행된 후에는, 재산분할의 경우 또는 기타 사법적 보호수단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청구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만, 제1397조의 경우일정한 부부재산제를 2년간 실행한 후, 부부가 가족의 이익을 위해 부부재산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청구에 따른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만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다.)

### ◇ Impossibilité d’exécution 【(조약의) 이행불능】

조약의 이행불능이란, 조약의 이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소멸되거나 파괴됨으로써 조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조약의 종료 또는 정지 사유로 원용될 수 있는 바, 그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조약의 정지만을 요구할 수 있다.

### ◇ Imprévisibilité 【불예견성】

불예견성은 일반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한다. 불가항력(□□ force majeure)과 관련하여, 불예견성은 계약의 이행에 장애가 되는 사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불예견성은 외재성(exteriorité) 및 불가항성(irrésistibilité)과 함께, 불가항력의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판례에 의하면, 사건의 발생이 외재적이고(extérieur), 불예견적이며(imprévisible) 또한 저항이 불가능해야(irrésistible)만이 불가항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더 이상 이들 기준의 병합을 엄격히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그 발생이 예견될 수 있는 외재적인 사건에 해당할지라도, 그 사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외재적인 사건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사실 만으로 불가항력이 인정되고 있다(Cass. com. 1er oct. 1997, no 1897, The British and Foreign Marine Insurance C/ société Szymanski).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의 제 사정, 또는 손해를 야기하는 법적 사실의 발생 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개인의 통상의 주의(注意) 정도로는 미리 예견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예견성’은 배상되지 않는 손해의 원칙적인 판단기준이 된다(민법전 제1150조). 즉 계약책임(responsabilité contractuelle)에 있어서,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시 당사자에 의해 예견되었거나 예견될 수 있었던 손해만을 배상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견가능성(prévisibilité)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한다. 반대로 예견될 수 없는 손해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견가능성은 추상적으로(in abstracto) 판단된다. 즉 예견 가능한 손해는 보통 수준의 개인이 같은 상황에서도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손해를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불법행위책임(responsabilité délictuelle)의 경우에는, 비록 예견될 수 없었을 지라도,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C.civ. Art.1150 :** Le débiteur n'est tenu que des dommages-intérêts qui ont été prévus ou qu'on a pu prévoir lors du contrat, lorsque ce n'est point par son dol que l'obligation n'a pas été exécutée.(민법전 제1150조 : 의도적인 채무불이행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는 계약체결 시에 예견되었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

### ◇ Imprévision (théorie de l'-) 【 불예견이론 】

계약의 이행 중 발생한 경제적 상황변경으로 인해, 계약상 급부관계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 판사가 그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계약체결 시에는 예

견할 수 없었고 계약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화폐가치의 급변 등과 같은 경제상황이 발생하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불가항력과 구별) 일방 당사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경우, 판사가 그 계약의 내용을 공평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이론을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부르고 있다.

이탈리아·스위스·독일·영국·그리스·네덜란드 등이 입법을 통해 이 이론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계약의 구속력’ 또는 ‘거래의 안전’을 우선시키며 이 이론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즉 1876년의 판결에서 파기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거나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된 계약조항을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할 권한이 법원에는 없다”고 판시하였다(Cass. civ., 6 mars 1876, DP 76, I, 193; S. 1876, I, 161, les grands arrêts n° 405). 오늘날에도 파기원은 아직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Cass. civ. 3e, 14 oct. 1987, Bull. civ. III, n° 169).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레지옹(□□ lésion) 이외에도, 당사자들에 의해 ‘변동지수조항’(clause d’indexation, □□ indexation) 또는 ‘고통조항’(clause de hardship, □□ sauvegarde) 등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법률규정에 의해 허락된 경우에는 계약의 수정이 인정되고 있다. 법률규정에 의해 허락된 경우로는, 상사임대차(bail commercial)에 있어서 3년마다의 차임의 수정(1953년 9월 30일 데크레), 종신통기금(rente viagère, □□ rente)의 수정(1949년 3월 25일 법률), 무상처분(□□ libéralité)에 있어서 사정변경으로 인해 부담분(charges)의 이행이 극심하게 어렵게 되거나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의 무상처분의 조건과 부담분의 변경(민법전 제900-2조 이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예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변경을 고려한 판사의 계약수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파기원의 입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은, 1916년 3월 30일의 “보르도 가스”(Gaz de Bordeaux) 판결에서, 보르도 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파산선고와 이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불예견이론을 적용하였다(D.P. 1916, 3, 25; S. 1916, 3, 17 note M. Hariou). 따라서 불예견이론에 관하여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C.civ. Art.900-1** : Tout gratifié peut demander que soient révisées en justice les conditions et les charges grevant les donations ou legs qu’il a reçus, lorsque, par suite d’un changement de circonstances, l’exécution en est devenue pour lui soit extrêmement

difficile, soit sérieusement dommageables.(민법전 제900-1조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무상수익자가 받은 증여 또는 유증에 포함된 조건 과 부담의 이행이 극도로 곤란하거나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무상수익자는 그 조건과 부담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Imprudence 【 경솔 】

경솔은 과실(faute non intentionnelle)의 일종으로서, 형사 또는 민사책임(준불법행위, □□ quasi-délit)의 한 사유가 된다. 전제가 되는 행동에 있어서 경솔은 부주의(□□ négligence)와는 구별된다. 즉 경솔이란, 과속을 하거나 무모하게 암벽을 타는 행위와 같이,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기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C.civ. Art.1383:** Chacun est responsable du dommage qu'il a causé non seulement par son fait, mais encore par sa négligence ou par son imprudence.(민법전 제1383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주의 또는 경솔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 Imputabilité 【 귀책성 】

범죄를 개인에게 귀책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가 범한 과책(faute, 과오)을 그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귀책성은 범죄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고 의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유의지(libre arbitre)를 가진 자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받을 수 있게 된다. 귀책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책임은 조각된다. 비귀책성의 사유(cause de non-imputabilité)는 형사책임조각의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라 주관적인 사유이며 그 예로는 형사미성년, 정신장애, 강요에 의한 행위가 있다.

□□ Responsabilité pénale

### ◇ Inaliénabilité 【 양도불가능성 】

물건이 유효하게 양도될 수 없는 법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이 양도불가능성은 ‘공공분야의 재화’, ‘타인에게 속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사용권’(droit d'usage: 민법전 제631조)이나 거주권(droit d'habitation: 민법전 제634조)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어 있거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일시적인 경우의 양도금지조항’(clauses d'inaliénabilité: 민법전 제900-1조), ‘허용된 대습상속인의 지정’(substitutions permises: 민법전 제1048조) 등과 같이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부여된다.

**C.civ. Art.631** : L'usager ne peut céder ni louer son droit à un autre.(민법전 제631조 : 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C.civ. Art.634** : Le droit d'habitation ne peut être ni cédé ni loué.(민법전 제634조 : 주거권은 양도 및 임대할 수 없다.)

**C.civ. Art.900-1** : Les clauses d'inaliénabilité affectant un bien donné ou légué ne sont valables que si elles sont temporaires et justifiées par un intérêt sérieux et légitime. Même dans ce cas, le donataire ou le légataire peut être judiciairement autorisé à disposer du bien si l'intérêt qui avait justifié la clause a disparu ou s'il advient qu'un intérêt plus important l'exige.(민법전 제900-1조 : 증여물 또는 유증물에 관한 양도금지조항은, 중요하고 합법적인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또 일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금지조항을 정당화시키는 이익이 소멸하였거나 보다 더 중대한 이익의 요구가 있다면, 수증자 또는 수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C.civ. Art.1048** : Les biens dont les père et mère ont la faculté de disposer, pourront être par eux donnés, en tout ou en partie, à un ou plusieurs de leurs enfants, par actes entre vifs ou testamentaires, avec la charge de rendre ces biens aux enfants nés et à naître, au premier degré seulement, desdits donataires.(민법전 제1048조 : 부모는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전행위 또는 유언을 통해, 1인 또는 수인의 자녀에게 주면서, 재산을 받은 자에게 이미 출생하였거나 앞으로 출생할 그의 1촌의 자녀에 한하여 받은 재산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 Incompétence 【 무권한 】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외부적 하자의 유형 중 하나로서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s)의 전통적 사유가 된다. 권한은 일반적으로 권한 행정청이나 공무원이 효력발생 중인 법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자격(l'aptitude légale)을 말한다.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거나 내려진 행위는 무권한(vice d'incompétence)의 흠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청은 위계적인 방식으로 조직되고 행정조직의 공무원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상급 행정청의 권한에 침해되는 하급 행정청의 행위는 금지된다. 행정행위의 발령권자의 권한은 공서(ordre public)에 해당한다.

무권한은 사항적·시간적·장소적 무권한으로 유형화 된다. 첫째, 모든 행정청과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권한의 영역을 가지는데 행정청은 입법자나 법관의 진속사항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행정청의 권한행사는 업무수행에 부여된 시간에 한정된다. 행정청은 자신이 업무를 부여받은 후부터 결정을 내릴 수 있고(임명장의 서명이 있는 후 부터 권한부여의 법적 효력이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도달 연령(d'âge atteinte)의 제한, 임기만료(mandat électif expiré) 등). 세 번째로 행정청의 지역적 권한은 행정구역(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에 따라 제한된다. 프레페가 자신의 데파르트망이 아닌 다른 주민에 대해 행정상 거주지정(l'internement administratif)을 명하는 경우에는 장소를 이유로 한 (ratione loci) 권한의 침해가 있다.

### ◇ Indemnisation 【 금전배상 】

금전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인 손해배상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으로서 우선 원상회복이 요구되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피해국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금전배상의 대상은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손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실제 손해와 아울러 일실이익도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이자의 지급도 수반될 수 있다.

### ◇ Indemnité parlementaire 【 국회의원의 세비 】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헌법 제25조가 조직법률(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한 법률 - loi organique relative à l'indemnité des membres du Parlement)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는 기본급 5,231.62유로, 주거수당 156.95유로, 직무수당 1,347.14유로를 합해 매월 총 6,735.71유로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다른 공직을 겸할 때에는 매월 2,615.81유로 이상은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Constitution Art.25 al.1** : Une loi organique fixe la durée des pouvoirs de chaque assemblée, le nombre de ses membres, leur indemnité, les conditions d'éligibilité, le régime des inéligibilités et des incompatibilités.(헌법 제25조 제 1 항 : 조직법률은 각 의회의 임기, 국회의원의 정수, 세비, 피선거권의 향유조건, 피선거권의 제한 및 겸직금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 ◇ Indu 【 부당이득 】

부당하게 또는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법률적으로 반환의 대상이 된다.

enrichissement sans cause,   répétition de l'indu

### ◇ Inexécution 【 불이행,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과책(過責   faute) 또는 외래원인(  cause étrangère)으로 발생한다.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불이행은 계약불이행(inexécution contractuelle)이 된다. 계약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결과채무(  obligation de résultat) 또는 양태채무(  obligation de moyens)를 완수하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다음의 3가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강제이행의 소’(action en exécution forcée,   exécution forcée en nature)이다. 이는 채무의 성질과 채무자의 여건상 그 이행이 가능할 경우에 청구된다. 둘째, ‘손해배상의 소’(action en réparation)이다. 이는 현실이행(exécution en nature)이 불가능할 경우에 청구되는 금전배상 또는 대가배상(réparation en équivalent,   exécution par équivalent)의 소이다. 셋째, ‘계약의 해

제 내지는 해지의 소'(action en résolution ou résiliation, □□ résiliation, résolution)이다.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의 불이행은 그 내용에 따라 법정해제(résolution judiciaire)의 사유는 물론, 계약상 해제조항(clause résolutoire)의 적용에 의한 약정해제(résolution conventionnelle)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 ◇ Information judiciaire 【사법수사】

□□ Instruction préparatoire

#### ◇ Initiative de la loi 【법률안 제출권】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하여 입법기관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프랑스에서 법률안 제출권은 원칙적으로 수상과 국회의원에게 있다. 그러나 법률의 형태에 따라서는 수상만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법률(loi de financement), 사회보장에 관한 예산법률(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수권 법률(loi d'habilitation) 등은 수상만이 제출권이 있다.

**Constitution Art.39 al.1** :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헌법 제39조 제1항 : 법률안 제출권은 수상과 국회의원에게 있다.)

□□ Initiative législative

#### ◇ Initiative populaire 【국민발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의 한 형태. 미국의 일부 주와 스위스의 일부 주가 국민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국민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 ◇ Injonction 【이행명령】

좁은 의미로는 법관이 제재의 경고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명

하는 (작위의무의 이행) 경우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부작위의무의 완성)을 말한다. 1995년 2월 8일 법률에서 행정법원(1심), 행정항소법원(2심)과 국사원의 판사는 이행명령과 지연배상금(astreinte)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명령은 행정법원의 판사가 행정청에게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만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대집행할 수는 없으며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예비명령(injonction d'instruction)으로서 예심절차에서 법관이 행정청에 대해 다투어진 결정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이유에 관한 모든 서류, 문서 및 정보의 제출을 명령한다. 다른 하나는 판결의 이행명령(injonction de jugement)으로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법원의 판결주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 ◇ Institution d'héritier 【 상속인의 지정 】

‘상속인의 지정’이라 함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양도할 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상속인(héritier)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즉 법률이 정한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좁은 의미의 상속인이라 하고(민법전 제724조 제 1 항, 제731조, 제734조), 그 밖에, 국가를 제외한, 유언에 의해 재산을 양도받은 모든 자를 넓은 의미의 상속인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지정받은 상속인’(héritier institué)은, 법률이 정한 친족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을 얻은 자로서 넓은 의미의 상속인의 개념에 속한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지정’에 의한 재산의 처분 행위(acte de disposition)는, 엄격한 의미에서, 상속이 아닌 유증(□□ leg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C.civ. Art.967** : Toute personne pourra disposer, soit sous le titre d'institution d'héritier, soit sous le titre de legs, soit sous toute autre dénomination propre à manifester sa volonté.(민법전 제967조 : 누구든지 상속인의 지정 또는 유증의 명목으로 혹은 의사를 표시하는데 적합한 다른 모든 명칭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 Instruction préparatoire 【 예심 】

중죄 또는 복잡한 경죄의 경우 지방법원 검사장은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판사로 하여금 예심을 개시하도록 한다. 예심은 재판에 앞서는 형사절차의 단계로서 수사판사는 항소법원 수사부의 통제하에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관련인, 소추된 자 및 증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예심대상자를 정하고 공소의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예심의 주체는 항상 수사판사가 되므로 경찰 또는 군경찰부서는 촉탁수사를 통하여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예심이 종결되면 수사판사는 혐의없음(non-lieu)을 선고하거나, 예심대상자가 재판을 받도록 중죄법원에 또는 경죄법원에 이송(renvoi)할 것을 결정한다. ‘Information judiciaire’(사법수사)도 이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CPP Art.79** : L'instruction préparatoire est obligatoire en matière de crime; sauf dispositions spéciales, elle est facultative en matière de délit; elle peut également avoir lieu en matière de contravention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requiert en application de l'article 44.(**형사소송법전 제79조** : 예심은 중죄에 대하여 의무적이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죄에 대하여 예심은 선택적이다. 위경죄에 대하여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법원 검사장이 예심을 요구한 경우에도 의무적이다.)

Information judiciaire

### ◇ Intérêt général/ public 【 공공의 이익 】

행정법상의 기본개념인 공익은 공법인의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인 동시에 정당화 요소가 된다. 행정청이 공익의 목적 없이 행동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공익은 행정법의 모든 기본개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의적이고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어렵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행정작용의 적응성의 담보가 되기도 한다. 명시적으로 실정법 규정이 공익을 목적규정이나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1946년 헌법규정은 가족의 건강과 보호는 공익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아주 빈번하게 법률에서는 공익이 다른 표현인 공공질서(ordre public)라는 형태로 행정경찰에서 등장한다.

공익에 대한 범위설정에는 공권력과 수많은 사익간의 일종의 조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조정은 양적기준과 질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는 보다 더 많은 숫자(plus nombreux)를 공익의 관심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사적인 욕망을 초월하는 우

월한 가치의 관심(*préoccupations*)을 둔다(*G. Vedel*). 공익의 기능도 다양하다. 공익은 행정법의 기본개념의 인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한다. 공익의 이름으로 보통법(*droit commun*)의 예외적인 제도가 적용된다. 국사원은 *Narcy* 판결에서 공익적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공공서비스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C.E. 28 juin 1963, Rec. p.401*). 하지만 모든 공익적 활동이 공공서비스로 평가될 수는 없다.

공공(토목)공사(*travaux publics*)나 공공시설(□□ *Ouvrages publics*)의 개념도 공익에 의존한다. 공공재산(*domaine public*)에 합체된 이러한 의존성은 공익지정(*affectation d'intérêt général*)을 통해서 나타난다. 공익은 또한 예외적인 우선적 사용을 정당화시킨다. 공익을 위한 수용은 반드시 공익(용)(□□ *Utilité publique*)의 목적이 있어야만 하며 행정상 지역(□□ *Servitudes*)의 설정이나 선매권(*droit de préemption*)의 사용의 경우도 동일하다. 일방적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의 실행절차에서의 나타나는 예선적 우월성(*privilège du préalable*), 강제이행(*exécution forcée*)과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 *Sanction*)는 공익의 제도화된 결과의 징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은 공익을 빌미로 해서 월권(*détournement de pouvoir*)을 범할 수 없다.

#### ◇ Intérêt pour agir 【소의 이익】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물(*contestation*)이 되는 특정한 법적 상황(태)에 있게 된다. 소의 이익의 개념은 소송의 원고(*plaigneur*)와 소송물(*contestation*)간의 이러한 관계를 표현한다. 행정소송의 원고는 자신의 제소이익(*intérêt à agir*)을 증명해야 한다. 소의 이익의 문제는 특히 월권소송과 관련된다. 행정소송을 대표하는 객관소송인 월권소송의 소의 이익의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주관소송인 완전심리소송(*plein contentieux*)의 경우처럼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주관적 권리의 존재보다는 넓게 파악된다. 그렇지만 월권소송의 원고는 ①개별적 이익(*intérêt personnel*)을 가져야한다. 개별적 이익은 재산적이거나 정신적 혹은 집합적(*collectif*)일 수 있다. ②원고의 이익은 적법해야한다(*légitime*). 국사원은 낙태용 알약의 상업적 판매의 재개결정에 의해 가톨릭가족협회연맹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사례와 같이 비교적 자유롭게 판단하고 있다(*C.E. Ass. 25 janvier 1991. Con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 catholiques et autres, Rec. p.30*). ③국사원은 침해된 이익이 확실해야 한다(*caractère certain*)고 해석한다. 납세자로서 국가의 공공지출의 증가에 관한 조치에 대한 제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너무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는 경우이므로 제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C.E. 25 juin 1920, Le doussal et Métour, Rec. p.493).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대한 지방세 납부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예도 있다(C.E. 29 mars 1901, Casanova, Rec,p.333).

Qualité à agir

### ◇ Intérim 【 권한대행 】

공법상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 헌법상 대통령직이 공석이거나 대통령이 사고인 경우 제 1 차적으로 상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 2 차적으로는 정부직 순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 4 항). 사고인 경우에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제 5 공화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생한 경우는 1969년 드골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실패하여 스스로 사임한 경우와 1974년 풍피두 대통령이 병사했을 때 두 번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 1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과 헌법 제1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은 행사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21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최고위원회들(les conseils et les comités supérieurs de la Défense Nationale)의 주제를 대통령을 대행하여 수상이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명백한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일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주제에 관하여 수상이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21조).

### ◇ Internonces 【 교황청 공사 】

로마교황청이 파견하는 외교공관장으로서 접수국내에서는 국가들로부터 파견된 공사와 같은 계급으로 예우된다.

internuntius

### ◇ Interprétation 【 해석 】

해석이란 일관적으로 판결이나 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소송상의 의미는 판결의 해석을 선언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특별한 상소절차(voie de recours)를 말한다. 해석소송은 항소(appel)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인정된다. 법원은 종전의 결정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해석은 행정행위나 협약의 의미(signification)를 부여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명령이 아닌 (non réglementaire)인 행정행위의 뜻과 범위를 밝힐 수 있다. 불명확한 법률의 내용을 해석하고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할 수 있다. GISTI 판결 이래로 국사원은 국제조약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C.E. Ass.29 juin 1990, GISTI, Rec. p.171). 다만 국사원은 공동체법의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유럽공동체법원(CJCE: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에 대해 고유한 조치나 해석을 회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공동체협약 제177조).

#### ◇ Interrogatoire 【 피의자(피고인)신문(訊問)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문은 형사소송의 모든 과정 즉, 수사, 예심, 공판단계에서 가능하다. 피의자신문은 범인의 발견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행위임과 동시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방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피의자(피고인)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현행범수사와 예비수사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심이 개시가 된 경우에 위임(촉탁)수사에 의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은 예심대상자 및 보조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할 수 없으며 수사판사만이 신문할 권한이 있다. 수사판사가 예심대상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변호인 및 검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수사판사는 모든 예심대상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Commission rogatoire 【 수사촉탁 】

#### ◇ Intervention 【 간섭 】

간섭이라 함은 한 국가가 비무력적 또는 무력적 방법으로 타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할 목적으로 가하는 강압적 개입을 말한다. 국제법은 한 국가가 타국의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의사를 강요할 목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스스로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는 바, 이에 상응하는 모든 타국의 의무가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이다. 흔히 간섭을 *intervention*이라고 표현하나, *ingérence*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A/Res. 2625(XXV)** : non seulement l'intervention armée, mais aussi toute autre forme d'ingérence ou toute menace, dirigées contre la personnalité d'un Etat ou contre ses éléments politiques, économiques et culturels, sont contraires au droit international. **(UN총회결의 2625(XXV)** : 한 국가의 인격 또는 그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요소를 저해하는 무력간섭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형태의 간섭 또는 위협도 국제법에 반한다.)

### ◇ Intervention d'humanité 【 인도적 간섭 】

한 국가가 타국의 영토상에서 발생한 인권의 중대한 유린을 저지할 목적으로 가하는 간섭을 말한다. 오늘날 국제법은 모든 국가들에게 스스로의 영토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인권 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을 중대하게 유린하는 국가를 상대로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간섭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적 목적의 경제봉쇄, 재정지원의 단절 등 비군사적 간섭은 불간섭의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간섭은 아직까지 적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 목적의 군사적 간섭을 허용하는 경우 무력행사 금지 원칙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Intuitu(s) personae 【 인적신뢰의 고려 】

법률행위 또는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있어서 당사자 중 1인의 인격(*personnalité*)이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되는 라틴어 표현이다. 위임(□□ *mandat*), 임치(□□ *dépot*), 의료계약(*contrat médical*) 등은, 수임인(*mandataire*), 수치인(*dépositaire*), 의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인적신뢰의 고려’에 의한 계

약'(contrat avec intuitus personae)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해당 당사자의 자격이나 신원에 대한 착오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착오(□□ erreur)로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 vente)와 같이 ‘인적 신뢰를 고려하지 않는 계약’(contrat sans intuitus personae)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자격이나 신원에 대한 착오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

### ◇ Inviolabilité parlementaire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특권. 헌법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소속 의회의 의장단의 동의 없이는 중죄 또는 경죄에 관하여 체포되거나 자유가 박탈 내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구금, 자유의 박탈 내지 제한 또는 소추는 회기 중 소속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단된다.

**Constitution Art.26 al.2** : Aucun membre du Parlement ne peut faire l'objet, en matièr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d'une arrestation ou de toute autre mesure privative ou restrictive de liberté qu'avec l'autorisation du Bureau de l'assemblée dont il fait partie. Cette autorisation n'est pas requise en cas de crime ou délit flagrant ou de condamnation définitive.(헌법 제26조 제2항 : 국회의원은 소속 의회의 의장단의 동의 없이는 중죄 또는 경죄에 관하여 체포되거나 자유가 박탈 내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 Irrecevabilité 【 제소요건의 결격(각하) 】

원고의 당사자능력(capacité), 소의 이익(intérêt pour agir), 제소기간 내의 소송의 제기, 사전결정원칙(□□ Règle de décision préalable)의 위반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본안의 검토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제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장의 제소요건의 평가는 행정법원의 관할권 있음을 선언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청구가 본안의 정당성의 심사단계에서도 원고의 일정한 법률상 주장(moyens)이 받아

들여지지 않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그 주장이 너무 불분명하거나 행정법원 판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행정행위의 적정성(l'opportunité)에 관한 문제와 같이 소송을 통해 다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에서 배제될 수 있다. 처음의 외적(행정결정의 절차적 하자나 당사자의 방어권 침해) 혹은 내적(행정청의 권한남용)인 위법성에 관한 주장(moyens)과 구별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새로이 제기한 법률상 주장(cause juridique)에서 나온 청구(demandes)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 Irresponsabilité parlementaire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위임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자유로이 표결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면책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특권도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다. 직무와 관련없는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도 의회 자체의 징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Constitution Art.26 al.1** : Aucun membre du Parlement ne peut être poursuivi, recherché, arrêté, détenu ou jugé à l'occasion des opinions ou votes émis par lui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헌법 제26조 제1항 : 국회의원은 직무의 수행 중에 표명한 의견 또는 투표에 관하여 소추, 수색, 체포, 구금, 또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J ]

### ◇ Juge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의 임명직 위원과 전직 대통령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임명직 재판관이 9년인 바, 3년마다 세 명씩 교체되도록 하고 있어 재판관 전원이 교체되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판관은 임명권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관이 사망한다든가 혹은 사임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채우지만 만약 잔여임기가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연임될 수도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종진제이지만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실제로 1959년부터 1962년 사이에 전직 대통령인 뱅상 오리올과 르네코티가 참여하였고, 2004년 6월에 지스카르 데스탱 전직 대통령이 잠깐 참여하였을 뿐이다. 임명직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3명은 국민의회 의장에 의하여 임명되며, 나머지 3명은 상원의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임명권자가 재판관을 임명할 때 전적으로 임명권자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즉 재판관의 자격제한이 없다. 실제로 1958년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는 법조인이라든가 법과대학 교수 등이 가장 많지만 정치인과 외교관도 임명되었다.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데 임명직 위원이나 당연직 위원 가운데 아무나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가운데 재판소장을 임명하였다.

### ◇ Juge d'instruction 【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는 중죄와 복잡한 경죄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예심을 제기 받는다. 예심이 개시된 경우 수사판사는 예심대상자를 결정하고 직접 예심행위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사법통제도 결정할 수 있다. 수사판사는 진실발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피의자신문과 대질, 심문을 이끌고 경우에 따라 경죄법원 또는 중죄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들을 작성한다.

**CPP Art.81** :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conformément à la loi, à tous les actes d'information qu'il juge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Il instruit à charge et à

décharge.(형사소송법전 제81조 : 수사판사는 법률에 따라 진실발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들을 착수한다. 수사판사는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에 대하여도 수사한다. 이러한 수사처분 및 소송의 모든 서류에 대하여 부분 1부를 작성한다. 각 부분은 법원서기 또는 제 4 항에 언급된 수입사법경찰관에 의해 원본대조가 확인되어야 한다. 모든 서류들은 수사판사에 의한 작성 또는 접수와 함께 법원서기에 의해 연번이 매겨진다.)

Commission rogatoire,   Contrôle judiciaire,   Mise en examen

### ◇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형적용판사】

형적용판사는 형사재판이후 여하한 형벌의 집행동안 그리고 금고형의 경우에는 출소이후에도 개입을 한다. 형적용판사는 사법관최고위원회(CSM)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해진 데크레에 의해 지명된다. 각 지방법원 단위로 한 명 또는 수명의 좌정법관이 형적용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자신의 관할내에 위치하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형적용판사는 모든 유죄선고자들에 대한 형집행을 감시하며 이들 각자를 위하여 교정처우의 주요한 세부방식들을 결정한다.

### ◇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석방구금판사】

2000년 6월 15일에 제정된 『무죄추정의 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법관의 한 직책이다. 좌정법관(법원장, 수석 부법원장 또는 부법원장)중에 지방법원장에 의해 지명된다. 예심과 재판의 기능상의 분리원칙을 존중하기 위하여 이미 자신이 다뤘던 형사사안의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 석방구금판사는 형사사건의 예심단계에서 예심대상자에 대한 구속여부 또는 구속의 연장을 결정하거나 석방신청을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석방구금판사는 예심대상자에 대한 사법통제조치를 철회하고 구속을 명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사유가 적시된 수사판사의 명령장(ordonnance)에 의해 제기 받으며 수사판사는 검사의 청구서(réquisitions)와 함께 서류를 송부한다.

**CPP Art.137-1** : La détention provisoire est ordonnée ou prolongé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lui sont également soumises.

(형사소송법전 제137-1조 : 구속은 석방구금판사에 의해 지시(ordonner)되거나 연장된다. 석방(보석)의 신청도 마찬가지로 석방구금판사의 심사를 받는다. 석방구금판사는 법원장, 수석 부법원장 또는 부법원장 직급의 좌정법관이다. 석방구금판사는 지방법원장에 의해 지정된다. 석방구금판사가 상호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경우에 서기의 조력을 받는다. 지정된 석방구금판사가 부재하고 법원장, 수석 부법원장, 부법원장도 부재한 경우에 석방구금판사는 지방법원장에 의해 높은 계급 중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좌정법관으로 대체된다. 석방구금판사는 제9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제137-4조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기가 적시된 수사판사의 명령서에 의해 청구의 접수를 받으며 수사판사는 지방법원 검사장의 청구(réquisition)가 첨부된 소송서류들을 석방구금판사에게 송부한다.)

Magistrat du siège

◇ **Juré 【 배심원 】**

Jury 【 배심원단 】

◇ **Jurisdiction constitutionnelle 【 헌법재판기관 】**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위헌법률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프랑스에서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있다.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의 역사는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791년 헌법 제정시에 시이예스(Sièyès)에 의하여 헌법재판기관(jurie constitutionnaire)의 설치에 관한 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제 5 공화국 들어서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활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Jurisdiction judiciaire 【 사법법원(司法法院) 】**

행정법원(jurisdiction administrative)과 대칭되는 법원이다. 사법법원은 개인들간의 소송을 해결하고 사람, 재산 및 사회에 대한 침해를 처벌한다. 사법법원은 범죄의 혐의

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재판하는 형사법원(juridiction répressive 또는 pénale), 형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민사법원(juridiction civile) 및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특정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특수법원(juridiction spécialisées)으로 구분된다. 1심 민사법원에는 지방법원(TGI), 지원(TI) 및 근린판사(juge de proximité)가 있다. 지방법원은 본토에 총 181개가 있으며 해외령에 11개가 있다. 지방법원은 통상 일개 도마다 1-2개가 있다. 지원은 총 473개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군청 소재지마다 설치된다. 형사법원에는 중죄법원, 경죄법원, 경찰법원 및 근린판사가 있다. 중죄법원은 도단위로 설치되며 상설법원이 아닌 임시법원으로 회기별로 약 15일 동안 설치된다. 경죄법원은 지방법원에 설치되며 경찰법원은 지원에 설치된다. 특수법원에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 사회보장법원(tribunal des affaires de sécurité sociale),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농촌임대비례법원(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이 있다. 미성년자를 위한 법원으로는 아동판사(juge des enfants), 아동법원(tribunal pour enfants), 소년중죄법원(cour d'assises pour mineurs)이 있다. 2심법원은 항소법원이다. 항소법원은 2-5개의 도를 관할로 하며 구체제에서는 파를르망(parlement)으로 불렸다. 총 35개가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재심사하지 않으며 하급심이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심만을 한다.

### ◇ Juridiction pénale 【 형사법원 】

형사법원은 예심법원(juridiction d'instruction)과 판결법원(juridiction de jugement)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예심법원은 수사판사, 석방구금판사와 수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예심법원은 형사사건에 항상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 중죄 및 복잡한 경죄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사법조사(예심)의 개시를 청구하는 경우와 각종의 예심행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개입한다. 판결법원은 1급심에 Juridiction de proximité(근린법원, 시민법원), 경찰법원, 경죄법원, 중죄법원이 있다. 근린법원은 직업판사가 아닌 시민판사로 구성되며 위경죄 제 1급에서 제 4급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경찰법원은 위경죄, 경죄법원은 경죄, 중죄법원은 중죄사건을 재판한다. 형사법원만이 범죄를 재판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과 같이 범죄로 인한 민사상의 결과에 대하여도 재판을 한다.

Cour d'assises,  Tribunal correctionnel,  Tribunal de police

## ◇ Jury 【 배심원단 】

배심원단은 중죄법원의 공판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juré)들의 집합을 지칭한다. 배심원단은 23세 이상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정치, 시민, 가족권을 보유한 시민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능력 또는 겸직상태(정부각료, 국회의원, 법관, 경찰 공무원 등)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배심원은 매년 각 도별로 추천에 의하여 선발되며, 선발된 명단은 지정된 회기 중에 참석해야할 배심원들을 추천하는 데 사용된다. 수석 법원장(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은 적어도 중죄법원의 회기개시 30일 이전에 40명의 이름을 추천한다. 회기별 명단에서 각 재판시마다 재차 추천에 의하여 9명의 배심원이 선정된다. 추점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관은 배심원을 제척할 수 있다. 선정된 배심원은 건강 또는 70세 이상의 연령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회피할 수 없다. 만일 배심원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배심원은 여행비와 체제비를 지급받는다.

Cour d'assises,  Crime

[ L ]

## ◇ **Légitime défense** 【정당방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 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해야할 필요에 직면한 자가 스스로 형사법률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상태로서 반격행위의 강도가 침해의 중대성과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정당화사유가 된다. 반면에 재산에 대한 방위행위는 고의적 살인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CP Art.122-5** :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devant une atteinte injustifiée envers elle-même ou autrui, accomplit, dans le même temps, un acte commandé par la nécessité de la légitime défense d'elle-même ou d'autrui, sauf s'il y a disproportion entre les moyens de défense employés et la gravité de l'atteinte.(**형법전 제122-5조** :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직면하여 그와 동시에 자신 또는 타인의 정당방위의 필요성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동원된 방어수단과 침해의 중대성 사이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책임이 없다. 재산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고의적 살인을 제외한 방어행위를 한 자는 이 행위가 추구된 목적에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 동원된 수단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당(비례)하는 한 형사책임이 없다.)

Etat de nécessité

## ◇ **Legs** 【유증】

유언(testament)에 의해 유언자(testateur)의 사망 시 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그가 지정한 자, 즉 수유자(légataire)에게 양도하는 처분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수유자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단독행위(acte unilatéral)에 해당한다. 프랑스 민법상 유증에는, 포괄유증(legs universel), 부분포괄유증(legs à titre universel), 특정유증(legs particulier 또는 legs à titre particulier), 조건부유증(legs conditionnel), 면제유증(legs de libération) 등이 있다.

포괄유증(legs universel)이란 유언자가 그의 사망 당시 남아있는 전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에게 양도하는 유언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민법전 제1003조). 부분포괄유증(legs

à titre universel)은 유언자가 전 재산의 일정한 몫을 수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특정유증(legs particulier)은, 정해진 보석이나 채권, 일정 금액 또는 지정된 토지 등과 같이, 특정된 재산이나 권리를 그 대상으로 하는 유증을 말하며, 법률규정상으로는 포괄유증도 부분포괄유증도 아닌 기타 모든 유증을 지칭한다. 조건부유증(legs conditionnel)이란 동일한 재산을 제 1 순위 자에게는 해제조건(condition résolutoire, □□ condition)으로, 제 2 순위 자에게는 정지조건(condition suspensive)으로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일정 재산을 유증하되, 『만일 이 아들이 자식 없이 사망하는 경우, 아들에 대한 유증은 해제되고 그의 누이에게 해당 재산이 유증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이다. 면제유증(legs de libération)은, 특정유증의 일종으로서, 채권자인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C.civ. Art.1010** : Le legs à titre universel est celui par lequel le testateur lègue une quote-part des biens dont la loi permet de disposer, telle qu'une moitié, un tiers, ou tous ses immeubles, ou tout son mobilier, ou une quotité fixe de tous ses immeubles ou tout son mobilier. Tout autre legs ne forme qu'une disposition à titre particulier.(민법전 제 1010조 : ①부분포괄유증은 법률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재산 중, 1/2 · 1/3과 같이, 일부를, 또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동산의 전부, 또는 모든 부동산 · 동산의 일정 부분을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타 모든 유증은 특정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 ◇ Lésion 【 급부불균형, 급부간 불균형 】

레지옹(lésion)이란 유상쌍무계약의 체결 시 결정된 급부관계가, 일방 당사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정도로, 그 균형을 잃은 것을 말한다. 즉 레지옹은 일방 당사자(손실자)에게는 지나치게 적은 대가가, 타방 당사자(폭리자)에게는 과도하게 많은 대가가 급부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프랑스의 레지옹 법리는 독일(BGB §138 제 2 항)이나 우리나라(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양 법리는 그 적용의 범위와 조건 그리고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모든 유상쌍무계약에 적용되나, 급부불균형 이외에 손실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그 조건으로 제시하고, 법적 효과도 무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프랑스의 레지옹은 그 적용범위를 법률이 정한 특정 계약 또

는 특정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한정하는 대신에, 급부사이의 불균형 이외의 다른 조건은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 법적 효력(제제수단)도 법률행위의 취소(□□ rescision: ‘손해무효’로도 번역됨)뿐 아니라 계약의 특성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대금감액 또는 증액과 같은 급부변경권(révision du prix)이 인정되는 등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레지용은 계약의 일반적인 무효원인이 아니다(민법전 제1118조 참조).

우선, 레지용 법리는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즉 ‘사법보호’(la sauvegarde de la justice)를 받는 성년의 무능력자(민법전 제491-2조 제 2 항), ‘재산보호관리’(curatelle)를 받는 성년자(민법전 제510-3조), 미성년자(민법전 제1305조)가 행한 법률행위가 그 대상이다. 이 경우, 급부불균형의 판단기준이 되는 일정 비율을 명시한 『기타 법률이 정한 특정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급부불균형의 인정은 법률규정에 의한 일정 기준이 아닌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다. 다음으로, 『기타 법률이 정한 특정 계약』의 경우로서, 프랑스 민법전은 부동산매매와 상속재산의 분할의 경우에 레지용 법리를 적용한다. 즉 『부동산의 매도인이 부동산 가액의 7/12을 초과하는 손실을 본 경우(민법전 제1674조)』,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1/4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민법전 제887조 제 2 항)』, 『조합계약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에게 수익의 전부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손실의 전부를 부과하는 조합의 경우(민법전 제1844-1조)』 등이 레지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민법전상의 일반규정에 의한 레지용 법리의 적용 이외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레지용 법리가 적용되는 계약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현재 『농산물원료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1/4을 초과하는 손실을 본 경우(1907년 7월 8일 법률)』, 『해난구조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건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1916년 4월 16일 법률 및 1967년 7월 7일 법률)』,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사업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7/12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지적소유권법전,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 131-1)』, 『금전대차에 있어서 이자율이 폭리에 해당하는 경우(소비법전, Code de la consommation L. 313-3)』, 『농사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료가 통상 임대료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농업법전, Code rural L. 414-13)』, 『부동산분양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에게 부과된 채무가 그가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범위의 1/4을 초과하는 경우(건축 및 거주에 관한 법전,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L. 212-5 al. 3)』 등이 레지용에 해당된다. 그밖에 법원은, 공증인, 변호사 등의 위임계약에 있어서 과다수임료를 통제하고 있다. 레지용의 판단

은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레지옹의 피해자(손실자)에게만 소의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소의 제척기간은, 부동산 매매의 경우 2년이며(민법전 제1676조 제1항), 기타의 경우는 5년이다.

**C.civ. Art.1118** : La lésion ne vicie les conventions que dans certains contrats ou à l'égard de certaines personnes, ainsi qu'il sera expliqué en la même section.(민법전 제1118조 : 레지옹은 동절(同節)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특정 계약 또는 특정인에 관하여만 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준다.)

**C.civ. Art.491-2 al.2** : Toutefois, les actes qu'ille majeur placé sous la sauvegarde de justice a passés et les engagements qu'il a contractés pourront être rescindés pour simple lésion ou réduits en cas d'excès lors même qu'ils ne pourraient être annulés en vertu de l'article 489.(민법전 제491-2조 제2항 : 그러나 그 사법보호를 받는 성년자가 용인한 행위 및 약정한 채무는, 제489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단지 레지옹을 이유로 하여 취소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C.civ. Art.1305** : La simple lésion donne lieu à la rescision en faveur du mineur non émancipé, contre toutes sortes de conventions.(민법전 제1305조 : 단순한 레지옹은 친권이 해제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합의에 대해 취소권을 발생시킨다.)

**C.civ. Art.1674** : Si le vendeur a été lésé de plus de sept douzièmes dans le prix d'un immeuble, il a le droit de delander la rescision de la vente, quand même il aurait expressément renoncé dans le contrat à la faculté de demander cette rescision, et qu'il aurait déclaré donner la plus-value.(민법전 제1674조 :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 가액의 7/12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가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취소권을 포기하였거나 초과가치를 지급할 것을 선언하였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Cass. civ.3, 30 juin 1992** : La lésion devrait s'apprécier d'après la valeur de l'immeuble au moment de la signature de la promesse synallagmatique, et non à la date de la réalisation de la condition suspensive.(과기원 민사3부, 1992년 6월 30일 : 레지옹은, 정지조건이 실현된 날이 아닌, 쌍무계약이 체결된 순간의 부동산 가격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 **Lettre de créance** 【신임장】

외교공관장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국이 접수국에게 전달하는 문서이다. 접수국으로부터 공관장 파견에 대한 아그레망이 주어지면, 파견국은 해당 공관장에게 신임장을 휴대시켜 파견한다. 공관장은 도착 즉시 신임장의 사본을 접수국 외무부에 제출하며, 그 정본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한다. 이와 같이 신임장의 사본 또는 정본의 제출일자가 해당 공관장의 직무개시일자가 된다.

### ◇ **Lettre de provision** 【영사위임장】

영사기관장의 자격, 성명, 계급, 관할구역 등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파견국에 의하여 작성된다. 이 위임장은 이 문서를 해당 영사공관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접수국 정부에도 전달하여야 한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참조).

consular commission

### ◇ **Libéralité** 【무상처분】

무상처분은 그 실현방식이 어떠한 무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처분행위를 가리킨다. 이 무상처분에는, 증여( donation)와 같은 생전무상처분(libéralité entre vifs)과 유증( legs)과 같은 사인무상처분(libéralité à cause de mort)이 있다.

### ◇ **Libération conditionnelle** 【조건부석방】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자신의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우고 사회적응의 진지한 신용성을 보이는 경우에 형기만료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수혜적 조치이다. 조건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최상의 사회방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반석방(semi-liberté)과 완전조건부석방(libération conditionnelle totale)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반석방의 조치가 취해진 범죄자는 매일 갱생원 또는 임시 처소

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이 형태의 석방은 최고 6개월까지 허용될 수 있다. 반석방은 무엇보다도 범죄자로 하여금 완전조건부석방 또는 석방(libération d'office)을 지원하는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완전조건부석방은 체계화되고 통제되는 단계별 석방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범죄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살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에 감시상태에 있으며 일정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CPP Art.732** : La décision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fixe les modalités d'exécution et les conditions auxquelles l'octroi et le maintien de la liberté est subordonné, ainsi que la nature et la durée des mesures d'assistance et de contrôle.(형사소송법전 제732조 : 조건부석방의 결정은 집행의 세부절차와 석방의 부여와 유지가 따라야 하는 조건들 및 지원과 통제조치들의 기간을 정한다. 만일 조건부석방 결정이 형적용법원(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에 의해 취해진 경우 형적용재판소는 결정된 두 날짜사이에 형적용판사가 지정하는 날에 석방이 이뤄질 것을 예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만일 유기형(peine temporaire)의 경우에 석방시에 채우지 않은 형벌의 일부에 대한 기간에 미달될 수 없다. 최고 일 년 동안에 대하여 그것을 초과할 수 있다. 반면에 지원과 통제조치들의 전체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 ◇ Liberté d'association 【 결사의 자유 】

다수인이 계속해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 프랑스 헌법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71년 7월 16일 결정에서(CC 71-44 DC du 16 juillet 1971)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반원칙(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에서 결사의 자유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CC 71-44 DC 16 juillet 1971, R., p.29 - Liberté d'association** : au nombre des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et solennellement réaffirmés par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il y a lieu de ranger le principe de la liberté d'association.(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71년 7월 16일 결정 : 공화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헌법 전문(前文)에서 엄숙히 재확인된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는 정리되어

진다.)

### ◇ Liberté de communication 【통신의 자유】

“사상과 견해의 자유로운 통신은 인간의 가장 존귀한 권리 가운데에 하나이다”라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는 선언하고 있는데,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자유에 관하여 여러 번의 결정(CC 81-129 DC 30 et 31 octobre 1981, R., p.35; CC 82-141 DC 27 juillet 1982, R., p.48; CC 83-168 DC 20 janvier 1984, R., p.38; CC 84-176 DC 25 juillet 1984, R., p.55; CC 84-173 DC 26 juillet 1984, R., p.63; CC 84-179 DC 12 septembre 1984, R., p.73; CC 84-181 DC 10-11 octobre 1984, R., p.78; CC 86-210 DC, 29 juillet 1986, R., p.110; CC 86-217 DC 18 septembre 1986, R., p.141; CC 91-301 DC, 15 janvier 1992, R., p.121; CC 93-333 DC 21 janvier 1994, R., p.32; CC 94-345 DC 29 juillet 1994, R., p.94; CC 96-378 DC 23 juillet 1996, R., p.99)을 한 바가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가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보장과 관계된 규정을 정하도록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화상통신의 자유는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형성이 된다고 하였다.(CC 91-304 DC 15 janvier 1992, R., p.18) 또한 통신의 자유는 다른 권리들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 가운데에 하나이며(CC 84-181 DC 10 et 11 octobre 1984, R., p.78) 정보매체의 다양화에 의하여 완성되는 이러한 통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CC 82-141 DC 27 juillet 1982, R., p.48)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 제한을 두었는데, 다른 권리들과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CC 94-345 DC 29 juillet 1994, R., p.106), 공역무(service public)의 요구(CC 82-141 DC 27 juillet 1982, R., p.48), 타인의 권리 존중(CC 88-247 DC 17 janvier 1989, R., p.15; CC 96-378 DC 23 juillet 1996, R., p.99),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다원주의적인 것(CC 82-141 DC 27 juillet 1982, R., p.48; CC 86-210 DC, 29 juillet 1986, R., p.110)등이 그 예이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Art.11 :** La libre communication des pensées et des opinions est un des droits les plus précieux de l'Homme.(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 : 사상과 견해의 자유로운 통신은 인간의 가장 존

귀한 권리 가운데에 하나이다.)

### ◇ Liberté de la presse 【출판의 자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특히 사전검열은 1789년 인권선언의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CC 84-181 DC 10-11 octobre 1984, R., p.78) 또한 이 결정에서 출판의 자유는 두 개의 목표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재정적 투명성과 출판기업의 다각화를 들고 있다. 재정적 투명성은 출판의 자유를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하여 서로 다른 특징과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유로운 통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 ◇ Libertés fondamentales 【기본적 자유】

#### □□ Libertés publiques 【공적 자유】

### ◇ Libertés publiques 【공적 자유】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기본권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공적 자유라는 용어의 근원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789년 인권선언에는 공적 자유란 표현은 없고 자유(libertés), 혹은 인권(droits de l'homme)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처음으로 실정법에서 공적 자유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93년 산악당 헌법 제 9 조에서부터이다. 공적 자유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광의로 혹은 협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현대에 와서 기본적 자유(libertés fondamentales), 인권(droits de l'homme), 기본권(droits fondamentaux)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현행 헌법 자체도 前文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공적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그 연원은 다르겠지만, 인권, 기본권, 공적 자유라는 용어가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Constitution Art.34 al.2 n°1** : La loi fixe les règles concernant: les droits civiques et les

garanties fondamentales accordées aux citoyens pour l'exercice des libertés publiques; les sujétions imposées par la Défense Nationale aux citoyens en leur personne et en leurs biens.(헌법 제34조 제 2 항 제 1 호 : 법률은 시민의 권리 및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국방을 위하여 시민에게 과하여진 시민의 신체상 및 재산사의 의무를 규정한다.)

### ◇ Libre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프랑스 헌법 제72조 이하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은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에 비교된다. 지방분권을 위한 2003년 3월 28일 헌법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법자들의 노력에 따라 보충성원칙에(헌법 제 1 조(제 4 문), 제72조 제 2 항) 따라 자신의 권한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 4 항(의회와 정부간 관계에 관한 제 5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권한과 그 재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한다. 자유로운 행정에 관한 제12장의 규정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단체법전 L.1111-1조도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행정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재정적 수단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의사결정의 자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의 자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의 실행을 위한 명령제정권(un pouvoir réglementaire)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 자치와 관련하여 헌법 제72-2조는 헌법에 처음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음(peut les autotiser à)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실질적 의미인 재정자치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법 제72-2조 제 3 항은 각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과 다른 고유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잔체 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대표하고(제 1 문), 조직법률을 통해 이러한 규정의 실행을 위한 요건을 정한다(제 2 문)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29일에 조직법률(제2004-75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제72-2조 제 4 항과 제 5 항에서 우리의 지방분권의 실현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재원이전이 수반된 권한이양과 격차가 큰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상의 형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동조 제 4 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든 권한의 이양은 그 실행을 위해 사용한 규모에 상응하는 재원의 배분이 수반되어야”고 규정한다.

**Constitution Art.1** :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헌법 제 1 조 제 1 항 : 프랑스는 단일의(불가분의), 중립(종교적 중립성, laïcité)적인,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제 2 · 3 항은 생략) (프랑스공화국)의 조직은 분권화된(제 4 항).

**Constitution Art.72 al.2** :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nt vocation à prendre les décisions pour l'ensemble des compétences qui peuvent le mieux être mises en oeuvre à leur échelon.(헌법 제72조 제 2 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최대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전반에 관한 결정권(vocation à prendre)을 가진다.)

**Constitution Art.72 al.3** :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ces collectivités s'administrent librement par des conseils élus et disposent d'un pouvoir réglementaire pour l'exercice de leurs compétences.(헌법 제72조 제 3 항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통해 자유로운 행정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실행을 위한 명령제정권을 가진다.)

**Constitution Art.72 al.4** :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organique, et sauf lorsque sont en cause les conditions essentielles d'exercice d'une liberté publique ou d'un droit constitutionnellement garanti,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leurs groupements peuvent, lorsque, selon le cas, la loi ou le règlement l'a prévu, déroger, à titre expérimental et pour un objet et une durée limités,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qui régissent l'exercice de leurs compétences.(헌법 제72조 제 4 항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필요한 경우, 조직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법률 또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대상과 기간이 제한된 실험법 명칭의 그 권한실행을 규정하는 일반 법률 또는 명령규정의 예외규정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적자유나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의 실행의 본질적인 요건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GCT Art.L.1111-1** :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et les régions s'administrent librement par des conseils élus.(지방자치단체 통합법전 법률편 제 1111-1조 : 코뮌,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은 지방의회를 통해 자유로운 행정을 수행한다.)

### ◇ **Ligne de base** 【기선(基線)】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인접수역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가리킨다. 이는 통상기선(ligne de base normale)과 직선기선(ligne de base droite)으로 구분된다. 해양법협약은 제 7 조에서 통상기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는, 만과 하구 등의 경우에 있어서 설정되는 폐쇄선을 말하는 것이다. 즉, 통상기선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안의 저조선을 연결한 것을 말하며, 만과 하구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저조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협약은 제 7 조 제 1 항에서 직선기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 제 3 항은, 직선기선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도록 그어질 수 없으며 직선기선 내측의 수역은 내수로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육지와 충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5** : Sauf disposition contraire de la Convention, la ligne de base normale à partir de laquelle est mesurée la largeur de la mer territoriale est la laisse de basse mer le long de la côte, telle qu'elle est indiquée sur les cartes marines à grande échelle reconnues officiellement par l'Etat côtier.(해양법협약 제 5 조 : 이 협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지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 ◇ **Ligne de base archipélagique** 【군도기선(群島基線)】

군도의 최외측 돌출부의 최외측 한계점을 연결한 직선기선을 가리킨다. 해양법협약은 이러한 직선기선이 군도기선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선이 주요한 섬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역 내 바다와 육지의 면적이 1대1에서 1대9 사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선은 100해리 이내로 설정되어야 하며, 군도의 일반적 운곽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할 수 없다(협약 제47조). 군도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이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협약 제48조).

### ◇ Location 【 임대차, 대여 】

임대차를 가리키는 bail의 유의어로서, location은 주로 실거래관습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Location의 용례로서, ‘location de coffre-fort’(금고임대차), ‘location de fonds de commerce 또는 location-gérance’(영업의 임대차), ‘location en meublé 또는 location en garni’(가구구비임대차), ‘contrat de location-attribution’(귀속-임대차계약), ‘location-vente’(매매-임대차)를 들 수 있다.

‘금고임대차’(location de coffre-fort)란 은행이 고객에게 하나의 금고(金庫)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그 보관 및 관리를 보장하는 특별계약의 상관습용어이다. ‘영업의 임대차’(location de fonds de commerce)란 어떤 영업권(fonds de commerce)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자신의 영업권을 임대하고 차임을 받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상의 이득과 손실은 영업임차인(locataire-gérant)에게 귀속된다. ‘가구구비임대차’(location en meublé)라 함은 가구가 구비된 주택임대차, 즉 구비된 가구의 사용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계약을 말한다. ‘귀속-임대차계약’(contrat de location-attribution)이란 부동산전문회사와 주택취득지원자 사이에 체결되는 혼합계약의 일종으로서, 지원자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건축된 또는 장래 건축될 아파트나 주택을 사용하나, 일정 기간(통상 10년)이 지나면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귀속-임차인’(locataire-attributaire)은 주택 또는 아파트의 원가(prix de revient)와 차임(loyer) 및 관리비(charges)를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임대차’(location-vente)는 주로 산업설비,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같은 동산에 관련된 계약이다. 이 경우, 물건의 소유자는 타인에게 물건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통상의 차임금액보다 비싼 사용료(redevance)를 지급하지만,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 사용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faculté)를 가진다. 그러므로 ‘매매-임대차’와 ‘귀속-임대차’는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귀속-임대차’는 주택(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이고, ‘귀속-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면 일정기간 후 그에게로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귀속이 계약체결 시 확정되기 때문에, 단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매매-임대차’와는 구별된다.

□□ bail

◇ **Loi constitutionnelle 【헌법률, 헌법법률】**

□□ Constitution

◇ **Loi d'habilitation 【수권법률】**

정부가 시정방침의 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는 법률사항인 조치를 법률명령으로 발하는 승인을 의회에 요구하는 법률. 법률명령(ordonnance)을 발하기 위한 사전 법률인 것이다.

◇ **Loi de finances 【예산법률】**

프랑스의 경우 매년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예산법률에 대해서는 헌법 제47조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예산법률안의 제안자는 수상(정부)이며, 헌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안은 하원에서 우선 심의된다. 그리고 헌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법률안의 표결은 조직법률(헌법 및 예산법률에 관한 1959년 1월 2일의 조직법률 - Ordonnance N° 59-2 du 2 janvier 1959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법률안의 제출후 40일의 기간 내에 하원이 제1독회의 심의에서 의결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상원에 이를 부의하며 상원은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 제 3 항에서는 “만약 의회가 70일의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모든 조항은 법률명령으로 시행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에 한 엄격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부가적인 조항은 국고지출의 삭제 또는 감소, 국고수입의 증가 또는 국고지출의 통제에 관한 경우이외에는 제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onstitution Art.47 al.1** : Le Parlement vote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une loi organique.(헌법 제47조 제 1 항 : 국회는 조직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법률안을 표결한다.)

### ◇ Loi ordinaire 【 보통법률, 일반법률 】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 조직법률(loi organique)에 대한 의미로 사용된다. 헌법에서는 loi organique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loi ordinaire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에서 법률(lo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는 조직법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법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 Loi organique 【 조직법률 】

의회가 제정하는 규범으로서 법률가운데 헌법에서 특히 조직법률로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헌법상 조직법률로 규정하도록 열거한 사항만을 조직법률로 규정하는 대개의 경우 공권력의 조직이라든가 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조직법률은 보통법률과는 다른 특별한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조직법률은 법률안의 심의 전에 최소한 15일의 숙고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상원에 관계되는 조직법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조직법률안을 국민의회가 최종적으로 조직법률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조직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보통법률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심사를 하나 조직법률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것이다. 이는 조직법률 자체가 공권력의 조직 또는 권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 위헌심사를 하는 프랑스 위헌법률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청구가 없는 경우 통제가 안되고 권력분립원칙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조직법률은 그 특성상 헌법과 보통법률의 사이에 위치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일반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는 경우 조직법률도 그 심사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된다고 하였다.

**Constitution Art.46 al.5** : Les lois organiques ne peuvent être promulguées qu'après la déclaration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de leur conformité à la Constitution.(헌법 제46조 제5항 : 조직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는 후에 공포될 수 있다.)

### ◇ Loi référendaire 【 레퍼렌덤에 의한 법률 】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 헌법 제11조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다(CC n°62-20 DC du 6 novembre 1962).

### ◇ Louage d'ouvrage 【 도급임약 】

오늘날에는 주로 도급계약(contrat d'entreprise)이라 불린다. 수급인(locateur d'ouvrage, entrepreneur)이라 불리는 일방 당사자가, 도급인(maître de l'ouvrage)이라 불리는 타방 당사자를 위하여, 일정한 일 내지 작업을 완성하고 그 대가로 도급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C.civ. Art.1710 :** Le louage d'ouvrage est un contrat par lequel l'une des parties s'engage à faire quelque chose pour l'autre, moyennant un prix convenu entre elles.(민법전 제1710조 : 도급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일정한 일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타방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다.)

### ◇ Louage des choses 【 물건임약 】

물건임약이란 일방당사자(임대인)가 타방당사자(임차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동산 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료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전형적인 임대차계약(□□ bail, location)에 해당한다.

### ◇ Louage des services 【 노무임약 】

‘노무임약’이란 피고용인(employé, salarié)이라 불리는 일방당사자가 고용인(employeur)이라 불리는 타방당사자에게 자신의 노무(services, travail)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용인으로부터 일정한 임금(salaire)을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노동계약(contrat de travail)이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C.civ. Art.1780 al.2** : Le louage de service, fait sans détermination de durée peut toujours cesser par la volonté d'une des parties contractantes.(민법전 제1780조 제2항 : 기간의 정함이 없이 체결된 노무임약(고용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

### ◇ Louage 【 임약(賃約) 】

임약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임대계약을 의미한다. 임약은 단지 물건(choses)의 임대 뿐 아니라, 노무(services)은 물론 도급(ouvrage)도 포함하는 총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물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와는 그 포용범위가 다르다. 프랑스 민법상 임약에 속하는 계약의 종류로는 물건임약(□□ louage des choses), 노무임약(□□ louage des services), 도급임약(□□ louage d'ouvrage) 등이 있다.

### ◇ Loyauté 【 신의성실 】

일반적으로 loyauté는 성실(sincérité), 정직(droiture) 등을 뜻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loyauté는 보다 전문적으로 계약의 체결단계에서의 ‘계약적 성실성’(la sincérité contractuelle)과 계약의 이행단계에서의 ‘계약적 신의’(la bonne foi contractuelle)를 의미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le principe de bonne foi’(신의성실의 원칙, □□ bonne foi)로 불린다.

[ M ]

## ◇ Magistrat du siège 【좌정법관(坐定法官)】

‘Magistrat assis’라고도 한다. 입석법관(검사)(Magistrat debout)에 대응하는 용어로 지방법원에서는 법원장(président), 부법원장들(vices-présidents) 및 일반 판사들(juges)을, 지원에서는 지원판사들을 항소법원에서는 수석 법원장(premier président), 각 부장판사(présidents de chambre) 및 일반판사(conseiller)를 지칭한다. 좌정법관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법정에서 판결을 담당하는 법관은 단상위의 좌석에 앉아 있는 것과 달리 검사는 단상 밑에 서있는 상태로 공소를 수행하는 데서 비롯됐다. 좌정법관은 사안별로 명칭을 달리하는 법원의 결정(ordonnance), 판결(jugement) 또는 arrêt(판결)을 내린다.

**CPP Art.50** : Le juge d'instruction, choisi parmi les juges du tribunal, est nommé dans les formes prévues pour la nomination des magistrats du siège.(형사소송법전 제50조 : 법원의 판사들 중에서 선정된 수사판사는 좌정법관의 임명을 위한 형식에 따라 임명된다. 필요한 경우 다른 판사는 동일한 형식하에서 첫 단락에 언급된 방식으로 지정된 판사와 협력하여 한시적으로 수사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수석법원장이 법원의 판사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명령(ordonnance)을 통하여 동일한 요건하에서 한시적으로 이 판사로 하여금 예심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사판사의 부재, 병 또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법원은 그를 대체하기 위하여 당해 법원의 판사들 중에서 일인을 지정할 수 있다.)

## ◇ Maire 【단체장(시장)】

지방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의 집행기관으로서 동시에 행정구역인(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 코뮌의 국가대표이다. 시장은 지방의회에서 비밀선거 방식으로 선출되지만 실제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 선거의 입후보자 명부의 제 1 순위자가 된다. 시장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6년이다. 시장은 지방기관(autorité locale)으로서 지방의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공고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고 회기를 진행하고 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시장은 코뮌의회(conseil municipal)를 대표하여(par délégation) 법률이 열거하는 (énumérées par la loi, CGCT Art. L. 2122-22) 사항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시장은 고유한 권한을 가지는데 바로 지방경찰권자로서 일반·특별 행정경찰권자가 된다.

시장은 시의 집행부의 위계적 조직의 수장이 된다. 도시계획분야(건축허가)와 같이 많은 개별 법률에서 시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시장의 권한행사는 국가대표(프레페, *préfet*)의 행정적 통제(행정상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 대한 제소인 사법적 통제이다)를 받는다. 시장은 또한 국가의 대표자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법률과 명령의 공포와 실행 및 공공의 안녕(*sûreté général*)을 위한 조치의 실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CGCT, Art. L.2122-27). 시장은 선거인 명부의 개정, 호적부 관리 업무와 같은 법률이 위임하는 국가사무에 관한 행정 및 사법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담당하고 데파트망의 프레페의 위계적(*hiérarchique*) 통제를 받는다.

### ◇ Majorité 【성년】

Majorité는 일반적으로 성년, 대다수, 과반수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민법의 영역에서 ‘민사성년’(*majorité civile*)은 한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친권(*autorité parentale*)의 행사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행위능력(*capacité d'exercice*)을 취득하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성년에 이른 자를 *majeur*(성인)라 부른다. 그러나 정신능력이 손상된 성인은 법률상 보호제도의 대상이 되고 또한 행위능력상의 제한을 받는다.

**C.civ. Art.448 al.1** : La majorité est fixée à dix-huit ans accomplis; à cet âge, on est capable de tous les actes de la vie civile.(민법전 제488조 제1항 : 성년은 만18세로 한다. 이 연령에 이르면 누구든지 모든 민사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Mandat 【영장】

형사법 분야에서의 의미로는 권한 있는 법관이 자신이 직접 대면, 출석, 체포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는 사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영장의 종류에는 구인영장, 체포영장, 출석영장, 구금영장, 수색영장이 있다. 구인영장은 수사판사가 경찰 또는 군경찰에게 예심대상자를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앞에 즉시 구인하라는 명령이다. 체포영장은 수사판사가 경찰에게 예심대상자를

체포하여 구치소에 인치하도록 발하는 명령이다. 출석영장은 수사판사가 인신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예심대상자에게 자신 앞에 출석할 것을 최고하는 결정으로 법원의 집달관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통보된다. 구금영장은 석방구금판사가 교정시설의 책임자에게 예심대상자를 인수받고 구금하도록 발하는 명령이다. 2004년 3월 10일의 법률은 형사소송법전 제70조를 개정하여 지방법원 검사장으로 하여금 중죄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금고(emprisonnement)에 처해지는 경죄의 현행범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한 개 또는 수개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색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강제 유치된다.

**CPP Art.125** : Le juge d'instruction interroge immédiatement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 mandat de comparution.(**형사소송법전 제125조** : 수사판사는 출석영장의 대상인 사람을 즉시 신문한다. 동일한 요건하에 구인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람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진행한다. 반면에 만일 피의자신문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체포시로부터 즉각 피의자신문을 할 수사판사 또는 수사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법원장이 지정하는 판사에게 구인되기 까지 최고 24시간 동안 경찰부서 또는 군 경찰부서에 의해 인치될 수 있다. 구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은 석방된다.)

Juge d'instruction,   Juge des liberté et de la détention

### ◇ Mandat ad litem 【소송대리위임】

소송대리위임이란 소송당사자(plaideur)가 변호사와 같은 법적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법정에서 본인을 대리할 것을 위임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수입인은 위임인을 조력하고 소송절차상의 행위를 위임인의 이름으로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mandat de représentation en justice

### ◇ Mandat d'intérêt commun 【공동이익위임계약】

공동이익위임계약이란 ‘상사대리위임계약’(mandat de l'agent commercial)이나 ‘부동산개발계약’(contrat de promotion immobilière)과 같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특정의 계약을 칭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통 수입료를 받는 유상의 위임계약을 지칭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계약의 실현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철회가능성(민법전 제2004조 참조)에서 제외된다.

**C.civ. Art.1381-1 al.1** : Le contrat de promotion immobilière est un mandat d'intérêt commun par lequel une personne dite 'promoteur immobilier' s'oblige envers le maître d'un ouvrage à faire procéder, pour un prix convenu, au moyen de contrats de louage d'ouvrage, à la réalisation du programme de construction d'un ou de plusieurs édifices ainsi qu'à procéder elle-même ou à faire procéder, moyennant une rémunération convenue, à tout ou partie des opérations juridiques, administratives et financières concourant au même objet.(민법전 제1381-1조 제1항 : 부동산개발계약은 공동이익위임계약의 일종으로서, 이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라 불리는 사람이 도급인에 대하여 도급임약계약을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한 개 또는 수개의 건물의 건축계획을 실현함과 아울러, 동일목적에 기여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 ◇ Mandat légal 【 법정위임 】

미성년자나 기타 무능력자의 후견인(tuteur)과 같은 법정대리인(représentants légaux)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대리권(pouvoir de représentation)을 말한다.

#### ◇ Mandat 【 위임 】

프랑스 민법상 위임은 위임인(mandant)이라 불리는 일방당사자가 수임인(mandataire)이라 불리는 상대방에게 본인(위임인)을 위하여 어떤 사무를 본인의 이름으로 처리하거나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민법전 제1984조 제1항). 권한부여행위를 별도로 수권행위(procuration)로 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임은 민법상 대리(□□ représentation)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며(민법전 제1984조 제2항), 위임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권행위(procuration)를 철회(révocation)할 수 있다(민법전 제2003조). 위임계약은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되며(민법전 제1985조),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민법전 제1986조).

**C.civ. Art.2004** : Le mandant peut révoquer sa procuration quand bon lui semble.(민법전 제2004조 : 위임인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 **Mariage** 【 혼인 】

혼인이란 일반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고 한 가족을 형성할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결합을 말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지만(민법 제821조 제1항), 프랑스에서의 혼인의 성립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우선 혼인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각자 2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법전 제63조 제2항), 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민사공무원은 해당 지역(commune) 청사 입구에 이들의 혼인거행 사실을 공고한다. 이 공고에는 혼인당사자의 성명·직업·주소·거소 및 혼인식을 거행할 장소 등이 표시된다(동조 제1항). 이 공고는 10일간 게시되며, 이 기간 이내에는 혼인식을 거행할 수 없다(민법전 제64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 혼인식은 제63조에 기재된 공고일에 혼인당사자 일방의 주소 또는 거주 지역(commune)의 민사공무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민법전 제165조).

**C.civ. Art.166** : La publication ordonnée à l'article 63 sera faite à la mairie du lieu du mariage et à celle du lieu où chacun des futurs époux a son domicile ou, à défaut de domicile, sa résidence.(민법전 제166조 : 제63조에 정해진 공고는 혼인식 거행지의 청사 및 혼인당사자 각자의 주소지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의 청사에서 행해진다.)

### ◇ **Maternité** 【 모성(母性) 】

모성이란 부성(paténité)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모(母)와 자(子)를 결합시키는 친자관계(□□ filiation)를 말한다.

### ◇ **Mauvaise foi** 【 악의 】

악의란 선의(bonne foi)에 반대되는 태도를 말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악의는 악의의 당사자가 선의였다면 누렸을 이득을 박탈하게 하거나 또는 악의의 당사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 특히 계약의 고의적인 불이행의 경우, 악의는 사기(□□ dol)를 구성한다. 전자의 예로서 프랑스 민법전 제1635조와 제1645조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 제801조나 제1413조를 들 수 있다.

**C.civ. Art.1635** : Si le vendeur avait vendu de mauvaise foi le fonds d'autrui, il sera obligé de rembourser à l'acquéreur toutes les dépenses, même voluptuaires ou d'agrément, que celui-ci aura faites au fonds.(민법전 제1635조 : 타인소유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매수인이 지출한 비용이 사치 또는 유흥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C.civ. Art.1645** : Si le vendeur connaissait les vices de la chose, il est tenu, outre la restitution du prix qu'il en a reçu, de tous les dommages et intérêts envers l'acheteur.(민법전 제1645조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그가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C.civ. Art.801** : L'héritier qui s'est rendu coupable de recel, ou qui a omis, sciemment et de mauvaise foi, de comprendre dans l'inventaire des effets de la succession, est déchu du bénéfice d'inventaire.(민법전 제801조 :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도의 및 악의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킨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C.civ. Art.1413** : Le paiement des dettes dont chaque époux est tenu, pour quelque cause que ce soit, pendant la communauté, peut toujours être poursuivi sur les biens communs, à moins qu'il n'y ait eu fraude de l'époux débiteur et mauvaise foi du créancier, sauf la récompense due à la communauté s'il y a lieu.(민법전 제1413조 : 사유가 무엇이든, 공동재산제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 각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항상 공동재산에서 변제될 수 있으나, 채무자인 배우자의 '사해'(fraude)와 채권자의 악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며, 공동재산으로 변제한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 공화국 미디어퇴르, 음부즈만 】

1973년 1월 3일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음부즈만 기구. 프랑스 음부즈만은 1명으로

구성된다. 나라에 따라서는 스웨덴과 같이 4명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한명이다. 옴부즈만을 한명으로 할 것인가 혹은 복수로 임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복수의 옴부즈만을 두는 경우에도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담당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담당옴부즈만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년 임기로 임명되는 옴부즈만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데크레(décret)로 임명되며 연임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거정부(cohabitation)가 탄생하게 되면 옴부즈만 임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수상을 중심으로 의회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이 다른 정파인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옴부즈만을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차 동거정부 시기인 1998년 자크 펠르티에(Jacques Pelletier)가 1992년에 임명되어 1998년 3월 초에 그 임기가 다하였으나, 그 후임자인 베르나 스타시(Bernard Stasi)는 같은 해 4월 1일에서야 임명되었다. 옴부즈만을 임명하는데 그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다.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의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동거정부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당과 내각 구성이 동일한 정당이 되므로 옴부즈만을 행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임명하고 의회는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프랑스 헌정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 프랑스 제 5 공화국은 행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Loi n°73-6 du 3 janvier 1973 instituant un médiateur Art.2 : Le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est nommé pour six ans par décret en conseil des ministres. Il ne peut être mis fin à ses fonctions avant l'expiration du délai qu'en cas d'empêchement constaté dans des conditions défini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Son mandat n'est pas renouvelable.**(1973년 1월 3일 미디어퇴르설치법 제 2 조 : 공화국 미디어퇴르는 6년 임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로 임명된다. 미디어퇴르는 행정최고재판소 심의를 거친 데크레에서 정한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 둘 수 있다. 임기는 연임될 수 없다.)

### ◇ **Médiation pénale** 【형사중개(刑事仲介)】

형사소추의 대체수단으로 검사의 제안으로 법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제삼자인 중개자 앞에 범죄자와 피해자를 소집하여 자유롭게 조정된 해결책을 찾고 피해회복의 세부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중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해 경고(rappel à la loi), 보건, 사회, 직업시설에서의 수강명령 등 종류가 다양하다.

**CPP Art. 41-1** :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préalablement à sa décision sur l'action publique, direct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un délégué ou d'un médiateur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형사소송법전 제41-1조 : 아래의 조치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의 회복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초래된 혼란을 종식하고 또는 범죄의 행위자를 복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지방법원 검사장은 공소에 관한 자신의 결정에 선행하여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 지방법원 검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중개자를 경유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 ◇ **Médiation** 【중개】

중개라 함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 제 3 자(médiateur: 중개자)가 그들에게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중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해결안을 강요할 수 있는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재(arbitration)와는 다르다.

### ◇ **Membre du parlement** 【국회의원】

Parlementaire

### ◇ **Membre du personnel consulaire** 【영사직원】

영사기관장을 제외한 영사관들을 가리킨다.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영사직원’이라는 표현은 영사관장, 사무직원 및 역무직원을 제외한 영사관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Fonctionnaires consulaire

### ◇ Membre du personnel diplomatique 【 외교직원 】

외교공관의 구성원으로서 외교공관장을 보좌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말한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직원을 가리켜 “외교관의 계급을 가진 사절단의 직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 협약 제 1 조 (d)) 파견국은 접수국의 동의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적의 인물을 외교직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동 협약 제 8 조), 접수국은 자국 내 타국 공관의 외교직원들에 대하여 그들이 접수국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그 후에 언제든지 ‘불만스런 인물’(persona non grata)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국은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그 직무를 종료시켜야 하며, 파견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접수국은 그 인물을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동 협약 제 9 조) 외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접수국 내에서 광범위한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우선 외교직원들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이들의 주거 공간은 공관과 마찬가지로 불가침이 보장된다. 또한, 이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하며, 관세의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 ◇ Mer terrotoriale 【 영해 】

영해라 함은 내수에 인접된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이 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 지난날에는 영해의 폭이 3해리로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제 2 차 대전 이후부터 신생국들은 영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으며, 제 3 차 해양법회의에서 12해리로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영해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며, 연안국은 유해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안국은 범인의 체포 또는 수사를 위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그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거나 그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또

는 기국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마약류의 불법거래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연안국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3** : Tout Etat a le droit de fixer la largeur de sa mer territoriale, cette largeur ne dépasse pas 12 milles marins mesurés à partir de lignes de base établies conformément à la Convention.(해양법협약 제3조 : 모든 국가는 자기의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영해의 폭은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Mesure d'ordre intérieur** 【(행정청의) 내부조치】

(행정청의) 내부조치는 행정청이 시클레르(circulaire)가 아닌 매우 다양한 형식을 통해 조직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발하는 위계적 명령의 경우를 의미한다.

국사원(Conseil d'Etat)은 자녀들 성탄선물로 크리스마스트리 수령 거부를 명하는 개별적이고 대인적인 내용의 지시(C.E., 1992년 11월 4일, Ghirardi 판결)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내부의 조치가 훈령 혹은 통첩으로 번역되는 la circulaire와 재량준칙으로 번역되는 디렉티브(directive)를 포괄하는 카테고리 보기는 어렵다. 시클레르는 행정규칙의 카테고리에 포섭되는 훈령/통첩(circulaire), 지시(instruction), 권고(recommendation), 질의회신(explication)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행정의) 내부조치는 이들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 Circulaire

### ◇ **Mesure de surêté** 【보안처분】

보안처분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입감(placement), 감시(surveillance), 지원(assistance), 치료(soins)처분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단으로서의 형벌과 달리 보안처분은 개인의 위험성을 중화시킴으로서 범죄의 발생 또는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보안처분은 범죄자에게 집행되는 형을 보충하기 위한 예방처분이다. 보안처분은 소년범, 정신병자, 위험한 상태의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및 성범죄자들에게 취해진다.

### ◇ Meuble par anticipation 【예정동산(豫定動産)】

예정동산이란 수목이나, 농작물 등이 토지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경우 원칙상 부동산에 해당되나, 곧 분리되어 동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동산처럼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Les récoltes sur pied font l'objet d'une vente mobilière. 【수확 전의 곡식은 동산매매의 대상이다. (G. Cornu(sous la direction de), Vocabulaire juridique, PUF, v° meuble)】**

### ◇ Meuble par détermination de la loi 【법정동산(法定動産)】

법정동산이란 법률에 의해 동산의 성격이 부여된 무체재산을 말한다. 즉 동산채권(créances mobiliers), 저작권(droits d'auteur), 회사의 주식(actions)이나 지분(intérêts), 영업자산(fonds de commerce) 등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들을 동산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에서 프랑스와 구별된다.

**C.civ. Art.529** : Sont meubles par détermination de la loi, les obligations et actions qui ont pour objet des sommes exigibles ou des effets mobiliers, les actions ou intérêts dans les compagnies de finance, de commerce ou d'industrie, encore que des immeubles dépendant de ces entreprises appartiennent aux compagnies.(민법전 제529조 : 변제기에 있는 금전 또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주식, 금융회사·상업회사·산업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은 비록 이들 기업에 부속되는 부동산이 회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동산으로 본다.)

### ◇ Meuble 【동산】

동산이란 이동 가능한 모든 종류의 물건을 말한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보다 넓게 부동산(immeuble)이 아닌 모든 물건을 뜻하기도 하며, 동산은 본래 성질에 의하거나(par nature) 법률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질에 의한 동산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법정동산’이나 ‘예정동산’의 개념도 인정하고 있다.

**C.civ. Art.528** : Sont meubles par leur nature les animaux et les corps qui peuvent se transporter d'un lieu à un autre, soit qu'ils se meuvent par eux-mêmes, soit qu'ils ne puissent changer de place que par l'effet d'une force étrangère.(민법전 제528조 :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 있는 동물이나 물체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든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든, 모두 성질에 의한 동산이다.)

### ◇ Mineur 【 미성년자 】

미성년자라 함은 출생 이후 성년(□□ majorité)의 나이(만18세)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는 친권(autorité parentale) 또는 후견(□□ tutelle) 등의 법정재산관리에 의한 제도적 보호를 받는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률 또는 관습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민법전 제389-3조 제 1 항, 제450조 제 1 항).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민법 제 5 조)와 구별된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1984년 이후 프랑스 법원은 미성년자의 과책(□□ faute)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민법전 제1382조·제1383조, □□ responsabilité pour faute). 즉, 유아(infans)의 분별력(discernement) 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의 발생에 대해 유아가 과책을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Cass. ass. plén. 9 mai 1984, D. 1984.525). 따라서 미성년자가 과책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에 대한 친권을 가진 부모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민법전 제1384조 제 4 항, □□ responsabilité du fait d'autrui).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할 수 있으며(민법전 제148조), 만16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전 제904조). 그러나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또는 혼인중의 부부간의 처분행위(민법전 제1091조 이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민법전 제 903조). 미성년자는 은행 구좌의 개설 등과 같은 보존행위(actes conservatoires)나 미비한 금액의 차용 등과 같은 관습이 허용하는 일상적인 행위(actes de la vie courante)를 할 수 있고, 만15세 이상인 경우 견습계약(contrat d'apprentissage)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만16세 이상인 경우 노동

계약(contrat de travail)을 체결할 수도 있다.

#### ◇ **Ministère** 【 행정 각부, 내각 】

행정부의 구성단위로서 대통령의 데크레에 의하여 그 구성이 결정된다. 행정 각부의 장을 ministre라고 하는데, ministre는 ministre d'Etat, ministre, ministre délégué, secrétaire d'Etat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서열은 ministre d'Etat, ministre, ministre délégué, secrétaire d'Etat 순이라 할 수 있다.

#### ◇ **Ministre** 【 장관 】

국가 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상에 의하여 지명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이다. 국무장관(ministre d'Etat)보다는 하위의 직이라 할 수 있다.

#### ◇ **Ministre d'Etat** 【 국무장관, 국사장관 】

장관의 일종으로 특정 부처의 장이며, 우리나라에 부총리에 해당하는 폭 넓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무장관의 직이 특정 부처의 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관들 가운데 정치적 무게라든가 혹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명예직으로 붙이는 것이다.

#### ◇ **Ministre délégué** 【 담당장관 】

대체로 국무회의에 구성원이 되는 장관으로 장관(ministre)보다 하위이다.

#### ◇ **Minorité pénale** 【 형사미성년 】

범죄가 미성년자에게 귀책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한 유형적 행위를 이해하고 의욕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분별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명 ‘페르벤’(Perben) 법률로 알려진 2002년 9월 9일의 법률은 형법전 제122-8조를 개정하여 종전의 미성년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분별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본 조의 제 1 항은 “분별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유죄로 인정된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에 대하여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호, 지원, 감시 및 교육처분들을 규정한 특별법률에 의해 정해진 조건들하에서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이 법률은 10세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고될 수 있는 교육적 처벌과 연령상의 이유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책임의 감경을 고려하여 13세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과할 수 있는 형벌을 아울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분별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다. 둘째, 분별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임이 있으며 1945년 2월 2일의 명령(ordonnance)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보호, 지원, 감시, 교육처분을 받게 되며, 만일 10세 이상인 경우 교육적 처벌이, 13세 이상이면 형벌이 가해진다. 이때 나이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책임의 감경이 고려되며 13세부터 16세 미만까지는 법적 감경사유이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성년과 동일한 형벌을 가할 수 있다.

Imputabilité,   Responsabilité pénale

### ◇ Minorité 【 미성년 】

미성년이라 함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년(  majorité)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미성년은 미성년자(  mineur)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게 하는 법적 조건이 된다.

### ◇ Mise en examen 【 예심대상결정 】

주범 또는 공범으로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현에 참석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중대하거나 일치하는 징표가 존재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판사가 예심을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 자에 대하여는 보조참고인의 자격으로 진술청취(심문)가 이뤄진다. 예심대상자가 된 자는 판사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예심대상자는 마찬가지로 판사에게 진실발견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진술청취, 대질 등)에 착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CPP Art.116** : Lorsqu'il envisage de mettre en examen une personne qui n'a pas déjà été entendue comme témoin assisté,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à sa première comparu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형사소송법전 제116조 : 보조참고인의 자격으로 이미 진술하지 않았던 자에 대하여 예심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판사는 본 조에 규정된 세부절차에 따라 첫 출석을 진행시킨다.)

Instruction préparatoire,  Information judiciaire

### ◇ **Modérateur (pouvoir -) 【 직권조정권 】**

직권조정권이라 함은 예외적으로 특정의 상황에 있어서 ‘법의 규칙’(règle de droit)의 일관된 적용이 지나치게 혹독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의 적용을 배재할 수 있도록 법률이 판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말한다.

이 직권조정권은 위약벌조항( clauses pénales)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일방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해 오용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프랑스 민법전 제1152조 제 2 항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민법 제398조 제 2 항에도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판사의 직권조정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권조정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양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프랑스 민법은 판사에게 『약정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비하여, 한국 민법은 판사에게 『약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직권조정권은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프랑스 파기원은 판사들에 의한 이 권한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선 판사들이 약정금액을 조정할 경우 그 동기(motifs)를 명시해야 하고(Cass. civ. 3e, 17 janv. 1979, JCP. 1979, IV, 98; Cass. civ. 3e, 14 nov. 1991, JCP. 1992, IV, 170); 판사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승인”할 수 없다(Cass. civ. 1re, 24 juill. 1978, D. 1979, inf. rap. 151; Cass. com. 3 fév. 1982, Bull. civ., IV, n° 44). 그리고 민법전 제1226조에 의거하여 위약벌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파기원은 “일방당사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정된 조항에만 직권조정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ss. civ. 1re, 16 janv. 1985, Bull. civ. 1985 I n° 24, JCP. 1986. II. 20661, note G. Paisant). 따라서 “조기의 계약해지에 대한 배상금”(Cass. civ. 1re, 6 mars 2001, Bull. civ. I, n° 56)이나,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한 보상금”(Cass. soc. 4 juill. 1983, D.1984. Somm. 139 et obs. Serra), 금전대차 계약에서 “그

목적이 차용자의 상환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기상환의 경우에 고정적인 평균이 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된 배상금조항”(Cass. civ. 1re, 2 déc. 1992, C.C.C. 1993. 41, obs. Leveneur) 등에는 직권조정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다. 그밖에 과기원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금조항(clause de dédit)에도 직권조정권의 행사를 거절하고 있다(Cass. com., 2 avril 1996, D. 1996. Somm. 329, obs. D. Mazeaud; Cass. com. 14 oct. 1997, Bull. civ. IV, n° 255).

**C.civ. Art.1152** : Lorsque la convention porte que celui qui manquera de l'exécuter payera une certaine somme à titre de dommages-intérêts, il ne peut être alloué à l'autre partie une somme plus forte, ni moindre. Néanmoins, le juge peut, même d'office, modérer ou augmenter la peine qui avait été convenue, si elle est manifestement excessive ou dérisoire. Toute stipulation contraire sera réputée non écrite.(민법전 제1152조 : ①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당사자가 타방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액의 지급이 인정될 수 없다. ② 그러나 전항의 금액이 명백하게 과도하거나 미약한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합의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모든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Monocamérisme 【 단원제 】

의회가 하나의 합의체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제도. 단원제에 대비되는 것이 양원제(bicamérisme)이다. 현재 프랑스는 양원제 국가로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단원제를 채택한 시기도 있었다.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단원제를 채택한 것이 있었는데, 1789년부터 1795년까지 단원제를 채택하였으며 1484년에도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또는 상황적 필요, 즉 헌법을 제정하는 시기에 단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1871년부터 1875년까지와 1945년부터 1946년까지가 그 예이다.

### ◇ Moratoire 【 유예 】

유예란 채무자나 채무에 대해 별도의 지불기간을 부여하거나 강제이행수단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우선,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유예는 채무의 이

행을 어렵게 하는 경제위기라든가 전시상태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상황의 발생을 이유로, 특정 범주의 채무자나 채무에 대해, 예외적이고 일시적이며, 집단적이고 객관적인, 입법조처에 의해 행해진다. 유예기간은 법률에 의해 확정되거나(moratoire légal: 법정유예), 판사의 결정에 일임되기도 한다(moratoire judiciaire: 사법유예). 이러한 사회적 위기로 인한 집단적 유예 이외에, 프랑스민법은 채무자의 개인적 상황과 채권자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사의 직권에 의한 ‘유예기간’(□□ délai de grâce)의 허용도 인정하고 있다(민법전 제1244-1조 제1항). 그 밖에 일인 또는 수인의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지급기간의 부여 또는 분할지급에의 동의를 하는 것도 유예에 해당한다.

**C.civ. Art.1244-1 al.1** : Toutefois, compte tenu de la situation du débiteur et en considération des besoins du créancier, le juge peut, dans la limite de deux années, reporter ou échelonner le paiement des sommes dues.(민법전 제1244-1조 제1항 : 그러나 판사는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2년의 기한 내에서 채무의 변제를 연기하거나 분할하도록 할 수 있다.)

### ◇ Motif 【 판결이유, 행정결정의 이유 】

① 행정소송에서 판결이유(les motifs)는 원고의 주장(prétentions)과 법관이 이끌어낸 결론(solution)에 바탕을 둔 논리적 주장(argumentation logique)을 구성한다. 실제로 원고(plaideur)는 소송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la motivation en fait et en droit)가 되는 자신의 청구(demande)를 뒷받침하는 주장(moyens)을 전개한다(développe). 판결은 판결이유(공시대량, considérants)의 형식으로 주문(le dispositif)을 뒷받침하는 이유(les motifs ou raisons)를 설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 및 법적인 이유부기는 항소심 혹은 파기심(상고)를 담당하는 국사원에서 심사(contrôle)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갖추어져야 한다. 국사원은 파기원(대법원. Cour de cassation)처럼 회부된(déféré) 행정결정의 이유부기(la motivation des décisions)에 대한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유부기의 존재 그 자체와(C.E. Ass. 23 décembre 1959, Gliksman, Rec. 408) 그 내용이 주문(dispositif)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명확해야만(suffisamment précis) 한다(C.E.Ass. 20 février 1948, Dubois, Rec. p.87).

② Les motifs는 행정청이 내린 결정을 구성하는 사실상·법적 요소를 말한다. 월권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은 이유에 관한 판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

랫동안 국사원은 행정청의 재량에(*la discrétion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관한 이유 판단에 대하여 외면해 왔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법률상 하자(*erreur de droit*)를 이유로 한 행정행위의 취소(C.E. 23 janvier 1883, *Dme Sarlandie*)는 빈번했지만 사실의 심사(*contrôle des faits*)는 금기시 되었다. 따라서 행정청의 적정성(*opportunité*)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 스스로만 가능했다. 20세기에 들어와 국사원은 종래 재량적이라고 판단된 지방의회의 폐지·통합에 관한 국가원수의 데크레에 대해 법률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면서(C.E. 31 janvier 1902, *Grazietti*) 행정청의 사실상 정황에 대한 판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행정청의 이유의 적법한 구비(존재)와 관련해서 국사원은 1954년 *Barel* 판결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툼이 있는 행정결정을 명료하게 하는 모든 서류를 법관(원)에 제출해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C.E. Ass.28 mai 1954, *Barel*, Rec. p.308).

#### ◇ **Motion de censure** 【 내각불신임 】

의회에 의한 내각불신임은 의원내각제에서 대표적인 의회에 의한 대정부견제수단이다. 제3 공화국과 제4 공화국을 거치면서 잦은 불신임동의권이 발동되어서 정부불안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정부의 평균수명이 6개월도 안되었다. 그 결과 의회에 의한 불신임동의안 상정을 제4 공화국보다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헌법 제49조 제2항이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회는 불신임동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이러한 동의는 국민의회의원 10분의 1이상 서명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그 표결은 동의안 제출 후 48시간이 지나야지만 행하여질 수 있다. 불신임동의에 찬성하는 투표만이 계산되며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서만 통과된다. 아래의 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회 의원은 동일한 보통회기 중에는 4회 이상, 동일한 특별회기 중에는 두 번 이상 불신임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수상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의안의 표결에 관하여 국민의회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걸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된 불신임동의가 전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국민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4 공화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회 의원 불신임동의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헌법에서 합리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회가 불신임동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Constitution Art.49 al.2** : L'Assemblée Nationale met en caus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par le vote d'une motion de censure. Une telle motion n'est recevable que si elle est signée par un dixième au moins des membres de l'Assemblée Nationale. Le vote ne peut avoir lieu que quarante-huit heures après son dépôt. Seuls sont recensés les votes favorables à la motion de censure qui ne peut être adoptée qu'à la majorité des membres composant l'Assemblée. Sauf dans le cas prévu à l'alinéa ci-dessous, un député ne peut être signataire de plus de trois motions de censure au cours d'une même session ordinaire et de plus d'une au cours d'une même session extraordinaire.(헌법 제49조 제 2 항 : 국민의회는 불신임동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이러한 동의는 국민의회 의원 10분의 1이상이 서명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그 표결은 동의안 제출 후 48시간이 지나야지만 행하여질 수 있다. 불신임동시에 찬성하는 투표만이 계산되며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서만 통과된다. 아래의 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회 의원은 동일한 보통회기 중에는 4회 이상, 동일한 특별회기 중에는 두 번 이상 불신임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 ◇ Motivation 【 행정결정(행위)의 이유, 동기, 정당성 】

행정결정(행위)의 이유는 행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법적 및 사실상 이유(motifs de droit et de fait)의 작성을 구성한다. 행정결정(행위)의 이유는 행위의 형식적인 제출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외부적인 적법성의 요건이 된다. 실정법상 행정결정의 이유를 그 상대방에게 통지(communiquer)하는 일반의무규정은 없으며 오랫동안 특별한 예외규정(지방의회에 해산에 관한 테크레나 공무원의 징계조치)이나 아레테(arrêté, 직업단체가 그 성질, 구성 및 권한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유부기가 의무적이다)를 제외하고는 이유부기(理由附記) 부재원칙이 지배되어 왔었다. 행정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이 된 행위의 이유(les motifs)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가능성을 유보하였지만(C.E. Ass.28mai 1954, Barel, Rec. p.308) 법의 일반원칙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C.E. Sect. 26 janvier 1973, garde Sceaux c/Lang, Rec.72).

행위의 이유부기는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공개 뿐 아니라 통제가능성의 개선

을 통한 적법성의 준수를 통해 나타났다. 행정이유부기에 관한 1979년 7월 11일 법률은 비록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상 이유부기의 중요한 진전을 가져오게 된다. 동법률이래로 침익적(défavorable) 성격의 개별적 행정결정(les décisions individuelles)이나 법률이나 명령에서 규정된 일반적 규정의 예외가 되는 규정의 이유부기는 의무적이 되었다. 이유부기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이유부기가 명시적이고 결정의 기초가 되는 법적 및 사실상의 이유(considérations)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 3 조).

### ◇ Multipartisme 【 복수정당제, 다당제 】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할 수 있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는 제도. 프랑스도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을 보면 인민운동연합(Groupe de l'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사회당(groupe socialiste),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Groupe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공산당(Groupe des Députés communistes et républicque)이 있다. 또한 2006년 상원을 구성하는 정당을 보면, 공산당(groupe CRC - communiste, républicain et citoyen), 중도연합과 프랑스 민주연합(groupe UC-UDF - Union centriste-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사회, 유럽 민주주의 연합(groupe R.D.S.E. - Rassemblement démocratique social et européen), 사회당(groupe Socialiste), 인민운동연합(groupe de l'U.M.P. -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이 있다.

[ N ]

## ◇ Nature (réparation en -) 【자연배상;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 또는 자연배상’(réparation en nature)과 ‘등가배상 또는 금전배상’(réparation par □□ équivalent)이 있다. 그리고 이들 방법은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우선, 원상회복 또는 자연배상(이하에서는 원상회복으로 표현함)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를 완전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손해발생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즉, 원상회복은 원래의 급부나 침해이익의 완전성의 직접적 회복 및 이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대체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위법하게 축조된 건물의 철거, 사해행위의 취소, 명예훼손시 관련 문서의 회수와 폐기 및 판결의 공시, 부정경쟁사의 점포의 폐쇄 등이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 있어서 사죄광고 등을 통하는 방법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금전에 의하지 않는 등가배상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여하튼, 원상회복은 손해상황을 종국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데 기초한 배상방법이며, 침해행위를 저지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나 재산상태 등을 침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의 방법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이나,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체가 불가능한 거장의 작품과 같은 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그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인데,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exécution forcée en nature)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실현할 수도 있으나, 급부의 종류에 따라 강제이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원상회복은 그러한 손해배상방법을 명하는 것이 가능함과 아울러, 그것이 ‘적합한’(adéquate)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원상회복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손해를 제거할 수 없거나, 급부의 성질상 그 이행이나 이행의 강제가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의 배상방법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그리고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원상회복이라는 손해배상방법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Cass. civ. 3e, 3 jan. 1969, Bull. civ. III, n° 2 등 참조).

**La réparation en nature est proche d'une exécution en nature.**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은 (채무이행에 있어서의) 현실적 이행과 유사하다.】

#### ◇ **Navires d'Etat utilisés à des fins non commerciales** 【비상업용 정부선박】

비상업용 정부선박이라 함은, 정부소유의 선박으로서 해당 시기에 있어서 정부의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선박은 기국의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만큼, 군함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즉, 타국의 영해에서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여하한 타국의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하며, 공해상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Navires de guerre** 【군함】

해양법협약에서는 군함에 대하여 각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군함은 타국의 영해를 포함한 여하한 수역 내에서도 완전한 면제를 향유하며, 그 기국 이외의 여하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해양법협약 제29조에서는 군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군함은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하여 있는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군적부나 그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하에 있으며 정규군의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 모든 국가의 군함은 자국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법령을 위반한 타국 선박을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해적행위, 노예매매, 불법방송, 무국적 등의 혐의가 있는 선박들을 임검할 권한을 가진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30 : Si un navire de guerre ne respecte pas les lois et règlements de l'Etat côtier relatifs au passage dans la mer territoriale et passe outre à la demande qui lui est faite de s'y conformer, l'Etat côtier peut exiger que ce navire quitte immédiatement la mer territoriale.(해양법협약 제30조 : 군함이 영해 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법령준수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으로 하여금 즉각 영해를 떠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Négligence 【 부주의 】

부주의란 완수해야 할 어떤 행위를 완수하지 않은데 따른 ‘고의가 아닌 과책’(faute non intentionnelle)으로서 ‘경솔’(□□ imprudence)과 함께 ‘준불법행위’(□□ quasi-délit)의 한 사유가 된다. 즉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적극적 행태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경솔과는 달리, 부주의는 당연히 해야 할 행위나 태도를 하지 않은 소극적 행태에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C.civ. Art.1383** : Chacun est responsable du dommage qu'il a causé non seulement par son fait, mais encore par sa négligence ou par son imprudence.(민법전 제1383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주의 또는 경솔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 Nemo auditor 【 부도덕원인급부 반환청구부인의 원칙 】

‘Nemo auditor’ 원칙이란 “Nemo auditor propriam turpitudinem.”(누구도 자신의 과렴치함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라틴어 법언의 준말로써, 부도덕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로마법의 ‘부도덕원인의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 ob turpem causam)을 그 기원으로 하는 이 원칙은, 프랑스에서 중세의 종교적 가치 및 도덕을 중시한 교회법(droit canonique)을 매개로 하여 발전된 ‘원인이론’(théorie de la cause, □□ cause)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그 후 이 Nemo auditor 원칙은,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Code Napoléon)의 제정 당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판례를 통해 주로 성도덕질서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남과 결합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유부녀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사창가의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Cass. com. 27 avril 1981, D. 1982, 51, note Le Tourneau).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성도덕의 사회적 비중이 약화되면서 오늘날에는 이 원칙의 적용을 찾아보기 어렵다(H., L., & J. Mazeaud & F. Chabas, Leçon d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t. II, 9e éd., 1991, no 102 이하 참조).

이 ‘Nemo auditor’ 원칙은 우리민법의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와 비교된다. 그러나 ‘nemo auditor’ 원칙과 우리나라의 ‘불법원인급여’는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로마 Iustinianus법전의 ‘부도덕 또는 불법원인의 부당이득소권’(condictio ob turpem vel iniustam causam)을 입법화시킨 독일민법전(BGB) 제817조를 계수한 일본민법 제807조를 다시 명문화 시킨 것이 우리민법 제746조인데, 성도덕 질서 위반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프랑스의 ‘nemo auditor’ 원칙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불법원인급여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위반의 경우 뿐 아니라 기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Cass. civ.1 14 déc. 1982** : Cette règle Nemo auditor d'origine coutumière est exclusivement applicable en matière de restitutions réciproques dues à l'anéantissement rétroactif d'un contrat, pour immoralité de la cause ou de l'objet. Elle ne peut s'appliquer en matière de responsabilité civile.(**과기원 민사1부, 1982년 12월 14일 판결** : 관습법을 기원으로 하는 이 Nemo auditor 규칙은 그 원인이나 목적이 부도덕한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의 상호반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민사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Neutralité du service public (principe de-) 【공공서비스의 중립성 원칙】

공공서비스는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들이 평등하다면 이용자나 공무원수행자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조의 다양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립성 원칙을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의 원칙과 결부시키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 견해는 평등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형평성(l'équité)과 공정성(l'impartialité)과 중립성(neutralité)을 들고 있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중립성원칙을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립성원칙은 공권력의 입장에서 특정한 정치적·종교적 입장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고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정한 특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의 차별의 금지는 호의적 차별 내지는 긍정적 차별(discrimination positive)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수행에 있어 엄격한 공정함(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공공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자의 중립성은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laïcité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 ◇ Nonces 【 교황청 대사 】

로마교황청이 파견하는 외교사절로서, 접수국 내에서는 국가들로부터 파견된 대사와 같은 계급으로서 예우된다.

□□ nuntius

## ◇ Non-lieu 【 혐의없음, 무혐의 】

무혐의 결정은 예심대상자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소추를 종결하는 수사판사의 재판상의 행위이다. 무혐의 결정은 소송이 종결되어 중죄법원 또는 경죄법원 등 재판법원이 선고하는 무죄판결과는 다르다. 무혐의 결정은 소송 중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서류가 종결된 때에 결정된다. 공소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재기소할 수 있다. 사당사자는 무혐의 결정(ordonnance)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수사판사는 예심대상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의하여 무혐의 결정을 공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심대상자 또는 피고소인으로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자는 무고죄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줌이 없이 해당 사건이 다뤄진 경죄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PP Art.177-2** : Lorsqu'il rend une ordonnance de non-lieu à l'issue d'une information ouverte sur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le juge d'instruction peut,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par décision motivée, s'il considère que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a été abusive ou dilatoire, prononcer contre la partie civile une amende civile dont le montant ne peut excéder 15000 euros.(형사소송법전 제177-2조 : 수사판사가 사당사자구성에 의해 개시된 예심이 종결되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 수사판사는 지방법원 검사장의 청구에 의해 만일 사당사자구성이 남용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당사자에 대하여 15,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 ◇ Norme impérative 【강행규범】

국제법상 강행규범(*norme impérative: jus cogens*)이라 함은, 여하한 경우에도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을 말한다. 일반국제법상의 규범으로서, 여하한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규범을 강행규범이라고 한다. 조약법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을 정의하기를, “그 일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와 동일한 성질의 차후의 일반국제법의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한 규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의 공통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구성원들에게 획일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여하한 경우에도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규범에의 일탈은 여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강행규범에 반하는 국가간 합의는 무효이다. 조약법협약 제53도 어떠한 조약이 그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되는 경우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조약이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그 조약은 종료된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53 : Est nul tout traité qui, au moment de sa conclusion, est en conflit avec une norme impérative du droit international général.(조약법협약 제53조 : 체결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충돌되는 모든 조약은 무효이다.)

## ◇ Novation 【경개(更改)】

경개란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개는 물론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채무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행해진다. 경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행해진다(민법전 제1271조 이하). 그러나 경개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개정된 민법전 제759조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생존배우자의 용익권(□□ usufruit)을 종신정기금(*rente viagère*, □□ *rente*)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채무의 신채무로의 대체는 양 채무 모두 법률적으로 유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구채무는 경개 시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파기원은 『자연채무에 근거해서 경개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고(Cass. civ. 1re, 10 oct. 1995, D. 1996, Som. 120); 『구채

무가 유효해야 만이 경계가 가능하다.』고 하며(Cass. civ. 1re, 7 nov. 1995, Bull. civ. I, n° 387); 또한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계행위(acte novatoire)도 유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Cass. com. 14 mai 1996, Bull. civ. IV, n° 138).

**C.civ. Art.759** : Tout usufruit appartenant au conjoint sur les biens prédécédé, qu'il résulte de la loi, d'un testament ou d'une donation de biens à venir, donne ouverture à une faculté de conversion en rente viagère, à la demande de l'un des héritiers nus-proprétaires ou du conjoint successible lui-même.(민법전 제759조 : 먼저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생존배우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용익권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든 유언 또는 장래의 재산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든 ‘허유권자(nus-proprétaires)인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상속권자인 배우자 자신의 청구에 따라 종신정기금으로의 전환권을 발생시킨다.)

**Cass. civ.1 7 nov. 1995** : La novation n'a lieu que si l'obligation ancienne à laquelle est substituée la nouvelle est valable; si la première obligation était nulle, la seconde était dépourvue de cause et ne produisait aucun effet.(파기원 민사1부, 1995년 11월 7일 판결 : 경계는 신채무에 의해 대체되는 구채무가 유효해야 만이 발생한다. 만약 제1채무(구채무)가 무효라면, 제2채무(신채무)는 그 원인이 상실되고 아무 효력도 일으키지 못한다.)

**Cass. com. 14 mai 1996** : La novation n'a lieu que si une obligation valable est substituée à l'obligation principale; en cas d'annulation de la convention novatoire, la première obligation retrouve son efficacité même lorsque le créancier savait que l'obligation nouvelle était annulable de son propre fait.(파기원 상사부, 1996년 5월 14일 판결 : 경계는 유효한 채무가 본래의 채무(구채무)를 대체하였을 때만이 발생한다. 경계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비록 채권자가 신채무가 무효화될 수 있음을 알았을 할지라도, 제1채무(구채무)는 그 효력을 회복한다.)

## ◇ Nullité 【 무효 】

무효는 법률행위의 유효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에 대하여도 법률상의 효력을 없애므로써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프랑스는 별도의 증거법을 통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무효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무효가 된 행위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무효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법정무효’(nullité textuelle)는 법전에 그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택수색, 신원확인, 감청 등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이다. ‘실체무효’(nullité substantielle)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피의자(또는 예심대상자)의 방어권보장과 같은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들로부터 도출된다. 형사소송법전 제171조는 “형사소송법전 또는 다른 형사절차의 규정에 대한 실체적 형식위반이 관련인의 이익을 침해한 때”로 실체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전 제802조는 두 경우 모두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정무효이든 실체무효이든 이익침해(grief)가 전제되어야 하나 관례와 학설은 이익침해의 존재를 항상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질서(ordre public)에 해당하는 것은 침해가 없이도 가능하며 사적질서(ordre privée)에 해당하는 것은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공질서무효사유는 법원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정, 관할권위반, 수사행위시 촉탁수사장의 발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이다. 무효의 제기는 예심과정과 판결법원의 공판과정이 구분되며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 예심과정에서는 수사판사, 지방법원 검사장, 예심대상자, 사당사자가 항소법원 수사부에 청구할 수 있다. 공판과정에서는 당사자가 피고인에 대한 실체신문이 이뤄지기 전에 수소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전체 또는 일부행위에 대한 무효의 효과는 관련 서류전체 또는 일부를 예심서류에서 분리하여 파기하고 복사본을 항소법원 기록보관소에 보내지며 이 서류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용될 수 없다.

□□ Preuve

### ◇ Nullité absolue 【절대적 무효】

‘공공질서’(□□ ordre public)나 ‘선량한 풍속’(□□ bonnes moeurs)과 같이 ‘일반이익’(intérêt général)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적 무효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민사상 무효를 ‘당연무효’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무효를 『그 효과가 법률행위의 당사자뿐 아니라 기타 제 3 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하여; ‘재판상 무효’만을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절대적 무효를, 소송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계약의 무효선언에 이익을 가지는 모든 자에 의해 소송이 청구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프랑스 민

법은 절대적 무효의 소의 제척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있다.

**C.civ. Art.2262** : Toutes les actions, tant réelles que personnelles, sont prescrites par trente ans, sans que celui qui allègue cette prescription soit obligé d'en rapporter un titre ou qu'on puisse lui opposer l'exception déduite de la mauvaise foi.(민법전 제2262조 : 인적(人的)이든 물적(物的)이든, 모든 소권은 30년의 기간으로 시효가 완성한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원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누구도 그에게 악의가 있다는 항변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 ◇ Nullité relative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선의의 제 3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상대적 무효를 「당해 법률행위의 당사자만이 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 무효의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 착오(□□ erreur), 사기(□□ dol) 또는 강박(□□ violence) 등과 같은 ‘합의의 하자’(vice du consentement)가 있는 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레지용(□□ lés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효과를 rescision(취소, 손해무효)이라 하여 rescision을 상대적 무효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상대적 무효의 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민법전 제1304조). 이 점에서도 우리민법과는 다르다. 즉 우리민법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만을 무효로 하고, 기타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무능력자 단독의 의사표시를 모두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프랑스 민법상의 ‘상대적 무효’(nullité relative)와 우리민법상의 ‘취소’는 그 내용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 무효이든 절대적 무효이든 모든 무효를 원칙적으로 ‘당연무효’로 보고 있는 우리민법과는 달리, 프랑스 민법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만이 해당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재판상 무효). 이는 달리 말해서,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행위는 그 사실적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절대적 무효의 소의 제척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상대적 무효의 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둘째, 프랑스 민법은 ‘상대적 무효’인 경우, 무효의 원인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하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무효청구권자의 추

인(confirmation)에 의해 해당 법률행위를 유효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민법전 제 1338조). 이는 우리민법상 무효의 법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민법상 무효의 법리와 우리민법상 무효의 법리는 그 기본을 달리하고 있으며; 프랑스 민법에서, 레지옹(lésion)의 효과인 rescision을 제외하고는, 취소에 해당하는 고유한 법률용어를 찾아 볼 수 없고, 또 상대적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야 할 실익도 없다.

**C.civ. Art.1304** : Dans tous les cas où l'action en nullité ou en rescision d'une convention n'est pas limitée à un moindre temps par une loi particulière, cette action dure cinq ans. Ce temps ne court dans le cas de violence que du jour où elle a cessé; dans le cas d'erreur ou de dol, du jour où ils ont été découverts. Le temps ne court, à l'égard des actes faits par un mineur, que du jour de la majorité ou de l'émancipation; et à l'égard des actes faits par un majeur protégé, que du jour où il en a eu connaissance, alors qu'il était en situation de les refaire valablement. Il ne court contre les héritiers de l'incapable que du jour du décès, s'il n'a commencé à courir auparavant.(민법전 제1304조 : ① 합의의 무효 또는 'rescision(취소, 손해무효)'의 소권은,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보다 단기로 정해져 있는 않는 한, 5년간 존속한다. ② 이 기간은 강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종료한 날로부터, 착오 또는 사기의 경우에는 그것이 발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 기간은 미성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그가 성년에 달하거나 친권이 해제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피보호 성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그가 당해 행위를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무능력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 전에 이미 기산을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한다.)

**C.civ. Art.1338** : L'acte de confirmation ou ratification d'une obligation contre laquelle la loi admet l'action en nullité ou en rescision, n'est valable que lorsqu'on y trouve la substance de cette obligation, la mention du motif de l'action en rescision, et l'intention de réparer le vice sur lequel cette action est fondée. A défaut d'acte de confirmation ou ratification, il suffit que l'obligation soit exécutée volontairement après l'époque à laquelle l'obligation pouvait être valablement confirmée ou ratifiée. La confirmation, ratification ou exécution volontaire dans les formes et à l'époque déterminée par la loi, emporte la renonciation aux moyens et exceptions que l'on pouvait opposer contre cet acte, sans préjudice néanmoins du droit des tiers.(민법전 제1338조 : ① 법률이 무효 또는

‘rescision(취소, 손해무효)’를 허용하는 채무를 추인하거나 인준하는 행위는, rescision의 원인의 기재 및 소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그 행위에 표시된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추인 또는 인준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를 유효하게 추인 또는 인준할 수 있는 시기 이후에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충분하다. ③ 법률이 정한 방식과 시기에 행해진 추인이나 인준 또는 임의이행은 그에 대항할 수 있었던 수단 및 항변을 포기하는 효과를 지니나, 이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 ◇ Nullité 【 무효 】

우리나라에서는 무효를,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어느 누구의 의사 표시를 요함이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무효판결은, 무효의 효력요건이 아닌, 무효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당연무효), 단지 법률관계를 확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소(訴)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재판상 무효’라 하고 이를 상법의 영역에서 적용한다(상법 제184조, 제236조).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무효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즉 프랑스에서는 무효를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비정상적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그로 인하여 변경된 모든 것들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법원에 의해 선언되는 사법적 제재』라고 정의하고 있다(J.-P. Scarano, Dictionnaire de droit des obligations, ellipses, 2e éd., 2004, p. 165, v° nullité; G. Cornu(sous la direction de), Vocabulaire juridique, PUF, v° nullité).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무효는 모두 ‘당연무효’가 아닌 ‘재판상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무효의 구체적 설명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즉 무효를 절대적 무효(□□ nullité absolue)와 상대적 무효(□□ nullité relative)로 분류하는 것은 같으나, 그 내용구성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 0 ]

## ◇ *Obligation contractuelle d'information* 【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란 전문직업인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여러 종류의 계약에 판례에 의해 편입된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전문직업인이 소비자에게 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리킨다. ‘계약상 정보제공의무’가 판례에 의해 계약 내용의 일부, 즉 계약상 ‘부수적 채무’(obligation accessoire)로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부터이다. 즉 프랑스 파기원은 “상인은 판매상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인은 관련정보의 결핍 또는 불충분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Cass. civ. 1re, 31 janv. 1973, Bull. civ. I.37, obs. Hémard)고 함으로써, 상인의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였다. 이후 판례를 통해 많은 서비스제공업자에게도 ‘계약상 정보제공의무’가 확장되고 있다: 진료계약과 관련하여 “의사는 자신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진료방법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Cass. civ. 1re, 14 oct.1997, D. 1997.IR.238); 변론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는 고객에게 소송에서 승소할 기회의 정도는 물론 수입료 결정 조건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Cass. civ. 1re, 18 juill. 2000, RTD. civ. 2000.828, obs. Mestre & Fages);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수선업자는 고객에게 물건 수선가능성의 정도도 알려야 한다.”(Cass. civ. 1re, 20 juin 1979, D. 1980.IR.38, obs. Larroumet); 난방기기 생산 및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난방기기의 온도조절밸브의 조절단계에 따른 온도의 상승관계에 관한 정보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Cass. civ. 1re, 15 mars 1988, D. 1988.IR.93). 그밖에도 수없이 많은 판결이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전문직업인의 경우, 단순한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는 물론이고 고객에 대한 ‘조언의무’(obligation de conseil)도 판례는 부과하고 있다. 즉,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객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언의무는 변호사 및 공증인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Cass. civ. 1re, 25 nov. 1997; Cass. civ. 1re, 7 juil. 1998; Cass. civ. 1re, 14 oct. 1997; 등), 그밖에 다른 직종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인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선택한 제품 대신 적합한 대체물건을 추천해야 하며”(Cass. com. 11 juill. 1988, Bull. civ., IV.250); 때에 따라서는, “고객이 부적합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것을

만류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하고, 그 이유로서, “상인은, 고객에게 조언할 수 있기 위해, 고객이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Cass. civ. 1re, 23 mai 2000, Bull. civ., I.152). 그리고 대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대출에 동의한 은행원의 과책(□□ faute)을 인정한 판결(Cass. civ. 1re, 27 juin 1995, Bull. civ., I.287)도 있다. 물론,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 파기원은 그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민법전 제1315조에 의거하여, 정보제공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C.civ. Art.1315 al.2** : Celui qui se prétend libéré, doit justifier le paiement ou le fait qui a produit l'extinction de son obligation.(민법전 제1315조 제 2 항 :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변제 또는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Cass. civ.1 25 fév. 1997** : Celui qui est légalement ou contractuellement tenu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information doit rapporter la preuve de l'exécution de cette obligation.(파기원 민사1부 1997년 2월 25일 판결 : 특정의 정보제공의무를 계약에 의해 또는 법적으로 부담한 자는 본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 Obligation d'information 【 정보제공의무 】

정보제공의무는 넓은 의미에서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춘 당사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상대당사자에게 제공할 의무”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에서, 정보제공의무는 판례나 법에 의해 전문직업인에게 부과된 “소비자와 같은 전문성이 없는 계약당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판례나 법률에 의해 전문직업인에게 부과된 ‘계약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뜻한다. 프랑스에서 정보제공의무가 이론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중반 부터였다(M. de Juglart, “L'obligation de renseignements dans le contrat”, RTD. civ., 1945; B. Boccara, “Dol, silence et réticence”, Gaz. Pal., 1953). 그러나 정보제공의무가 법적으로 체계화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판례에 의해 정보제공의무가 여러 계약에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정보제공의무는, 이론적인 면에서,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obligation précontractuelle d'information)』와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obligation contractuelle d'information)』로 나누어진다.

## ◇ **Obligation de moyens** 【양태채무, 수단채무】

양태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일정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모든 주의와 성의를 다해야 하나, 성질상 그 결과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는 계약상의 채무를 말한다. 양태채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의사의 진료채무를 들 수 있다. 즉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주의를 다하여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질병의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태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계약불이행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주의나 불성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양태채무의 법적 근거로 민법전 제1137조의 ‘선량한 가장(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들고 있다. 프랑스에서 계약상의 채무를 ‘결과채무’(□□ obligation de résultat)와 ‘양태채무’(obligation de moyens)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 이래, 데모그(Demogüe), 마조(H. Mazeaud), 텡크(A. Tunc) 등의 법학자들에 의해, 민법전 제1137조에서 양태채무의 개념이 그리고 민법전 제1147조에서 결과채무의 개념이 유추되어 정립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양 채무는 판례를 통해 프랑스 채무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obligation de moyens’을 주로 수단채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obligation de moyens’은 “선량한 가장의 주의의무(le soin d'un bon père de famille)”로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와 성의를 다해야 할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함을 고려할 때, 수단채무 보다는 양태채무로 번역함이 타당하다. 양태채무는 의사의 진료채무를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기타 여러 계약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고객의 머리를 염색하는 미용사의 채무(Cass. civ. 1re, 4 oct. 1967, Bull. civ. I, n° 275); 서커스단 운영자의 채무(Cass. civ. 1re, fév. 1975, D. 1975.533, Ph. Le Tourneau); 해수욕장의 운영자채무(Cass. civ. 1re, 19 janv. 1982, Bull. civ. I, n° 32); 승마장의 운영자채무(Cass. civ. 1re, 22 mars 1983, Bull. civ. II, n° 25); 스포츠경기의 조직자채무(Cass. civ. 1re, 18 nov. 1975, Bull. civ. I, n° 336); 스키장 리프트의 운영자채무(Cass. civ. 1re, 4 nov. 1992, D. 1994.45, note Ph. Brun); 유원지 놀이기구의 운영자채무(Cass. civ. 1re, 1re déc. 1999, D. 2000.287, note J. Mouly) 등이 그 예이다. 이 양태채무의 이행 여부는 추상적으로 (in abstracto) 평가된다. 그렇다면 『주의 깊고 성실한 전문직업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라는 기준이 문제가 된다. 이는, 양태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국 판례를 통해 확립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프랑스 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과학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적합한” 주의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였다(Cass. civ. 20 mai 1936, D. P. 1936.I.88; Cass. civ. 1re, 18 juillet 1983, Bull. civ. I, n° 209). 이 판결은 법원이 당시의 과학 내지는 기술의 객관적 수준에 의거하여 판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일반적 상황 또는 객관적인 과학수준을 고려할 때, 특정결과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양태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C.civ. Art.1137 al.1** : L'obligation de veiller à la conservation de la chose, soit que la convention n'ait pour objet que l'utilité de l'une des parties, soit qu'elle ait pour objet leur utilité commune, soumet celui qui en est chargé à y apporter tous les soins d'un bon père de famille.(민법전 제1137조 제1항 : 목적물의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유용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든, 양 당사자 공통의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든, 당해 목적물에 대해 선량한 가장으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Obligation de renseignements** 【정보제공의무】

‘Obligation de renseignements’은 정보제공의무의 다른 표현이다. 프랑스에서 정보제공의무가 ‘계약전 정보제공의무’(□□ obligation précontractuelle d'information)를 중심으로 확립되기 시작할 때에는 ‘obligation de renseignements’이라는 표현이 주로 많이 쓰였다. 그러나 판례를 통해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obligation contractuelle d'information)가 확립된 이후, ‘계약전 정보제공의무’와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를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에는 ‘obligation d'information’이라는 표현을 더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 obligation d'information

### ◇ **Obligation de résultat** 【결과채무】

결과채무란 채무자가 어떤 특정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상의 채무를 말한다. 결과채무는 양태채무(□□ obligation de moyens)와 함께 프랑스 채무이론을 특징짓고 있다. 당시 사회의 일반적 상황 또는 객관적인 과학수준 상 특정결

과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양태채무)를 제외한, 기타 채무는 통상적으로 결과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채무는 성의 있는 채무자라면 통상적으로 그 제공이 가능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인 특정 결과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하자 있는 상태로 제공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계약불이행책임이 추정된다. 즉 이 경우 채권자가 계약불이행에 관한 채무자의 과책(□□ faute)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계약불이행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이행이 불가항력(□□ force majeure)이나 ‘제 3 자의 행위’(le fait d'un tiers)와 같은 ‘외래원인’(□□ cause étrangère)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결과채무는, 양태채무가 1920년대 후반 이후 법학자들에 의해 민법전 제1137조에서 유추되었듯이, 민법전 제1147조에서 유추되어 정립되었다.

**C.civ. Art.1147 :** Le débiteur est condamné, s'il y a lieu, au paiement de dommages et intérêts, soit à raison de l'inexécution de l'obligation, soit à raison du retard dans l'exécution, toutes les fois qu'il ne justifie pas que l'inexécution provient d'une cause étrangère qui ne peut lui être imputée, encore qu'il n'y ait aucune mauvaise foi de sa part. (민법전 제1147조 :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는 불이행이 자기에게 귀속될 수 없는 외래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비록 자신에게 어떤 악의도 없었다 할지라도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 Obligation de sécurité 【안전배려의무】

안전배려의무란, 본래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특정 유형의 계약에 도입된 채무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안전배려의무는 계약의 ‘주된 채무’(obligation principale)에서 파생된 ‘부수적 채무’(obligation accessoire)의 일종이다.

프랑스에서 안전배려의무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 안전사고, 특히 노동재해와 운송사고가 사회의 주요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이다. 당시의 노동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노동자나 승객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작업 또는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노동자나 승객의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불법행위책임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것이 전통적인 법원의 태도였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고용주나 운송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혔다. 노동재

해의 문제는 1989년에 고용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특별법(『노동사고에 있어서의 책임에 관한 1898년 4월 9일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러나 운송사고의 문제는, 1911년의 판결(Cass. civ., 21 nov. 1911)을 통해, 파기원이 『운송인의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계약상의 운송채무에 포함시키고, 물품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전 제1784조를 유추하여 『승객운송인이 수송 중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손해가 외래원인(□□ *cause étrangère*)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이행에 관한 운송인의 입증책임부담은 1920년대 말 양태채무(□□ *obligation de moyens*)와 결과채무(□□ *obligation de résultat*)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당시 결과채무의 한 유형으로서 제시되었다. 이후 안전배려의무는, 계속되는 판례를 통해, 운송계약 외에도, 유원지에서 놀이기구 영업인과 사용자 사이의 놀이기구사용계약, 스포츠센터 또는 스포츠클럽에서의 운동 또는 스포츠강습을 위한 계약, 숙박계약, 식당업자와 고객사이의 음식제공계약, 기타 여행계약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대부분의 계약에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적용되는 계약의 특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는 더 이상 결과채무로서만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계약내용의 구체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때로는 양태채무로서 적용되기도 하였다(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채무자의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키장의 리프트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결과채무위반으로(Cass. civ. 1re, 8 oct. 1968, D. 1969.157), 승마장에서 승마연습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양태채무위반으로(Cass. civ. 1re, 8 fév. 1961, Gaz. Pal. 1961. I.394), 식당에서 음식물의 품질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결과채무위반으로(Cass. civ. 1re, 9 mars 1970, RTD. civ. 1971.139), 투숙객이 호텔 안에서 부상당한 경우에는 양태채무위반으로(Cass. civ. 1re, 2 juin 1982, Gaz. Pal. 1983.pan.206) 그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안전배려의무는, 더 이상 계약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을 초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교통사고에 관한 1985년 7월 5일 법률(Badinter법)』과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1998년 5월 19일 법률』의 제정 이후 현저하다. 왜냐 하면, 양 법률 모두 계약관계에 있는 피해자 뿐 아니라, 제3의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구별 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래의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는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C.civ. Art.1784 :** Ils les voituriers par terre et par eau sont responsables de la perte et

des avaries des choses qui leur sont confiées, à moins qu'ils ne prouvent qu'elles ont été perdues et avariées par cas fortuit ou force majeure.(민법전 제1784조 : 육상 및 해상운송인은 그들에게 위탁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그 멸실·훼손이 우연한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Cass. civ. 21 nov. 1911** : L'exécution du contrat comporte pour le transporteur l'obligation de conduire le voyageur sain et sauf à destination.(파기원 민사부, 1911년 11월 21일 판결 : 운송계약의 이행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수송해야 할 채무를 운송인이 부담한다는 내용까지 포함 된다.)

### ◇ **Obligation en nature** 【본성채무(本性債務)】

본성채무라 함은, 금전채무(obligation pécuniaire)에 대조되는 채무로서, 금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작위채무(obligation de faire),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채무(obligation de ne pas faire), 어떤 물건의 소유권(□□ propriété)을 이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전채무(obligation de donner) 등이 본성채무에 해당한다.

### ◇ **Obligation in solidum** 【불법행위연대채무】

연대채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인(數人)이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각자 그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동시에 그 이행의무의 면제를 받는 대신에 연대채무자들 사이에 구상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연대채무관계가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를 ‘obligation solidaire’라 하고(□□ solidarité), 불법행위(□□ délit) 또는 준불법행위(□□ quasi-délit)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를 ‘obligation in solidum’이라 하여 용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obligation in solidum’은 ‘불법행위연대채무’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로마법을 연원으로 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 또는 준불법행위의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 이들은 연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가해자 중 1인을 선택하여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 또는 준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가해자들 사이의 연대채무관계는 관례를 통해 형성되었다. 불법행위연대채무 (obligation in solidum)의 효과도 물론 ‘계약에 의한 연대채무’(obligation solidaire)의 효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수인의 공동채무자(codébiteurs) 중 1인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는 경우, 다른 채무자들의 배상책임은 면제되지만, 배상한 채무자는 다른 공동채무자들에 대해 구상권, 즉 민법전 제1251조에 근거한 ‘법적 대위권’(subrogation légale, □□ subrogation)을 행사할 수 있다.

**Cass. com., 14 janv. 1997** : Chacun des coresponsables d'un même dommage doit être condamné à le réparer en sa totalité sans qu'il y ait lieu de tenir compte du partage de responsabilité auquel il est procédé entre eux et qui n'affecte par l'étendue de leurs obligations envers la partie lésée.(과기원 상사부, 1997년 1월 14일 판결 : 동일한 손해의 공동책임자 각자는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책임자들 사이에 행해진 책임분할은 전혀 고려될 수 없으며 피해당사자에 대한 그들 각자의 채무범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Obligation précontractuelle d'information 【 계약전 정보제공의무 】

‘계약전 정보제공의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물건 또는 서비스의 주된 특징은 물론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1945년 미셀드쥐글라(Michel de Juglart)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보제공의무가 프랑스 법학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전문직업인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상 불평등관계”가 고조되면서부터이다. 우선 1960년대 이후 프랑스법원은 사기(□□ dol)나 착오(□□ erreur) 등의 ‘합의의 하자’(vices du consentement)에 관한 민법일반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즉 “침묵(silence)으로 감춰진 사실을 그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Cass. com. 27 oct. 1965, Bull. civ. III, 534, obs. Chevalier)고 하였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에게 물건의 중요한 품질에 관한 착오를 야기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Cass. civ. 3e, 29 nov. 1968, Gaz. Pal., 1969.I.63)고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프

랑스 법원은 일반 불법행위책임법리(민법전 제1382조)에 의해 그 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상대방(주로 소비자)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밖에 프랑스 법원은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Garantie des vices cachés, □□ Garantie, Vice)』 규정(민법전 제1641조 이하)에 의하여 매도인의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즉,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인이 매매 전에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않은 경우”(Cass. civ. 3e, 3 déc. 1974, J.C.P., 1975. II.18176, note Randoux), 이를 숨은 하자로 인정하였다. 이 경우,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매도인은 그 담보책임을 면하기 때문에(민법전 제1462조), 정보제공의무위반을 『합의의 하자』에 근거하는 것보다, 입증책임을 면에서,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였다. 그러나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은 ‘짧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민법전 제1648조 제1항)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거한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위반에 대한 규제상의 한계로 인해,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위반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를 받고 있고, 현재 이들 특별법은 모두 1993년 소비자보호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에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다.

**C. consom. Art.L.111-1** : Tout professionnel vendeur de biens ou prestataire de service doit, avant la conclusion du contrat, mettre le consommateur en mesure de connaître les caractéristiques essentielles du bien ou du service.(소비자보호법전 L.111-1 : 모든 직업적 상품판매인 또는 서비스제공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특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Obligation 【 의무, 채무 】

Obligation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친권자의 법적 의무’(obligations légales du tuteur) 또는 ‘배우자간의 성실의무’(obligation de fidélité entre époux) 등과 같이, 의무(devoir)를 뜻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관점에서, obligation은 하나의 개별적 권리 또는 채권의 이면으로서의 채무, 즉 1인 또는 수인의 채무자가 1인 또는 수인의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는 계약, 사무관리나 부당이득반환과 같은 준계약(□□ quasi-contrat), 경술이나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의 준불법행위(□□ quasi-délit),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의 불법행위(□□ délit),

또는 자녀에 대한 부양채무(obligation alimentaire des parents à l'égard de leurs enfants)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 ◇ Occupation du domaine publique 【 공공재산의 점유 】

공공재산의 수용된 용지(emprise)가 되는 공공재산의 점유계약이나 도로사용허가에 기초한 공공재산의 사적용도(utilisation privative)의 사용을 말한다.

공공재산의 무단 점유(occupation sans titre)는 불법이고 행정청은 점유자의 퇴거조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법원은 정착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 Offre 【 청약 】

청약이란 일인 또는 수인의 상대방에게, 확정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자기(offrant: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에는, 물건의 성질과 가격 및 기타 특수 사항등과 같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청약은 보통 명시적으로 행해지나, 관행적 태도에 의한 묵시적 청약도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도 청약(offre, pollicitation)과 ‘청약의 유인’(invitation à pourparlers)은 구별된다. 즉 계약의 중요 내용이 확정적이지 못한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또 ‘인적신뢰의 고려에 의한 계약’(contrat avec intuitus personae, □□ intuitus personae)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진 제안은 그 내용의 확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청약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민법 제527조)와는 달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판례에 의해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 구속력의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동안 청약은 유지되어야 하며(Cass. civ. 3e, 10 mai 1968, Bull. civ. III, n° 209), 이를 어긴 경우 청약자는 불법행위책임(민법전 제1382조)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청약의 철회(rétractation, révocation)가 가능하다고 하고; 단지 이 경우에도, 청약이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진 때에는, 철회에 앞서 합리적인 기간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Cass. civ. 3e, 20 mai 1992, D. 1993.493, note G. Virassamy). 이에 비하여, 우리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고 규정함으

로써, 기간의 정함 여부 및 상대방의 특정 여부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의 철회권이 부인되고 있다. 그밖에 프랑스에서는 입법에 의해 청약의 최소유지기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다: 즉 동산대차(prêt mobilier)의 경우는 15일이며(소비자보호법전 L.311-8), 부동산대차(prêt immobilier)의 경우는 30일이다(소비자보호법전 L.312-10). 그리고 청약이 무능력자에 의해 행해지거나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은 실효된다(Cass. civ. 3e, 10 mai 1989, Bull. civ. III, n° 109). 그러나 기간이 정해진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망했을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청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따라서 상속인은 이 기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Cass. civ. 3e, 10 déc. 1997, Bull. civ. III, n° 223).

**Paris 29 janv. 1996 :** A défaut de toute indication de prix dans l'écrit rédigé par le propriétaire d'un immeuble, la proposition de ce dernier ne peut s'analyser qu'en une invitation à pourparlers.(파리 고법, 1996년 1월 29일 판결 :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 작성된 서면에 가격에 대한 어떠한 명시도 없다면, 이 소유자의 제안은 청약의 유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 ◇ Opinions dissidentes 【반대의견】

국제사법재판소(CIJ)에서의 소수자 의견으로서, 이는 판결의 주문에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제출하는 의견이다.

#### ◇ Opinions individuelles 【개별적 의견】

국제사법재판소(CIJ)에서 판결의 주문에는 동의하나 판결 이유에는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 ◇ Opportunité 【시의성(時宜性), 적시성(適時性), 타당성】

행정청에게 자신의 행위의 이유(le bien fondé), 시간(le moment) 및 내용(le teneur)을 판단하기 위해 부여된 자유를 말하며 적(합)법성(légalité)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법성은 행정에 대해 법적인 규범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면 타당성(시의성)은 행

정청의 행위를 둘러싼 사정에 대한 적응성의 관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행정법원은 전통적으로 행정청을 대신하는(se substituer)것을 피하고자 타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회피해왔다. 결과적으로 타당성은(시의성) 재량권(le pouvoir discrétionnaire)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낸다. 반대로 타당성은 기속권한(compétence liée)의 경우 매우 제한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다. 타당성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어떤 결정을 선택하는 경우의 2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행정청은 자신이 취할 행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자에게 부과되는 일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명문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은 결정을 내려야만 할 뿐 아니라 규정 자체에서 직접 취해야만 하는 결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행정작용은 조건부이며 행정기관은 건축허가(permis de construire)의 경우와 같이 근린자에게 침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자유로이 허가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필요한 요구의 최대한을 적응성을 위해 행정의 불가결한 자유의 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내용의 선택에 대한 심사의 폭을 최대한 제한 한다: 타당성에 대해 법관은 통제하지 않는다(R. Chapus). 공공서비스의 관리기법의 선택은 전적으로 특허자(concessionnaire)의 타당성 영역에 해당하고 법관은 이에 대해 심판할 수 없다(C.E. 18 mars 1988, Loupias, Rec. 975).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공공(토목)공사의 평가단의 평가(C .E.Ass. 20 octobre 1972, Soc.civ. Ste-Marie de l'Assomption, Rec. 657)나 지역(circonscription territoriale)의 청사소재지(chef-lieux)의 선택(C.E. Ass. 26 novembre 1976. Soladini, Rec. 508)도 타당성의 영역으로 행정법원의 통제가 제한된다. 그렇지만 법원의 사법적 통제는 평가의 명백한 하자(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 비례성원칙(proportionalité)이나 비용-편익 분석이론(théorie du bilan coût-avantages)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 ◇ Opposabilité 【 대항력 】

대항력이란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제 3 자에게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말한다. 어떤 법률행위의 대항력은 당해 행위의 ‘법적 공시’(publicité légale, □□ publicité)에 의해 부여된다. 반대로, 법적 공시가 결여된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행위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 할지라도 제 3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

공시제도를 통해 당해 법률행위의 제 3 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제 3 자에 대항한다는 의미는, 당해 법률행위의 법률관계에 제 3 자를 종속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률행위의 존재사실 및 그 법적 효과를 제 3 자로 하여금 인정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은 제 3 자에게 이의청구권(tierce opposition)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민법전 제311-10조 제 1 항).

**C.civ. Art.311-10** : Les jugements rendus en matière de filiation sont opposables même aux personnes qui n'y ont point été parties; mais celles-ci ont le droit d'y former tierce opposition.(민법전 제311-10조 제 1 항 : 친자관계에 관한 판결은 당해 소송에 전혀 관계없는 제 3 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다. 그러나 제 3 자는 제 3 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e changement de régime matrimonial d'un époux commerçant doit être publié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pour être opposable aux tiers. 【배우자가 상인인 경우의 부부재산제의 변경이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상업 및 기업 공부(公簿)’에 공시하여야 한다.” (J.-P. Scarano, Dictionnaire de droit des obligations, ellipses, 2e éd., 2004, p. 180)】

### ◇ Ordonnance 【 법률명령, 오르도낭스 】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 1 항에서는 “정부는 그 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대해 통상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서 정하는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헌법에 의한 수권, 의회에 의한 수권 또는 국민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개입하여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국가원수의 정치적 의견을 실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법률명령은 의회의 입법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정부가 의회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위임입법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헌법상 요청되고 있다. 즉, ①의회의 수권이 정부에 부여되어야 한다. ②제안권은 정부에 속하며 의회 스스로 법률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수권법률(loi d'habilitation)을 발의할 수 없다. ③수권기간은 무한정일 수 없으며 반드시 일정기간을 수권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위임의 대상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⑤법률명령의 제정에서는

정부는 사전에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 ⑥법률명령의 국무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⑦수권법률에서는 수권기간과 아울러 추인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추인의 정부제출 법률안의 제출이 없으면 법률명령은 무효가 된다. ⑧수권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명령은 이후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는 개정할 수 없다. ⑨수권 기간 중 의회가 위임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태가 입법절차 중에 명확히 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수리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Constitution Art.38 al.1** : Le Gouvernement peut, pour l'exécution de son programme, demander au Parlement l'autorisation de prendre par ordonnances, pendant un délai limité, des mesures qui sont normalement du domaine de la loi.(헌법 제38조 제1항 : 정부는 시정방침의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는 입법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써 하도록 그 승인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 ◇ Ordonnance pénale 【 약식명령 】

모든 위경죄에 대한 간이재판절차로서 경찰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함이 없이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노동법전에 규정된 위경죄의 경우, 위경죄 5급의 피고인이 범행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법원에 직접 소환하는 경우에 약식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소관은 약식명령의 절차를 선택한 경우에 경찰법원의 판사에게 공소장 및 소추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판사는 약식명령을 통하여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한다. 만일 변론이 필요하거나 벌금 이외의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통상절차에 의한 재판을 위하여 서류를 공소관에게 송부한다. 약식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관은 법원서기에게 불복신청(former opposition par décision)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 약식명령은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통보된다. 피고인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에 유죄선고에 대한 이의제기(former opposition)를 할 수 있다. 공소관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때에 사건은 경찰법원에서 통상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 ◇ **Ordre de la loi** 【법률에 의한 행위, 정당행위】

책임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faits justificatifs)중의 하나로서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 형법전 제122-4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거나 허가된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정당한 기관에 의해 명령된 행위를 한 자는 이 행위가 명백히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정당행위와 유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유형 즉 법령에 의한 행위와 명령에 의한 행위로 구분된다. 각각의 유형은 독립하여 정당화사유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수상, 도지사, 시장 등이 제정한 법규 명령도 포함한다. 또한 관습(coutume)도 법률로 간주된다. 법령에 의한 행위의 예를 들면 형법전 제223-6조에 따라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야간에 문을 부수고 주택에 들어간 경찰관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관습에 따라 과격한 스포츠활동 중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것이 스포츠 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인 때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또한 의료활동 및 수술과 관련한 규칙도 직업활동과정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가한 상해를 정당화한다. 명령에 의한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령이 정당한 기관 즉 공적기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또한 기관의 명령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명백히 위법인 반인도적 범죄, 고문이나 야만적 행위, 강간은 명령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Culpabilité,   Responsabilité pénale

## ◇ **Ordre du jour** 【의사일정】

의회의 회기는 이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데, 이러한 것을 의사일정이라 한다. 프랑스에서는 제3 공화국과 제4 공화국에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의 견해를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일정에 관한 한 의회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5 공화국에 들어와서는 헌법 제48조에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상 의회의 의사일정은 정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정

부가 결정한 순서에 따라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의 회의는 국회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할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의 회의는 국민의회와 상원이 각각 정하는 의사일정에 우선적으로 할애하도록 되어 있다.

**Constitution Art.48 al.1** :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trois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28, l'ordre du jour des assemblées comporte, par priorité et dans l'ordre que le Gouvernement a fixé, la discussion des projets de loi déposés par le Gouvernement et des propositions de loi acceptées par lui.(헌법 제48조 제 1 항 : 제28조 제 2 항과 제 3 항 그리고 제 4 항과는 별도로 국회의 의사일정은 정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토론과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 의원제출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우선적으로 한다.)

#### ◇ **Ordre public** 【 공공질서 】

공공질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규범』이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개인이 임의적으로는 물론 계약에 의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강제규범』으로도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질서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어느 한 규정이 일반이익(*intrérêt général*)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공공질서라 할 수 있다.”(Planiol) 등과 같이 일부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개념상의 모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공공질서위반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의 다양성에 연유한다. 프랑스 민법전 제 6 조는 “On ne peut déroger, par des conventions particulières, aux lois qui intéressent l'ordre public et les bonnes moeurs.” (누구도 개별약정에 의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관계되는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선량한 풍속’(□□ *bonnes moeurs*)이 넓은 의미의 공공질서 개념에 포함되고, 선량한 풍속은 성도덕의 보호규범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윤리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선량한 풍속과 좁은 의미의 공공질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공공질서가 포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 이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의 프랑스 학자들은 공공질서를 『‘계

속해서 진화하는'(évolutive) 유기적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단지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확인된 공공질서의 범위를,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도덕적 공공질서'(l'ordre public moral)로서, 선량한 풍속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정치적 공공질서'(l'ordre public politique)로서, 국가나 가족과 같이 사회의 핵심조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규범이 이에 속한다고 한다. 셋째는 20세기 이후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형성된 '사회·경제적 공공질서'(l'ordre public social et économique)이다. '사회·경제적 공공질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규범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한다.(J. Ghestin, Traite du droit civil, La formation du contrat, Paris, LGDJ, 1994, no 104 이하 참조)

L'ordre public, c'est le bon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indispensables à la collectivité. 【공공질서는 공동체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들의 올바른 기능이다.(Ph. Malaurie, L'ordre public et le contrat, Thèse, Paris, 1953)】

#### ◇ **Ouvrage public** 【 공공 시설물(건물) 】

공익지정(une affectation d'intérêt général)이나 특별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인 재산(bien immobilier)을 말한다. 판례법상의 공공시설물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①부동산이고, ②설치 가능해야하고, ③공익지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안가, 해변, 항공로 등은 공공시설물을 구성하지 않는다(C.E. 2 décembre 1987, Cie Air Inter, Rec. p.393). 그 물건이 폐기물 저장소와 같이 최종적인 공공시설이 되지는 않더라도 임시(간이)적인 설치나 정비를 위한 경우(C.E. 3 juillet, 1970. Commune de Dourgne, Rec. p.462)에는 공공시설이 된다. 일정한 시설(공작물·ouvrage)이 공법인에게 귀속될 때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공익지정의 요건이 큰 어려움 없이 충족되며 그 밖에도 공공재산(le domaim public)의 일부가 된다. 시설은 행정상 혹은 상업적 공공서비스의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용사용(à l'usage public)에 제공된 일정한 사적(私的)재산(domain privé)인 농로(chemin ruraux)도 공공시설에 해당한다(C.E. 16 mars 1955, ville de Grasse. Rec. p.16). 한편 사인의 소유물에 해당하는 시설(공작물)은 공공시설로 평가할 수 없지만 공익용도지정(desination d'intérêt général)

을 받은 경우는 공공시설이 된다. 공공시설에 관한 법제는 공익지정에 내재한 보호규정에 의해 근본적으로 특징을 가지게 된다. 불가침성(le principe d'intangibilité)의 보장은 시설물의 총합성에 미치며 일정한 시설은 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승역(재산, servitude administrative)이 된다.

[ P ]

## ◇ **Pacte comissoire** 【위반약정】

프랑스 민법에서 ‘pacte comissoire’(위반약정)이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첫째는 매매계약에서의 명시적인 약정해제조항(*la clause résolutoire expresse*)을 의미하고(민법전 제1656조), 둘째는 질권(□□ *gage*)의 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질권이 설정된 물건(질물)’의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인 유질약정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부당한 착취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민법 제339조), 프랑스 민법에서도 유질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민법전 제2078조).

**C.civ. Art.1656** : S'il a été stipulé lors de la vente d'immeuble, que, faute du paiement du prix dans le terme convenu, la vente serait résolue de plein droit, l'acquéreur peut néanmoins payer après l'expiration du délai, tant qu'il n'a pas été mis en demeure par une sommation; mais, après cette sommation, le juge ne peut pas lui accorder ce délai.(**민법전 제1656조**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상의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매수인은 최고에 의한 지체상태에 있지 않는 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가 있는 후에는 판사는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허락하지 못한다.)

**C.civ. Art.2078 al.1** : Le créancier ne peut, à défaut de paiement, disposer du gage: sauf à lui à faire ordonner en justice que ce gage lui demeure en paiement et jusqu'à due concurrence, d'après une estimation faite par experts, ou qu'il sera vendu aux enchères.(**민법전 제2078조 제 1 항** : 법원이 감정인에 의한 평가에 따라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질물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경매에 의한 매각을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없다는 이유로 질물을 처분할 수 없다.)

## ◇ **Pacte de préférence** 【선매약정(先買約定)】

선매약정이란, 편무계약의 일종으로, 약정의 일방당사자가 자기소유의 특정 물건을 매매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 3 자에게 제시할 똑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약정의 수혜자에게 우선하여 제의하기로 약속한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이 약정의 수혜자는 선매권

(droit de préemption)을 갖는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선매약정은 주로 출판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지적재산권법전 L.132-4). 따라서 예를 들어, 한 작가가 장래 완성할 일정 장르의 작품출판에 관한 선매권을 어느 특정의 출판사에게 부여하기로 한 약정은 완전히 유효하다(Paris, 19 juin 1975, RTD. com. 1976, 511, note Desbors). 그리고 가격의 사전결정과 기간조항은 선매약정의 유효조건은 아니다(Cass. civ. 1re, 6 juin 2001, JCP. éd. G. 2003. II. 10129, note E. Fischer-Achoura). 이 선매약정은 선매권자이외의 자에게 우선하여 매도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약정인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약정위반은 계약의 무효 또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Cass. civ. 3e, 1er avril 1992, D. 1992, IR. 136).

**C. prop. intell. Art.L.132-4** : Est licite la stipulation par laquelle l'auteur s'engage à accorder un droit de préférence à un éditeur pour l'édition de ses oeuvres futures de genres nettement déterminés. Ce droit est limité pour chaque genre à cinq ouvrages nouveaux à compter du jour de la signature du contrat d'édition conclu pour la première oeuvre ou à la production de l'auteur réalisée dans un délai de cinq années à compter du même jour.  
**(지적재산권법전 L.132-4** : ① 작가가 분명하게 결정된 일정 장르에 속하는 미래의 자기작품의 출판에 관하여 한 출판업자에게 선매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② 이 선매권은 첫 번째 작품을 위한 출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각 장르마다 5 개의 작품으로, 또는 동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완성된 작가의 작품으로 제한된다.)

### ◇ **Parlement** 【의회,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 프랑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와 상원(Sénat)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Parlement이라 할 때는 국민의회와 상원을 모두 일컫게 된다. 국민의회 의원(député)은 임기 5년으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상원 의원(sénateur)은 임기 9년으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Constitution Art.24 al.1** : Le Parlement comprend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헌법 제24조 제1항 : 국회는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된다.)

### ◇ **Parlementaire** 【국회의원, 국회의 또는 의회의】

국민의회 의원(député)과 상원 의원(sénateur)을 모두 일컫는 말. 국회(Parlement)라는

용어에 대한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다.

**Constitution Art.23 al.1** : Les fonctions de membre du Gouvernement sont incompatibles avec l'exercice de tout mandat parlementaire, de toute fonction de représentation professionnelle à caractère national et de tout emploi public ou de toute activité professionnelle.(헌법 제23조 제1항 : 정부 구성원의 직무는 국회의원의 모든 직무의 행사, 국가적 성격을 가지는 직능대표의 모든 직무의 행사 및 공직 또는 직업활동의 행사와 양립할 수 없다.)

◇ **Parlementarisme** 【 의회주의제, 의원내각제 】

□□ Régime parlementaire

◇ **Parquet** 【 검찰 】

광의의 의미로는 사회의 이름으로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의 집합, 즉 검사들의 집합을 말한다. 이 용어는 프랑스 검사제도의 연혁과 무관하지 않으며 어원에 대하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 우선 프랑스어로 마루(parquet)를 뜻하는데 중세시대 왕실의 사법상의 이익 또는 재정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왕의 대관’(procureur du roi) 또는 ‘송무대관’(avocat du roi)은 법정에서 판사들이 단상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과 달리 단상 밑 ‘마룻바닥’에서 선채로(debout) 변론을 하였기 때문에 ‘parquet’라고 불려졌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중세시대 ‘parquet’는 작은 공원(petit parc) 또는 울타리가 있는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왕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왕의 대관 또는 송무대관이 위치하였던 장소로부터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16세기에 이 단어는 재판장소 즉 법원전체를 지칭하였으나 18세부터 검사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등 각 단위 법원에서 공소관(ministère public)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관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항소법원인 경우에는 항소법원 검사장(procureur général)이 지휘하는 항소법원 검찰, 지방법원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검사장이 지휘하는 지방법원 검찰로 분리하여 사용되며 전체 검찰이 예산이나 인사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의 검사장은 우리와 같은 검찰조직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검

사장(고등검사장)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며 상호간에 지휘관계가 없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개별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를 지휘하는 경우 대법원의 최고 검사장인 고등검사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할 항소법원의 검사장을 지휘한다.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선발절차에 따라 사법연수원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임용된 후에도 검사와 판사는 상호 인사교류가 가능하며 신분상 판사와 유사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판사와 달리 교체되거나 해임될 수 있어 신분상의 보장이 덜하다. 검사는 좌정법관에 대응하여 입석법관(magistrat debout), 검찰법관(magistrat du parquet), 공소법관(magistrat du ministère public)으로도 칭해진다.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과 이들로부터 지휘 또는 위임을 받는 편검사(substitut)가 있으며 항소법원에는 고등검사장(procureur général)이 고등송무관(avocats généraux)들과 고등검사(substituts généraux)들을 지휘한다. 대법원에는 고등검사장(procureur général)과 수석송무관(premier avocat général) 및 고등송무관(avocats généraux)들이 있다. 검사는 법원에 부치되어 있어 독립된 행정관청은 아니다.

**CPP Art.30** : Le ministre de la justice conduit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déterminée par le Gouvernement. Il veille à la cohérence de son application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 cette fin, il adresse aux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d'action publique.(형사소송법전 제30조 :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수립한 공소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은 공화국 국토에서 그 적용의 일관성을 감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은 공소법관(검사)들에게 공소에 관한 일반적 지시를 한다.)

### ◇ Partage 【 분할 】

분할이라 함은 한 재산 또는 포괄재산(□□ universalité)의 공동소유자들이 공유(indivision)관계를 끝내고 각자에게 할당된 비율대로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C.civ. Art.815 al.1** : Nul ne peut être contraint à demeurer dans l'indivision et le partage peut être toujours provoqué, à moins qu'il n'y ait été sursis par jugement ou convention.(민법전 제815조 제1항 : 누구도 공유관계의 지속을 강요받을 수 없으며, 공유의 분할을 유예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가 합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 Parti politique 【정당】

정당이란 정치적 의사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정당제도가 체계를 잡은 것은 1875년이다. 1789년 혁명 이후 정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당을 제도에 흡수하지 않았다가 1875년부터 제도권에 흡수하였다. 정당은 오늘날 프랑스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치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거나 창출하여 정치에 반영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정당체계는 여러 개의 정당들로 이루어진 다당제를 이루고 있다.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가 주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체계는 좌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어느 한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다. 또한 오늘날의 프랑스 정당은 심한 경우, 좌우파의 구분도 쉽지 않을 만큼 정책의 차이나 이슈의 부각이 정당 간에 유사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정당이 탈 이데올로기화하고 경제문제 및 국제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주의에 접근하는 현대 정당의 특징이다.

**Constitution Art.4** : Les partis et groupements politiques concourent à l'expression du suffrage. Ils se forment et exercent leur activité librement. Ils doivent respecter les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et de la démocratie. Ils contribuent à la mise en oeuvre du principe énoncé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3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a loi.(헌법 제 4 조 : 정당과 정치적 단체는 선거권의 행사에 협력한다. 정당과 정치적 단체는 자유로이 결성되며 활동한다. 정당과 정치적 단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당과 정치단체는 법률에 정하여진 조건 안에서 제 3 조에서 규정된 원칙들을 성립하는데 기여한다.)

## ◇ Participation aux acquêts 【혼후취득재산참가제(婚後取得財産參加制)】

‘혼후취득재산참가제’란 부부재산제의 일종으로서, 결혼기간 동안은 ‘부부별산제’(régime de séparation de biens)로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되게 되면 ‘부부공동제’(régime de communauté)의 방식에 입각하여 부부재산이 청산되는 혼합형 부부재산제도를 말한다. 북유럽을 기원으로 하는 이 제도는 1965년 민법전 개정을 통해 프랑스에 도입되었으며, 부부공동제와 부부별산제의 장점을 결합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혼인 중에는 민법규정상의 부부별산제에 의함으로써, 배우자 중 1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혼인관계 해소의 경우 부부공동제에 의거함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단순한 부부별산제보다 혼인의 의미에 더욱 충실한 제도이다(민법전 제 1569조). 결국, 혼인의 해소 또는 부부재산제의 변경의 경우, 각 배우자는 서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 중에서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C.civ. Art.1569 al.1** : Quand les époux ont déclaré se marier sous le régime de la participation aux acquêts, chacun d'eux conserve l'administration, la jouissance et la libre disposition de ses biens personnels, sans distinguer entre ceux qui lui appartiennent au jour du mariage ou lui sont advenus depuis par succession ou libéralité et ceux qu'il a acquis pendant le mariage à titre onéreux. Pendant la durée du mariage, ce régime fonctionne comme si les époux étaient mariés sous le régime de la séparation de biens. A la dissolution du régime, chacun des époux a le droit de participer pour moitié en valeur aux acquêts nets constatés dans le patrimoine de l'autre, et mesurés par la double estimation du patrimoine originaire et du patrimoine final.(민법전 제1569조 제 1 항 : 부부가 혼후취득재산참가제 아래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각 배우자는, 당해 재산이 혼인일 당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거나 혼인 후에 상속 또는 무상 처분에 의하여 자기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당해 재산이 혼인기간 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용익 및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유한다. 혼인기간 중에는 혼후취득재산참가제는 부부별산제 아래 혼인한 것과 동일하게 기능한다. 혼후취득참가제의 해소 시 각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최초재산과 최종재산에 대한 평가에 의해 계산된 혼후취득재산의 가치의 절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Partie civile** 【사당사자(私當事者), 사인당사자(私人當事者)】

형사소송에서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의 복구를 주장하기 위하여 공소의 제기를 강

제하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를 지칭한다.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공소관과 피고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사인소추제도가 발달하여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사인소추를 통하여 소송법상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각종의 권리를 행사한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전 제 2 조에 따라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개인적으로 입은 모든 사람”이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법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전은 제2-1조 이하에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단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조건으로 사회단체는 범죄일을 기준으로 5년 전에 법률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익성(utilité publique)을 추구해야 한다.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의 자격을 획득한 범죄피해자는 변호인이 입회하는 경우에만 수사판사의 심문을 받게 되며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각종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게다가 수사판사의 수사행위를 청구함으로써 예심에도 관여하게 된다.

2006년 6월 15일의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 피해자는 당사자로서 형사소송법 제82-1 조가 규정한 참고인신문, 피의자신문, 대질신문, 현장확인, 증거수집을 수사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이외에도 진실발견에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여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각종 권리의 부여는 검사, 피고인, 피해자 3자간의 ‘무기평등’을 실현시키며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 Action civile

### ◇ Passage in transit 【 통과통항 】

통과통항(通過通航)이라 함은, 연안국의 영해에 속하는 국제해협을 외국선박과 항공기가 신속하게 통항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날에는 영해가 3해리로 되어 있던 관계로 지구상의 대부분의 해협에는 영해 수역을 제외하고 중간에 공해대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국제해협에 있어서의 자유통항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82년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영해가 12해리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국제해협이 연안국의 영해에 몰입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해에 속하여 있다 하더라도 국제항행에 필수불가결한 해협에서는 무해통항보다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

라, 해양법협약에서는 이 같은 수역에서 적용될 통항 방식으로서 ‘통과통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협약 제36조는 국제해협 내에 공해항로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항로가 있는 경우에는 통과통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자유항행이 확보되지 않는 해협 즉, 전체적으로 영해에 속하여 있는 해협에 있어서만 통과통항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 제37조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수역의 범위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간을 연결하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통과통항은 자유통항이 보장되는 두 수역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수역은, 전체적으로 연안국의 영해에 속함으로써 자유통항이 확보되지 않으나 자유로운 두개의 수역을 연결하는 해협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영해수역에서의 무해통항과는 달리, 이러한 해협에서 인정되는 통과통항권은 선박에 대해서만 아니라 항공기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연안국은 통과통항 자체를 정지시킬 수 없다.(협약 제44조)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38, par.2 :** On entend par ‘passage en transit’ l'exercice, conformément à la présente partie, de la liberté de navigation et de survol à seule fin d'un transit continu et rapide par le détroit entre une partie de la haute mer ou une zone économique exclusive et une autre partie de la haute mer ou une zone économique exclusive.(해양법협약 제38조 제 2 항 : 통과통항이라 함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 Passage inoffensif 【 무해통항(無害通航) 】

영해에서는 외국의 모든 선박들이 무해통항의 권리를 가진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 하에 있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행에 필요한 항로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선박들의 통항을 허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바로 무해통항이다. 여기에서 통항이라 함은 “내수에 진입하지 않고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로부터 향진하거나 또는 정박지나 항구 시설에 기항할 목적으로” 영해를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해양법협약 제18조). 이러한 항행이 무해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무해통항은 원칙적으로 영해에서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내수 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직선기선을 적용함으로써 내수에 포함되게 된 수역에서는 그 이전에 그 수역에서 인정되던 무해통항권이 계속 인정된다(협약 제 8 조 제 2 항).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 17 :** Sous réserve de la Convention, les navires de tous les Etats, côtiers ou sans littoral, jouissent du droit de passage inoffensif dans la mer territoriale.(해양법협약 제17조 :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이든 무연안국이든 모든 국가의 선박들은 영해 상에서 무해통항의 권리를 향유한다.)

### ◇ Paternité 【부성(父性)】

부성이란 모성(maternité)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부(父)와 자(子)를 결합시키는 ‘친자관계(□□ filiation)’를 말한다.

### ◇ Pavillon de plaisance 【편의치적(便宜置籍)】

일부 국가들이 해운 관련 조세의 부과를 최소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선박의 등록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유지함으로써 자국과 진정한 관련이 없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해운 관련 통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위한 편의적 목적으로 선박과 진정한 관련이 없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편의치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박들에게 국적을 부여한 국가들은 일단 그 선박의 국적국 즉 기국이 되는 만큼, 해양법상 기국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 Piraterie 【해적행위】

해상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폭력 또는 약탈 행위를 의미하는 바, 해양법협약 제101조는 해적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해적행위란, (a)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 및 기타 국가관할

권 밖의 공간에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승객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b)그리고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c)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군함이나 정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폭동을 일으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위와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경우, 이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에 의하여 범하여진 행위로 본다.(제102조) 어떠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이와 같은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로 취급되며, 이들은 여하한 국가의 군함, 군용항공기 또는 정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나포될 수 있다.(제103조, 제105조)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100** : Tous les Etats coopèrent dans toute la mesure du possible à la répression de la piraterie en haute mer ou en tout autre lieu ne relevant de la juridiction d'aucun Etat.(**해양법협약 제100조** :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그 밖의 여하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서 해적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 ◇ Plainte 【 고소 】

어떤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범죄의 존재를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고발(dénonciation)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 3 자가 범죄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로서 구별된다. 범죄의 존재를 알리는 피해자의 고소는 일반적으로 공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방법원의 검사장은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소를 접수하더라도 불기소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고소가 공소의 조건이 되는 이른바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별되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전 제 6 조는 고소의 취소를 공소종결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즉 고소가 소추의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 때에 공소는 소멸된다. 친고죄로 하는 이유는 범죄가 본질적으로 사적이익을 침해하고 극히 미미한 정도의 사회혼란만을 야기한 경우에 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이유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모욕죄, 가정유기죄, 인격침해죄, 사생활침해죄, 타인토지내수렵죄 등의 예가 있다.

### ◇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사당사자를 구성하는 고소】

일반적인 고소는 기소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사인 소추제도를 인정함으로써 범죄의 피해자가 사당사자가 된다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형사소추가 제기되도록 하며 공소관에 의해 이미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고소를 말한다. 사당사자를 구성하는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그것이 공소의 조건이 되지 않는 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사소만을 종결시키며 공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Plan d'occupation des sols** 【토지이용계획(POS)】

도시계획에 있어서 행정입법적 성격을 갖는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 réglementaire)로서 코뮌의 전체 혹은 일부의 토지이용의 일반적 규칙으로서 건축금지를 포함한 개별적 이용규제를 정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말한다. 광역도시기본계획(schéma directeur)과 함께 도시계획에 있어 일반적 기준이 된다. 1967년 12월 30일 토지기본법(loi d'orientation foncière)에서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1983년 1월 7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배분에 관한법률을 통해 그 절차가 분권화 되었다. 토지이용계획은 코뮌의 의회에 의해 수립·발의 되고 계획안 작성이 코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의 주택·서비스·교통 등에 관한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구역(zone à urbaniser)을 구획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설치, 용도, 성질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정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제출보고서(le rapport de présentation), 도면(문서), 규정과 부속서로 구성되며 코뮌의 경계구역을 기초단위로 작성되고 지방분권 이전에는 인구 1만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이었으나 현재는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수립된다. P.O.S.는 토지용적률(C.O.S: Coefficient d'occupation de sol), 보유지(les emplacements réservés), 건축외관(l'aspect extérieur)에 관련된 임의적 규정을 포함한다.

### ◇ **Planification** 【계획(화)】

특정지역이나 전국적 차원의 정책의 집행에 있어 공권력 주체가 예상하는 중기나 장기의 전망을 설정하는 규범이나 문서의 수립에 관한 특별한 기법을 말한다. 초기에

계획(화)은(는) 주로 도시개발 분야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7년 12월 30일 토지기본법은 도시기본계획(Schéma directeur)과 토지이용계획(POS: plan d'occupation des sols)에 바탕을 둔 집권화된 도시계획(화)절차를 도입하였다.

경제계획은 예정된 기간 안에 달성할 고유한 수단과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화는 1982년에 단행된 개혁을 통해 강화되었다. 국가계획은 헌법 제34조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을 통해 추진되었다(C.C. 82-142 DC 27 juillet, 1982). 국가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되었는데, 경제 및 사회분야 대상을 정하는 첫 번째 법률이 채택되면 두 번째 법률이 실행수단을 정하고 더 규범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두 법률의 규정은 헌법 제70조가 규정하는 경제사회위원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의 심사의견서(avis)를 거쳐야 했다. 계획화절차는 두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1952년에 설립된 국가기획단(Commissariat général de planification)과 1963년에 설립된 국토 및 지역발전 기획단(DATAR: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l'action rural)은 80인으로 구성된 국가계획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planification)가 심사하는 기본지침 서류를 작성한다.

지역계획(planification régionale)도 마찬가지로 분권화되었다. 지역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레지옹(régions)은 자신의 계획안을 작성한다. 각 레지옹은 자유로이 입안절차를 정하고 입법자는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의 경제사회분야의 협력자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역계획간에는 목시적인 계서(hiérarchie)가 있으며 지역계획이 국가와 계획계약(contrat de plan)을 규정하는 경우에 지역계획은 계획화의 후속하는 두 번째 계획화법률을 공포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레지옹은 국가계획에 입안에 항상 참여가능하다. 첫 번째 법률의 표결 전에 레지옹은 정부에 대해 자신의 우선적 위치를 인식시킬 수 있으나 국가계획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Infoplan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 ◇ Plateau continental 【 대륙붕 】

해양법협약은 “대륙변계의 최외측 한계까지의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영해밖의 해저와 하층토”라고 대륙붕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협약 제76조 제1항). 그리고 대륙변계의 외측 한계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를 대륙붕으로 인정한다. 한편, 대륙

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 대륙변계의 외측 한계선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또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 1 항, 제 4 항) 즉, 대륙붕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이를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규정하되, 해저의 지형 여하에 따라 각국의 대륙붕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간의 불균형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그 최소한과 최대한의 범위를 인정한 것이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76, par.1** : Le plateau continental d'un Etat côtier comprend les fonds marins et leur sous-sol au-delà de sa mer territoriale, sur toute l'étendue du prolongement naturel du territoire terrestre de cet Etat jusqu'au rebord externe de la marge continentale.(**해양법협약 제76조 제 1 항** : 한 연안국의 대륙붕은 대륙변계의 최외측 한계까지 이 국가의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영해밖의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다.)

#### ◇ Plébiscite 【플레비시트】

국민이 국가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국민투표의 한 형태로서 직접민주제를 실현하는 제도이나 독재자나 전제자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플레비시트는 지배자의 신임을 묻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혹은 국가정책결정에 있어서 반대가 많은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1812년 나폴레옹과 1851년 나폴레옹 3세에 의하여 플레비시트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 ◇ Plein contentieux 【완전/전면 심리소송】

완전(전면)심리소송은 법관의 역할을 기준에 따라 제소된 사건에 대해 법관 자신의 고유한 판단에 따른 결정(décision)을 통해 행위의 적(위)법성만을 확인하는 월권소송과는 달리 금전배상을 선고하거나 결정의 변경권을 가지는 소송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된다. 완전/전면심리소송에서 법원은 다투어진 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행정청에게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다투어진 행정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월권소송이 행위(acte)에 대한 적법성(légalité) 통제의 객관소

송인데 비해 완전심리소송은 1)원고의 주관적 권리의 확인이나 계약상 혹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권리구제의 경우 주관적 성질을 가지며, 2)과세금액 결정처분의 변경이나 선거구의 정정에 따른 당선자의 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선거소송의 경우, 난민지위확정 관련 소송에서는 객관적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관적 권리침해를 다루는 1)형의 완전/전면심리소송의 일반적 경우는 주로 계약소송, 계약배상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당한다. 반면 2)형의 경우 ①금전지급청구에 대한 국가의 거부결정에 대해 갖는 보상금청구나 건축보조금청구와 ②법령에서 완전/전면심리소송으로만 하도록 하는 객관적 소속으로 방송위원회 결정, 보험감독위원회 결정에 관한 소송 및 ③법령이나 판례가 월권소송의 법관에 비해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 경우인 조제소송, 선거소송, 난민자 지위 인정거부소송 등이다.

### ◇ **Plein pouvoirs** 【전권위임장】

전권위임장이란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 또는 서명을 위하여 또는 기타 외교회의에서 참가자가 그 소속국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같은 문서에 의하여 대표자격이 입증되는 사람을 가리켜 전권대표(plénipotentiaire)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권위임장에서 전권대표의 권한이 제한되기도 한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7, par.1** : Une personne est considérée comme représentant un Etat pour l'adoption ou l'autentification du texte d'un traité ou pour exprimer le consentement de l'Etat à être lié par un traité: (a) si elle produit des pleins pouvoirs appropriés(조약법협약 제 7 조 제 1 항 : 누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보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조약문의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 ◇ **Police administrative** 【행정경찰】

공서유지를 위해 행정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dans le respect des libertés) 사인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거나(réglementer) 감시하는(surveiller) 활동을 지칭한다. 조직적 의미에서 경찰(警察)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agent)을 가리킨다. 행정경찰은 사법경찰(police judiciaire)과 구별된다. 행정경찰이 예방목적의 일반적인 감시활동과 통제임무에 있다면 사법경찰은 진압적(répressif)인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범죄 행위자들을 수색하거나 체포활동에 특정된다. 이러한 구별은 경찰활동에 관한 재판관할에 있어 전자는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지만 후자는 사법(형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행정경찰은 다시 일반경찰과 특별경찰로 구별된다. 전자는 일반적인 공서의 유지에 목적이 있지만 후자는 그 활동이 더욱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사냥, 낚시, 벽보, 영화, 외국인 관리, 붕괴우려 건물)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특별경찰은 일반경찰을 배제하지만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 보다는 혼재되어 있다. 일반경찰권은 경찰활동이 ①공공의 평온, ②안전, ③위생(salubrité)과 같은 공공질서를 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명 공공질서 개념의 3인방). 전통적인 공공질서의 개념의 3요소에 윤리적 요소(도덕심, moralité)나 선량한 도덕적 질서(bon ordre moral)가 추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Lancer de nain 판결에서 국사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공공질서의 당연한 요소로서 디스코텍에서의 난장이 쓰기 공연을 경찰차원에서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적·예방적 경찰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C.E. Ass. 27 octobre 1995, Commune de Morsang-sur-Orge, Rec.372).

**CGCT Art. L 2212-2** : La police municipale a pour objet d'assurer le bon ordre, la sûreté, la sécurité et la salubrité publiques.(통합지방자치단체법전 법률편 L 2212-2 조 : 지방경찰은 선량한 공공질서, 공공의 안녕, 안전과 공공위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Police judiciaire 【사법경찰】

사법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police administrative)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기능상의 개념과 제도상의 개념으로 다시 구분된다. 기능상의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전 제14조에 의하여 예심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 범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발견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하며 제도상의 개념은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형사소송법전 제12조에 규정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총칭한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우리와 달리 세개의 카테고리로 나뉜다. 즉 사법경찰관(officier de police judiciaire)과 사법경찰리(agent de

police judiciaire) 그리고 사법경찰보조리(agent de police judiciaire adjoint)이다. 형사소송법 제16조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①시장과 부시장, ②군경찰 중 장교와 하사관 그리고 3년 이상 군경찰에 종사한 자 중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공동부령에 의해 지명된 자, ③치안감, 각 부국장, 경무관, 총경, 경정 및 국립경찰의 지휘자급과 지휘자급의 수습자 중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공동부령에 의해 지명된 자, ④비간부급 중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국립경찰의 공무원으로 3호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공동부령에 의해 지명된 자이다. 시장과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법경찰관들은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치를 받고 관할 항소법원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자격부여를 받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내무부 또는 국방부 산하 수사국의 국장이나 부국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연히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하여 제17조에 다음과 같은 총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4조에 정한 권한들을 행사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한다. 사법경찰관은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서 정한 조건들 하에서 예비수사를 한다. 현행의 중죄와 경죄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서 제67조까지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경찰관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 Pourvoi en cassation 【 상고 】

대법원 형사부에서 다루지는 특별 불복절차이다. 상고는 하급심의 최종 판결, 즉 항소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판결 또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 장치이다. 대법원 형사부는 항소법원 수사부(chambre d'instruction)의 판결(arrêt)에 대한 상고도 심사한다. 예외적으로 제 1 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상고는 당사자이의 차원의 상고(통상상고)와 법률이의 차원의 상고(특별상고)로 구분된다. 통상상고의 이유는 정상적이지 않은 법원구성, 관할위반, 권한남용, 형식적 요건의 위반, 동기의 결여, 불충분 또는 모순, 실체적 요건의 위반이다.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前審)에서 당사자이며 상고를 해야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특별상고는 형사소송법전 제621조에 따라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속한 고등검사장에 의해 독자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와 형사소송법전 제6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

해 대법원에 속한 고등검사장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최종심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법원에 속한 고등검사장이 상고기한과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의 접수가능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며 만일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파기(cassation)가 선고되며 당사자들은 무효가 된 결정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거나 불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중죄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상고는 형사소송법전 제572조에 따라 항소법원에 속한 고등검사장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특별상고는 판결(arrêts, jugements) 및 사법행위(actes judiciaires)가 그 대상이 되며 명령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상고심에 의하여 이러한 판결 및 사법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유죄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무죄선고를 받게 된다. 상고심에 의하여 대법원이 파기를 결정한 경우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급 및 동종의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이송 받은 법원이 대법원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다시 상고가 제기될 수 있다. 이때는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다시 상고를 심사한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

Appel

### ◇ Pouvoir constituant 【헌법제정권력】

헌법을 처음으로 만드는 힘. 헌법제정권력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시이예스(Sièyès)였다. 혁명 당시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팜플렛에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하면서 헌법제정권력은 단일불가분성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서 헌법개정권력을 Pouvoir constituant originaire라 하기도 하고 이에 대비하여 헌법개정권력을 Pouvoir constitué, Pouvoir constituant de révision, Pouvoir constituant dérivé, Pouvoir constituant institué라 하기도 한다.

### ◇ Pouvoir constituant de révision 【헌법개정권력】

Pouvoir constitué

◇ **Pouvoir constituant dérivé** 【헌법개정권력, 부차적(파생적) 제한권】

Pouvoir constitué

◇ **Pouvoir constituant institué** 【헌법개정권력, 제도화된 제한권】

Pouvoir constitué

◇ **Pouvoir constituant originaire** 【헌법제정권력, 시원적 제한권】

Pouvoir constituant

◇ **Pouvoir constitué** 【헌법개정권력】

기존의 헌법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치는 힘.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체계화하여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 시이예스에 의해서이다. 현재 프랑스 헌법은 명시적으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영토의 보전이 침해되는 헌법개정을 할 수 없으며(헌법 제89조 제 4 항), 공화국 형태의 국가형태도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89조 제 5 항) 또한 대통령의 궐위시에는 헌법개정을 할 수 없고(헌법 제 7 조 제11항), 비상대권의 발동시에도 개정될 수 없다(CC 96-378 DC 23 juillet 1996).

◇ **Pouvoir de crise** 【국가긴급권, 비상대권】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권한. 헌법 제16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긴급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집행 등이 중대하고 직접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헌법상의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발동될 수 있다. 국가긴급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수상, 양원의장, 헌법재판소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교서(message)로서 국민들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헌정생활의 정상적인 진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곧 대통령의 권한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상 다른 기관은 대통령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면 의회는 당연히 소집되고, 이 기간동안에는 국민의회가 해산될 수 없다. 국가긴급권은 1961년 알제리 사태때 발동된 적이 있다.

**Constitution Art.16** : Lorsque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l'indépendance de la Nation, l'intégrité de son territoire ou l'exécution de s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sont menacées d'une manière grave et immédiate et que le fonctionnement régulier des pouvoirs publics constitutionnels est interrompu,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end les mesures exigées par ces circonstances, après consultation officielle du Premier Ministre, des Présidents des assemblées ainsi que du Conseil Constitutionnel. Il en informe la Nation par un message. Ces mesures doivent être inspirées par la volonté d'assurer aux pouvoirs publics constitutionnels, dans les moindres délais, les moyens d'accomplir leur miss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consulté à leur sujet. Le Parlement se réunit de plein droit. L'Assemblée Nationale ne peut être dissoute pendant l'exercice des pouvoirs exceptionnels. (헌법 제16조 :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또는 국제협력의 집행이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며, 헌법상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수상, 양원의장 및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자문을 거친 후 당면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대통령은 교서로써 이를 국민에게 알린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상의 공권력에 대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수단을 최소한의 기간 내에 확보하려는 의사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국회는 당연히 소집된다. 국민의회는 이 비상대권의 발동기간 중에는 해산되지 않는다.)

#### ◇ Préambule 【헌법전문(前文)】

헌법의 본문 앞에 나오는 부분을 일컫는 말로 헌법에 따라서는 헌법전문을 가지고 있는 헌법도 있고 헌법전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헌법도 있다. 현행 프랑스 헌법은 전문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의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서 정의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애착을 엄숙히 선언한다. 공화국은 이 원리 및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의 원리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는 의사를 표명한 해외영토에 대하여 자유,

평등 및 박애라는 공동이념에 기초를 두고 그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신제도를 제공한다.”

프랑스에서 헌법전문(前文)의 효력에 대하여 과거에는 헌법전문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며 구체적인 헌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1970년 6월 19일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전문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즉 ‘헌법과 특히 전문 그리고 제53조와 제54조, 제60조에 근거하여’라고 하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을 설정하면서 헌법전문을 언급하고 있으나, 결정문의 이유나 주문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헌법전문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7월 16일 결정(C.C. 71-44 DC 16 juillet 1971, R., p.29)인 것이다. 이 결정에서 처음으로 이유에서 헌법전문(前文)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즉 결사의 자유(liberté d'association)에 관한 결정인 이 결정문 이유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헌법 전문(前文)에서 엄숙히 재확인된 기본 원리들 하에서 결사의 자유의 원리들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원리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단체결성의 유효성에 관한 어떠한 사전통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헌을 선언하였다. 이 결정은 많은 판례 평석(예를 들면, HAMON Léo,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et protection des droits individuels: à propos de trois décisions récent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D., chr., 1974, p. 83-90; RIVRO Jean, La garantie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à l'occasion d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 A.J.D.A., 1971, p.537-542; ROBERT Jacques, Propos sur le sauvetage d'une liberté, R.D.P., 1971, P.1171-1204.)과 반향을 불러왔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 Le peuple français proclame solennellement son attachement aux Droits de l'homme et aux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ils ont été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confirmée et complétée par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 ainsi qu'aux droits et devoirs définis dans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헌법전문(前文) :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의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서 정의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애착을 엄숙히 선언한다.)

### ◇ **Préfet** 【프레페, 지사 혹은 군수】

프랑스의 지방 일반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단일국가의 개념징표로서 국가단일성의 유지와 국가이익(지방(역)의 이익에 대한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에 대해 일종의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프레페는 헌법 제13조에 따라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테크레를 통해 임명한다. 프레페의 임무는 다양한데, 데파르트망의 프레페의 경우 총리와 각 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자로서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가)경찰권을 행사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헌법상의 행정적 통제 - *contrôle administratif* - 라 불리는 행정상 후견으로서의 적법성 통제)인 프레페제소 제도이다. 데파르트망의 프레페와는 달리 레지용의 프레페는 레지용 청사소재지에 속한 데파르트망의 프레페가 된다.

레지용의 프레페로서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단지 레지용의 집행기관의 임무만 수행한다. 공식적으로 레지용의 프레페는 다른 데파르트망의 프레페에 대해 계서상의 우월성을 가지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레지용의 권한을 존중하게 된다. 한편 Paris (수도인 파리는 하나의 코뮌이 역시 하나의 데파르트망이다)에는 두 명의 프레페가 공존하는 데 파리(데파르트망)경찰서장(*le préfet de police*)은 Paris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지방경찰(*police municipale*)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비해 파리(데파르트망) 프레페(*le préfet de Paris*)는 Ilde -de -France(레지용)의 국가대표로서만 활동한다. 특기할 것은 해양에서의 국가대표 임무(특히 일반 해양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 프레페(*préfet maritime*)의 경우 해군의 제독 중에서 임명하는데 이들의 권한은 1978년 3월 9일 테크레에서 명기하고 있다.

*Déféré préfectoral*

### ◇ **Premier ministre** 【수상, 총리】

수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 8 조 제 1 항).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대통령의 수

상임명권은 재량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하는 경우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다수당의 수장을 임명할 의무도 없다. 대통령은 재량을 가지고 임의대로 수상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62년도에蓬피두(Georges POMPIDOU)가 수상에 임명될 때,蓬피두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국회 다수당의 일원도 아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상을 임명하는 경우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거의 재량적으로 수상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수상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최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며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강력한 대통령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거정부 하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동거정부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수장을 수상에 임명하였다. 제 1 차 동거정부 시기인 1986년도에는 좌파인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이 우파인 자크 시락(Jacques CHIRAC)을 수상에 임명하였으며, 제 2 차 동거정부 시기인 1993년도에는 역시 미테랑 대통령이 우파인 발라뒤르(Edouard BALLADUR)를 수상에 임명하였고, 제 3 차 동거정부인 1997년도에도 자크 시락 대통령이 좌파인 리오넬 죠스팽(Lionel JOSPIN)을 수상에 임명하였다. 동거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이 명목상의 수상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의 수상임명권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 8 조에 따라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의 명문상 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헌법 49조 제 1 항이 “수상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국민의회에 대하여 정부의 시정방침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정책의 선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헌법 제49조 제 1 항을 근거로 수상을 임명하면 국민의회에 신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조문의 해석상 반드시 국민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헌법 제49조 제 1 항은 수상의 임명과 관련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회 앞에서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49조 제 1 항에 의한 국민의회에서의 신임은 의무가 아니라 수상의 재량이라고 본다. 실제로 국민의회에서의 신임여부를 묻는 것을 조각 후 며칠 후에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어떤 경우는 조각 후 몇 개월 후 혹은 몇 년 후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97년 6월 4일의 죠스팽 정부는 며칠 후에 신임을 물었으며,

1988년 5월 10일의 미셀 로카르(M. Rocard) 정부는 2년 8개월 후인 1991년 1월 16일 걸프전 사태때 신임을 물었으며, 1991년 5월 15일의 에디트 크레송(E. Cresson) 정부는 아예 국민의회의 신임을 묻지 아니하였다.

프랑스에서 수상이라는 자리는 가장 어려운 자리이면서 살아있는 모순덩어리(contradiction vivante)이기도 하다. 프랑스 헌법은 어떤 면에서는 수상에게 개인적인 특징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선거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지도 않은 수상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통령과의 권한분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onstitution Art.8 al.1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omme le Premier Ministre.(헌법 제 8조 제 1 항 :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한다.)**

#### ◇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 공소시효 】

공소를 소멸시키는 사유중의 하나로서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전 제 7 조, 제 8 조 및 제 9 조에 열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죄는 10년, 경죄는 3년 위 경죄는 1년이다. 그러나 특별한 분야에서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예외적이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언론범죄는 3개월, 테러범죄 및 마약유통은 각각 30년, 20년이다.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전 제706-47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및 형법전 제222-10조에 해당하는 중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20년이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전 제706-47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중 경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10년, 형법전 제222-12조, 제 222-30조 및 제227-26조에 해당하는 경죄에 대하여는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20년이다. 두 경우 모두 성년이 되기 전에도 공소는 가능하다. 또한 형법전 제213-5조에 의하여 제211-1조에서 제212-3조까지 규정된 집단학살 및 여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효의 계산은 범죄가 범해진 시점이 기준이 된다. 반면에 장물죄와 같은 계속범(infraction continue)의 기산점은 위법상태가 종료되는 때이다. 공소시효는 법률의 규정 또는 관례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그 진행이 정지(suspension) 또는 중단(interruption)된다. 시효의 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그 효력이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며 시효의 중단은 그 사유가 소멸하면 새롭게 시효가 진행된다.

**CPP Art.6** : L'ac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peine s'éteint par la mort du prévenu, la prescription, l'amnistie, l'abrogation de la loi pénale et la chose jugée.(형사소송법전 제 6 조 : 형벌의 적용을 위한 공소는 피고인의 사망, 시효, 사면, 형사법률의 폐지, 기판력에 의하여 소멸된다.)

Action publique

### ◇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대통령 】

공화국의 국가원수. 프랑스에서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프랑스의 정부형태가 의원정부제적 형태를 띠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다르며,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이나 수상과 다르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국민투표회부권, 의회해산권, 국가긴급권 등이 있으며, 헌법에서 독자적인 권한으로 열거한 이외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상과 관계장관의 부서를 필요로 하게 된다.

### ◇ **Présidentialisme** 【 대통령주의제 】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균형의 균형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제를 말한다. 이는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다른 것으로 국가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를 말한다.

### ◇ **Preuve** 【 증거 】

고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허용하고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했던 구체제의 증거법을 폐기한 나폴레옹의 치죄법은 증거자유주의의 채택과 함께 증거의 증명력(force probante)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사의 내적확신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도입하였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제출한 의무는 공소관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거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분야에서 주차위반,

과속, 신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인으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금전상의 형사책임이 있다. 법의 규칙들을 준수하여 수집 또는 생산된 모든 증거방식(서면, 증언, 자백, 감정 등)들은 판사에게 자유롭게 제출된다. 판사는 독립하여 제출된 증거의 가치에 대하여 평가한다. 즉, 판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한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위경죄를 적발한 조서 및 보고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전 제5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증인에 의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입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소송법전은 증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427조 이하는 경죄법원에서의 채증법칙(administration de la preuve)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법칙과 같은 증거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형사소송에서의 무효(nullité)로 결정된 행위 또는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판사의 심사대상에서 배제된다.

□□ Nullité

#### ◇ Prévenu 【(위경죄, 경죄)피고인】

공판에 선행하는 소송절차(예비수사, 현행범수사, 예심)가 종결되어 위경죄 또는 경죄를 재판하는 형사법원에 소추된 자를 지칭한다. 구별개념으로는 피의자(suspect)(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자로서 아직 소추되지 않은 자), 예심대상자(la personne mise en examen)(구체적인 범죄혐의자 존재하는 자로서 수사판사의 예심의 대상이 된 자) 및 중죄의 피고인(accusé)(재판을 받기 위해 수사판사에 의해 중죄법원에 사건이 송된 피고인)이 있다. 수사판사가 예심을 종결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위한 이송명령(ordonnance de renvoi)을 내리는 때에 예심대상자는 (위경죄 또는 경죄)피고인의 지위를 획득한다.

#### ◇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 【공화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일반(기본)원칙】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의 심사 기준 규범으로 인정한 일반원칙. 헌법재판소는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원칙들(les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에 의하여 기본적인 권리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원칙을 위헌심사의 근거규범으로 인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은 1971년 7월 16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정에서였다.(CC 71-44 DC 16 juillet 1971) 이러한 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러한 원칙에서 많은 기본권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도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권리들을 보면, 결사의 자유(CC 71-44 DC 16 juillet 1971, R., p.29), 반론권(CC 76-70 DC 2 décembre 1976, R., p.39), 개인적 자유(CC 76-75 DC 12 janvier 1977, R., p.33), 교육의 자유(CC 77-87 DC 23 novembre 1977, R., p.42), 양심의 자유(CC 77-87 DC 23 novembre 1977, R., 42), 행정법원의 독립(CC 80-119 DC 22. juillet 1980, R., p.46), 대학교수의 자유(CC 83-168 DC 20 janvier 1983, R., p.30), 부동산 소유권의 사법적 보호(CC 89-256 DC 25 juillet 1989, R., p.53)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즉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 원칙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법률들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칙들이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공화국 법률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으며, 또한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 원칙들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대부분의 기본권들이 헌법 본문이나 헌법 전문 혹은 1789년 인권선언에 의하여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은 위헌심사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서 제한된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CC 71-44 DC 16 juillet 1971 : au nombre des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et solennellement réaffirmés par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il y a lieu de ranger le principe de la liberté d'association.(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71년 7월 16일 결정 : 공화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헌법 前文에서 엄숙히 재확인된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는 정리되어진다.)

### ◇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지방법원 검사장】

정확한 명칭은 “...지방법원의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으로서 지방법원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1심법원에서 공소관(ministère public)을 대표한다(법원조직법전 제L.311-15조). 즉, 지방법원 검사장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검사들 가운데 최고 수장이다. 프랑스에는 현재 181개

의 지방법원이 있으므로 181명의 지방법원 검사장이 존재한다. 지방법원 검사장은 차장검사장(*procureur adjoint*) 또는 편검사(*substitut*)의 보조를 받는다. 지방법원 검사장은 범죄의 예방과 처벌과 관련한 국가 형사정책에 참여한다. 지방법원 검사장의 임무는 범죄를 발견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하고 사법경찰의 활동을 통제한다. 또한 예심판사를 포함한 법원에 대하여 정확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형사뿐만 아니라 법률에 예정된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인적상황(후견, 입양 등), 미성년자의 보호, 재산의 청산, 호적의 감독 등 민사분야와 소년, 노동, 상사분야에도 관여한다.

프랑스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법원 검사장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거나 기소를 대체하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지방법원 검사장은 공소를 포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이후의 모든 공소유지 업무는 지방법원 검사장을 포함한 공소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관이 사회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범죄피해자가 사인소추를 통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소관은 공소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진다.

□□ Parquet, □□ Procureur général

### ◇ Procureur général 【 항소법원 검사장, 고등검사장 】

고등검사장은 항소법원에 속한 검사들 중 최고 수장으로 관할에 있는 모든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고등검사장은 항소법원과 그 관할 내에 있는 중죄법원에서 개별적 또는 소속 검사를 통하여 공소관을 대표하며 고등검사장은 형사법률의 적용과 관할에 속한 단위검찰(*parquet*)의 올바른 직무수행을 감시한다. 고등검사장의 지방법원 검사장에 대한 지휘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지휘권과 개별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지휘권으로 구별된다. 현행 헌법 제20조는 “정부는 국가정책을 이끈다”(Le gouvernement conduit la politique de la Nation)라는 규정으로부터 형사정책(*politique criminelle*)은 국가정책의 한 요소로서 정부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형사정책이란 공소와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형벌의 청구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정책을 실현하는 자가 바로 법원에 소속된 정부의 대표자인 검사이며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통하여 형사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형

사정책은 법무부장관이 각 항소법원의 고등검사장에게 고등검사장은 항소법원산하의 지방법원의 검사장에게 업무지침(circulaire)의 형태로 전달되며 각 검사장들은 일반적 지시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항소법원의 검사장은 정부의 정책과 일선 검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역할을 한다. 형사소송법전에 따라 고등검사장은 지방법원 검사장의 행위와 관할내의 단위검찰에 의한 공소정책의 진행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지방법원 검사장은 매년 자신이 속한 단위검찰의 활동과 운영 및 법률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고등검사장에게 제출한다.

법무부장관이 개별사건에 관하여 고등검사장에게 공소제기를 하도록 명령하는 공소지휘권은 2004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고등검사장과 지방법원 검사장은 상명하복관계에 있으므로 고등검사장은 소송서류에 포함되는 서면에 의한 지시를 통하여 지방법원 검사장들에게 직접 소추를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소추하도록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공소업무외에 사법경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즉, 고등검사장은 관할내의 사법경찰관의 근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며 이 평가점수는 승진 등에 고려된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Parquet,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 **Projet de loi** 【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법안 】

프랑스에서 법률안 제출권은 수상과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이 경우 수상 즉 정부제출 법률안을 projet de loi라고 하고 국회의원제출 법률안을 proposition de loi라고 하여 법률안 제출을 누가 하였는가에 따라서 달리 부르고 있다.

**Constitution Art.39 al.2** : Les projets de loi sont délibérés en Conseil des Ministres après avis du Conseil d'Etat et déposés sur le bureau de l'une des deux assemblées.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s 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sont soumis en premier lieu à l'Assemblée nationale. Sans préjudic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4, les projets de loi ayant pour principal objet l'organis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s projets de loi relatifs aux instances représentatives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sont soumis en premier lieu au Sénat. (헌법 제39조 제 2 항 : 정부제출법률안은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양원 가운데 하나의 의회에 제출된다.

예산법률안과 사회보장예산법률안은 우선적으로 국민의회에 제출된다. 제44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영도 국민의 대표에 관한 법률안은 상원에 우선적으로 제출된다.)

◇ **Proportionnalité 【 비례성 】**

비례성은 행정청이 사용한 수단과 행정이 원하는 목표간의 합치(일치, adéquation)로 정의될 수 있다. 프랑스 법률가는(G. Braibant) 비례성에 대해 “절구자루로 파리를 분쇄해서는 안된다”(on ne doit pas écraser une mouche avec un marteau-pilon)는 표현으로 묘사한다. 정당한 비례성의 준수에 대한 관심은 결정의 수단, 목표 뿐 아니라 수단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상황 간에도 있어야 하며 특히 20세기 초반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다.

경찰분야에서 공권력은 엄격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기본권에 대한 침해조치를 할 수 있다(C.E., 19 février 1909, Abbé Olivier, Rec. p.181). 결사의 자유의 금지에 관한 Benjamin 판결에서도 국사원은 코핀의 시장은 (시장의) 경찰권의 발동과 결사의 자유를 조정해야 하며, (행정의) 경찰조치는 공공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위협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찰조치의 성질이나 중요성이 상응해야만(appropriée par sa nature et sa gravité)하는 비례성심사를 정착시켰다(C.E. 19 mai 1933, Benjamin). 비례성원칙의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비용-편익결산(le bilan coût-avantage)은 공익목적의 수용상의 공공용도(utilité publique)에 관한 심사와 관련해 1971년에 등장하였다. 또한 대표자(representant du personnel)의 해촉(licenciement)의 경우 행정청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현재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C.E. Ass. 5 mai 1976, SAFER d'Auvergne c/ Bernette, Rec. p.232). 비례성원칙은 또한 징계권행사 분야에서도 확대된다.

◇ **Proposition de loi 【 국회의원제출 법률안, 의원법안 】**

프랑스에서 법률안 제출권은 수상과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이 경우 수상 즉 정부제출 법률안을 projet de loi라고 하고 국회의원제출 법률안을 proposition de loi라고 하여 법률안 제출을 누가 하였는가에 따라서 달리 부르고 있다.

**Constitution Art.40** : Les propositions et amendements formulés par les membres du Parlement ne sont pas recevables lorsque leur adoption aurait pour conséquence soit une diminution des ressources publiques, soit la création ou l'aggravation d'une charge publique.(헌법 제40조 : 국회의원 제출 법률안과 수정안은 그 채택이 국고수입의 감소나 국고지출의 신설 또는 증가를 초래할 경우에는 이를 수리 할 수 없다.)

### ◇ Protection diplomatique 【 외교적 보호 】

외교적 보호라 함은, 한 국가의 영토상에서 외국인에게 부당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외국인의 국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적 보호는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국제책임의 추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국적의 계속과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이다. 즉,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손해발생 당시로부터 청구 제출 시기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영토국내에서 가용한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어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한다.

**art. 1 des Projets d'articles sur la protection diplomatique adoptés par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en 2004.** : La protection diplomatique consiste dans le recours à une action diplomatique ou à d'autres moyens de règlement pacifique par un Etat qui prend fait et cause, en son nom propre, pour l'une des personnes ayant sa nationalité à raison d'un préjudice subi par cette dernière découlant d'un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d'un autre Etat.(2004년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 제 1 조 : 외교적 보호는 한 국가가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국적을 가진 사람이 받은 피해를 이유로 그 피해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외교적 행동 또는 기타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 ◇ Publicité 【 공고 】

행정결정이 그 상대방의 인식의 범위 내에 있는 작용을 구성한다. 행정법상 공고는 공포(publication)와 통지(notification)의 2가지로 구별된다. 행정행위가 존재함에 있어

공고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공고절차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entrée en viguer)과 대항력(oposabilité)을 결정한다. (행정)행위의 발령(édiction)이 있게 되면 완전한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공고절차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행위의 발령일과 효력발생일의 분리는 행정행위의 불소급원칙(principe de non-rétroactivité)에 기인한다. 공고는 충분히 행정행위의 내용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경우에는(à condition qu'elle procure)소송의 제소기간을 진행시킨다.

[ Q ]

### ◇ Quinquennat 【 대통령 임기 5년제 】

현재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다. 1873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 임기는 7년 임기였으나, 2000년 10월 2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개정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 5 공화국 헌법 제정 당시부터 문제로 논의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반대, 즉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견해의 논거는, 첫째로 7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4년 아니면 5년 정도이므로 7년의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둘째로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의원의 임기는 5년인데 비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니까 서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1986년 이후 프랑스가 겪게 되는 동거정부(cohabitation) 체제 하에서 더욱 더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대통령과 수상이 서로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대통령과 수상의 의견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고 따라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 R ]

### ◇ Réclusion criminelle 【징역】

일반법(de droit commun)의 중죄를 범한 자연인에게 가해지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징역은 1960년 신설된 것으로 기존에 10년 이상의 징역을 청하던 강제노역(travaux forcés)형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réclusion)형을 동시에 대체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징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징역은 통상 중앙교도소 또는 구금센터에서 집행된다. 징역은 종신형과 유기형으로 구분된다. 형법전 제131-1조는 징역을 종신, 최장 30년, 최장 20년, 최장 15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형의 기간은 10년 미만이 될 수 없다. 10년 미만의 경우는 금고(emprisonnement)로 명칭이 바뀐다.

Emprisonnement

### ◇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월권소송】

행정행위의 위법성(illégalité)을 이유로 행정법관에 대해 일방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법적 권리구제 방법(recours juridictionnel). E. Laferrière는 다투어지는 행위는 적법한 가를 묻는 행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한다. 월권소송은 ①행위에 대한 소송이며 ②공익소송이며 ③공서적 특징을 가진다 (R. Chapus). 제소요건으로서 원고는 1)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적법한 이익의 직접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고 2)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faisant grief) 행정청의 집행력을 가지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는 결정인 법적 행위라야 한다. 따라서 준비행위나 절차에 포함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석적 성격의 시클래르(circulaire)의 경우에도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02년 뒤비네르 부인 판결에서는 1954년 1월 24일 Notre-Dame du Kreisker판결이래로 유지해온 시클래르의 법규성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변경하였다). 월권소송의 특별한 모습인 데페레제소 ( Déféré préfectoral)의 경우도 실질은 월권소송의 일반적 경우와 동일하다.

### ◇ Redevance 【사용료】

공공단체나 공공단체의 특허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징수하는 금전 (prélèvement monétaire)을 말한다. 국사원은 전국항공수송노동조합 판결(1958년)에서 사용료는 이용자(usagers)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에 현저하게 일치하도록 correspond sensiblement à) 요구된 금액(la somme réclamée)이라고 하였다(C.E. 21 novembre 1958, Syn. nat. des transporteurs aérien). 따라서 사용료는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는 세금(taxe) 과는 구별된다. 사용료가 전체총액인 경우에는 redevance는 가격(prix)으로 평가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는 상공업적 공공서비스의 평가지표가 된다(T.C. 23 novembre 1992, Fontaine). 사용료는 또한 도로점용권자(titulaire de permission de voirie) 나 도로사용권자(permis de stationnement)와 같이 일정한 공공재산의 사법(私法)상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징수된다. 고속도로의 사용료(péage autoroutier)도 Merlinqnqn 판결이래로 redevance로 평가된다(C.E. Ass. 14 février 1975, Epoux. Merlin, Rec. p. 10).

#### ◇ Référendum 【 레퍼렌덤, 국민투표 】

국민에게 투표를 통하여 국가의사결정을 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제도. 현재 프랑스 헌법은 세 가지의 국민투표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11조의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회부권과 헌법 제88-5조의 유럽연합을 위한 국민투표, 그리고 헌법 제89조의 헌법개정절차에 있어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제 5 공화국 들어와서 국민투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1961년 1월에 알제리 문제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였으며, 1962년 4월에는 알제리 독립과 관련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고, 1962년 10월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연합헌법안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Constitution Art.11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Gouvernement pendant la durée des sessions ou sur proposition conjointe des deux assemblées, publiées au Journal Officiel, peut soumettre au référendum tout projet de loi portant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sur des réformes relatives à la politique économique ou sociale de la nation et aux services publics qui y concourent, ou tendant à autoriser la ratification d'un traité qui, sans êtr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aurait des incidences sur le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Lorsque le référendum est organisé sur proposition du Gouvernement, celui-ci fait, devant chaque assemblée, une déclaration qui est suivie d'un

débat. Lorsque le référendum a conclu à l'adoption du projet de loi,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mulgue la loi dans les quinze jours qui suivent la proclamation des résultats de la consultation.(헌법 제11조 : 대통령은 국회 회기중에 정부의 제안에 따라 혹은 양원의 공동제안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 혹은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의 개혁에 관계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되는 공역무의 개혁에 관련되는 법률안 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도의 기능에 영향이 있을 조약의 비준동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가 정부의 제안으로 조직되었을 때 정부는 각각의 국회에서 토론에 회부할 것을 선언한다. 국민투표가 법률안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민투표 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법률을 공포한다.)

### ◇ Régie 【 정부나 공공단체의 서비스의 직접경영 】

공공서비스의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국가나 기타 분권화된 단체(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조직구성과 운영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공법인은 공공서비스를 창설하고 스스로 이를 경영할 수 있다. 따라서 직영은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인설립이 필요 없는 점에 구별된다. 직영에 의한 서비스는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공공단체에 직접 귀속한다. 특히 직영에 의한 서비스는 처분과 같이 제조의 대상으로 하거나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공공서비스의 직영은 재정적 독립성을 가지지는 못하고 행정조직상의 위계적 통제의 메카니즘하에 있다. 예를 들면 한 코뮌이 시영 수영장(piscine municipale)을 운영하는 경우 중요한 결정은 시의회(Conseil municipal)에서 내리고 법적·재정적으로는 시장(maire)이 코뮌의 공무원(agent)을 통해 코뮌의 예산에서 코뮌의 재산과 재정상의 수단을 통해 이를 시행한다.

직영과 구별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직영이 법인화되는 경우, 다시 말해 법인격이 부여되고 재정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진 경우에는 영조물법인(Etablissement public)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예로 파리도시철도공사(RATP: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의 경우는 명칭에 비해(Régie) 영조물법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공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창설(설립)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경영(운영)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공법인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게 된다(confier). 이 경우에 영조물법인은 공공서비스 설립 단체에 대해 법적인 독립성을 가지면서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경우로서 1990년 7월 4일 법률을 통해 완전한 상법상의 회사가 된 르노(자동차) 국영공장 (Régie nationale des usines Renault)은 명칭과는 달리 이미 법인격이 부여되었지만 영조물법인이나 주식회사와 같은 어떤 지위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업은 전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1996년부터는 자본의 과반수를 사적부분에서 출자하고 있다(국가는 46%만 출자하고 있다). 직영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담당했던 사법, 국가경찰, 조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학교급식소와 같은 많은 행정적 공공서비스 (SPA:Service public administratif)와 일부의 상공업적 공역무(SPIC: Service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ux)가 있는데 그 예로는 Documentation française 출판사, 관보간행국(Direction des Journals officiels) 등을 들 수 있다.

◇ Régime mixte 【혼합정부형태】

□□ Régime semi-présidentiel

◇ Régime parlementaire 【의원내각제, 의회제】

의원내각제라 함은 대통령 혹은 군주와 내각으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며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을 통하여 상호 견제를 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집행부와 입법부간에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권력 분립을 전제로, 의회의 다수당이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양 제도간의 권력의 공동협동체제가 이루어지는 대신, 집행부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에 의해 양 제도 사이에 ‘균형상태’가 이루어지는 정부형태이다. 법적으로는 내각이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하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 의회의 불신임에 대하여 수상 이하 전체 내각이 연대해 책임을 진다 - 을 지므로 의회가 내각에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의회 다수당 간부들이 각료에 선임되고 당수가 수상에 취임하게 됨으로 내각은 집권정당을 통해 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게 된다. 의회와 내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의회와 집행부 즉 내각은 법적, 제도적으로는 분립되어 있지만, 정치적 기능적으로는 양부가 긴밀한 공동협동관계를 유지한다. 의회와 내각의 공동협동관계는 내각이 의회(하원)의 다수당에 의해 구성되고, 그 신임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존속하기 때문이다. 내각의 각료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므로, 양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정부 수반인 수상은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임명되고, 수상은 각료를 선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공동협동관계는 내각이 갖는 법률안 제출권과 각료의 의회출석, 발언권 등으로 표현된다. 의회 의석 중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내각을 단독으로 구성하는 경우, 의회와 내각 사이에 제도적 견제장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양부를 장악한 다수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이루어질 뿐이다.

### ◇ Régime politique 【 정부형태, 정치제도 】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형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넓은 개념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정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형태 및 이러한 정부기관에게 어떠한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그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형태를 좀 더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제외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부형태라고 하기도 하며, 좀 더 작은 의미로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만의 조직·작용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가장 작의 의미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부만의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 Régime présidentiel 【 대통령제 】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론에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정부형태로서 집행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가 엄격하게 분리·독립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는 정부형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한편으로는 강력한 통일 정부(연방정부: 당시 미국은 각 주가 각자 주권을 가지고 분할되어 있는 국가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를 수립할 필요

성에 직면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압정에 대한 반감으로 중앙의 권력집중으로부터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통일정부로서 연방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이끌어갈 대통령제를 두는 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자칫 독재적이 될 수 있는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한 것이 현재의 미국의 대통령제도이다.

대통령제의 모국은 미국일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들은 영토가 광활하고 각 주의 독립성이 강한데다, 통일의 상징이어야 할 군주마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화제를 대안제로 하였기 때문에 그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정치적 난문제에 봉착하였다. 그 중에서도 각 주의 주권을 고집하는 주권파와 연방제를 주장하는 연방파의 대립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파의 대립과 논쟁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연방국가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입헌적 권력분립과 전국적 통일정부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대통령제가 고안된 것이다. 대통령제는 국민 주권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군주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창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부제도로서 미국인들에 의하여 환영을 받았다. 그 후 20세기 들어와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신생 독립국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모방한 정부형태를 많이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 **Régime semi-parlementaire** 【반의회제】

□□ Régime semi-présidentiel

◇ **Régime semi-présidentiel**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현행 프랑스 제 5 공화국 헌법상의 정부형태를 의원정부제, 의원집정부제,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혼합정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웠다. 프랑스에서도 혼합정부형태(régime mixte), 반의회제(régime semi-parlementaire) 혹은 반대통령제(régime semi-présidentiel)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프랑스의 경우는 미국식의 대통령제와 영국식의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부형태로서 프랑스 특유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제 5 공화국 헌법상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은 프랑스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대통령제를 가미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부형태가 된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국민의회 앞에서 행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는 내각불신임제도를 두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에 의한 의회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상과 장관의 부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 정부형태에서 대통령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보통선거로 선출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됨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하며 균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 주재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대통령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정부형태를 이원집정부제라고 할 때, 이원집정부제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원집정부제란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제를 취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조금이라도 가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대부분의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영국과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가 상당부분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대통령제를 가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집행권이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집행권이 대통령과 수상으로 나뉘어 있어서 양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넷째로,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며 비상시에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다섯째로,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정부형태가 이원정부제의 모습을 띠게 된 배경을 보면 제 3 공화국과 제 4 공화국을 거치면서 의원내각제적 정부형태를 거치면서 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특히 제 4 공화국에서는 정국의 불안으로 정권의 수명이 몇 개월에 불과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제 5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 5 공화국 헌법은 의회의 권한을 약화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그 모습을 보이지만 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간접선거형태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형태를 띠게 된다.

하지만 1962년 드골 대통령이 헌법 제11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하여 이원정부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국민의회 규칙】

의회가 자치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국민의회의 규칙. 따라서 상원에 관한 것으로는 상원 규칙(règlement du Sénat)이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칙은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이 아닌 규칙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 의회의 규칙은 헌법 제61조가 조직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의무적 사전위헌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회 스스로가 의회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면서 의무적으로 위헌심사를 받지 않는다면 의회에게 유리한 규칙을 남발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전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Constitution Art.28 al.4** : Les jours et les horaires des séances sont déterminés par le règlement de chaque assemblée.(헌법 제28조 제 4 항 : 회기의 날짜와 시간은 각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 **Règlement du Sénat** 【상원 규칙】

의회가 자치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상원에서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Relaxe** 【(경찰법원, 경죄법원의) 무죄선고】

중죄법원 이외의 경죄법원, 경찰법원, 항소법원 등 판결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면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무

죄판결은 항소의 대상이 되며 그 기한이 경과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중죄에 대한 중죄법원의 무죄선고(acquittement)와 용어가 구별된다.

□□ Acquittement

### ◇ Réparation 【 손해배상 】

국제법상 위법행위의 법적 결과로서 위법행위국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원상회복이 요구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대신 만족(satisfaction)이 요구된다.

### ◇ Réquisitoire 【 공소장, 논고 】

공소관을 대표하는 자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시키는 행위로서 법원 또는 판사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각 단계별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réquisitoire introductif(도입공소장)** : 공소관이 수사판사로 하여금 범죄를 구성하는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예심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말한다. 도입공소장에 의하여 수사판사는 예심을 개시한다. **réquisitoire supplétif (추가공소장)** : 도입공소장에 의하여 수사판사가 예심을 하는 과정에서 도입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 공소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소관이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심할 것을 요구하는 공소장을 말한다. **réquisitoire à l'audience(논고)** : 공판(audience de jugement)과정에서 공소관의 대표자가 판사에게 구형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구두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réquisitoire définitif(종결공소장)** : 수사판사가 예심종결 후에 공소관에게 사건서류를 송부한 후 공소관은 예심대상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1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건의 후속처리에 관하여 사유를 적시하여 자신의 최종의견을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사판사는 공소관의 종결공소장 접수 후 또는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 독자적으로 혐의 없음(non-lieu) 또는 법원이송(renvoi) 등의 사건결정을 하게 된다.

## ◇ Réserve 【 유보 】

유보라 함은,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서 해당 조약의 법적 효과를 일부 배제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조약법협약에서는 유보를 정의하기를, “그 자구 또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국가가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 2 조 (d)) 협약은 규정하기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때에 가하여진 유보는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명하는 시기에 유보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 유보는 그 확인 일자에 가하여진 것으로 본다(협약 제23조 제 2 항). 이는 정식 조약의 경우에는 서명 시의 유보는 비준 등의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법적 효과가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서명 시의 유보가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간이절차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이며, 이 경우 서명이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보는 해당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 표시 단계에서 가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s traités, art. 2, par. 1, d) :** L'expression ‘réserve’ s'entend d'une déclaration unilatérale, quel que soit son libellé ou sa désignation, faite par un Etat quand il signe, ratifie, accepte ou approuve un traité ou y adhère par laquelle il vise à exclure ou à modifier l'effet juridique de certaines dispositions du traité dans leur application à cet Etat.(**조약법협약 제 2 조 제 1 항 d) :** 유보라 함은 그 자구 또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국가가 조약을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할 때에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 ◇ Responsabilité pénale 【 형사책임 】

특정인이 범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행위자는 정신적 장애 또는 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의 이유로 인하여 법률의 위반을 원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다. 책임성은 귀책성(imputabilité)과 가벌성(culpabilité)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결여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람 또는 행위의 귀책성은 정신병자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것처럼 행위자에게 최소한의 인식(conscience)을 요구한다. 가벌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초래됐다는 과책(faute)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형법전은 행위로부터 위법적 성격을 제거시키는 외적 사유 예를 들어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 그 자체가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소멸시키는 원인들을 주장할 수 있는 자들도 동일하다. 이것이 비귀책성의 사유(cause de non-imputabilité)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전은 제122-8조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 Culpabilité, □□ Imputabilité

#### ◇ Retrait 【(행정행위의) 취소】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청이 개별적인 행정행위의 발령 후 만들어낸 과거와 미래의 모든 효과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취소되어진(retiré) -혹은 연관된(rapporté)- 행위는 창출한 법질서 전부를 소멸시킨다. 취소는 그 효과의 범위에 있어서 장래효적인 철회와(abrogation)와 구별된다. 취소에 관한 이론은 주로 월권소송과 관련되어 논의된다. 실제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취소는 월권소송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소송경제적 역할을 가진다. 직권취소는 행정청 스스로에 의한 월권소송의 변환(transposition)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청의 취소 개념은 개별적 행정행위가 갖는 기득권의 불가침성 (principe d'intangibilité des droits acquis)원칙과 충돌한다. 즉,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보장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행위의 1)권리창설(actes créateurs de droits/ non créateurs de droits)유무, 2)성립의 적법유무(régulièrement pris/ illégaux), 3)명령적인가 개별적인가(règlement/ acte individuel)에 구별된다. 적법한 개별적 행정행위가 권리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언제든지 그리고 여하의 이유로도 취소될 수 있다. 반면에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판례는 개별적 행위의 취소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권리를 창설하는 적법한 행위의 취소는 기득권의 불가침성과 행정행위의 불소급성원칙에 의

해 불가능하다. 반면에 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한 경우는 ①행위의 취소가 행정청의 결정(décision)의 위법성에 기초하고(fondé sur l'illégalité) ②타당하지 않는 경우(non sur des motifs d'opportunité)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는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월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한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의 취소는 법원의 취소에 대응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판례는 일반적으로 권리창설적 효력을 가진 행정결정이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분청(장관)이 (소급적 효력을 갖는) 그 취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였다(C. E. 3 novembre 1922, Dame. Cachet, Rec. 790).

□□ Abrogation

### ◇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 헌법개정 】

프랑스 제 5 공화국 헌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2006년 5월까지 19번 개정되었다. 헌법개정절차를 보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헌법 제89조에 따른 헌법개정절차로 개정안 발의권은 수상의 제안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있다. 개정안은 동일한 조문으로 양원에서 가결되어야 하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대신 양원합동회의에서 투표수 5분의 3 이상을 얻으면 확정된다. 이외에 헌법 제11조에 의한 헌법개정이 있다. 이는 1962년 당시 드골대통령이 대통령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헌법 제89조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의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11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인권(권)에 근거하여 국민투표에 헌법개정안을 회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안은 국민주권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Constitution Art.89 al.1** : L'initiative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헌법 제89조 제 1 항 :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수상의 제안에 의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속한다.)

### ◇ Révocation 【 파면, 해임 】

공법상, 특히 공무원법상의 가장 무거운 제재(징계)조치로서 일정한 경우에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정지와 수반될 수 있다. 한편 중대한 과실을 범한 비정규직원 (agent non titulaire)에게 사전경고(préavis)나 보상(indemnité)이 없는 위험이 따르는 해고(licenciement)와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révocation의 용례는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는 직(職 · un emploi)을 차지하는 자의 임무(fonctions)를 종료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S ]

## ◇ Sanction 【 제재 】

행정기관이 사인들의 잘못된 행동(*comportement fautif*)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부과할 권한을 가진 모든 조치를 뜻한다. 제재는 개념상 처벌(*punition*)적 성격의 조치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행정상 제재, 행정계약상의 제재, 징계로서의 제재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행정상 제재(*sanction administrative*)는 법률이나 명령을 실행 하진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서 다른 행정행위와 그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반 행위를 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정상 제재는 빈번하게 독립행정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 CC 89-260 DC 28 juillet 1989, Rec. 71.; 방송위원회: CC 88-248 DC 17 janvier)에 위임된다. 행정상 제재조치는 금전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예로는 *majoration de droit*, 가산세)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CSA(방송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방송허가를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상 제재는 행정청이 부과하고 법원의 사후통제가 이루어지나 형벌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다.

행정계약상 제재(*sanction contractuelle*)는 행정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상대방에 대해 행정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치로서 금전적(벌금, 손해배상) 혹은 강제적(직영화, 공탁, 권식재판, 해제권)인 것으로 정의된다. 징계로서의 제재(*sanction disciplinaire*)는 행정상 제재와 구별되기도 하지만 공공단체나 직업단체(*ordres professionnels*, C.E. Ass. 2 avril 1943, Bougen, Rec. 86)의 구성원의 지위나 내부규정에 관한 규정의 위반과 함께 위계적 통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징계로서의 제재의 적용 영역은 주로 공무원법이며 1984년 1월 11일 국가공무원법(제66조)은 징계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를 정당화하는 과실의 성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1978년 이래로 국사원은 행정청의 징계조치의 선택과정에서의 판단의 명백한 하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C.E, 9 juin 1978, Rec. 245).

## ◇ Scrutin majoritaire 【 다수대표제 】

대표의 선거를 그 선거구에 있는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방식으로 다수자만이 대표자를 낼 수 있고 소수자는 대표를 낼 수 없는 선거제도. 다수대표제는 1회제 다수

대표제와 2회제 다수대표제가 있다. 1회제 다수대표제는 단 한 차례의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2회제 다수대표제는 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없는 경우, 제 1차 투표에서 일정 득표 이상을 환 후보자들로만 제 2차 투표에 진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회 의원선거에서 2회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 **Secrétaire d'Etat** 【 차관, 처장, 청장, 국사차관 】

secrétaire d'Etat는 우리의 차관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 독자적으로 행정 부처를 이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의 지휘를 받는 차관의 경우도 있다. secrétaire d'Etat는 원칙적으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아니나, 담당 업무에 관해서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 ◇ **Sénat** 【 상원 】

양원제 국가의 프랑스에서 국민의회와 더불어서 국회를 구성하는 단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국민의회 의원들과는 달리 상원의원들은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해외영토 국민들은 상원을 통하여 대표되며, 상원에 관한 조직법률(loi organique)은 반드시 국민의회와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 헌정사를 볼 때, 상원은 제 3 공화국 하에서 하원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으나 제 4 공화국 하에서는 의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 5 공화국 하에서는 헌법에서 그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Constitution Art.24 al.3** : Le Sénat est élu au suffrage indirect. Il assure la représent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헌법 제24조 제 3 항 : 상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 **Sénateur** 【 상원 의원 】

상원을 구성하는 의원. 상원 의원은 임기 6년으로 국민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2003년 상원구성과 임기 선거권향유연령개정에 관한 법률(Loi organique n°2003-696

du 30 juillet 2003 portant réforme de la durée du mandat et de l'âge d'éligibilité des sénateurs ainsi que de la composition du Sénat)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상원의원 숫자는 331명이지만 2008년에는 341명으로 되고 최종적으로 2011년에는 346명으로 된다. 임기도 6년으로 단축되었고, 매 3년마다 상원 의원 절반을 교체하도록 하였다. 상원 의원 피선거권 향유연령도 30세로 조정되었다.

**Code électoral (Partie législative) Art.275** : Les sénateurs sont élus pour six ans.(선거법 전(입법편) 제275조 :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된다.)

### ◇ Séparation des pouvoirs 【 권력분립 】

국가권력을 나누어서 다른 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다른 기관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일찍이 권력분립이론을 채택하였었다. 특히 인권선언 제16조도 권력분립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행 헌법도 제Ⅱ장과 제Ⅲ장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Ⅳ장에서는 국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Ⅷ장에서는 사법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Art.16** : Toute Société dans laquelle la garantie des Droits n'est pas assurée, ni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éterminée, n'a point de Constitution.(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 :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 ◇ Septennat 【 대통령임기 7년제 】

대통령의 임기 7년제를 일컫는 말.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었다. 1873년부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즉 7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200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

quinquennat

## ◇ Service public 【 공공서비스 】

종래 공역무(公役務)라고 소개되었던 공공서비스는 프랑스 행정법을 설명하는 기본개념으로서 ①실질적 의미로는 공익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②조직적 의미에서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명된다. 행정활동의 대표적 모습인 경찰은 규제·명령 (prescription)을 밑바탕에 두고 있지만 공공서비스는 급부 (prestation)를 토대로 한다. 전자는 지시, 명령(종종 금지라는 형태로)에 가깝고 후자는 일정한 시민들에게 제안되거나 제공되는 역무(service)와 관련된다.

공공서비스는 행정법원의 관할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프랑스 행정판례는 행정계약의 법적 판단기준으로 공공서비스와의 관련성을 들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다시 ①행정적 공공서비스(SPA: Service public administrative)와 ②상공업적 공공서비스(SPIC: Service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①)는 전통적인 행정서비스로서 행정법원의 관할하에 있지만, 후자(②)의 경우 일부의 경우는 일반 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공공서비스에 관한 기본원칙으로는 일명 로랑의 원칙(lois de Larent)인 ①공공서비스의 평등성, ②계속성, ③적응성원칙(개별부분 참조)이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정립되고 있다. 현재 전통적인 프랑스 행정서비스이론은 자유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과 경쟁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정책과 불일치하는 점도 없지 않으나, 프랑스 공공서비스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 ◇ Servitude 【 지역 】

공용사용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에 부착된 수익이나 사용의 제한을 의미한다. 행정법상 지역, 혹은 행정지역(servitudes administrative)는 수용과 달리 주로 건축권에 대한 제한의 부과에 목적이 있으며 공익의 필요에 의해 행정 중에 발생하는 소유권의 제한으로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발생하는 소유권의 제한인 도시계획 지역(servitude d'urbanisme)의 경우에는 무보상이 원칙이다. 행정지역은 공법인이나 사인에 대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유재산은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승역재산(Fonds servant)이 된다.

**Code de l'Urbanisme Art.L.160-5** : N'ouvrent droit à aucune indemnité les servitudes instituées par application du présent code en matière de voirie, d'hygiène et d'esthétique ou pour d'autres objets et concernant, notamment, l'utilisation du sol, la hauteur des constructions, la proportion des surfaces bâties et non bâties dans chaque propriété, l'interdiction de construire dans certaines zones et en bordure de certaines voies, la répartition des immeubles entre diverses zones.(도시계획법전 법률편 제160-5조 : 도로, 위생 및 미관 또는 다른 목적으로, 특히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고도, 각 토지의 용적률, 특정지역과 도로연변에 대한 건축금지, 다양한 개발구역 사이에 있어서의 건물배분에 관한 이 법전을 적용한 지역(servitudes)에 대하여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다.)

### ◇ Session 【 국회의 회기 】

회기에는 정기회(session ordinaire)와 임시회(session extraordinaire)가 있다. 프랑스 국회의 회기는 단일회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1년에 두 차례의 정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나 의회활동일정구성상의 제약, 회의의 지나친 집중, 빈번한 심야회의, 두 정기회 사이의 정부통제곤란, 회기말 졸속입법 등의 이유로 1995년 헌법을 개정하여 단일회기제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회는 10월의 개회 가능한 첫째 날부터 다음 해 6월의 개회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정기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각 의회의 회기 일수는 정기회기중 1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기간은 각의회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회는 수상의 요구가 있거나 혹은 국민의회 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로 일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décret)에 의하여 소집되고 폐회된다. 수상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는 제한이 없으나 국민의회 의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회는 12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수상만이 폐회의 명령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1개월의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Constitution Art.28 al.1** : Le Parlement se réunit de plein droit en une session ordinaire qui commence le premier jour ouvrable d'octobre et prend fin le dernier jour ouvrable de juin.(헌법 제28조 제 1 항 : 의회는 매년 10월 개회 가능한 첫째 날로부터 다음 해 6월 개회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정기회를 갖는다.)

**Constitution Art.29 al.1** : Le Parlement est réuni en session extraordinaire à la demande du Premier Ministre ou de la majorité des membres composant l'Assemblée Nationale, sur

un ordre du jour déterminé.(헌법 제29조 제 1 항 : 국회는 일정한 의사일정에 관하여 수상 또는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갖는다.)

### ◇ Souveraineté 【 주권 】

주권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장 보댕(J. Bodin)이 1576년 공화국론(De la République)에서 국가주권(souveraineté de l'Etat)을 이야기 하였는데 여기서 주권은 국가의 독립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정립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반하여 국가 내에서의 주권(souveraineté dans l'Etat)은 국가의사결정에 최고의 힘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내에서의 주권은 일련의 권력, 예를 들면 화폐주조권, 경찰권, 입법권, 사법권, 외교권, 군대보유권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에서 주권이론은 18세기에 국민주권론(souveraineté nationale)과 인민주권론(souveraineté populaire)으로 대비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프랑스에서 인민주권론과 국민주권론이 상호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행 헌법 제 3 조 제 1 항이 “국민주권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인민은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La souveraineté nationale appartient au peuple qui l'exerce par ses représentants et par la voie du référendum.)”라고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Art.3 :** Le principe de toute Souveraineté réside essentiellement dans la Nation. Nul corps, nul individu ne peut exercer d'autorité qui n'en émane expressément.(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3 조 : 모든 주권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도 명백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Souveraineté nationale 【 국민주권 】

국민주권이론은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수대표제에서 그 이론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국민주권론에 의하면 주권의 주체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전체국민이다. 전체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책임지게 하는 대의제가 원칙이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재산과 요양이 있는 자들만으로 하는 제한선거를 채

택한다. 또한 국민의 권리가 아니 책무로서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위임의 법리에 따른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Art.3** : Le principe de toute Souveraineté réside essentiellement dans la Nation. Nul corps, nul individu ne peut exercer d'autorité qui n'en émane expressément.(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3조 : 모든 주권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도 명백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Souveraineté populaire 【인민주권】

장 자크 루소(J. J. Rousseau)가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에서 정립한 주권이론. 주권자로서 사회 구성원이 각자 자기의 몫만큼의 주권을 가진다고 본다. 인민주권론에 의하면 주권의 주체는 구체적인 개개인의 총합으로 본다. 선거는 보통선거이어야 하고 각 개인은 주권의 일부분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인민이 항상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주권은 불가양, 불가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가 이상이다. 직접민주제가 이상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인민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기속위임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Constitution du 24 juin 1793 Art.25** : La souveraineté réside dans le peuple; elle est une et indivisible, imprescriptible et inaliénable.(1793년 6월 24일 헌법 제25조 :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하나이고 불가분이며 항구적이며 불가양이다.)

### ◇ Spécialité (Principe de -) 【(권한배분상) 전문성원칙】

자연인과 공법상 혹은 사법상 법인을 구별하는 전문성원칙은 창설된 법인의 능력(capacité)이나 권한(compétence)이 미치는 대상과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행정조직법(지방분권)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의 기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권한조항주의와 대비된다. 전문성원칙은 공법인(혹은 사법인)을 자연인과 구별하는 기준인 동시에 동 원칙에 따라 공법상 법인의 권한 혹은 능력은 정해진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위가 제한된다. 국가는 전문성원칙의 예외가 되며 모든 분야에 걸쳐

간섭할 수 있으며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성원칙은 지방사무 (affaires locales)의 개념을 통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은 이론상 국가의 것과 구별되는 해당 공동체의 사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다만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Maastricht조약 반대표를 던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책자유인물의 제작과 배포에 관한 결정은 데파르트망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C.E. 25 avril 1994,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du Territoire de Belfort, Rec.190).

영조물법인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목적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데 이와 관련해서 기능적 분권(décentralisation fonctionnel)이라고도 한다. 지방분권과는 달리 지역적 기반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반적 권한조항과는 달리 법률에 의해 매우 제한된다. 프랑스 지방분권법(1983년 법률)은 전문성원칙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열거하는(그러나 권한사항 모두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른바 ‘권한블럭(bloc des compétences)’ 기법을 통한 지방과 중앙간의 권한 배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권한블럭을 통한 배분은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권한의 카테고리에 속한 사무는 이들에게는 독점적이며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블럭이 아니거나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함께 가진다.

### ◇ Substitution d'action 【대집행처분】

행정상 후견의 내용으로서 상급기관의 대집행(substitution)은 하위의 분권화된 기관의 부작위의 경우에 행사 될 수 있다. 대집행의 실행은 분권화된 기관의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다(R. Chapus). 후견적 감독기관이 대집행을 하는 경우 감독기관이 취한 조치는 분권화된 기관의 명의로 취해진 것처럼 간주된다. 제 3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아니라 피후견기관이 그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 통합법전(CGCT: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의 L. 2131-5는 코뮌의 단체장(maire)이 국가공무원으로 행위 하는 경우에는 국가대표(프레페)는 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GCT Art. L. 2131-5 :**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L. 2131-1 à L. 2131-4 ne font pas obstacle à l'exercice,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du pouvoir de substitution qu'il tient, notamment en matière de police, des articles L. 2215-1 et L. 2215-5, ni à celui de son pouvoir hiérarchique sur les actes du maire lorsque celui-ci, en

application des articles L. 2122-27 et L. 2122-34, agit comme agent de l'Etat dans la commune.(지방자치단체통합법전 법률편 제2131-5조 : 코뮌의 시장이 제L.2122/-27조와 제L.2122-34조에 따라 코뮌의 국가공무원으로 행위하는 경우 제L.2131-1조 내지 제L.2131-4조에 규정된 조치는 데파르트망의 국가대표가 가진 시장의 행위에 대한 위계적 통제권이 아닌 L.2215-1 와 L.2221-5에 규정된 경찰분야의 대집행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Tutelle

### ◇ Supranationalité 【 초국가성 】

유럽이 통합되어 유럽연합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연방국가라고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가연합으로 보기에는 결속력이 강한 새로운 형태의 단체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성격을 부여하는 용어가 초국가성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 국가가 외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과의 관계속에서 국내문제도 영향을 받고 국내문제가 또한 외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외국과의 관계속에서 국제조약에 의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차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비하여 현재까지 더욱 더 많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서 초국가적 조직을 통하여 국가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국제조약을 통하여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조직은 대개의 경우 회원국들의 대표들의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심의기구를 만들며 공동법원 등을 조직하게 된다.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은 대개의 경우 몇몇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들은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규범을 제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대개의 경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장일치를 요구한다던가 혹은 가중다수결을 요구하고 있다.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 경우에 회원국 대표가 반대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국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결정을 수용하게 된다. 결국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이 제정한 규범이나 결정은 회원국의 규범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은 일방적으로 회원국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인 국가적 성격 혹은 연방국가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의 정책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은 회원국들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은 초국가적 조직의 규범에 종속되는 것이고 국내규범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제정·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은 국가연합보다는 더 강력한 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이 단일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연합은 제도화 되어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한 규범제정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을 연방국가로 볼 수도 없다. 이는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이 국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에서 대표기구를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구가 연방국가에서의 의회와 동일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은 국가연합보다는 더 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연방국가보다는 결속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은 연방국가의 사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이 연방국가로 나아갈지 아니면 초국가성을 가지는 조직으로 남을지는 회원국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성의 문제도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기존의 단일국가·연방국가 혹은 국가연합에 의하여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 ◇ Sursis à exécution 【집행정지】

프랑스 행정소송상의 가구제절차(긴급심리인 *référé*와 함께 집행정지인 *sursis à exécution* 제도가 있다)로서 행정법원의 판사는 주된 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집행정지제도는 Huglo 판결(C.E. Ass. 2 juillet 1982, Rec. p.257) 이래로 공법상 기본원칙이 된 행정결정의 집행성(*caractère exécutoire*) 원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그리고 행정결정의 집행정지는 집행성을 가진 결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행정소송의 제소시에 자동적으로 집행정지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정지의 신청을 위해서는 ①본안의 승소가능성이 농후해

야하고(existence d'un moyens sérieux) ②취소청구된 결정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결과라는 엄격한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집행정지가 빈번하게 인용되지는 않았는데, 1982년 지방분권 법률에서는 국가대표인 프레페가 프레페제소절차(□□ Déféré préfectoral) 를 통해 이들 국가대표에게 이송되는 동시에 집행적 효력(exécution de plein de droit)를 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doute sérieux)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입법자는 집행정지의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결정집행의 가(假)집행정지(suspension provisoire d'exécution)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프레페제소절차의 집행정지의 신청은 공공계약(marchés publics)과 공공서비스위탁(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의 경우 자동적인 임시집행정지 효과를 부여하였고(1995년 2월 4일 법률) 1995년 2월 8일 법률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규정하였다. 헌법위원회는 경쟁위원회 판결에서 다툼이된 행정결정의 집행정지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정지신청(권)은 (……) 방어권의 본질적 보장이라고 판시하였다(C.C. 87-224 DC 23 janvier 1987, Conseil de la concurrence, Rec. p.8).

### ◇ Suspension 【 정지 】

조약의 정지라 함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약의 효력이 중단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조약 규정 자체에 의하여, 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방 당사국의 조약 위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정변경도 조약의 정지를 위하여 원용될 수 있다. 한편, 후발적 이행불능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 경우 조약의 정지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 T ]

## ◇ Taxe 【요금, 세(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영조물법인이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서 구속적 방법에 의한 금전의 징수(prélèvement monétaire)를 말한다. 사용료(□□ Redevance)와는 달리 요금액(montant de la taxe)은 서비스의 비용이 아니다. 세금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지만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는 조세(impôt)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재정이 taxe나 조세수입(recette fiscale)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성격이 행정적 공공서비스로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C.E. Ass. 16 novembre 1956, Union syndicat des industries aeronautiques, Rec. p.434). 수로(les voies fluviales)를 이용한 운항과 같은 공공재산의 사용은 사용료의 지불(paiement d'une taxe)에 해당한다.

## ◇ Témoin 【참고인, 증인】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자로서 법정에서 출석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사람을 뜻한다. 증인은 자신에게 고지된 출석요구에 응해야하며 판사의 질문에 애매하거나 일부러 누락함이 없이 정확히 대답해야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자신이 진술하는 사실과 주장이 자신이 현존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 증인은 자신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상황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거짓진술이 경우에 증인은 위증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이 용어는 참고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사법경찰관은 범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사료되는 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진술조서(procès-verbal d'audition)를 작성하며 조사에 엄격히 필요한 시간동안 참고인을 경찰관서에 인치시킬 수 있다. 참고인이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지방법원 검사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는 선서와 진술의무가 없다. 반면에 예심단계에서는 참고인은 수사판사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며 거짓진술을 한 경우에 무고죄로 소추될 수 있다. 이 용어와 ‘témoin assisté’(보조참고인 또는 준예심대상자)은 구별해야 한다. 보조참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 지명되었으나 수사판사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 않아 예심대상자로 지정하지 않고 반면에 방어권의 보장측면에서 예심대상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 준예심대상자를 말한다. 수사판사와 달리 사법경찰관은 보조참고인을 신문할 수 없다.

**CPP Art. 105** :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existe des indices graves et concordants d'avoir participé aux faits dont le juge d'instruction est saisi ne peuvent être entendues comme témoins.(형사소송법 제105조 : 수사관사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에 참여하였다는 중대하고도 일치하는 징표가 존재하는 자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

### ◇ **Traité** 【 조약 】

traité라 함은 영어의 treaty에 상응하는 표현인 바, 우리말로 ‘조약’으로 번역된다. 좁은 의미의 traité는 그러한 제목이 부여된 문건만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 traité라 함은 traité라는 제목의 문건을 포함하여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모든 합의를 지칭한다. 조약 법협약에서는 traité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동 협약 제2조 제1항 (a)에서는, traité라는 표현은 “하나의 문건에 포함되어 있든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문건에 포함되어 있든, 그리고 그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가 간에 서면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들은 그 명칭에 따라, 헌장(charte), 협약(convention), 협정(accord), 의정서(protocol), 규약(pacte) 등으로 구분되나, 이들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한 구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 ◇ **Travaux publics** 【 공공(토목)공사 】

공공 토목공사는 공화력 8년 우월(雨月 · pluviôse) 28일 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행정 법상 일정한 독자성을 가지면서 발전해온 법제상 개념이다. 공동(공)의 요구에 필요한 대형 공작물인 철도나 도로 및 고속도로, 항구와 비행장의 건설은 공공 (토목)공사에 관한 법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공(토목)공사는 ①외부적인 작업으로서 도로건설, 노후한 원자로의 철거, 토지 개발과 정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공적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토목)공사는 작업활동이므로 그 결과인 공공시설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양 개념이 필연적으로 기속되어 있지는 않으며 공공(토목)공사가 공공 시설물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철거의 경우), 사전의 공공(토목)공사 없이도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사인이 건축한 건물의 매입). 그렇지만 공공(토목)공사나 공공시설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 적용되는 법제는 동일한데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일정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제소와 관련하여 사전적인 행정결정원칙이 필요 없고 2월의 청구기간 내에 제소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인정된다. 그리고 양자의 손해배상의 경우 모두 공공(토목)공사로 인한 피해(dommages de travaux publics)로서 행정상 손해배상의 특칙이 적용된다.

### ◇ Tribunal administratif 【(1심) 행정법원】

프랑스는 일반 사법재판질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행정재판질서가 존재하는 2원적 재판국가이다.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1심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은 1953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36개(본토에 28개)가 설치되어 있다. 종래 행정사건에 대한 분쟁은 공화력 7년 우월(pluviôse) 28일 법률에 설치되었던 프레팩투르 자문위원회(Conseils de préfecture)에서 담당하였는데, 이를 대폭 개편하면서 계승하였다. 행정법원은 각 부의 부장과 판사(Conseillers)로 구성된다. 이들은 논고담당관(rapporteur)이나 정부위원인 조사관(commissaire du gouvernement)의 직을 수행한다. 행정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에 의한다. 재판업무 외에도 행정법원은 자문의 명칭으로 소속관할의 프레페가 제기한 질의에 대한 의견서를 내놓을 수 있다.

### ◇ Tribunal correctionnel 【경죄법원】

경죄법원은 주로 지방법원 검사장 또는 피해자에 의한 직접소환(citation directe) 또는 수사판사에 의한 이송명령(ordonnance de renvoi)으로 재판을 제기받는다. 또한 7년을 초과하지 않는 1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현행범 또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2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비현행범에 대하여 지방법원 검사장에 의해 즉시 출석재판(comparution immédiate)을 제기 받는다.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약속(rendez-vous judiciaire)에 의하여 재판을 제기받을 수 있다. 경죄법원은 절도, 사기, 횡령, 중상해 등의 경죄를 재판한다. 경죄법원은 10년 이하의 금고형(emprisonnement)(누범의 경우 20년)(공익노무, 단순집행유예, 등), 벌금, 직업활동의 금지와 같은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죄법원의 판결은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법원 경죄부에 제기된다. 경죄법원은 실제로는 지방법원의 한 부로서 통상적으로 법원서기의 보조를 받는 3명의 직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심판하며 이들 중 한명이 재판장이 된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전에 열거된 일정한 경죄들은 단독판사로 구성된 경죄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즉시출석재판(*comparution immédiate*)에 있어서 경죄법원은 항상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심판한다. 경죄법원에서 공소관은 지방법원 검사장 또는 그의 소속검사에 의해 대표되며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Citation directe,  Comparution immédiate,  Délit

### ◇ Tribunal de police 【경찰법원】

형사법원 중의 하나로서 중죄, 경죄, 위경죄 중 가장 가벼운 범죄인 위경죄를 재판한다. 예를 들어 야간소란, 무면허 수렵, 무면허 운전, 경미한 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범죄들은 최고 1,500유로(누범인 경우 3,000유로)의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 투표의 금지, 직업활동의 금지 등과 같은 자격박탈 또는 제한(*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 가벼운 범죄들에 대하여는 공판(*audience*)없이 서면에 의한 재판이 이뤄지는 약식명령(*ordonnance pénale*)이 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위경죄에 대하여는 항소(*appel*)가 불가능하며 경찰법원은 최종심으로 판결한다. 경찰법원은 지원(*Tribunal d'Instance*)에 설치되며 법원서기(*greffier*)의 보조를 받는 단독판사로 구성된다. 법률의 적용과 형벌을 청구하는 공소관은 위경죄 5급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검사장 또는 소속검사가 나머지 위경죄에 대하여는 국립경찰의 경정급 간부에 의해 대표된다.

Contravention

### ◇ Tribunal des conflits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2원적 재판질서의 산물로서 조정적 재판(*jurisdiction arbitrale*)이라고 한다. 법무부장관(*le Garde des Sceaux*)이 주재하며 3년 임기로 각 최고법원에서 선출되는 3인의 국사원(*Conseil d'Etat*) 소속 위원(*conseiller*), 3인의 파기원(*Cour de Cassation*) 소속 위원과 그리고 추가적인 2인의 위원(관례적으로 국사원과 파기원에서 1인씩 선출된다)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이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관할법원은 국사원과 파기원 위에 존재하는 최고법원이 아니다. *Conseil*

d'Etat 와 Cour de cassation은 각각 서로 구별되는 2원적 재판질서의 최고법원으로서 존재하며 이들 두 최고 법원은 종종 관할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예로서 공공서비스의 카테고리로서 사회적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관할법원이 제시한 바 있는데(Naliato 판결, 1955년) 국사원은 사회적 공공서비스라는 카테고리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었고 결국 1983년의 Gambini 판결에서 관할법원은 사회적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포기하였다.

### ◇ Trouble mentale 【정신장애】

나폴레옹의 구형법전 제64조는 “피고인이 행위시점에 심신상실(démences) 상태인 때에는 중죄도 경죄도 없다.”고 규정하였음에 반하여 현행 형법전은 완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별 또는 통제를 상실케 하는 것과 그것을 약화시킨 데 그치는 정신질환과 신경정신질환을 구분하고 있다. 우선 정신질환과 신경정신질환은 그것의 원인 또는 표출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정신병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정신능력의 발달부재, 정신착란, 간질, 정신분열, 편집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와 유사한 강박상태, 몽유상태, 마약 또는 알콜중독 등의 개념들과 구별된다. 정신질환 또는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입증은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수단에 의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예심단계에서부터 감정이 요구된다. 감정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인은 범인의 정신병이 무엇인지, 그것이 치료가 가능한지, 위험성이 있는지, 형벌에 접근가능한지를 밝혀내야 한다. 감정인은 형사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할 뿐이다. 판사는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정신질환 또는 신경정신질환의 효과에 대하여는 형법전 제122-1조가 두 가지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장애의 경우 그것이 행위시에 존재하였으며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는 조건하에서 형사책임이 조각된다. 이 경우 행위자는 형사소송의 각 단계별로 불기소, 혐의없음, 무죄의 처분 또는 판결을 받게 된다. 사법기관으로부터 벗어나더라도 행정기관은 1990년 6월 27일의 『정신장애로인한입원자의권리와 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개입을 하게 된다. 즉 도지사는 치료시설에 강제입원토록 명령할 수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없거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 때에는 행위자는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판사는 형벌과 집행방식에 대하여 선고를 할 때 행위자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신

장애로 인한 모든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CP Art. 122-1** :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était atteinte, au moment des faits, d'un trouble psychique ou neuropsychique ayant aboli son discernement ou le contrôle de ses actes.(**형법전 제122-1조** : 행위사실의 순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별(discernement) 또는 통제를 상실케 한 정신질환(trouble psychique) 또는 신경정신질환(trouble neuropsychique)에 걸린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행위사실의 순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별을 약화시키거나 통제를 방해한 정신질환 또는 신경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형과 그 집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

### ◇ Tutelle 【 행정상 후견 】

행정법에서 후견은 분권의 내용으로서 중앙권력이 적법성을 보장하고 지방이익과 개별이익에 대해 국가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든 영조물법인이든 국가와는 다른 공법인에 대해 행하는 통제의 유형으로 이해된다. 지방분권(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과 관련하여 헌법 제72조 제 6 항에 규정된 행정적 통제(contrôle administratif)는 학설이 말하는 후견적 감독을 뜻한다. 후견적 통제는 통제권을 가진 기관이 행정작용의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후견(後見)이라는 용어사용에 있어 공법상 후견적 감독은 민법상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을 갖지 않는다. 행정상 후견은 피후견 지위에 있는 분권화된 기관보다는 후견기관의 이익, 다시 말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 행정상 후견의 실행은 3가지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S. Regourd). 우선 후견적 감독기관의 우선적 절차로서 승인과 취소가 있고, 유사하거나 부속적인 허가와 정지, 그리고 행위의 대집행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후견적 감독권의 실행에 속하는 조치들은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후견기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승인·취소·대집행의 경우와 프레페(préfet)가 행정법원의 판사에게 제소하는 경우와 같이 통제권을 가지는 타 기관에 제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R. Chapus). 행정상의 후견은 명문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Décentralisation,   Substitution d'action

[ U ]

## ◇ Utilisation du domaine public 【 공공재산의 사용 】

공공재산(domaine public)은 공용개시(affectation)에 부합하는 사용(utilisation)과 보전(conservation)의 대상이 된다. 공공서비스에 제공된 공공재산(les dependances dominales)의 공용사용은 다음 2가지로 구별된다. 우리 법제상의 일반사용과 비교되는 공동사용(utilisation collective)의 경우 보행자나 자동차운전자의 공로사용과 같이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유형의 이용자들의 사용을 말한다. 우리 법제상의 공물의 특허사용과 유사한 사용(私用, utilisation privative)의 경우 행정청이 부여한 특정한 재산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가 허용된 제한된 사람들의 이용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허가 또는 (특허)계약을 전제로 하며 일방적 취소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précaire et révocable) 사용료의 지급(versement d'une redevance)이 발생한다.

## ◇ Utilité publique 【 공익성, 공공의 필요 】

공익성은 공용수용(expropriation)이나 행정지역(地役 · servitudes)의 결과인 소유권의 상실이나 제한을 허가하는 기초를 제공한 공공(토목)공사나 공익목적의 수용에 관한 공익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당화하는 목적은 인권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7조에서 공공의 필요(nécessité publique)에 의한 소유권의 박탈을 인정하는 것에서 발전되어 왔다. 현재는 이러한 용어상의 변천은 공공의 필요와 공익(용)성은 동의어로 평가된다. 19세기 중반에는 공공재산의 구성(constitution du domain public)이나 공공시설(ouvrage publics)의 건설의 경우에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의 필요와 공익성이 인정되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공공서비스 개념이 등장하여 공공서비스의 요구를 위해 결정된 활동(opérations)이나 개발(aménagement)은 공익성을 인정하였다. 그 후 수많은 실정법에서 다양해진 공익성의 기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위생, 도시개발, 주택개발, 자연자원의 보호, 환경보호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1995년 2월 2일 법률은 국가가 천재지변(catastrophes naturelles)의 줄이기 위한 수용의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정도 과잉(quelque peu superflue)이라 할 수 있는 공익(용)성에 관한 법률규정의 증가와 비

례하여 행정법원의 판례도 공익과 사익간 구별이 약화되고 평가의 범위를 넓고 있다. 공용수용과 관련해 국사원은 사건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인정하고 있다(C.E., 15 mars 1968, Commune de Cassis, Rec. p.189).

Expropriation   Intérêt général

[ V ]

## ◇ Valise diplomatique 【 외교행랑 】

외교문서 및 외교 관련 물품을 수발하는 행랑을 가리킨다. 이 행랑은 불가침이며, 개봉되거나 유치될 수 없다. 그러나 그 같은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식별가능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 Vice de forme 【 형식의 흠 】

일방적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의 외부적 적법성(légalité externe: ①무권한, ②절차의 흠, ③형식의 하자)에 위법함(illégalité)이 있는 경우로서 서명(signature de l'acte)이나 부서(contresigne) 의무사항의 고지(mentions obligatoire)나 행정결정의 이유/동기(motivation)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예견된 형식을 생략하거나 불법으로 형식을 구비하는 경우 형식의 흠이 있다고 한다. 한편 행정행위의 이유부기에 관한 1979년 7월 11일 법률은 ①기본권제한, 처벌적 제재, 허가거부와 같은 개별적인 결정이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경우, ②법률과 명령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규정의 예외규정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가능한 개별적인 결정의 이유부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명문으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법적 및 사실상의 이유의 기술(énoncé des considérations)을 담고 있어야 한다.

형식의 흠은 무권한(incompétence), 법률위반(violation de la loi), 권한남용(détournement de pouvoir)과 함께 대표적인 월권소송의 취소사유이다. 형식의 흠은 치유가 가능한데 형식의 사후적 구비나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긴급상황이나 예외적 상황의 경우에는 형식의 하자는 면책사유가 되며 형식적 하자의 원인제공이 사인에게 있는 경우(예: 주소를 밝히지 않아서 통지를 못한 경우)에도 형식의 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이유부기가 면제된다).

## ◇ Voie de fait 【 폭력행위, 공권력주체의 기본권 침해행위 】

일정한 행정활동이 개인의 소유권이나 기본권 침해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서 도저히 이를 행정의 활동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작용은

행정행위라는 특징을 상실하며(dénature l'acte administratif),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구제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사법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행정이 실질적 집행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 혹은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행정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법원의 판사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는 물론 금전배상명령과 원상회복(restitution), 철거(expulsion), 철거(destructions)를 명할 수 있다.

[ Z ]

## ◇ Zone 【 심해저 】

해양법협약에서는 심해저를 가리키기 위하여 ‘Zone’(영어본에서는 ‘Are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협약은 제 1 조에서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기를, ‘Zone’이란 함은 “국가관할권 밖의 해저와 그 하층토”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하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저 및 그 하층토를 우리말로 ‘심해저’라고 한다.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협약 제136조), 여하한 국가도 이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협약 제137조). 협약은 이러한 심해저의 개발활동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40조), 심해저의 공동 관리를 위하여 협약에 의하여 국제해저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해양법협약 제 11부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로 1990년대 초까지도 해양기술선진국들의 협약 비준이 극도로 저조하였다. 이에 선진국들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심해저 관련 규정들을 상당 부분 수정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994년 『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현재 해양법협약과 함께 발효 중이며, 이에 따라 제11부의 심해저 관련 규정들이 수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1, par.1, (1) :** On entend par “Zone” les fonds marins et leur sous-sol au-delà des limites de la juridiction nationale.(해양법협약 제 1 조 제 1 항 (1) : ‘심해저’라 함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가리킨다.)

## ◇ Zone contiguë 【 접속수역 】

영해에 인접한 일정 범위의 수역으로서, 영토 또는 영해 상에서 출입국, 위생 등에 관한 연안국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고 영토 또는 영해 상에서 이들 법령의 위반 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해양법협약에서는 접속수역의 범위를 영해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 Zone économique exclusive 【 배타적 경제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에 인접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배타적 자원 관할권이 인정되는 공간이다. 이 수역에서 연안국들은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 인공섬 및 기타 구조물 설치의 권리, 해양과학조사의 권리,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권리를 가진다. 연안국은 경제수역 내에서의 전체 허용어획량을 결정하며, 그 잉여분이 있는 경우 동일 지역 내의 무연안국, 지리적 불리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해당 수역에서 관습적으로 어로 활동을 하여 왔거나 이 수역에서의 어족 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하여 온 국가들에게 입어를 허용한다.(협약 제62조) 이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이 배타적 자원 관할권을 가지나, 이같은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제3국들은 공해자유를 향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약 제58조는, 모든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 등을 향유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해와 관련된 협약 규정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규정들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수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57 :** La zone économique exclusive ne s'étend pas au-delà de 200 milles marins des lignes de base à partir desquelles est mesurée la largeur de la mer territoriale.(해양법협약 제57조 :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함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용어 색인

[ A ]

◇ Abrogation 【철회/폐지】 .....	5
◇ Absence de cause 【원인의 흠결】 .....	5
◇ Abus 【남용】 .....	6
◇ Abus de droit 【권리의 남용】 .....	6
◇ Abusus 【처분권】 .....	7
◇ Acceptation 【승낙, 승인】 .....	7
◇ Accession 【(조약에의) 가입】 .....	8
◇ Accord 【합의】 .....	8
◇ Accréditation 【(외교사절의) 파견】 .....	9
◇ Acquittance 【(중죄법원의) 무죄선고】 .....	9
◇ Acte administratif 【행정 행위】 .....	10
◇ Acte de gouvernement 【통치 행위, 정부 행위】 .....	10
◇ Acte réglementaire 【명령】 .....	11
◇ Acte unilatéral 【일방적 행위】 .....	12
◇ Acte 【행위, 증서】 .....	12
◇ Action civile 【사소(私訴)】 .....	14
◇ Action oblique 【채권자대위권】 .....	15
◇ Action paulienne 【채권자취소권】 .....	16
◇ Action populaire 【민중소송】 .....	17
◇ Action publique 【공소(公訴)】 .....	18
◇ Action 【소권, 청구권, 주식】 .....	18
◇ Adhésion 【(조약에의) 가입】 .....	20
◇ Adoption (du texte) 【(조약문의) 채택】 .....	20
◇ Adoption plénière 【완전입양】 .....	21
◇ Adoption simple 【단순입양】 .....	22
◇ Adoption 【입양, 채용】 .....	22

◇ Affaires intérieures 【국내문제】	23
◇ Agent diplomatique 【외교관】	23
◇ Agent public 【(넓은 의미의) 공무원】	23
◇ Agression 【침략】	24
◇ Aide juridique 【법률구조(法律救助)】	24
◇ Ambassadeur 【대사(大使)】	25
◇ Amende 【벌금】	25
◇ Amnistie 【일반사면】	26
◇ Annulation 【취소, 무효선고】	26
◇ Apatride 【무국적자】	27
◇ Apparence 【외관, 表見】	27
◇ Appauvrissement 【손실】	28
◇ Appel 【상소, 항소, 항고】	29
◇ Appel d'offre 【입찰공고, 경쟁입찰계약】	30
◇ Application à titre provisoire 【(조약의) 잠정적용】	30
◇ Apprentissage 【건설】	31
◇ Approbation 【승인】	32
◇ Archipel 【군도(群島)】	32
◇ Arrêté 【아레테】	32
◇ Arrhes 【계약금】	33
◇ Arrondissement 【구(區)】	33
◇ Asile diplomatique 【외교적 비호】	34
◇ Asile territorial 【영토적 비호(庇護)】	35
◇ Assemblée nationale 【국민의회, 하원】	35
◇ Assistance (bénévole) 【부조, 구조, 조력, 협력행위】	36
◇ Association 【단체계약, 비영리사단】	37
◇ Assurance 【보험】	37
◇ Astreinte 【이행강제금】	39
◇ Atténuation de la peine 【형의 감경】	40

◇ Audition 【심문(審問), 진술청취】 .....	40
◇ Auteur 【행위자, 본인】 .....	41
◇ Autonomie de la volonté 【사적자치, 의사자치】 .....	42
◇ Auto-protection 【자구(自救)】 .....	43
◇ Autorité de la chose jugée 【기판력, 기결력】 .....	43
◇ Aveu 【자백】 .....	43
◇ Avis consultatif 【권고적 의견】 .....	44
◇ Ayant cause à titre particulier 【특정승계인】 .....	44
◇ Ayant cause à titre universel 【포괄승계인】 .....	45

[ B ]

◇ Baie 【만(灣)】 .....	49
◇ Baie historique 【역사적 만(歷史的 灣)】 .....	49
◇ Bail 【임대차】 .....	50
◇ Bénéfice 【특권, 이익】 .....	50
◇ Bicamérisme 【양원제】 .....	51
◇ Bien 【재산】 .....	52
◇ Blanco 【블랑끄판결】 .....	52
◇ Bloc de constitutionnalité 【합헌성 블록】 .....	53
◇ Bonne foi 【선의, 신의칙】 .....	53
◇ Bonnes mœurs 【선량한 풍속】 .....	54
◇ Bons offices 【주선(周旋)】 .....	55
◇ Brevet d'invention 【특허권】 .....	55

[ C ]

◇ Caducité 【실효】 .....	59
◇ Capacité 【능력】 .....	60
◇ Capital 【원본, 자본】 .....	60

◇ Cas fortuit 【우연한 사건, 사고】 .....	61
◇ Cas 【사건, 사태, 사례】 .....	62
◇ Casier judiciaire 【범죄경력서, 범죄기록보관소】 .....	63
◇ Causalité 【인과관계】 .....	63
◇ Cause étrangère 【외(부)적 원인, 요인】 .....	64
◇ Cause 【원인】 .....	65
◇ Caution 【보증인, 담보】 .....	67
◇ Cautionnement 【보증(계약), 보증채무, 보증금】 .....	68
◇ Centralisation 【집권】 .....	68
◇ Cession 【양도】 .....	69
◇ Chambre de l'instruction 【항소법원 수사부】 .....	70
◇ Changement fondamental de circonstances 【사정의 근본적 변경】 .....	70
◇ Charge 【부담, 직무, 증거방법】 .....	71
◇ Chef d'Etat 【국가원수】 .....	72
◇ Chef de mission (diplomatique) 【외교공관장】 .....	73
◇ Chef de poste consulaire 【영사공관장】 .....	73
◇ Chose 【물건, 사항】 .....	73
◇ Circonscription électorale 【선거구】 .....	74
◇ Circonstances aggravantes 【가중사유】 .....	75
◇ Circonstances atténuantes 【감경사유】 .....	75
◇ Circonstances excluant l'illicéité 【위법성조각사유】 .....	75
◇ Circulaire 【시클레르, 훈령】 .....	76
◇ Citation directe 【직접소환】 .....	77
◇ Classement sans suite 【불기소】 .....	77
◇ Clause exorbitant du droit commun 【예외조항, 일탈조항】 .....	78
◇ Clause pénale 【위약금조항, 위약금약정】 .....	79
◇ Clause 【약관, 조항】 .....	80
◇ Code 【법전】 .....	81
◇ Cohabitation 【동거정부, 동거·공동생활】 .....	82

◇ Commetant 【사용자, 위임자】 .....	83
◇ Commission mixte paritaire 【양원합동위원회】 .....	84
◇ Commission rogatoire 【수사촉탁(위임)】 .....	85
◇ Commune 【코뮌, 기초자치단체】 .....	85
◇ Comparution immédiate 【즉시출석】 .....	86
◇ Compensation 【상계, 보상, 배상】 .....	87
◇ Compétence liée 【기속권한】 .....	89
◇ Composition pénale 【형사배상】 .....	89
◇ Compromis 【타협협정】 .....	90
◇ Concession 【공익사업의 특허계약】 .....	90
◇ Condamnation 【유죄판결】 .....	91
◇ Condition résolutoire 【해제조건】 .....	92
◇ Condition suspensive 【정지조건】 .....	92
◇ Condition 【요건, 조건】 .....	93
◇ Conditions casuelle, potestative, mixte, etc. 【우성조건, 수의조건, 혼성조건 등】 .....	94
◇ Conflit positif/négatif 【적극적/소극적 관할분쟁】 .....	96
◇ Confrontation 【대질】 .....	97
◇ Confusion 【혼동, 경합】 .....	97
◇ 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헌법평의회, 헌법위원회, 헌법원】 .....	98
◇ Conseil d'Etat 【국사원, 국참사원, 최고행정법원】 .....	99
◇ Conseil de famille 【친족회】 .....	100
◇ Conseil des ministres 【국무회의】 .....	101
◇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경제사회위원회】 .....	102
◇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고등사법위원회, 고등사법평의회, 최고사법관회의】 .....	102
◇ Consentement à être lié par un traité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	103
◇ Consignation 【공탁, 인도】 .....	103
◇ Continuité (principe de -)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원칙】 .....	104
◇ Constitution 【헌법, 헌법전】 .....	105

◇ Constitution rigide 【경성헌법】 .....	105
◇ Constitution souple 【연성헌법】 .....	105
◇ Constitutionnalisme 【입헌주의】 .....	106
◇ Consuls de carrière 【직업영사】 .....	106
◇ Consuls honoraires 【명예영사】 .....	106
◇ Continuité de la nationalité 【국적의 계속】 .....	107
◇ Contradictoire (principe du -) 【대심(對審)주의, 대심판결】 .....	107
◇ Contrainte 【강요(강제)】 .....	108
◇ Contrainte judiciaire 【사법강제】 .....	108
◇ Contrainte par corps 【노역장유치】 .....	108
◇ Contrat d'adhésion 【부합계약】 .....	109
◇ Contrat 【계약(서)】 .....	110
◇ Contrats aléatoires 【사행계약】 .....	111
◇ Contrats commutatif 【등가교환계약】 .....	113
◇ Contravention 【위경죄】 .....	113
◇ Contre-mesures 【대응조치】 .....	114
◇ Contreseing 【부서】 .....	114
◇ Contrôle d'identité 【신원통제, 불심검문】 .....	115
◇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합헌성 통제, 위헌심사】 .....	116
◇ Contrôle judiciaire 【사법통제】 .....	116
◇ Contrôle(pouvoir) hiérarchique 【위계적 통제】 .....	116
◇ Convention fermée 【폐쇄조약】 .....	117
◇ Convention ouverte 【개방조약】 .....	117
◇ Copropriété 【공동소유】 .....	118
◇ Corruption 【부패】 .....	119
◇ Cour d'appel 【항소법원】 .....	119
◇ Cour d'assises 【중죄법원】 .....	120
◇ Cour de cassation 【과기원, 민사대법원】 .....	120
◇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공화국재판소】 .....	121

◇ Courrier diplomatique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	122
◇ Coutume bilatérale 【양자적 관습】	122
◇ Coutume 【관습(법)】	122
◇ Créance 【채권, 신용, 신임】	123
◇ Crime 【중죄】	124
◇ Crime internationale 【국제범죄】	125
◇ Culpabilité 【유죄성, 죄책성】	125
◇ Cummul de responsabilité 【배상책임의 경합】	126
◇ Cumul 【겸임, 겸직, 병합, 경합, 복수성】	126

[ D ]

◇ Damnum emergens 【현실적 손해, 적극적 손해】	131
◇ Décentralisation 【분권】	131
◇ Décision exécutoire 【집행결정】	132
◇ Décision implicite 【묵시적 결정】	132
◇ Décision préalable 【사전결정】	133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1789년 인권선언】	134
◇ Déclassement 【비법률화, 탈법률화】	135
◇ Déconcentration 【(행정조직의) 분산(分散)】	135
◇ Décret 【테크레, 명령】	135
◇ Dédoublment fonctionnel 【중복적 기능, 모자창(double casquette)이론, 코핀의 단체장의 2중적 지위】	136
◇ Délégué préfectoral 【프레페제소】	137
◇ Délai 【기간, 기일, 기한】	137
◇ Délégation 【비법률화, 탈법률화】	138
◇ Délégation de compétence 【권한의 위임】	139
◇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공공서비스의 위임(탁)】	139
◇ Délégation 【위임, 위양, 수권, 전이, 전부】	140

◇ Délit 【경죄】 .....	142
◇ Dénie de justice 【재판의 거부】 .....	142
◇ Dépositaires des traités 【수탁자(受託者)】 .....	142
◇ Dépôt 【임치(물), 임치장소】 .....	143
◇ Député 【국민의회의원】 .....	144
◇ Détention provisoire 【구속】 .....	145
◇ Détention 【점유, 소지】 .....	145
◇ Devoir de conseil 【보좌의무, 조언(조력, 설명)의무】 .....	146
◇ Diplomates 【외교관】 .....	148
◇ Directive 【재량준칙】 .....	148
◇ Discrimination à rebours 【역차별】 .....	149
◇ Discrimination positive 【적극적 차별】 .....	150
◇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의회해산, 국회해산, 국민의회해산】 .....	151
◇ Divisibilité 【(조약 규정들의) 가분성】 .....	152
◇ Dol 【(조약체결에 있어서의) 사기, 사취 · 사기 · 고의】 .....	153
◇ Domaine public 【공공재산】 .....	154
◇ Dommage 【손해】 .....	155
◇ Donation 【증여】 .....	156
◇ Double nationalité 【이중국적】 .....	157
◇ Droit à la sûreté 【신체의 자유, 안전권】 .....	157
◇ Droit à la vie 【생명권】 .....	158
◇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59
◇ Droit constitutionnel 【헌법】 .....	160
◇ Droit de l'homme 【인권】 .....	160
◇ Droit de la guerre 【전쟁법】 .....	160
◇ Droit de pétition 【청원권】 .....	160
◇ Droit de poursuite 【추적권】 .....	161
◇ Droit de propriété 【재산권, 소유권】 .....	161

◇ Droit des peuples à(de) disposer d'eux-mêmes 【민족자결권】	163
◇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국제인도법】	163
◇ Droit parlementaire 【국회법, 의회법】	164
◇ Droit 【법, 권리, 법학, 세금, 수수료】	164
◇ Droits fondamentaux 【기본권】	165

[ E ]

◇ Eaux archipélagiques 【군도수역】	169
◇ Eaux intérieures 【내수(內水)】	169
◇ Egalité 【평등】	169
◇ Election présidentielle 【대통령 선거】	172
◇ Emprisonnement 【금고】	173
◇ Enfant 【자, 아동, 미성년자】	173
◇ Enquête de flagrance 【현행범수사】	174
◇ Enquête préliminaire 【예비수사】	175
◇ Enregistrement 【(조약의) 등록】	176
◇ Enrichissement sans cause 【부당이득】	176
◇ Enrichissement 【이득】	178
◇ Entrée en vigueur 【조약의 발효】	179
◇ Envoyé 【공사(公使)】	179
◇ Epuisement des voies de recours internes 【국내적 구제 완료】	179
◇ Équivalent (réparation par -) 【등가배상; 금전배상】	180
◇ Erreur 【착오】	180
◇ Erreur de droit 【법률의 착오】	182
◇ Erreur de fait 【사실의 착오】	182
◇ Erreur indifférente 【고려되지 않는(무관한) 착오】	183
◇ Erreur sur la personne 【사람에 대한 착오】	183
◇ Erreur sur la substance 【본질에 대한 착오】	184

◇ Espace extra-atmosphérique 【외기권】	185
◇ Etablissement public 【영조물법인】	186
◇ E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교정시설】	187
◇ Etat accréditaire 【접수국】	188
◇ Etat accréditant 【파견국】	188
◇ Etat archipel 【군도국가(群島國家)】	188
◇ Etat de nécessité 【긴급피난, 필요상황】	188
◇ Etat de résidence 【주재국】	189
◇ Etat du pavillion 【기국(旗國)】	189
◇ Etats contractants 【체약국】	190
◇ Etat d'envoi 파견국	190
◇ Etats Parties 【당사국】	191
◇ Etats tiers 【제3국】	191
◇ Exception d'illégalité 【위법성의 항변】	191
◇ Exception d'inexécution 【동시이행의 항변권】	192
◇ Exequatur 【영사인가장(領事認可狀)】	193
◇ Expertise 【감정】	193
◇ Expropriation 【수용】	194
◇ Extinction 【(조약의) 종료】	194
◇ Extradition 【범죄인인도】	195

[ F ]

◇ Fait du prince (théorie de -) 【왕자/군주의 행위론】	199
◇ Faute 【과책】	199
◇ Filiation 【친자관계, 비속】	200
◇ Flagrant délit 【현행범죄】	201
◇ Fonction publique 【공무원】	202
◇ Fonctionnaires consulaires 【영사관(領事官)】	202

◇ Fonctionnaire de fait 【사실상 공무원】	202
◇ Force majeure 【불가항력】	203
◇ Force majeure (cas de -) 【불가항력】	204
◇ Force majeure 【불가항력】	204
◇ Fruits 【과실(果實)】	205

[ G ]

◇ Gage 【동산질권, 질물, 담보】	209
◇ Garantie 【담보, 보증, 보상, 보장】	209
◇ Garde à vue 【강제유치, 경찰유치】	210
◇ Garde des Sceaux 【법무부장관】	211
◇ Génocide 【집단살해】	212
◇ Gestion d'affaire 【사무관리】	212
◇ Grâce 【특별사면】	213
◇ Gratuité (principe de -) 【공공서비스의 무상원칙】	214

[ H ]

◇ Habitation 【주거, 거주】	217
◇ Haute cour de justice 【고등탄핵재판소, 고등사법재판소】	217
◇ Haute mer 【공해(公海)】	219
◇ Haute trahison 【대역죄(大逆罪)】	219
◇ Hauts-fonds découvrants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 간출지】	221
◇ Hiérarchie des normes 【규범의 단계】	222
◇ Hiérarchique (recours -) 【위계적 심판, 소청】	222
◇ Homicide 【살인】	222
◇ Huis-clos 【비공개】	223

[ I ]

◇ Île 【섬】 .....	227
◇ Immunités parlementaires 【국회의원의 특권】 .....	227
◇ Immutabilité 【불가변성】 .....	227
◇ Impossibilité d'exécution 【(조약의) 이행불능】 .....	228
◇ Imprévisibilité 【불예견성】 .....	228
◇ Imprévision (théorie de l'-) 【불예견이론】 .....	229
◇ Imprudence 【경솔】 .....	231
◇ Imputabilité 【귀책성】 .....	231
◇ Inaliénabilité 【양도불가능성】 .....	231
◇ Incompétence 【무권한】 .....	232
◇ Indemnisation 【금전배상】 .....	233
◇ Indemnité parlementaire 【국회의원의 세비】 .....	233
◇ Indu 【부당이득】 .....	234
◇ Inexécution 【불이행, 채무불이행】 .....	234
◇ Information judiciaire 【사법수사】 .....	235
◇ Initiative de la loi 【법률안 제출권】 .....	235
◇ Initiative populaire 【국민발안】 .....	235
◇ Injonction 【이행명령】 .....	235
◇ Institution d'héritier 【상속인의 지정】 .....	236
◇ Instruction préparatoire 【예심】 .....	236
◇ Intérêt général/ public 【공공의 이익】 .....	237
◇ Intérêt pour agir 【소의 이익】 .....	238
◇ Intérim 【권한대행】 .....	239
◇ Internonces 【교황청 공사】 .....	239
◇ Interprétation 【해석】 .....	239
◇ Interrogatoire 【피의자(피고인)신문(訊問)] .....	240

◇ Intervention 【간섭】 .....	240
◇ Intervention d'humanité 【인도적 간섭】 .....	241
◇ Intuitu(s) personae 【인적신뢰의 고려】 .....	241
◇ Inviolabilité parlementaire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242
◇ Irrecevabilité 【제소요건의 결격(각하)】 .....	242
◇ Irresponsabilité parlementaire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243

[ J ]

◇ Juge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재판관】 .....	247
◇ Juge d'instruction 【수사판사, 예심판사】 .....	247
◇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형적용판사】 .....	248
◇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석방구금판사】 .....	248
◇ Juré 【배심원】 .....	249
◇ Juridiction constitutionnelle 【헌법재판기관】 .....	249
◇ Juridiction judiciaire 【사법법원(司法法院)】 .....	249
◇ Juridiction pénale 【형사법원】 .....	250
◇ Jury 【배심원단】 .....	251

[ L ]

◇ Légitime défense 【정당방위】 .....	255
◇ Legs 【유증】 .....	255
◇ Lésion 【급부불균형, 급부간 불균형】 .....	256
◇ Lettre de créance 【신임장】 .....	259
◇ Lettre de provision 【영사위임장】 .....	259
◇ Libéralité 【무상처분】 .....	259
◇ Liberation conditionnelle 【조건부석방】 .....	259
◇ Liberté d'association 【결사의 자유】 .....	260
◇ Liberté de communication 【통신의 자유】 .....	261

◇ Liberté de la presse 【출판의 자유】	262
◇ Libertés fondamentales 【기본적 자유】	262
◇ Libertés publiques 【공적 자유】	262
◇ Libre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263
◇ Ligne de base 【기선(基線)】	265
◇ Ligne de base archipélagique 【군도기선(群島基線)】	265
◇ Location 【임대차, 대여】	266
◇ Loi constitutionnelle 【헌법률, 헌법법률】	267
◇ Loi d'habilitation 【수권법률】	267
◇ Loi de finances 【예산법률】	267
◇ Loi ordinaire 【보통법률, 일반법률】	268
◇ Loi organique 【조직법률】	268
◇ Loi référendaire 【레퍼런덤에 의한 법률】	269
◇ Louage d'ouvrage 【도급임약】	269
◇ Louage des choses 【물건임약】	269
◇ Louage des services 【노무임약】	269
◇ Louage 【임약(賃約)】	270
◇ Loyauté 【신의성실】	270

[ M ]

◇ Magistrat du siège 【좌정법관(坐定法官)】	273
◇ Maire 【단체장(시장)】	273
◇ Majorité 【성년】	274
◇ Mandat 【영장】	274
◇ Mandat ad litem 【소송대리위임】	275
◇ Mandat d'intérêt commun 【공동이익위임계약】	275
◇ Mandat légal 【법정위임】	276
◇ Mandat 【위임】	276

◇ Mariage 【혼인】	277
◇ Maternité 【모성(母性)】	277
◇ Mauvaise foi 【악의】	277
◇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공화국 메디아퇴르, 옴부즈만】	278
◇ Médiation pénale 【형사중개(刑事仲介)】	280
◇ Médiation 【중개】	280
◇ Membre du parlement 【국회의원】	280
◇ Membre du personnel consulaire 【영사직원】	280
◇ Membre du personnel diplomatique 【외교직원】	281
◇ Mer territoriale 【영해】	281
◇ Mesure d'ordre intérieur 【(행정청의) 내부조치】	282
◇ Mesure de surêté 【보안처분】	282
◇ Meuble par anticipation 【예정동산(豫定動産)】	283
◇ Meuble par détermination de la loi 【법정동산(法定動産)】	283
◇ Meuble 【동산】	283
◇ Mineur 【미성년자】	284
◇ Ministère 【행정 각부, 내각】	285
◇ Ministre 【장관】	285
◇ Ministre d'Etat 【국무장관, 국사장관】	285
◇ Ministre délégué 【담당장관】	285
◇ Minorité pénale 【형사미성년】	285
◇ Minorité 【미성년】	286
◇ Mise en examen 【예심대상결정】	286
◇ Modérateur (pouvoir -) 【직권조정권】	287
◇ Monocamérisme 【단원제】	288
◇ Moratoire 【유예】	288
◇ Motif 【판결이유, 행정결정의 이유】	289
◇ Motion de censure 【내각불신임】	290

◇ Motivation 【행정결정(행위)의 이유, 동기, 정당성】 .....	291
◇ Multipartisme 【복수정당제, 다당제】 .....	292

[ N ]

◇ Nature (réparation en -) 【자연배상; 원상회복】 .....	295
◇ Navires d'Etat utilisés à des fins non commerciales 【비상업용 정부선박】 .....	296
◇ Navires de guerre 【군함】 .....	296
◇ Négligence 【부주의】 .....	297
◇ Nemo auditur 【부도덕원인급부 반환청구부인의 원칙】 .....	297
◇ Neutralité du service public (principe de-) 【공공서비스의 중립성 원칙】 .....	298
◇ Nonces 【교황청대사】 .....	299
◇ Non-lieu 【혐의없음, 무혐의】 .....	299
◇ Norme impérative 【강행규범】 .....	300
◇ Novation 【경개(更改)】 .....	300
◇ Nullité 【무효】 .....	301
◇ Nullité absolue 【절대적 무효】 .....	302
◇ Nullité relative 【상대적 무효】 .....	303
◇ Nullité 【무효】 .....	305

[ O ]

◇ Obligation contractuelle d'information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	309
◇ Obligation d'information 【정보제공의무】 .....	310
◇ Obligation de moyens 【양태채무, 수단채무】 .....	311
◇ Obligation de renseignements 【정보제공의무】 .....	312
◇ Obligation de résultat 【결과채무】 .....	312
◇ Obligation de sécurité 【안전배려의무】 .....	313
◇ Obligation en nature 【본성채무(本性債務)】 .....	315
◇ Obligation in solidum 【불법행위연대책무】 .....	315

- ◇ Obligation précontractuelle d'information 【계약전 정보제공의무】 ..... 316
- ◇ Obligation 【의무, 채무】 ..... 317
- ◇ Occupation du domaine public 【공공재산의 점유】 ..... 318
- ◇ Offre 【청약】 ..... 318
- ◇ Opinions dissidentes 【반대의견】 ..... 319
- ◇ Opinions individuelles 【개별적 의견】 ..... 319
- ◇ Opportunité 【시의성(時宜性), 적시성(適時性), 타당성】 ..... 319
- ◇ Opposabilité 【대항력】 ..... 320
- ◇ Ordonnance 【법률명령, 오르도낭스】 ..... 321
- ◇ Ordonnance pénale 【약식명령】 ..... 322
- ◇ Ordre de la loi 【법률에 의한 행위, 정당행위】 ..... 323
- ◇ Ordre du jour 【의사일정】 ..... 323
- ◇ Ordre public 【공공질서】 ..... 324
- ◇ Ouvrage public 【공공 시설물(건물)】 ..... 325

[ P ]

- ◇ Pacte comissoire 【위반약정】 ..... 329
- ◇ Pacte de préférence 【선매약정(先買約定)】 ..... 329
- ◇ Parlement 【의회, 국회】 ..... 330
- ◇ Parlementaire 【국회의원, 국회의 또는 의회의】 ..... 330
- ◇ Parlementarisme 【의회주의제, 의원내각제】 ..... 331
- ◇ Parquet 【검찰】 ..... 331
- ◇ Partage 【분할】 ..... 332
- ◇ Parti politique 【정당】 ..... 333
- ◇ Participation aux acquêts 【혼후취득재산참가제(婚後取得財産參加制)】 ..... 333
- ◇ Partie civile 【사당사자(私當事者), 사인당사자(私人當事者)】 ..... 334
- ◇ Passage in transit 【통과통항】 ..... 335
- ◇ Passage inoffensif 【무해통항(無害通航)】 ..... 336
- ◇ Paternité 【부성(父性)】 ..... 337

◇ Pavillon de plaisance 【편의치적(便宜置籍)】	337
◇ Piraterie 【해적 행위】	337
◇ Plainte 【고소】	338
◇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사당사자를 구성하는 고소】	339
◇ Plan d'occupation des sols 【토지이용계획(POS)】	339
◇ Planification 【계획(화)】	339
◇ Plateau continental 【대륙붕】	340
◇ Plébiscite 【플레비시트】	341
◇ Plein contentieux 【완전/전면 심리소송】	341
◇ Plein pouvoirs 【전권위임장】	342
◇ Police administrative 【행정경찰】	342
◇ Police judiciaire 【사법경찰】	343
◇ Pourvoi en cassation 【상고】	344
◇ Pouvoir constituant 【헌법제정권력】	345
◇ Pouvoir constituant de révision 【헌법개정권력】	345
◇ Pouvoir constituant dérivé 【헌법개정권력, 부차적(파생적) 제한권】	346
◇ Pouvoir constituant institué 【헌법개정권력, 제도화된 제한권】	346
◇ Pouvoir constituant originaire 【헌법제정권력, 시원적 제한권】	346
◇ Pouvoir constitué 【헌법개정권력】	346
◇ Pouvoir de crise 【국가긴급권, 비상대권】	346
◇ Préambule 【헌법전문(前文)】	347
◇ Préfet 【프레페, 지사 혹은 군수】	349
◇ Premier ministre 【수상, 총리】	349
◇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공소시효】	351
◇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대통령】	352
◇ Présidentialisme 【대통령주의제】	352
◇ Preuve 【증거】	352
◇ Prévenu 【(위경죄, 경죄)피고인】	353

◇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공화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일반(기본)원칙】 .....	353
◇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지방법원 검사장】 .....	354
◇ Procureur général 【항소법원 검사장, 고등검사장】 .....	355
◇ Projet de loi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법안】 .....	356
◇ Proportionnalité 【비례성】 .....	357
◇ Proposition de loi 【국회의원제출 법률안, 의원법안】 .....	357
◇ Protection diplomatique 【외교적 보호】 .....	358
◇ Publicité 【공고】 .....	358

[ Q ]

◇ Quinquennat 【대통령 임기 5년제】 .....	363
----------------------------------	-----

[ R ]

◇ Réclusion criminelle 【징역】 .....	367
◇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월권소송】 .....	367
◇ Redevance 【사용료】 .....	367
◇ Référendum 【레퍼런덤, 국민투표】 .....	368
◇ Régie 【정부나 공공단체의 서비스의 직접경영】 .....	369
◇ Régime mixte 【혼합정부형태】 .....	370
◇ Régime parlementaire 【의원내각제, 의회제】 .....	370
◇ Régime politique 【정부형태, 정치제도】 .....	371
◇ Régime présidentiel 【대통령제】 .....	371
◇ Régime semi-parlementaire 【반의회제】 .....	372
◇ Régime semi-présidentiel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	372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국민의회 규칙】 .....	374
◇ Règlement du Sénat 【상원 규칙】 .....	374
◇ Relaxe 【(경찰법원, 경죄법원의) 무죄선고】 .....	374

◇ Réparation 【손해배상】 .....	375
◇ Réquisitoire 【공소장, 논고】 .....	375
◇ Réserve 【유보】 .....	376
◇ Responsabilité pénale 【형사책임】 .....	376
◇ Retrait 【(행정행위의) 취소】 .....	377
◇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헌법개정】 .....	378
◇ Révocation 【파면, 해임】 .....	379

[ S ]

◇ Sanction 【제재】 .....	383
◇ Scrutin majoritaire 【다수대표제】 .....	383
◇ Secrétaire d'Etat 【차관, 처장, 청장, 국사차관】 .....	384
◇ Sénat 【상원】 .....	384
◇ Sénateur 【상원 의원】 .....	384
◇ Séparation des pouvoirs 【권력분립】 .....	385
◇ Septennat 【대통령임기 7년제】 .....	385
◇ Service public 【공공서비스】 .....	386
◇ Servitude 【지역】 .....	386
◇ Session 【국회의 회기】 .....	387
◇ Souveraineté 【주권】 .....	388
◇ Souveraineté nationale 【국민주권】 .....	388
◇ Souveraineté populaire 【인민주권】 .....	389
◇ Spécialité (Principe de -) 【(권한배분상) 전문성원칙】 .....	389
◇ Substitution d'action 【대집행처분】 .....	390
◇ Supranationalité 【초국가성】 .....	391
◇ Sursis à exécution 【집행정지】 .....	392
◇ Suspension 【정지】 .....	393

[ T ]

◇ Taxe 【요금, 세(稅)】 ..... 397

◇ Témoin 【참고인, 증인】 ..... 397

◇ Traité 【조약】 ..... 398

◇ Travaux publics 【공공(토목)공사】 ..... 398

◇ Tribunal administratif 【(1심) 행정법원】 ..... 399

◇ Tribunal correctionnel 【경죄법원】 ..... 399

◇ Tribunal de police 【경찰법원】 ..... 400

◇ Tribunal des conflits 【관할법원】 ..... 400

◇ Trouble mentale 【정신장애】 ..... 401

◇ Tutelle 【행정상 후견】 ..... 402

[ U ]

◇ Utilisation du domaine public 【공공재산의 사용】 ..... 405

◇ Utilité publique 【공익성, 공공의 필요】 ..... 405

[ V ]

◇ Valise diplomatique 【외교행량】 ..... 409

◇ Vice de forme 【형식의 흠】 ..... 409

◇ Voie de fait 【폭력행위, 공권력주체의 기본권 침해행위】 ..... 409

[ Z ]

◇ Zone 【침해지】 ..... 413

◇ Zone contiguë 【접속수역】 ..... 413

◇ Zone économique exclusive 【배타적 경제수역】 ..... 414